## 수수료 - 사용료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 RESEARCF-NST-TVE 

강 현 철

TIITR 한군병제연구ㅇㅝㅝㄴ

# 수수료•사용료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강 현 철

# 수수료 • 사용료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 Study on Legal System to Maintenance Measures for Fees and Charges 

연구자 : 강현철(연구위원)<br>Kang, Hyun-Cheol

2011. 10. 31.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입법기준의 명확화○ 법령의 근거와 부과기준 등의 입법모텔 분석을 통한 입안기준 정비

○ 통계분석 및 조사방법을 통한 연구성과 도출연구범위와 방법

○ 이론적 연구: 개념 및 본질에 관한 사항
○ 비교법적 연구

## ․ 주요 내용

수수료•사용료에 관한 일반론○ 개 념

-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국가•공공단체가 타인을 위하여 공적 사무를 제공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 즉 인적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를 의미
- ‘사용료'는 공물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 사용의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것을 의미

○ 법적 성질과 수수료•사용료의 요율결정방식

- 이용자부담원칙
- 행정목적원칙(공익주의)법령에서의 사용료

○ 도로 점-사용료

O 하천 점•사용료

- 공유수면 점•사용료
- 도축장 사용료

○ 입장료
○ 그 밖의 사용료
$\square$ 독일에 있어서 수수료 제도

○ 수수료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귀속가능한 국가의 특정한 재화 및 용역의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징수되는 공과금

○ 수수료의 산정원칙

- 평등원칙, 비용보전의 원칙, 등가의 원칙, 급부비율성의 원칙
$\square$ 수수료•사용료 현황 분석
○ 응시수수료, 위탁수수료, 규제수수료, 민 원수수료, 대행수수료, 기타 수수료로 나누어 그 현황을 분석
- 법률에 근거 없이 수수료•사용료가 하위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경우
-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 수수료•사용료의 내용 및 절차,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 수수료•사용료 부과와 납부절차 등 법정화된 사항이 불명확 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
- 수수료•사용료 미납에 대한 제재절차가 미비된 경우와 그 절 차와 제재가 과다한 경우
$\square$ 개선 대상 분석
○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 고등교육법, 국어기본법, 사법시험법,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 료 징수규칙

○ 근거규정은 있으나 포괄적으로 위임된 경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 법,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위임된 사항이 하위법령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 공무원 임용 시험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건축사법, 물류정책기본법, 주택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공인노무사법, 선원법, 교통안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위생사에 관한 법률

○ 하위법령에 반영된 경우가 적절하지 않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 어나 반영된 경우

- 도선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 법, 변호사시험법,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선박법, 기술사법, 수도법,

○ 수수료 부과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와 금액이나 기 준이 과도한 경우

- 변호사시험법, 유료도로 관리권 등록령, 민원수수료, 수수료 면제 $\square$ 의견조사

○ 차량등록 수수료

- 등록기간이 짧고, 구비서류가 많으며, 등록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됨.
- 등록 수수료는 공무원은 '필요', 차량소유주와 대행업자는 '불 필요'의 의견이 높게 나타남. 다만, 수수료의 금액보다는 종류 가 너무 많다는 점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음.

O 대학입시 수수료

- 입학전형료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남. 다만, 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의견이 절대다수로 나타남.
- 전형의 다양성과 절차의 복잡성을 개선사항으로 제시
$\square$ 입법모델 분석
$\bigcirc$ 응시수수료
-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 위탁수수료

- 위탁수수료
- 공매대행수수료
$\bigcirc$ 규제수수료
- 민원수수료


## III. 기대효과

$\square$ 수수료•사용료 관련 법제 전반을 분석하여 개선대상을 제 시함으로써 법제의 개선에 기여
$\square$ 입법모델제시를 통한 표준적 입안기준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

2 주제어: 수수료•사용료, 응시수수료, 규제수수료, 민원수수료, 위 탁수수료, 표준입법모델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Clarification of Legislative standardsO Maintenance of legislative standards with analysis of legislative model

O Performance with Statistical Analysis and Research MethodsResearch Scope and Method

O Theoretical Study : Concept and nature

O Study of Comparative Law

## П. Current Legal System and Its Problems

Generalizations about fees and chargesO Concept

- Benefits of Opposition to human affairs or to use offerings

O The legal nature and Method of determining rates

- The principle of user pay
-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purposes(Public interest perspective)Fees in law

O Road fees, fees streams, Shared water fees, Slaughter fees, Admission fee

## III. Lessons from Germany

Principles Calculation of FeesO Principle of equality, Costs of conservation principles, principle of equivalence, principle of benefit ratio

## IV. Legal Improvements

Analysis of Status of FeesO Analysis of status on Admission fee, Fees charged, Regulatory Fees, Complaints commission, Agency fee

- Fees are not based on in law
- Lack of contents, procedures, formats
- Indeterminate of legal details
- Incomplete or excessive sanctions proceduresAnalysis Improvement

Not based on legal provisions

- Higher Education Law, Basic Law language etc.

O Extensive delegation

- National Health Promotion Law etc.

O No sub-decree provisions

- Construction Law, Housing Act etc.

O Reflect or not reflect inadequate
O Fees do not requireModel analysis of legislative
$\bigcirc$ Admission fee

- Admission fee of Employment test
- Admission fee of Qualifications test

O Fees charged
Regulatory Fees
Civil commission

D Key Words : Fees, Commission, Admission fee, Regulatory Fees, Fees charged, Model analysis of legislative, Analysis of Status of Fees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9
제 1 장 서 론 ..... 19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연구범위와 방법 ..... 19
제 2 장 수수료 - 사용료에 관한 일반론 ..... 21
제 1 절 수수료 - 사용료의 개념 ..... 21
I. 개념 및 본질 ..... 21
․ 수익자부담금의 관점에서 본 수수료•사용료의 법적 성질 ..... 22
III. 수수료•사용료의 요율결정방식 ..... 23
제2 절 법령에 있어서 사용료 ..... 26
I. 사용료와 점용료 ..... 26
․ 도로 점•사용료 ..... 27
III. 하천 점 - 사용료 ..... 43
VI. 공유수면 점 - 사용료 ..... 47
V. 도축장 사용료 ..... 53
VI. 입장료 ..... 54
VII. 기타 사용료 ..... 56
제 3 절 독일에 있어서 수수료 제도 ..... 63
I. 개 요 ..... 63
ㅍ. 공과금의 한 유형으로서의 수수료 ..... 64
III. 행정법상 수수료개념과 수수료의 목적 ..... 69
IV. 헌법상 수수료개념과 정당성문제, 정당화 근거 ..... 74
V. 수수료의 산정원칙 ..... 84
제 3 장 현행 법령상 수수료 현황분석 ..... 89
제 1 절 응시수수료 ..... 89
I. 응시수수료의 개념 ..... 89
ㅍ. 현행 법령상 응시수수료 ..... 90
제 2 절 위탁수수료 ..... 130
I. 위탁수수료의 개념 ..... 130
ㅍ. 현행 법령상 위탁수수료의 종류 ..... 131
제 3 절 규제수수료 ..... 168
I. 규제수수료의 의의와 범위 ..... 168
․ 현행 법령상 규제수수료의 봉류 ..... 169
제 4 절 민원수수료 ..... 314
I. 민원수수료 ..... 314
ㅍ. 현행 법령상 민원수수료의 종류 ..... 314
제 5 절 대행수수료 ..... 406
I. 대행수수료의 개념 ..... 406
․ 현행 법령상 대행수수료의 종류 ..... 406
제 6 절 그 밖의 수수료 ..... 475
제 4 장 수수료 • 사용료에 관한 개선대상분석 ..... 495
제 1 절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 495

1. 고등교육법 ..... 495
2. 국어기본법 ..... 496
3. 사법시험법 ..... 496
4.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 497
제 2 절 근거규정만을 두고 포괄적으로 위임된 경우 또는 미반영된 경우 ..... 497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497
6. 국민건강증진법 ..... 497
7.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 498
제 3 절 위임사항이 미반영된 경우 ..... 498
8. 공무원 임용 시험령 ..... 498
9. 소방공무원 임용령 ..... 499
10. 지방공무원 임용령 ..... 499
11. 건축사법 ..... 499
12. 물류정책기본법 ..... 499
13. 주택법 ..... 500
1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 500
15. 공인노무사법 ..... 501
16. 선원법 ..... 501
17. 교통안전법 ..... 501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501
19. 물류정책기본법 ..... 502
20. 위생사에 관한 법률 ..... 502
제4 절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적절하지 않거나 범위를 벗어난 경우 ..... 502
21. 도선법 ..... 502
2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2
23. 소방기본법 ..... 503
24. 변호사시험법 ..... 503
25. 건설산업기본법 ..... 503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503
27. 선박법 ..... 504
28. 기술사법 ..... 504
29. 수도법 ..... 504
제5 절 부과금액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 504
30. 변호사시험법 ..... 504
31.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505
32. 민원수수료 ..... 505
33. 수수료 면제에 관한 예시 ..... 505
제 5 장 수수료 - 사용료에 관한 의견조사 ..... 509
제 1 절 차량등록 수수료 ..... 509
34. 차량 등록 절차 관련 ..... 509
35. 차량 등록 수수료 관련 ..... 511
36. 기타 의견 ..... 513
제 2 절 대학입시 수수료 ..... 514
37. 대입 (수능, 전형료 등) 수수료 관련 ..... 514
2．대입 접수 및 등록 절차 관련 ..... 517
3．기타 의견 ..... 518
제 6 장 수수료 • 사용료에 관한 입법모델 분석 ..... 521
제 1 절 응시수수료의 입법모델 ..... 521
I．공무원 임용에 따른 응시수수료 ..... 521
I．자격시험 응시수수료 ..... 522
제 2 절 위탁수수료의 입법모델 ..... 525
제 3 절 규제수수료의 입법모델 ..... 529
제 4 절 민원수수료의 입법모델 ..... 531
제 7 장 결 론 ..... 533
참 고 문 헌 ..... 535
부 록 1 【수수료 관련 고시】 ..... 541
부 록 2 【수수료 관련 인식 조사 설문지】 ..... 549

## 제 1 장 서 론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행 법령에서 수수료와 사용료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입법화되어 있으며, 나름대로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그 요율과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 법령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있 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있어서 이러한 입법적 요청은 수수료와 사용료 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모호한 방식으로 규정 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부과기준 등 관련규정이 법령 또는 고시•지침 등에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행 법령상에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와 사용 료 관련 구체적인 조항을 조사하여 수수료와 사용료의 부과징수 근거 의 입법적 근거 및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물론 감면규정에 대한 입 법기준을 정립하여 법령 등에 적용하기 위한 모텔입법안을 개발하고, 중요한 수수료와 사용료에 관하여 선별적으로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 산발적으로 규정한 수수료와 사용료 부 과기준의 입법체계적 통일성과 체계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령 전수조 사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통계분석 및 수범자에 대한 법적정성에 대 한 설문조사 방법 등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 연구범위와 방법

일반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그 사무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려면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수수료는 서비스의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와 이용은 자유이나 사 실상 강제되는 경우 및 이용이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구체적 범위는 일반적인 수수료 또는 사용료가 아니라 법정화된 수수료•사용료에 한정하도록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수료•사용료의 법령상 개념과 그 본질에 관한 사항을 검토 하고자 한다. 이는 법령상 수수료와 사용료는 금전납부제도이지만, 그 실질은 매우 다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그 법적 성질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둘째, 이론적 연구와 비교법적 연구를 기초로 우리나라 현행 법령에 있어서 수수료•사용료 관련 사항을 전수조사방법을 통하여 분석하 고, 이 분석을 기초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입법화 방안을 도출하고 자 한다. 셋째, 이러한 전수조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표적인 수수 료•사용료 중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사항과 입법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 등을 선정하여 수범자들에 대한 설문조 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적절성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법이론적 문헌분석 연구는 물론 법령전수조사를 통한 통계학적 분석방법과 수범자 및 관련 부처 공무원 등에 대한 의견조 사와 설문조사 등의 법사회학적 방법 등을 통하여 연구성과의 객관화 와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비교법적 연구방법 역시 이러한 연구 성과의 조화를 통하여 보다 적절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기초연구 로서의 성과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제 2 장 수수료•사용료에 관한 일반론

## 제 1 절 수수료•사용료의 개념

## I．개념 및 본질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국가•공공단체 가 타인을 위하여 공적 사무를 제공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즉 인적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를 의미하고，＇사용료＇는 공물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 사용의 대가로 부과•징수 하는 것을 의미한다．수수료와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 으로 정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수수료는 이익을 얻는 특정인에게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수수료는 소요경비의 부담 이지만 부담금은 모든 사업관계자에게 부과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넓은 뜻으로는 개인상호간에 있어서 일방이 타방의 요구에 따라 제공 한 사무에 대한 보수로 받는 금전까지 수수료라고 하지만，이는 사법 상（私法上）의 보수 혹은 대가로서 사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공법상 의 수수료와는 성질이 다르다．
본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사용 및 행 정서비스의 제공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지만，이것이 특정인에게 특별 한 이익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익을 얻는 자 즉，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이러한 공평의 원칙에 따라 실비를 징수하는 것은 정 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수수료－사용료는 행정에 필요한 실제비 용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1）수수료와 사용료의 징수절차와 방

[^0]법은 일반적으로 조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고，그 부과와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이의신청에 불복 할 경우에는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2）
수수료•사용료의 징수방법에는 현금으로 받는 직접징수와 인지（印紙）에 의하는 간접징수가 있다．국가가 징수하는 수수료에는 사법상 （司法上）의 수수료와 행정상의 수수료가 있다．사법상의 수수료는 민 사소송•가사심판 등의 소송절차나 비송사건절차 및 등기수수료 등이 있다．행정상의 수수료에는 각종 특허－허가－인가의 수수료，조세 등 의 가산금，수험료 등이 있다．

수수료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방자치단체는 특정 개인을 위하여 행하는 사무에 대하여，각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28조 1항）． 국가의 수수료는 법령 또는 대법원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하나，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는 조례로 정한다（130조 1항）．수수료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131조 2항）．

> ․ 수익자부담금의 관점에서 본 수수료•사용료의 법적 성질

수익자부담금은 사용자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결정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기준으 로 볼 때，최광의•광의•협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최광의의 개념은 사용자 요금，공익사업요금，특별분담금，인허가 수수료，면허세 및 특 정편익에 대한 응익세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광의의 개념은 특별분 담금과 인허가 수수료 및 면허세까지를 포함한 개념이다．협의의 개 념으로는 공익사업요금과 사용자 수수료만을 포함한다3）．

[^1]이러한 사용자부담금의 장점은 (1) 공공서비스 제공비용에 따른 소 비감소효과, (2) 공공시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잉공급 억제 효과, (3) 서비스와 비용의 균형관계 유지효과, (4) 공공부분의 생산성 향상 효과, (5) 규범의 시장지향성 강화 효과 등이 있다. 반면에 단점 으로는 (1) 저소득층에 대한 불평등 초래, (2) 조세와의 형평성에 있어 서 비싼 비용을 초래, (3) 부담금 규제로 인한 과잉수요의 발생으로 자원의 낭비 및 비효율이 발생, (4) 사용자부담금의 확대는 조세재원 을 위축, (5) 비용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4).

이에 반하여 수수료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 중 공공성은 매 우 강하지만 소비로 인한 편익의 범위가 특정 개인에게 구체적•개별 적으로 귀속되고, 서비스의 소비나 요금지불이 자발적인 경우에 한정 하는 바, 상수도•하수처리•전기•가스 등과같은 공기업의 운영수입 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이 서비스는 지방정부 또는 지방공기업이 공 급하지만, 사적 재화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면허세와 인허가 수수료는 특권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제외 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재정적 관점에서의 세외수입이라는 점에서 보 다 넓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

## III. 수수료 - 사용료의 요율결정방식

1. 요율의 의의

수수료•사용료와 같은 준공공재 사용자부담제도는 그 부담의 결정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형평성과 효율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 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충분한 수입확보, 징수행정상의 편의 등도

[^2]주요 고려사항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용자부담제도의 적용평가의 단위를 요율이라 하며, 요율은 전체 요금수입의 규모를 결정한 후 개 별적인 서비스의 수혜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절차이다. 이 요 율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요금수준과 요금체계 이다. 요금수준은 징수해야할 요금총수입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요금체계는 각각의 서비스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개별요금을 결정하는 부과방식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것은 수수료와 사용료의 결정에 있어 서 이용자나 소비자가 받아들여야 할 요금의 총액을 결정하는 문제와 요금총액을 개개의 소비자에게 분담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물론 이러 한 비용부담은 수수료와 사용료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전액 수익자부 담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수료와 사용료의 요율의 결정이 법령에서 고정 되어 있어 물가인상과 비용인상 요인 등을 적절히 감안하지 못하는 비탄력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에 대하여 소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적용하여 형평의 문제는 물론 주 민의 불신과 저항을 야기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요율의 결정은 부담과 공익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하며, 사무간의 일관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공공요금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경제안정과 물가안정의 측면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요율의 결정방식

요율의 결정방식은 서비스원가주의, 서비스가치주의, 사회적 원칙 (규범+공정)주의, 이용자부담원칙, 행정목적원칙주의(공익주의) 등이 제 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용자부담원칙와 공익주의의 조화라는 관점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용자부담원칙

서비스 비용원리 또는 원가주의라 할 수 있는 이 원칙은 이용자로 서 개인적 욕망에 따른 개인적 응익성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 의 대상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수수료와 사용료를 받는 공공서비스는 공기업의 요금과 달리 조세로 충당하여야 할 성질을 지닌다. 다만, 이 러한 서비스가 납세자로서 받아야할 서비스 또는 시설이용을 초과하 는 경우, 즉 특정인에 한정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상응하 는 특별부담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둘째, 서비스 대상의 구체성 문 제이다. 특정대상이 그 시설을 이용할 것을 전제로 설치된 경우에는 시설의 공익성 여부와 상관없이 원가를 부담하는 것이 적당하다. 셋 째, 이용배제에 대한 대가지급의 문제이다. 원래의 목적은 대상의 구 체성에 따른 설치가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특정인을 목적으로 사용 하게 될 경우 이는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배제원칙이 적용되는 것으 로 다른 쪽을 배제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 넷째, 요율은 원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만, 원가의 구체적 산정기준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다.
(2) 행정목적원칙(공익주의)

외부효과원리 또는 공익주의라 할 수 있는 이 원칙은 공급자로서의 사회적 욕망의 충족이라는 입장에서 결정하려는 것으로 개인적인 응 능성을 중시하는 원칙이다. 공공서비스는 이 효과원리•공익주의에 사회적 타당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결정기준은 (1)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행 정서비스(상하수도, 분뇨처리 등)의 요금은 저렴하거나 무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필수적인 행정서비스지만 반드시 기초적인 서비 스라 할 수 없는 것(한계초과 상수도, 폐기물 처리)은 이용자부담을

도입해서 한계비용을 요금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선 택적 행정서비스지만 기초적 행정서비스(저소득층과 노인을 위한 시 설의 제공)는 저요금제가 바람직하다. (4) 선택적인 행정서비스지만 반 드시 기초적인 행정서비스라 할 수 없는 행정서비스의 요금(주차장, 문화회관 등)은 그 서비스의 목적, 수익창출 등을 고려하여 요금을 결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수료와 사용료의 요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산정하는 문제는 각 개개의 수수료•사용료가 가지는 서로 다른 서비스의 성질 로 인하여 비용원칙과 효용가치의 분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물가상승이나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라 할 것이다.

## 제 2 절 법령에 잇어서 사용료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주민이용시설과 지방자치단 체의 부담으로 관리하는 국가 공공시설을 점용 및 사용한 데 대한 반대 급부로서 점용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사 용료의 종류로는 도로점 - 사용료, 하천점 - 사용료, 공유수면점 • 사용 료, 시장사용료, 도축장사용료, 입장료, 기타 사용료 등이 있다6).

## I. 사용료와 점용료

(1) 의 의

사전적 의미에 있어서 사용료란 '무엇을 사용한 값으로 치르는 요 금'으로, 점용료란 '점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7)으로 일반적으로
6) 변홍섭, 세외수입해설, 한국지방세연구회(주), 2006., 82 면.
7) 법령상 예시 : 도로법 제43조(점용료의 징수) 관리청은 제 38 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 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점용 및 사용허가);

정의되고 있다．실정법상 사용료의 정의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사 용에 따른 댓가로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27조）．조례를 예로 들면，「서울특별시 공동구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4조（점용료 및 사용 료）에 따르면＂재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허가 를 받은 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점용과 사용을 혼용하고 있다．한편 판례에서는 사용료와 점용료를 동일한 개념으로 판시8）하고 있다．이상의 실정법상 적용례와 판례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사용료와 점용료는 특별히 구분할 실 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그 명목이 사용료라 불리던 또는 점용료라 불리던 그것이 공공시설의 특별이용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다면 지방자치법 제 127 조 소정의＂사용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 도로 점•사용료

도로점•사용료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그 밖의 시설 을 신설•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려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입（도로법 제40조）을 말한다．

1．도 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8조에 열 거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지 방도，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를 말한다（도로법 제2조 1항 1호）． 도로의 범위에는 터널，교량，도선장（渡船場），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

[^3]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도로법 제2조 2항). 여기서 도로의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공작물이란 삭도, 옹벽, 지 하통로, 무넘기시설, 배수로, 길도랑,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 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로의 종류와 관리청9)

| 등 급 | 종 류 | 관리청 | 비 고 |
| :---: | :---: | :---: | :---: |
| 1 | 고속국도 | 국토해양부장관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 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지 방도, 제 20 조의 2 제 1 항에 따 른 지정국도, 국도대체우 회도로는 제외)는 특별시 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 청임 |
| 2 | 일반국도 | 국토해양부장관 |  |
| 3 | 특별시도 | 특별시장 |  |
|  | 광역시도 | 광역시장 |  |
| 4 | 지방도 | 도지사 |  |
| 5 | 시도 | 시장 |  |
| 6 | 군도 | 군수 |  |
| 7 | 구도 | 구청장 |  |
| 8 | 면도, 리도, 농도 | 군수 | 농어촌도로정비법 적용 |

9) 도로법 제 8 조, 제 20 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 4 조 1 항

## 3．부과근거

「도로법」의 도로는 도로법 제41조에 따라서，농어촌도로법에서 따른 도로（면도，리도，농도）는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에 따라서 도로 를 점용한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이 경우 점용료를 부 과할 수 있는 자는 각각의 도로관리청이 된다．도로점용료의 산정과 그 밖의 부과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4．도로점용 허가

（1）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1）전주 • 전선 • 변압탑 • 공중선 • 우체통 • 공중전화 • 무선전화기지국 •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 태양열발전시설 • 풍력발전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
（2）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지중정 착장치（어스앵커）• 작업구（맨홀）• 전력구 • 통신구 • 공동구 • 배수시설 • 수질자동측정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주유소 • 주차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화물터미널 • 자동차수리소 • 승강대 • 화물적치장 • 휴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 출입로
（4）철도•궤도，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지하상가•지하실 • 통로 • 육교，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간판 • 표지 • 깃대 • 주차측정기 • 현수막 및 아치
（7）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8）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 광장 • 공원，체육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9）기타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 물건（식물을 포함한다）및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2）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1）「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 신설비，「전파법」에 의한 전파관리업무를 위한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 및 우편법에 의한 우편함과 이와 유사한 공작물
（2）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열공급관과 이와 유사한 시설
（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등과 이와 유사한 물건
（4）철도，궤도와 이와 유사한 시설
（5）지하도，육교와 이와 유사한 시설
（6）이 외에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하는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및 시설

이상의 공작물 등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 는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허 가처리기한은 도로관리청과 점용허가의 종류（도로의 일반점용，도로의 일시점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취•육교의 사용，공작물 설치，도로 굴착）에 따라 각각 다르다．
（3）점용허가시 유의사항
（1）점용장소
가．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쪽）의 끝부분에 설치하되，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 도쪽의 보도에 설치하여야 한다．다만，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대• 교차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도로가 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용물을 설치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선 및 전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물은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아니하게 설치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2)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라. 점용물이 전주•전선 또는 공중전화소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2) 동일노선의 전주는 도로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도 로의 경우로서 그 건너편 쪽에 점용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8 미터 이상의 거리를 띄울 것. 다만, 도로가 교차•접속 또는 굴 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상에 설치하는 전선은 도로노면에서 6미터(통신용 전선의 경 우에는 4.5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의 윗부분 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면에서 5 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3 미터) 이상의 높이로 할 수 있다.
4)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선에 새로 전선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서로 뒤섞이지 아니하게 할 것
5) 지하에 전선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차도 및 길어깨 외의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선의 본선에 한하여 차도 및 길어깨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다.
6)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의 상단부는 차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8 미터 이상, 보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6 미터 이상을 노면으로부터

띄울 것.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 또는 도로공사의 시행 및 도로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전선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쪽 또는 상판의 밑 에 설치할 것

마. 점용물이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보도 및 도 로비탈면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선 에 한하여 차도 및 길어깨 부분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수 있다.
3) 수도관•가스관•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1.2 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하수도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 의 거리를 3 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이를 설치할 것
6) 통신구 또는 작업구는 차도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하며, 길어깨 또는 보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높이를 길어깨 또는 보도와 같 은 높이로 하는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의 안전이나 보행 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바. 점용물이 송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유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터널 안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를 설 치할 수 있다.
2) 송유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에는 원칙적으로 차량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하되, 송유관과 도로경계선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둘 것
3) 송유관을 도로노면의 지하부분에 매설하는 경우 그 깊이는 다 음과 같이 할 것
가)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 는 당해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5 미터(공사시 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 미터) 이상을 띄우고, 송 유관에 방호구조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8 미터 이상 띄울 것
나) 시가지외의 지역에서는 송유관의 윗부분(방호구조물에 의하 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말한다)을 노면으로부터 1.5 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1.2 미터) 이상 띄울 것
4) 송유관을 노면 외의 지하부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상단부에서 지면까지의 거리를 1.2 미터(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 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시가지에서는 0.9 미터, 시가지외의 지 역에서는 0.6 미터) 이상 띄울 것
5) 송유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이 맨 밑부분을 노 면으로부터 5 미터이상 띄울 것
6) 송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 에 설치할 것

사. 점용물을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다른 도로가 있 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점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된다.

1) 고가도로의 구조보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전주 • 전선 • 공중전화소 • 수도관 • 하수도관 • 가스관 • 전기통신 관로서 부득이 한 경우에는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할 수 있다.
3) 송유관은 고가도로의 노면 밑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가도로 밑의 보 또는 상판 밑에 붙여 설치할 수 있다.
(2) 점용물의 구조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괴•낙하•벗겨짐 • 오손•화재•하중 • 누수 등에 의하여 도 로의 구조안전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전주의 디딤쇠는 도로방향과 평행되게 설치할 것
3) 가설점포 등은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소한도의 규모로 설치할 것
나.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 니할 것
다. 점용물을 교량 또는 고가도로에 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또 는 고가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라야 한다.
(3) 공사방법

가.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 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1 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 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하여는 국토

해양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의 관 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을 켜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할 것
(4) 공사의 시기

가. 다른 점용공사 또는 도로공사의 시기를 감안할 것
나. 가능한 한 야간시간대 등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것
(5) 도로의 복구

가.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이 굴착공사 를 시행하기 전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용재료 - 다짐도 등 품 질관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과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복구할 때에는 노면을 평탄하 게 개선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굴착공사시 행자에게 굴착면 주변의 표층을 깎아낸 후에 복구하게 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복구의 범위는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 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 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 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 로 본다.

라. 비포장도로의 표면은 기존 도로에 부설된 동질의 재료 및 두께 로 표면을 마무리하여 굴착전의 노면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6) 매설물의 위치 표시

가.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 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대로 도로를 굴착하여 점용물이 매설될 수 있도록 도 로굴착지점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설치하고 관리청의 확인을 받 은 후 시공할 것
2)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이 가스관과 같은 선형시설의 경우에는 그 매설물의 바로 위에, 작업구와 같이 면적형인 시설 의 경우에는 굴착지점의 경계선의 안팎에 설치할 것

나. 굴착공사를 준공한 후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때에는 매설물위의 지상에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 등은 주요 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관리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5. 점용허가 신청
(1) 점용허가신청

도로법 제 38 조 제 1 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점용의 목적, 점 용의 장소와 면적, 점용의 기간,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공사시설 의 방법, 공사의 시기, 도로의 복구방법을 적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장소•점용기간•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 의 2 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서에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

자인 경우에 한한다)과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

도로법 시행령 제 28 조 제 5 항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 및 제 8 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 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 은 3 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관련법령 / 도로법시행령

(5) 법 제 38 조제 2 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 5 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 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 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 • 전선 • 변압탑 - 공중선 • 우체통 • 공중전화 - 무선전화기지국 • 종합유 선방송용단자함 -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태양 광발전시설 • 태양열발전시설 • 풍력발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 - 하수도관 • 가스관 - 송유관 • 전기통신관 - 송열관 •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작업구(맨홀) • 전력구 • 통신구 • 공동구 - 배수시설 - 수질자동 측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 • 주차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화물터미널 - 자동차수리소 • 승강대 화물적치장 •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 •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 • 지하실 • 통로 • 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 • 표지 - 깃대 • 주차측정기 - 현수막 및 아치
7. 공사용 판자벽 - 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8.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 - 창고 • 주차장 - 광장 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9．제 1 호부터 제 8 호까지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 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및 시설로서 국토해 양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 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6．점용료 산정비율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사행령 제42조（별표2）의 규정에 의한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가격，점용료，점용면적，점용길 이 등은 다음에 의거 산정한다．
（1）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 가 2 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연액산정시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 년 미 만인 경우에는 매 1 월을 12 분의 1 년으로 하고，이 경우 1 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광고탑，광고판，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면적 산정시
광고탑，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 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7. 점용료 부과 징수 ${ }^{10)}$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이때 점용기간이 1 년 미만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 년 이상인 때 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 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 회 이내 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은 연 6퍼센트 의 이자를 붙인다. 점용기간이 1 년 이상이거나 지방세법 제 41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점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징수유예 등 요건>

-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 로써 재산상에 심한 손실을 입었을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을 때
-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있을 때
- 납부자 또는 납부자의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을 당하여 장기 치료를 요하는 때
-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는 변상금을 징수하 여야 하며, 이때 변상금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 분의 120 으 로 하고, 변상금의 징수방법은 점용료 징수방법에 따른다. 점용료와 변상금은 각각 그 금액이 5,000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10) 도로법시행령 제 26 조의 3 ,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게 되었을 경우와 도로점용허 가를 취소한 때에는 점용하지 아니하는 기간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기간에 연 $8 \%$ 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8．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 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점용료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 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 가율에 따라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점용료의 조정은 변상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9．점용료의 감면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점용허가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감면한다．
（1）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 으로서 도로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 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
［도로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지방공기업법」 제 49 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 용수도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 공사（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2）점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나．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다．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 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 퍼센트 미만인 때에 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점용료의 $1 / 2$ 을 감액하는 사업
가．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 송유관 • 가스공급시설 • 열수송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나．지하점용물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 m 이상인 경우
（4）점용료의 $4 / 5$ 를 감액하는 경우
지하점용물 상단의 깊이가 지하 40 m 이상인 경우

## 10. 가산금 및 독촉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 내에 완납하 지 않을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부과, 독촉, 체납처분은 국세징수법 제 21 조와 제 2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납기한이 경과하면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점용료•변 상금에 대하여 100 분의 3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점 용료•변상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액의 1,000 분의 12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위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 별 • 세목별 세액이 100 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점용료 등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 간은 최대 60 월까지이다.
점용료 등을 부과한 담당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 일(은 행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50 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 여야 하며, 독촉장을 받고도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된다.

## 11. 징수사무의 위임 및 이의신청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점용료는 기초자치단체의 장 에게 징수권을 위임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 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점용 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점용료 부 과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그 징수

금액의 100 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한다. 도로 점•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되, 이의신청의 방법은 지 방자치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도로법 및 도로법의 위임에 의한 자치 단체의 조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1).

## III. 하천 점 • 사용료

하천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이다. 따라서 하천의 유수를 사용 하거나 하천 내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점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하천 점•사용허 가를 얻어 하천을 점용•사용하는 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부 과•징수하는 수입을 하천 점•사용료라 한다. 즉 유수의 사용, 토지 의 점용, 토석 • 모래 • 자갈 등의 산출물 채취, 스케이트장 설치, 유선 장 설치, 식물 식재, 선박 운행 등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 }^{12)}$.

1. 부과근거

하천 점•사용료는 하천법 제37조(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 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라서 부과징수한다.
2. 하천의 종류와 관리청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하천관리는 국가하천은 국가, 지방하천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가 각각 관리한다.
11) 대법원 81 누 $117,1981.10 .13$
12) 대법원 1999.5.25 선고 98다92046판결

## 3．하천 점용•사용허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얻어 하천을 점용•사용할 수 있는 행위는 다 음과 같다．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 모래•자갈의 채취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 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 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4．하천 점－사용료 산정기준
시•도지사는 법령의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부과비 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률」제 3 조제 1 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 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 2 항에 따라 표 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 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다만，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 개월을 $1 / 12$ 년으로 하고, 1 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 일을 $1 / 365$ 년으로 한다. 점용면적이 $1 \mathrm{~m}^{2}$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mathrm{~m}^{2}$ 미만인 경우에 는 $1 \mathrm{~m}^{2}$ 로 본다. 1 건의 점용료 등이 2 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5. 하천 점 •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하천점용은 일시점용과 계속점용으로 구분된다. 일시점용이란 토석, 자갈채취, 동계 스케이트장 설치, 채빙 등 비교적 그 점•사용기간이 단기간인 것을 말하며, 계속점용이란 댐, 전기사업, 농경을 목적으로 한 전, 답, 대지 등의 점용으로서 비교적 장기간 또는 영구적인 점용을 말한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사용 료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 - 사용료가 5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연 100 분의 6 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사용료가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 퍼 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 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사 용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 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청은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점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 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제 징수법 제 21 조를 준용한다.

- 가산금: 납기경과 후 체납액의 $3 \%$ 상당액
- 중가산금 : 납기경과 후 매 1월 경과시마다 체납액의 $12 / 1,000$ 상당액
(단,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 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6. 하천 점 • 사용료의 감면(하천법시행령 제44조 및 시•도조례)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사용료를 감면한다(전액면제).

가.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다.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 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바.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또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 설 - 전기통신시설 - 송유관 •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 기 위한 사업( $1 / 2$ 감액)이나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 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에는 점•사용료를 감면한다.
7. 하천 점 - 사용료의 반환

하천관리청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

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 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VI．공유수면 점－사용료

1．의 의

공유수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이라 함은 바다측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 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 까지의 사이），바닷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1 항 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 지의 사이），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 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을 말한다．

## 2．공유수면 관리청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항만법 제3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및 항만법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리하고，그 밖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이 관리한다．

## 3．점•사용료부과 근거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 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공유수면 관 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하천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4．점－사용 허가 대상
공유수면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건축법」 제 2 조제 1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그 밖의 인공구 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錅）하는 행위
-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 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 는 행위．다만，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 향을 미치는 행위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공유수면에서「광업법」제 3 조제 1 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이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 • 사용하는 행위

5．점•사용료 산정기준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다음에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다．
－법 제 8 조제 1 항제 1 호•제 2 호•제 4 호，제 7 호부터 제 9 호까지 및 제 11 호의 행위：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해당 공유수면에 인접 한 토지의 가격
－법 제 8 조제 1 항제 5 호의 행위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인수－배수펌프의 용량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인수관• 배수관의 지름
－법 제 8 조 제 1 항 제 6 호의 행위：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훍•돌•모래의 시장가격
－법 제 8 조 제 1 항 제 10 호의 행위：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 모래의 시장가격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 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점용료•사용료 부 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다만，개별공시지가 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 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월할（月割） 로 계산하고， 1 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점용면적에 $1 \mathrm{~m}^{2}$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총 점용면적이 $1 \mathrm{~m}^{2}$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6．점－사용료 부과징수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점용•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해당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처음으로 징수하는 점 용료•사용료는 점용•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 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사용료를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그 이후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6월 1 일을 기준 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공유수면관리청은 5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 회 이내에서 분 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 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 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를 가산하여야 한다．이 경우 연간 점 용료•사용료가 1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자 에게 연간 점용료•사용료의 100 분의 10 이하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이와 같이 점•사용 료 분할납부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매 회분 개시 후 1 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로 한다．

## 7．점•사용료의 감면

점－사용료 등 감면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국가•지방자치단체，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13）가 공익목 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 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전액 감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 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탁（汚濁）방 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전액 감면）

1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2）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3．「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제5호 및 제 15 조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4．「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5．「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람회 관련시설을 설치하 는 자
6．「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의 공익단체（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 한 경우만 해당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 1 호에 따 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 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전액 감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전액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 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따르는 훍•돌의 채취 및 준설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전액 감면）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 업구역에서 점용•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 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하려는 자가 제 8 조제 1 항제 5 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전액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 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전액 감면）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전액 감면）
－「해양환경관리법」 제 2 조제 4 호•제 5 호•제 7 호부터 제 10 호까지•제 15 호•제 18 호에 따른 물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 용－사용하는 경우（전액 감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10 조에 따라 지 정 • 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 2 조제 2 호 및 제 4 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100분의 50 감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해 당하는 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100 분의 50 감면）단，「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경우 100 분의 50 을 감면한다．

## V ．도축장 사용료

도축장 사용료는 식용에 공급할 목적으로 가축을 도살•해체하기 위해서 도축작업장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수입니다．

1．부과근거

지방자치단체의 도축장설치운용조례에 의한다．

2．도축장 종류와 관리

도축장의 종류에는 소•돼지를 도살하는 도축장의 간이도축장，닭을 도살하는 도계장과 간이도계장，토끼를 도살하는 도토장 등이 있다．

도축장은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3．사용료 산정기준

도축장 사용료는 자치단체 도축장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한 산정기준 표에 따라 산정하며，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전신고 없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미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사용료 납부는 도축 신청서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것으로 납부하 게 된다．

## VI. 입장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문화창달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종시설물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사 용자(이용자 또는 관람자)로 부터 징수하는 공원, 문화재, 공연장 등의 입장료•관람료-이용료 수입을 말한다.

1. 부과근거

- 관광진흥법 제67조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40조
- 문화재보호법 제49조
- 자연공원법 제 37 조
- 자치단체의 각종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장료 종류와 관리

| 구 분 | 종 류 | 관리청 | 과징업무 |
| :---: | :---: | :---: | :---: |
| 관광사업 | 관광지 <br> 관광단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자치단체장 <br> 사업시행자 |
|  | 소공원 <br> 어린이공원 <br> 근린공원 <br> 역사공원 <br> 도시공원 <br> 문화공원 <br> 수변공원 <br> 묘지공원 <br> 체육공원 <br> 도시자연공원 | 행정구역관할 시장, <br> 군수, 구청장 | 공원관리청 <br> 공원관리자 <br> 공원수탁관리자 |
|  |  |  |  |


| 구 분 | 종 류 | 관리청 | 과징업무 |
| :---: | :---: | :---: | :---: |
| 문화재 | 유형문화재 <br> 명문화재 <br> 기념물 <br> 민속자료 | 국가지정문화재 : <br> 문화재청장 <br> 시도지정문화재 : <br> 시도지사 <br> 문화재자료 : 시도지사 | 소유자, 보유자, <br> 관리단체 |
| 자연공원 | 국립공원 <br> 도립공원 <br> 군립공원 | 환경부장관 <br> 특별시장, 광역시장, <br> 도시자 <br> 시장, 군수 | 국립공원관리공단 <br> 자치단체 |

## 3. 입장료 산정기준

입장료 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원입장료•시설사용료 및 사용 료징수조례 등에 의한 산정기준표에 의한다.
입장료는 물가상승률과 유사공원의 입장료와 비교하여 관리청의 조 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산정한다. 공원 등의 점•사용료는 점용•사용 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대, 수확예상액, 시가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 점 - 사용료는 연 액으로 산정하고,
- 점•사용기간이 1 년 미만일 때는 매 1 월을 12 분의 1 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하며,
- 점•사용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 15 일 초과는 1 월로, 15 일 이하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 4. 입장료의 감면

입장료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대상자는 대체도 다음과 같다.

- 국빈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 6세 이하인 어린이 및 경노우대 대상자
-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VII. 기타 사용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 징수하는 사용료 수입중 도로•하천 공유수 면 점•사용료, 시장사용료, 도축장사용료, 입장료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료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 민회관, 화장장 등의 공공시정 및 재산의 사용료 수입 등이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류와 기 준이 다양하다.

1. 부과 - 징수 근거

사용료 부과는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 및 제140조), 지방재정 법(제31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시 • 도, 시 • 군 • 구)의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지방자치법 제 136 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절의 이용 또 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동법 제 140 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 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차단체에 부과• 징수권을 부여하고 있다.

징수방법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서 "사용료•수 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 므로 부과•징수를 위한 일반 행정절차에 관해서는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절차에 따른다.
2. 준용규정의 준용 범위

사용료•수수료•분담금을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때 지 방세법의 지방세 징수규정 중 어느 범위까지 준용할 수 있는가에 대 해서 이론이 분분한 실정이다. 지방세법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 어서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확정, 고지서 송달, 징수유예(고지 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납세의무승계, 제 2 차납세의 무, 관허사업제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가산금부과, 과오납금환부 및 환부이자 가산, 독촉, 압류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이 중에서 납세의무가 부여되는 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연대납세의무, 제 2 차납세의무(청산인, 출자자, 법 인, 사업양수인, 양도담보권자, 납세보증인 등)와 같은 규정이 사용료 등의 납부의무자에게도 준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82누 374 판결)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있어서 '징수'는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사용 료 등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에 적용되는 제 2 차납세의무자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사용료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정수한 다고 하더라도 납부의무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용료 이외의 추가되는 금전 급부의무를 부여하거나 면제하는 것과 같은 실체법에 해당하는 내용은 준용할 수 없고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에 관해 서만 준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14).
3. 상속인 등의 납부의무

상속인의 경우 민법(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 된 날(사망일, 실종선고일, 인정사망일)부터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14) 수도요금에 대한 지방세법상 제2차납세의무 준용불가(대법원 82누472, 1983.4.12)

모두 승계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승인 또는 포기 가능)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한 피상속 인에게 부과되어야 할 사용료는 물론 부과처분이 있었으나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체납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법인의 납부의무

법인은 상법(제 235 조, 제 269 조, 제 530 조, 제 60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 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신설하는 회사가 소멸되 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합병 으로 소멸되는 회사에 부과되어야 할 사용료 또는 소멸되는 회사가 체 납한 사용료 등은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납부하여야 한다.
5. 연대납부의무

사용료의 연대납부의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12조 내지 제414조)의 규정에 따라 연대납부의무자가 연대하여 납 부하여야 하겠다 15 ).
6. 사용료의 고지

사용료의 고지서에는 납부할 사용료 등의 종류, 부과근거가 되는 법 률 또는 조례, 납부의무자의 주소 및 성명, 사용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구제방법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6 ). 만일 고지하여 야 할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 소사유가 될 수 있다17).
15) 대법원 1984.10.23 선고 84 누 404 판결
16) 대법원 1992.11.13선고 92 누 1285 판결
17) 대법원 1983.5.24선고 81누135판결
7. 이의신청 등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처분청에서는 접수일부터 60 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결정통 지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용료의 부과징수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 2 항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세와 사용료는 그 구제절차에 많은 차이가 있다.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 는 경우에는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tm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잇어 행정기관을 통한 2 회의 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용 료•수수료•분담금의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에 이 의신청(감사원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 가 능)할 수 있고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다.

## 8. 사용료율

지방자치단체별, 공공시설별로 사용요금이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으 나 대부분 (1) 기본시설사용료, (2) 부대시설사용료, (3) 기타 사용료 등 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결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용료의 내용은 법령과 조례, 사용료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 참조 1

국유재산법 제 32 조（사용료）（1）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2）제 1 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 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관리청이 제 30 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33조（사용료의 조정）（1）관리청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 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 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료를 조정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3）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나 점용료의 납부 대상인 행정재산이 이 법 에 따른 사용료 납부 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을 준용한다．
제 34 조（사용료의 면제）（1）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2．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 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2）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제 3 조제 1 호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 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29 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1）법 제32조제 1 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 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경작용인 경우： 1 천분의 10 이상
2．주거용인 경우： 1 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 천분의 10 이상）
3．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 천분의 25 이상
4．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 천분의 40 이상
（2）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 법으로 산출한다．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 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제 2 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 가일부터 3 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1．토지：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 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 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이 조 및 제57조에서 같다）를 적용한다．
2．토지 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 다）：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한다．다만，건물을 10 제곱미 터 이하의 소규모 면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 른 시가표준액에 따른다．
（3）경작용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산출 한 사용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 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광주광역 시는 전라남도，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 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 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 액으로 할 수 있다．
（4）제 1 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개하여야 하며，그 공개한 사용료 미만으 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5）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 정하고， 2 차 연도 이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times$ (제 2 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div($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
(6) 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관 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7) 제6항의 경우에 해당 보존용재산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공제된 관리 비 상당액을 추징한다.
(8) 제6항의 관리비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30 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1) 법 제 32 조제 1 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 납하여야 한다.
(2) 제 1 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 일 이내 로 하되,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 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법 제32조제 2 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4 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 년 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 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4) 법 제 32 조제 2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1 천 만원 이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사용 료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말한다.
제 31 조 (사용료의 조정) 법 제33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사용허가기간 동안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정되는 해당 연 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제 29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사용료가 5 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5 퍼센트 증가된 금액
2. 제 29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외의 사용료가 9 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 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년도 사용 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

제 32 조 (사용료의 면제) (1) 법 제 34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때에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 되, 그 기간은 20 년을 넘을 수 없다.
(2)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제 1 항의 사용료 총액 에 그 건물이나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합산한다.
(3) 제 1 항의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 및 그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 산의 가액과 제 2 항에 따라 사용료 총액에 합산할 부지사용료 계산의 기 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제 29 조제 2 항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최초의 사 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 33 조 (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 34 조제 1 항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2.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 제 3 절 독일에 잇어서 수수료 제도

## I. 개 요

독일 역시 재정수입에서 조세(Steuer)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수수료(Gebühren)와 같은 전통적인 비조세적 부담금(nicht-steuerliche Abgaben) ${ }^{18)}$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19) 이러한 조 세와 비조세적 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수료, 분담금(Beitrge), 특별부담금 (Sonderabgaben) 등은 공통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과 제를 위한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세를 중심으로 공법상
18) 비조세적 부담금이란 조세개념의 표지를 충족시키지 않는 수수료, 분담금, 특별 부담금 그리고 기타 모든 부담금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Sacksofsky, S. 51ff.; Krapf, S. 60 참조.
19) 2010년 독일연방정부의 수입 3277억 유로 중 수수료를 포함한 행정수입은 70 억 유로에 달한다. BT-Drucks. 16/13601, S. 52(Schaubild 12), 60(Tabelle 11) 참조.

부담금법 또는 공과금법(ffentlich-rechtliches Abgabenrecht))의 체계를 형성 하고 있다.

수수료를 비롯한 공과금은 각각의 특유한 개념적 요소를 통하여 상 호간에 구별되며 또한 그 구체적인 부담의 수준을 결정하는 원리도 각각 다르다. 이하에서는 수수료의 개념과 공과금법의 체계 내에서 수수료가 가지는 독자적인 특성을 살펴본 후, 행정법과 헌법상 수수 료개념과 수수료의 산정원칙을 살펴본다.
ㅍ. 공과금의 한 유형으로서의 수수료

1. 공과금의 정의
(1) 공과금은 공법상의 자연부담(Naturalleistung)과 함께 상위개념인 공법상 부담(Öffentlich-rechtliche Lasten)에 속하는 일련의 강제적 금전 납부의무이다. ${ }^{20)}$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공과금이란 고권적 주체인 국 가가 재정수요 충당을 위하여 법규범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할 권한 이 있는 금전채권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공과금 으로 조세, 수수료(행정수수료와 사용료), 분담금이 인정되어 왔고, 근 래 전통적인 공과금법의 체계에 편입시키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새 로운 부담금(이른바 특별부담금)이 등장하였지만 제한된 요건 하에서 허용되는 공과금으로 본다. ${ }^{21)}$
(2) 공용제한이나 공용수용, 병역의무나 경찰법상의 작위하명과 같 은 공법상의 자연부담도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공법상 부담의 일종을 이루지만, 그것은 현물 및 작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금전급 부를 내용으로 하는 공과금과 구별된다. 한편, 국가 등의 재정수입이 되는 금전급부가 모두 공과금으로 분류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행정
20) Kirchhof, Abgabenrecht, in: Achterberg/Pütner(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S. 233.
21) Arndt/Rudolf, Öffentliches Recht, 13. Aufl., S. 83; Sackofsky, S. 51ff. 참조.

주체가 사법에 의거한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이라든지 혹은 각종 기부금 등에 의하여 얻은 수입 등은 공권력 주체의 일방적인 부과 또 는 징수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과금이 아니다. 또한 일정 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벌금 • 과태료 • 이행강제금 등 은 국가 등의 재정수입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과금으로 분류되 지 않는다.22)
2. 공과금의 종류와 근거법령

## (1) 조세(Steuer)

일반적으로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과제수행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민에게 반대급부 없이 부 과. 징수하는 공법상의 부담금을 말한다. 독일기본법 제 104 a 조 이하 재정헌법(Finanzverfassung)에서 조세에 대한 입법권 및 징수권의 연방 국가적 배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조세의 일반적인 내용 및 부과징 수, 처벌 및 불복절차에 대해서는 조세기본법(Abgabenordung=AO)이 규율하고 있다. 특히 조세개념이 동법에 명문으로 입법화되어 있다.23) 즉 1919년 제정된 제국조세기본법(Reichsabgabenordung=RAO) ${ }^{24)}$ 에서 유 래하는 현행 조세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조세는 「특별한 급부 에 대한 반대급부로서가 아니라, 공법상의 단체가 수입을 얻을 목적 으로 급부의무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 게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하고 있다.
22) 김성수, 개별행정법, 법문사, 2001, 34 면 이하 참조
23) 독일조세제도의 전반에 관해서는 김유찬-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한 국조세연구원 2009. 10 참조.
24) 동법[Reichsabgabenordnung vom 22.5.1931(RGBI. I S. 161)]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모든 국민에 게 부과하는 금전납부의무이다. 조세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한 다. 관세는 조세에 속하며 행정작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사용료 및 수수료 그리고 분담금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었다.

상술한 조세개념은 몇 가지 부분적인 개념요소, 즉 국가 또는 자치 단체에 의한 부과, 재정수입의 목적, 특정한 국가작용에 대한 반대급부 가 아니라는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반대급부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의 특정한 재화나 행정적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되는 수수료, 분담금 등 수익자부담금(Vorzugslasten) 과 구별된다. 조세는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세 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및 예산의 민주적 통제 등 헌법상 여러 한계 원리의 규율을 받는다. 특히 납세자간의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이른 바 담세능력의 원칙(Leistungsfähigkeitsprinzip)에 따라 현실적인 조세부 담수준은 원칙적으로 납부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결정한다.

## (2) 수수료(Gebühren)

전술한 조세와 달리 수수료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귀속가능한 국가 의 특정한 재화 및 용역의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징수되는 공과금을 말한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수수료는 전통적으로 관청에서의 서류발급에 대한 수수료와 같이 공무원의 행정적 서비스라는 용역의 제공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되는 행정수수료(Verwaltungsgebühr) 와 수도나 전기사용료에서 볼 수 있듯이 행정이 제공하는 특정한 재 화의 공급이나 공공도서관, 국공립박물관, 공공극장 등 특정한 공공시 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부과되는 사용료(Benutzungsgebühr)로 분류된 다.25) 이외에 학자에 따라서는 설권료(Verleihungsgebühr)26)도 넓은 의 미의 수수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좁은 의미의 수수료와는 달리 설권료는 개인에게 특정한 주관적 공권을 설정해주고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기 위하여 부과된다.27)
25) Arndt/Rudolf, Öffentliches Recht, 13. Aufl., S. 83f. 참조.
26) 특허료(Konsessionsgebüren)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Wieland, Joachim, Die Konzessionsabgaben. Zur Belastung wirtschaftsverwaltungsrechtlicher Erlaubnisse mit Abgaben, Duncker \& Humblot(Berlin) 1991 참조.
27) Pietzcker, DVB1. 1987, S. 777.

설권료라는 개념이나 용어는 지방공과금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율 되어 있지 않다. ${ }^{28)}$ 그러나 수수료29)에 관해서는 연방, 주, 기초자치단 체의 법령, 즉 연방과 주의 행정비용법(Verwaltungskostengesetz=VKG), 각 주의 지방공과금법(Kommunalabgabengesetz=KAG)과 같은 행정일반 법뿐만 아니라 원자력법(Atomgesetz) 제21조, 21a조, 전염병예방법(Bundesseuchengesetz) 제 10 d 조, 식품법(Lebensmittelgesetz) 제46a조, 동물전염병 예방법(Tierseuchengesetz) 제5조와 같은 행정특별법, 그리고 지방자체 단체의 지방공과금 산정과 부과에 관한 조례 등30)에서 명시적으로 규 정되어 있다. 특히 수수료의 법적 개념과 분류에 있어서 전형적인 모 범이 되는 예는 각 주의 지방공과금법이다. 1893년 제정된 프로이센 지방공과금법(Preuisches Kommunalabgabengesetz)의 영향아래 대부분의 지방공과금법은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행정수수료와 사용료의 전형 적인 요소를 규정함으로써 수수료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수 수료의 구체적인 부담수준은 등가성의 원칙(Äquivalenzprinzip)과 시설 의 유지에 필요한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을 고려하는 비용충족의 원 칙(Kostendeckungsprinzip) 등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 (3) 분담금(Beiträge)

분담금이라 하면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급부와 시설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분담금은 반대급부부담금이라는 측면에서 수수료와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수수료는 납부의무자가
28) 그러나 권리부여의 대가로 볼 수 있은 요소들이 개별법령에 나타난다. 이에 대해 서는Sacksofsky, S. 95ff. 참조.
29) 여기서는 행정법상의 수수료만을 의미한다. 사법을 포함한 독일 현행법상 수수료의 종류에 대해서는 Wilke, S. 3; Sacksofsky, S. 90 참조.
30)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권한을 근거법률로는 각 주의 지 방자치법(Gemeindeordnung, Kreisordnung) 등을 들 수 있고, 구체적인 부과징수절차 에 대해서는 각 주의 지방공과금법에 규정을 두고 있고, 많은 경우 조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세외 수입의 징수절차에 관한 통합법 제정 연구, 2010, 115면 이하, 120 면 이하 참조.

국가 등으로부터 실제로 제공받은 현실적인 이익(aktualler Vorteil)에 대하여 부과되는 데 반하여, 분담금은 단지 국가 등의 공공시설 설 치•유지행위로 인해 이익을 향유할 가능성, 즉 추상적잠재적 이익 (abstrakter, potentieller Vorteil)에 대하여 부과되는 점에서 구별된다.31) 결국 분담금은 국가의 특정한 급부행위를 수령하거나 시설을 이용하 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국가행정작용의 결과 일정한 인적 범 위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추상적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만으로도 분담금의 부과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이다. 또한 추상적이기 는 하지만 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특정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여 야 한다는 점에서 납부의무자에게 어떠한 반대급부도 주어지지 않는 조세와도 구별된다.

분담금에 대한 법적 개념규정 역시 프로이센 지방공과금법에서 유 래한다. 동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와 유지를 위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이러한 시설에 의하여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향수하는 토지소유자와 영업자에 대하여 시설비용을 위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내 용의 규정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방공과금법 제8조 제2항, 바이 에른주 지방공과금법(Bayerisches Kommunalabgabengesetz) 제4조 제1항, 연방입법으로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충당을 위해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방건설법(Baugesetzbuch) 제 127 조 이하의 기 반시설설치분담금(Erschließungsbeitrag)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 (4) 특별부담금(Sonderabgaben)

상술한 비조세적 부담금과는 달리 특별부담금은 1980년대 연방헌법재 판소의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공과금이다. 특별부담금의 개념에 대하여 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31) Vogel/Waldhoff, Grundlagen des Finanzverfassungsrechts, Rn. 416; Arndt/Rudolf, Öffentliches Recht, 13. Aufl., S. 84f. 참조.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조세가 국가의 일반적 과제(allgemeine Staatsaufgabe)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부과되는 반면 특별부담 금은 특정한 경제•사회정책적 목적이나 국가의 특수한 과제(besondere Staatsaufgabe)의 수행을 위하여 부과•징수되고 그 수입도 국가의 일 반예산에 편입되지 않고 특수한 기금의 형태로 관리지출되는 부담금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별부담금은 반대급부로 징수되는 것이 아니 라는 점에서 조세와 공통점이 있으나, 그 부과의 주체가 국가나 자치 단체 등이 아닌 공공단체이며 그 수입도 국가나 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않고 대부분 특별회계나 기금의 형태로 관리•지출되므로 재정목적이 결여된다는 점에서 조세와 구별된다. ${ }^{32)}$
III. 행정법상 수수료개념과 수수료의 목적

1. 행정법상의 수수료 개념
(1) 수수료개념은 19 세기 중반 재정학분야에서 33 ) 수수료채권자의 반대 급부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 이래34), 수수료와 관련한 첫 번째 입법으로 평가 받는 프로이센 지방공과금법에서 이러한 관점의 행정 수수료와 사용료의 개념이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이후 대부분의 현행 지방공과금법에서 이러한 전통에 입각한 수수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전형적인 예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방공과금법(Kommunalabgabengesetz f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수 수료란 행정의 특별한 급부 직무행위 또는 기타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 (행정수수료)로서 또는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사용료)로서 징수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2) BVerfGE 55, 274, 297ff.; Arndt/Rudolf, Öffentliches Recht, 13. Aufl., S. 85f.; Kim, Sung-Soo, S. 48ff.; Sacksofsky, S. 55 ff. 참조.
33) 특히 Rau, S. 105.
34) Meyer, S. 43; Sacksofsky, S. 88ff. 참조

행정수수료의 전통적인 개념을 찾아볼 수 있는 프로이센지방공과금 법 제6조에 따르면 "게마인데와 관청은 수수료면제가 법적으로 규정되 어 있지 않는 한, 본질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각 기관의 개별행위(활동)에 대해 행정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현행 수수료관련법령 역시 개별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 만35), 본질적인 점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상술한 노르트 라인-베스트팔렌주 지방공과금법 제4조 제2항에서 보여지듯이 행정수 수료의 특징은 첫째, 행정활동(Verwaltungstätigkeit)을 전제로 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는 현행 관련 법령에서 통상 직무행위(Amtshandlung)36), 부 분적으로 기타 행정활동(sonstige Verwaltungstätigkeit) ${ }^{37)}$ 으로 표현된다. 둘째, 수수료채무자와 행정활동간의 인과적 관계가 강조된다. 즉 직무 행위를 촉발하거나 직무행위의 이행으로 이득을 본 자가 수수료지불 의무를 부담한다.38) 이는 수수료의 반대급부연관성과 급부의 개인귀 속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행정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사용료 역시 프로이센지방공과금법에서 처 음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게마인데는 자신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Veranstaltungen(Anlagen, Anstalten und Einrichtungen)]의 사용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4]36) 잘란트주 수수료법(Saarlndische Gebührengesetz) 제1조 제1항, 슐레스비히-홀슈타 인주 행정비용법(Verwaltungskostengesetz des Landes Schleswig-Holstein) 제1조 제1항, 브란덴부르크주 수료법(Gebührengesetz für das Land Brandenburg) 제1조 제1항, 바이 에른주 비용법(Bayerisches Kostengesetz) 제1조 제1항, 작센-안할트주 수수수료 일반 규칙(Allgemeine Gebürenordnung des Landes Sachsen-Anhalt) 제1조 제1항. 직무행위의 개념은 수수료관련법령에서 보다 상세히 규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수수료법 제1조 제1항 제1호와 라인란트-팔츠주 수수료법(Rheinlandpfäzisches Gebührengesetz)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이는 특별한 공법상의 직무행위 (besondere öffentlich-rechtliche Verwaltungshandlung)이라 한다.
37) 예를 들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방공과금법 제4조 제2항, 니더작센주 지방 공과금법(Niedersächsisches KAG) 제4조 제1항.
38) 예를 들면 연방행정비용법 제 13 조 제 1 항 제 1 호.

라고 한다. 이러한 개념은 각 주의 현행 지방공과금법과 수수료법에 다소 변형된 형태로 폭넓게 받아들여져 있다. ${ }^{39 \text { ) 즉 대부분의 지방공과 }}$ 금법과 수수료법은 시설(Einrichtungen, Anlagen) 또는 영조물(Anstalten)의 사용(Benutzung, Inanspruchnahme)을 사용료부과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40), 부가적으로 공소유권(Öffentliches Eigentum)의 부분으로서 공적 목적물(Öffentliche Gegenstände)의 사용을 규정하기도 한다. ${ }^{41)}$ 이러한 사 용료개념 역시 상술한 행정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반대급부연관성과 급부 의 개인귀속가능성이란 특징적인 표지가 인정됨에는 별 이론이 없다.
(2)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행정수수료, 사용료는 개인에게 귀속가 능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점에서 견해가 일치하고 있고, 행정 수수료의 경우 행정활동, 사용료의 경우 시설사용을 핵심적인 개념표 지로 본다는 점에서 양자의 구분은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통상 공공시설의 사용은 행정활동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구별 문제가 생긴다.42) 이에 대해 통설은 급부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인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이용의 경우 에는 행정수수료, 본질적으로 물적 요소와 결부된 시설의 사용에 대 해서는 사용료가 발생한다고 한다. ${ }^{43)}$
(3)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상술한 두 유형의 수수료 이외에 다른 유형의 수수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특히 설권료의 허용여 부가 문제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설권료란 주관적 공권을 부여한 대 가로 부과되는 공과금을 의미하며, 이러한 개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설권료에 대해 과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
39) Kirchhof, F., Die Höhe der Gebühr, S. 26.
40) 예를 들면 바덴뷔르텐주 지방공과금법(Baden-Württembergisches KAG) 제9조 제 1 항,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수수료법 제1조 제1항 제2호, 잘란트주 수수료법 제2항,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행정비용법 제4조 제 1 항.
41) 바이에른주 비용법 제 8 조 제 1 항
42) 이에 대한 견해대립에 대해서는 Sacksofsky, S. 93ff. 참조.
43) Kirchhof, Die Höhe der Gebhr, S. $24 f$.

니나44), 1980년대 이후에서야 비로소 법적으로 허용되는 공과금인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45) 특히 환경부담금(Umweltabgaben)과 관련하여 자연자원이용에 대한 대가로 부과되는 이러한 유형의 공과 금은 분담금, 특별부담금으로도 볼 수 없고46),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행정수수료와 사용료의 개념에도 포섭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 해이다.47) 한 편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공과금을 수수료의 한 유형으 로 인정하는 것은 재정헌법(Finanzverfassung)상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 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하고48), 이러한 유형의 공과금의 부과대 상은 자연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이 아니라 자원 자체의 사실상 사용이므로 역시 설권료로서도 부과될 수 없다고도 한다.49) 자원 의 사실상 사용이라는 점에서 소위 자원이용료(Ressourcennutzungsgebühren) 를 인정하려는 입장뿐만 아니라50) 통상의 사용료로 논리구성하기도 한 다.51) 연방헌법재판소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부담금은 넓은 의 미의 사용료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자부담금의 하나로 보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52) 이러한 실정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비조세적 공과금의 허용여부는 헌법적 차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 }^{53)}$

[^5]2. 수수료의 목적

공과금의 한 유형으로서 수수료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살펴보기 이 전에 우선 수수료의 목적 내지 기능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상 술한 수수료유형의 공통적인 분모는 반대급부공과금이라는 점과 관련 하여, 이러한 반대급부의 본질적인 특징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즉 수수료개념의 특징적인 표지와 수수료부과의 근거를 이익 조정(Vorteilsausgleich) ${ }^{54}$ 또는 이익상쇄(Vorteilsabschöpfung) ${ }^{55)}$ 로 볼 것 인가, 비용보전(Kostenausgleich)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해 왔다. 이는 후술할 헌법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수수료의 개념과 그 실 질적 정당성문제, 그리고 수수료 산정원칙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Von Stein에서 유래하는 일설에 따르면 반대급부개념은 본질적으로 그 납부의무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이익(Nutzen)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고 한다.56) 납부의무자에게 이익이 있는 급부, 즉 경제적으로 또는 최 소한 관념적으로 이익과 결부된 급부가 바로 잠재적으로 수수료부과 가 가능한 급부이며, 이러한 이익의 조정이 수수료의 목적이라 한 다.57) 이에 따르면 수수료개념의 핵심적인 표지가 공적 급부의 이익 결부성이라 한다.58) 이러한 입장은 수수료산정원칙에서 상쇄되어야 하는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수수료를 제한하려고 하는 등가의 원칙 (Äquivalenzprinzip)과 직결된다. 이와 달리 Wagner의 견해에 따르면 수 수료는 행정기관에 발생한 비용(Kosten)에 대한 보전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는 기준과 목적은 직무

[^6]54) 이는 통상 독일손해배상법에서 손익상계를 의미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55) BVerfGE 93, 319, 344 참조.
56) Stein, Finanzwissenschaft, 2. Theil, 1886, S. 250.
57) Wilke, Gebhrenrecht, S. 68.
58) Raeck, Kostendeckungsprinzip, 1971, S. 5; Stein, DVB1. 1960, S. 272.

행위를 통해 귀속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발생한 비용 이라는 것이다.59) 이러한 입장에 따르더라도 수수료의 반대급부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수수료는 이러한 표지 이외에 급부로 인해 특 별히 발생한 비용을 보전한다는 목적으로 부과된다는 것이다.60) 이는 수수료가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용보전의 원칙 (Kostendeckungsprizip)과 관련된다. 이러한 수수료의 목적 내지 기능과 관련하여 수수료개념을 파악할 때 상술한 두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이 익상쇄 또는 비용보전의 목적으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여 수 수료의 양면성(Doppelgesichtigkeit, Doppelgliedrigkeit)이 지적되기도 한다.61)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이익은 없지만 비용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면 허가신청이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 }^{62)}$, 그리고 이와 반대로 이익은 있지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즉 설권료의 경우 수수료의 한 유형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 결된다.
IV. 헌법상 수수료개념과 정당성문제, 정당화 근거

## 1. 개 요

독일기본법상 수수료는 단지 두 곳, 즉 즉 자동차의 공공도로사용에 대한 수수료(제74조 제1항 제22호)와 우편과 통신시설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제80조 제2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기본법상의 수수료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인정하고 있다고 추론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단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동규정의 반대해석으로 이
59) Wagner, Finanzwissenschaft, 2. Theil, 1880, S. 25
60) Wilke, S. 89; Stephan, Verwaltungsgebhr, JURA 1970, S. 870
61) Vogel, Vorteil und Verantwortlichkeit, in: FS Geiger, S. 536
62) 실정법상의 예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방공과금법 제5조 제2항.

러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승인하고 있다는 간접증거로도 볼 수 있다.63) 또한 조세개념이 제국조세기본법 제1조에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헌법상의 조세개념으로 받아들여진 것과는 달리64), 기본법 제정시 수용할 만한 수수료의 법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65) 수수 료의 법적 정의는 각주의 지방공과금법에 규정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률상의 개념규정은 각각의 수수료관련법령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이며66), 법률상 요구되는 개념표지가 헌법적 차원에서 받아들 여졌다고 볼 수는 없다.67) 이러한 입장에서 기본법상 동규정으로부터 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한다.68) 나아가 헌 법적 관점에서는 수수료개념이 포기될 수도 있다고 한다.69) 독일헌법 재판소 역시 기본법상 독자적인 수수료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 }^{70)}$ 그러나 수수료개념에 대한 직접적인 기본법상의 규정이 없다고 해서, 수수료개념의 특징적인 표지를 기본법상 도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조세개념과의 구분을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으며, 독일
63) 많은 학자들은 수수료, 분담금, 특별부담금 이외에 다른 유형의 비조세적 공과금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Birk, Allgemeines Steuerrecht, §4 Rn.21; Jarass DÖV 1989, S. 1014
64) 당시에도 개별법상의 조세의 개념이 헌법상의 조세개념과 동일하다고 보았고(Vogel/ Walter, in: BK, Art. 105, Rn. 26ff), 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통설과 판례 역시 기본법 이 제국조세법통칙상의 조세개념을 헌법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Knies, Steuerzweck und Steuerbegriff, S. 42; Mattern, BB 1970, S. 1406; BverfGE 3, 407, 437). 그러나 1980년에 이르러 양자를 구분하여 헌법상의 조세개념은 개별법상의 조세개 념이 핵심적 표지를 포괄하고, 나아가 재정헌법을 고려하여 유도적조정적 도구(Lenkungsinstrument)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한다(BVerfGE 55, 274, 299).
65) Sacksofsky, S. 108f.
66) Wilke, Gebührenrecht, S. 16ff.
67) Selmer/Brodersen/Nicolaysem, Straßenbenutzungsabgaben, 1989, S. 71
68) Kloepfer, AöR 97 (1972), S. 239; Kirchhof, F., Die Höhe der Gebühr, S. 14; Beckmann, Verfassungsrechtsfragen im Grenzbereich zwischen Steuern und besonderen Abgaben, S. 37.
69) Beckmann, Verfassungsrechtsfragen im Grenzbereich zwischen Steuern und besonderen Abgaben, S. 36ff.
70) BverfGE 50, 217, 225 f .

기본법 105 조 이하에서 보장하고 있는 조세국가원칙(Steuerstaatsprinzip) 에서 그 실질적 허용근거도 도출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독일기본법 상 재정헌법(Finanzverfassung)과 관련하여, 즉 조세개념과의 구분기준과 관 련하여 수수료의 특징적인 개념표지로 단지 반대급부성만으로 충분한지 그 외의 실질적 요소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 형식적 수수료개념과 실질적 수수료개념
(1) 형식적 수수료개념

형식적 수수료개념이란 수수료의 전통적 이해에 기초하여 조세와 구별되는 수수료의 특징적 요소로 반대급부라는 표지에 주목하여 수 수료개념의 핵심적인 표지로 단지 반대급부라는 요소만 인정하는 견 해를 말한다. ${ }^{71)}$ 즉 수수료개념의 특징적인 표지를 조세개념과의 구분 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조세는 공적인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일회적 또는 지속적 급전급부이므로, 수수료 의 반대급부라는 핵심적 표지가 이를 조세에 속하지 않는 비조세적 공과금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기본법 제74조 제1항 제22호 에 따르면 수수료는 공공도로의 사용에 대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 데, 이는 수수료가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72)}$ 그 러나 반대급부라는 요소만으로는 수수료부과가 가능한 급부의 범위가 너무 넓게 되므로,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일반적인 급부-국가방 위나 경찰의 특정한 안전조치-는 여기서 제외한다. ${ }^{73}$ )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는 수수료의 전통적인 기능은 개인에게 귀속가능한 행정기관의 급부와 결부된 경제적 또는 관념적 이익의 상쇄에 있다고 본다.74)
71) Kloepfer, AR 97 (1972), S. 251; Wilke, S. 89, 105, 282ff.; Bodenheim, Der Zweck der Steuer, S. 306ff.; Kirchhof, F., S. 23; Wieland, Die Konzessionsabgaben, S. 269; Heimlich, Die Verleihungsgebühr als Umweltsabgabe, S. 113ff.
72) Schaefer, Steuerbegriff, 1997, S. 167f.
73) Wilke, S. 86ff.
74) Klöpfer, S. 69

상술한 바와 같이 수수료를 개인에게 귀속가능한 국가기관 등의 급 부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해할 때, 상당히 많은 급부가 개인에게 귀속 가능하고, 입법자가 어떠한 급부에 수수료를 부과할지에 대해 광범위 한 재량권을 인정한다. 즉 입법자가 국가기관 등의 급부에 대한 반대 급부로 공과금을 규정할 때 이를 수수료로 본다. ${ }^{75)}$

이러한 견해에 대해 후술할 실질적 수수료개념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즉 재정헌법의 중심을 차지하 는 조세국가의 원칙상 국가의 일반적인 재정수요는 원칙적으로 조세를 통해 충당해야 하는데, 단지 반대급부라는 기준만으로 수수료를 파악 하게 되면 일반재정수요확충이라는 목적으로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수수료와 조세의 충돌문제, 재정헌법상의 요청이 훼손된다 는 것이다. ${ }^{76)}$ 이러한 비판에 대해 형식적 수수료개념의 지지자들은 하나의 공과금의 개념과 그 금액의 정당성을 분리해서 고찰하는 것도 가능하며77), 수수료의 적법성 심사영역에서 충분히 재정헌법의 보호 도 고려된다고 한다. ${ }^{78)}$ 기본권규정 - 특히 기본법 제 2 조 제 1 항과 제 14 조 제 1 항에 의해 보장되는 비례성원칙과 제 3 조 제 1 항의 평등원칙 - 으 로부터 수수료산정의 한계를 도출할 수 있으며79), 이러한 헌법상 허 용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수료는 위법한 따라서 허용되지 않 는 수수료로 본다.80) 따라서 조세와의 충돌문제도 재정헌법의 요청을 훼손되지 않는다고 한다.
75) Kirchhof, Höhe der Gebühr, S. 13ff.; Kloepfer, AöR 97 (1972), S. 232ff.; Murswiek, Entlastung, 1993, S. 23; Wilke, Gebührenrecht, 1973, S. 86ff., 105ff., 133ff., 283ff.; BVerwGE 13, 214, 222f.
76) Kreft, Abgrenzung, S. 118f.; Wendt, Gebühr, 1975, S. 53.
77) Meyer, Gebühren, 1995, S. 64; Murswiek, Entlastung, 1993, S. 64.
78) Meyer, Gebühren, 1995, S. 64; Wieland, Konzessionsabgaben, 1991, S. 266.
79) Sacksofsky, S. 113
80) Kirchhof, DVBl. 1987, S. 555; Meyer, Gebühren, S. 63ff.; Wieland, Konzessionsabgaben, 1991, S. 266.
(2) 실질적 수수료개념

실질적 수수료개념이란 수수료의 핵심적인 개념표지로서 반대급부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실질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즉 입법 자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수료를 그 개념영 역에서 실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81) 우선 실 질적 요소로 수수료금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여기에 속한다. 반대급부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수수료는 특정한 금액을 넘 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 }^{82)}$ 즉 수수료를 단지 행정기관의 급부이행과 결부시켜 판단해서는 안되고, 그 금액에 따라 급부에 대한 대가로 이 해해야 한다고 한다. 발생한 비용을 고려하여 이러한 금액까지만 부 과되는 공과금을 수수료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초과하 여 징수하는 경우 이는 수수료가 아니고 조세로 보고, ${ }^{83)}$ 이를 수수료 조세(Gebührensteuer)라고 한다.84) 비용과 수수료의 정당성문제의 연관 성을 지적한 Wagner85)에서 유래하는 이 개념은 형식적으로는 반대급 부와 관련되지만 사실상 비용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86)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수수료개념 이외에도 이를 반대급부로 인한 이익 (Nutzen)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87) 이에 따르면 수수 료가 반대급부의 가치보다 높으면 이는 조세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비용과 이익 양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 르면 수수료는 이익의 상쇄 또는 비용의 전가를 이유로 정당화되는
81) Wendt, Die Gebühr als Lenkungsmittel, S. 57.
82) Wendt, Gebühr, S. 52ff. Arndt, WiVerw 1990, S. 22; Kreft, Abgrenzung, 1968, S. 46ff., 72ff.; Raecke, Kostendeckungsprizip, 1971, S. 15ff.
83) Arndt, WiVerw 1990, S. 22
84) Kreft, Abgrenzung, 1968, S. 46ff.
85) Wagner, Finanzwissenschaft, 2. Theil, 1880, S. 25f.
86) Kreft, DVBl. 1977, S. 373
87) Ambos, DÖV 1961, S. 180; Stein, DÖV 1960, S. 289

것이므로, 의무자에게 이익이 있거나 또는 그에 의해 비용이 초래된 때 수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88) 특히 이러한 입장은 전통적인 관점에서도 이익상쇄나 비용보전 중 한 쪽 측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 는 통일적인 수수료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양자 모두를 수수료 개념에 포섭해 수수료개념의 양면성(Doppelgesichgkeit, Doppelgliedrigkeit) 을 지적한다.89)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비용을 발생하나 이익이 없는 행정기관의 급부뿐만 아니라(행정기관의 허가거부) 원칙적으로 비용을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익이 있는 설권료도 수수료의 개념에 포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개념을 파악하는 견해는 조세국가의 원칙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즉 국가의 일반적인 재정수요는 원칙적 으로 조세를 통해 충당해야 하며90), 단지 반대급부라는 기준만으로 수수료를 파악하게 되면 일반재정수요확충이라는 목적으로도 수수료 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수수료와 조세의 충돌문제, 재정헌법상의 요 청이 훼손된다는 것이다.91) 또한 수수료를 통해 국가는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수익을 취해서는 안되고, 조세와 같은 일반적인 목적이 아 닌 국가의 특별한 필요에 근거하여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92)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수수료의 핵심적인 표지를 비용보전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93) 또한 비용기준으로 수수료의 최고상한선을 확정할 수 있게 되면 납부의무자의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94)
88) Vogel/Waldhoff, in: Dolzer/Vogel (Hrsg.), BK, Vorb. zu Art. 104a-115 Rn. 418; Sacksofsky, S. 111ff.
89) Wagner, Finanzwissenschaft, Teil II, S. 35f.; Vogel, Vorteil und Verantwortlichkeit, in: FS Geiger, S. 536
90) BverfGE 78, 249, 266f.; Vogel, in: HdBStR, Bd. I, §27 Rn. 51.
91) Kreft, Abgrenzung, S. 118f.; Wendt, Gebühr, 1975, S. 53.
92) Kirchhof, P., in: HdBStR, Bd. IV, §88 Rn. 26ff., 181 f.
93) Kirchhof, P., in: HdBStR, Bd. IV, §88 vor Rn. 181.; ders., Verfassungsrechtliche Grenzen von Umweltabgaben, in: ders.(Hrsg.), Umweltschutz im Abgaben- und Steuerrecht, S. 14.
94) Raecke, Kostendeckungsprinzip, 1971, S. 22

수수료조세를 주장하는 견해에 대해 공과금이 금액의 변화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진다는 점, 즉 그 금액이 낮으면 수수료, 높으면 조세 로 본다는 것은 법적 불명확성과 불안정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한 다. 또한 과도한 수수료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조세로 보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납부의무자 개인의 보호가 약 화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며95), 과도한 수수료는 허용되지 않는 수수 료로 보아야 하고 이를 조세로 볼 것은 아니라 한다.96)

## (3) 판례의 태도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수수료기준, 수수료율 또는 수수료 금액의 합헌성에 대한 직접적인 심사기준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독자 적인 수수료개념은 기본법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97) 그러나 기본 법 제3조 제1항 일반적 평등원칙(allgemeiner Gleichheitssatz)에 근거하여 반대급부표지 이외에 수수료의 핵심적 요소로 비용보전을 고려한 수수 료개념을 인정한 판례도 보인다.98) 즉 비용을 야기하지만 이익이 결부 되어 있지 않는 직무행위에 대한 행정수수료에 대한 판결에서 수수료 란 개인에게 귀속가능한 공적 급부를 근거로 그 납부의무자에게 공법 상 규범 또는 기타 고권적 조치를 통해 부과되고 이러한 급부와 관련 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전될 수 있는 급전급부라 한다.99) 또한 수수료의 목적과 기능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특별한 목적은 개인 에게 귀속가능한 급부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보전을 위해 부과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통상 조세와 구별된다고 한다.100) 하지만
95) Sacksofsky, S. 113
96) Wieland, S. 226; Kirchof, F., DVB1. 1987, S. 555; Meyer, S. 63 ff .
97) BVerfGE 50, 217, 225 f.
98) BVerfGE 50, 217, 226; 91, 207, 223; 97, 332, 345
99) BverfGE 50, 217, 226.
100) BverfGE 50, 217, 226.

이 판결에서는 이러한 수수료개념을 행정수수료에서도 적용하지만, 이 를 헌법상 독자적인 수수료개념으로 이해하지는 않는다.101) 오늘날까지 연방헌법재판소는 그러한 독자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 나 조세의 특징적 요소를 가지는 않는 공과금, 즉 비조세적 공과금의 다양한 유형을 인정하며,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반대급부공과금으로서 의 수수료를 인정하며, 또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권도 인정한다. 다 만 기본법상 재정질서의 유지와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 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102)
(4) 논의의 실익

조세와 구별되는 헌법상 수수료개념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연방국 가 특유의 공과금에 관한 입법권배분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 즉 조세로 인정되는 공과금은 기본법 제105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그 외의 수수료와 같은 비조세적 공과금은 기본법 제70조 이하의 사물적 관할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하게 된다.

수수료를 반대급부라는 표지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이해하고, 그 목적이 이익상쇄에 있다고 보면, 우선 수수료로 인정할 수 있는 공과 금의 범위가 넓게 된다. 특히 비용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수료도 우선 수수료개념에 포섭된다. 그러나 수수료의 개념문제와 그 금액의 정당 성문제를 분리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수료는 후자의 영역에서 수 수료산정원칙에 따라 그 적법성을 심사한다.103)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설권료도 수수료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지만, 비용을 초래하 지만 이익이 결부되지 않는 행정기관의 급부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104) 수수료부과와 관련한 입법자의 재량을 폭
101) BverfGE 93, 319, 345.
102) BverfGE 93, 319, 342ff. 참조
103) Sacksofsky, S. 189ff.; Klopf, S. 70f. 참조
104) 19 세기 초반 이래로 납부의무자 입장에서 이익과 결부되지 않은 국가활동에 대해

넓게 보고 입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헌법적 한계를 준 수해야 하고, 임의의 공과금을 그 실질적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수수 료로 규정할 재량까지 주어지지 않는다. ${ }^{105 \text { ) 수수료개념을 비용을 기준 }}$ 으로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은 조세개념과의 구분을 통한 비조세 적 공과금의 개념문제와 이의 실질적 정당성문제는 구별하지 않고106), 개념영역에서 정당한 수수료를 확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설권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 하게 되나, 수수료개념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수수료 의 범주에 포함시킬 여지가 있게 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여지는 바 와 같이 어떤 공과금을 입법자가 임의로 수수료로 규정할 재량권은 인정되지 않고 그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수수료로 인정할 수 있는 지 판단한다. 이하에서는 수수료부과의 헌법적 한계, 즉 어떠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는지 살펴본다.
3. 수수료의 정당성문제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조세국가원칙상 연방과 주의 국가 적 과제를 위한 재정은 우선 기본법 제105조 이하의 수입원으로부터 충당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비조세적 공과금 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재정헌법상 허용되는 공과금유형에 대한 독자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 }^{107 \text { ) 그러나 전통적으로 인정 }}$ 되어온 수수료와 같은 비조세적 공과금은 기본법상 재정질서의 유지와

[^7]보호를 위하여 재정헌법상의 세 가지 기본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일정 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108). 즉 헌법상 재정질서의 유지, 조세평등의 실현,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비조세적 공과금의 허용한계로 판시하고 있다.109)

이를 상술하면, 첫째, 연방과 주가 사물입법권한(Sachgesetzgebungskompetenzen)을 근거로 조세에 대한 입법권 및 징수권의 연방국가적 배분 을 회피하고 임의로 공과금을 징수한다면, 기본법상의 재정헌법(기본 법 제 104 a 조 내지 제 108 조)은 그 의미와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비조세적 공과금은 수입확충이라는 근거 이외의 혹은 그를 대신하는 특별한 객관적 정당화 근거를 요한다. 이것은 또한 조건 없 이 부과되어 납세의무를 지우는 조세와도 그 성질상 명백히 구별되어 야 한다. 둘째, 비조세적 공과금의 징수는 공과금의무자의 부담상의 형평(Belastungsgleichheit)을 고려하여야 한다. 비조세적 공과금의 납부 의무자는 동시에 조세의 납세의무자인 것이 보통이며, 이미 그러한 납세의무자로서 공동체에 관련된 부담을 위한 재정조달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조세상의 요구 외에 개인에게 추가적인 재정조달의 의무를 지 우는 조세외적 공과금은 객관적인 이유에 따른 특별한 정당화근거를 요한다. 셋째, 입법자가 예산과는 별도의 수입 및 지출계정을 만들 때, 예산의 완전성이라는 헌법원칙(Grundsatz der Vollständigkeit des Haushaltsplans)이 문제된다. 예산의 완전성원칙은 전체 국가재정의 규모를 의회와 정부의 예산편성 및 예산확정에 따르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의회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국가의 가용 재정규모 및 국민에게 부과되는 공과금부담을 완전하게 조망할 수 있게 된다. 이 렇게 할 경우에만 수입과 지출이 미리 예정된 예산편성과 통제 및 결 산절차에 의해 완전하게 지배될 수 있다.
108) 비조세적 공과금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재정헌법으로부터는 도출할 수 없고, 헌법의 일반적인 한계, 즉 평등원칙에서 찾으려는 입장에 대해서는 Sacksofsky, S. 189ff.
109) BVerfGE 93, 319, 342ff.

이러한 재정질서보호의 고려하에 조세와 구별되는 다양한 유형의 비조세적 공과금은 헌법상 허용되는 것이나, 이에 대해 각각의 특별 한 실질적 정당화 근거가 요구된다고 한다. 분담금과 함께 전통적으 로 인정되어온 수익자부담금으로서 수수료의 경우 공적 급부로 인한 이익의 상쇄(Vorteilsabschöpfung)로 정당화된다고 한다.110)

## V . 수수료의 산정원칙

수수료부과에 있어 입법자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즉 수수료 산정 은 일정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형성과 확정에 대한 법원의 사후심사가능성이 보장된다. 일반적으로 수수료 산정원칙으로 인정되는 내용은 평등원칙, 등가원칙, 비용보전의 원칙 이다. 그 외에 사용료산정에서 의미있는 원칙으로 급부비율성의 원칙 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회국가의 원칙도 수수료산정에 있어 고려된다.111)

## 1. 평등원칙(Gleichheitssatz)

평등원칙은 공과금법에서 특히 부담평등의 원칙(Lastengleichheitsprinzip) 또는 조세정의(Steuergerechtigkeit) 등으로 표현된다.112) 평등원칙은 절대 적인 산정의 지침이 아니라 부당한 목적에 지향된 수수료의 산정을 통제하고 일정 범위에서 급부의 비례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113}$ ) 즉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가 재량을 갖는 범위 내에서는 단지 외부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110) BVerfGE 93, 319, 343f.
111) Kirchhof, F., Die Höhe der Gebühr, S. 52 ff., 145 ff. 특히 수수료 산정에 있어서 사회국가원칙에 대해서는 임현, 공과금 부과에 있어 사회적 조정목적의 고려가능 성, 공법연구 제 30 권 제 2 호(2001.12), 391 면 이하 참조.
112) Kirchhof, F., Grundriss des Abgabenrechts, S. 23 f.
113) Kirchhof, F., Die Höhe der Gebühr, S.43.

## 2. 비용보전의 원칙(Kostendeckungsprinzip)

통상 비용보전의 원칙이란 한 행정조직의 전체 수수료수입이 당해 조직에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114) 따라서 동원칙은 수수료산정에 있어서 최대기준을 제시하며, 해당 수수료채 무자 개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와는 달리 동 원칙을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도 불가 능 한 것은 아니다. ${ }^{115)}$ 그러나 이는 수수료채무자의 부담이 높아질 가 능성이 크므로 개인보호를 목표로 하는 행정법원의 판결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일련 의 관련 법령에서 이러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116)

실질적 수수료개념의 입장에서 볼 때 비용초과금지로서의 비용보전 원칙은 수수료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것으로 본다.117) 그러나 연방행정 법원은 오래 전부터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해왔고118), 입법자가 동원칙 에 구속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119) 따라서 연방행정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입법자가 동원칙을 규정한 경우에만120) 적용된다고 본다. 비용초과금지로서의 동원칙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비용은 개별 급부의 이행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일정 행정조직에서 발생한 전체비 용을 말한다. ${ }^{121)}$
114) Arndt/Rudolf, Öffentliches Recht, S. 84f.
115) Stephan, Jura 1970, S. 871 f. 참조.
116) 예를 들면 헤센주 지방공과금법(Hessisches Gesetz ber kommunale Abgaben) 제10조 제2항.
117) VG Frankfurt DVBl. 1970, 186, 187; Bachof, Verfassungsrecht, Verwaltungsrecht, Verfahrensrecht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 Bd. I, S. 90; Ehle, DÖV 1962, S. 45, Stephan, Jura 1970, S. 870f.
118) BVerwGE, 12, 162, 167; 13, 214, 222
119) BVerwGE, 12, 162, 167; 13, 214, 222; 26, 305, 314
120) 예를 들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방공과금법 제 5 조 제 4 항, 제 6 조 제 1 항 제 3 문;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공과금법 제 8 조 제 2 항; 니더작센주 지방공과금법 제 5 조 제 1 항 제 2 문; 제 6 조 잘란트주 지방공과금법 제 1 항 제 3 문.
121) BVerwGE 12, 162, 166.

비용보전의 원칙이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원칙인가에 대해 다수설 과 판례는 부정한다. ${ }^{122)}$ 그러나 소수설은 비용보전의 원칙은 비례성의 원칙(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 근거를 갖는 원칙이라 한다. ${ }^{123)}$ 비례성원칙의 구성부분인 필요성의 원칙(Erforderlichkeitsgebot)에 따라 수수료는 국가는 이행된 급부에 대한 비용을 충 당할 정도로만 이를 부과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징수는 필요하지 않고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한다. ${ }^{124)}$ 필요성의 원칙으로부터 비용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기준을 이끌어 낸다. ${ }^{125)}$

## 3. 등가의 원칙(Äquivalenzprinzip)

등가의 원칙이란 급부의 이익 또는 가치와 수수료간의 균형을 이룰 것을 요구하는 원칙을 말한다. 동원칙은 일찍이 판례에 의해 발전된 원칙126)으로 그 근거를 수수료의 본질에서 찾았으나127), 현재 비례성 의 원칙(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에서 도출한다.128) 또한 각 주의 수 수료법과 지방공과금법에도 동원칙의 실정법상 지침들이 규정되어 있 다. ${ }^{129)}$ 동원칙은 적극적으로는 수수료와 급부 사이의 적절한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소극적으로는 양자간에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방행정법원은 이러한 비례관계가 심각 하게 훼손된 경우에만 동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고 있다.130)
122) Kloepfer, AöR 197(1972), S. 275; BVerwGE 12, 162, 167
123) Arndt/Rudolf, Öffentliches Recht, S. 83; Rogosch, KStZ 1988, S. 3f.; Wendt, Gebühr, S. 120 f .
124) Wendt, Gebühr, S. 120.
125) Zimmermann, DVB1. 1989, S. 904f.
126) 이에 대해서는 Wilke, Gebhrenrecht und Grundgesetz, S. 244ff. 참조.
127) BVerwGE 12, 162, 166; 13, 214, 222; 29; 214, 215.
128) BVerwGE 26, 305, 309; 79, 90, 91; 80, 36, 39.
129) 예를 들어 2 Abs. 1 GebG BW; 8 Abs. 2 KAG BW; Art. 6 Abs. 2 und 22 KostenG BY; 3 Abs. hess. VKG; 9 Abs. 2 hess. KAG; 5 Abs. 3 nds. VKG; mm Abs.3, 7 Abs. 1 saarl. GebG; 3 slh. VKG.
130) BVerwGE 12, 162, 166; 26, 305, 309.
4. 급부비율성의 원칙(Grundsatz der Leistungspropotionalitt)

급부비율성의 원칙이란 급부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131 \text { ) 이는 특히 사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의미 있는 }}$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동원칙은 이미 프로이센 행정고등법원의 판례 에서 승인되었으며132), 현행법에서도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133) 동원칙에 따르면 가능한 사용범위에 상응하여 수수료의 변화가능성을 인정하게 되며 134 ), 이는 비용보전의 원칙, 등가의 원칙과는 달리 수수료 액의 상한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135)
131) Wilke, S. 202 ff .
132) PrOVGE 13, 229, 231; 53, 96, 97; 62, 137, 142, 144; 70, 149, 154.
133) 예를 들면 6 Abs. 3 S. 1 KAG NW; 10 Abs. 3 S. 1 hess. KAG; 6 Abs. 4 S. 2 KAG SH; Art. 8 Abs. 4 Halbs. 1 bay KAG; 5 Abs. 3 S. 1 nds. KAG.
134) Wilke, S. 208f.
135) Sacksofsky, S. 102 f.

## 제 3 장 현행 법령상 수수료 현황분석

이상에서 수수료 관련 법제에 관한 일반론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현행 법령에 있어서 수수료와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i) 응시수수료, ii) 위임수수료, iii) 규제수수료, iv) 민원수수료, v) 대행 수수료, vi) 기타 수수료로 나누어 그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황 분석을 통하여 법률에 근거 없이 수수료가 하위법령에 서 규정되고 있는 경우,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 수수료•사 용료의 내용 및 절차, 형식 등에 관한 사항아 결여되어 있는 경우, 수 수료 부과와 납부절차 등 법정화된 사항이 불명확하여 국민에게 혼란 을 주는 경우, 수수료 미납에 대한 제재절차가 미비된 경우와 그 절 차와 제재가 과다한 경우 등 법령상 나타난 수수료 관련 사항의 현황 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제 1 절 응시수수료

## I. 응시수수료의 개념

수수료가 공적 사무제공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법령상 응시수 수료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자격시험, 공무원임용 및 승진시험, 교육 과정에 따른 시험에 있어서 제공된 사무의 댓가를 응시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에 응시수수료를 임용시험, 자격시험, 교육과정시 험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응시수수료는 현재 수수료 금액에 관한 규정은 물론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관점을 중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 현행 법령상 응시수수료

1.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국가 혹은 지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하여 각 직급별•직종별 시험이 치러지는 바, 이 시험을 위한 응시수수료가 법령에 지정되어 있다. 임용 시험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주로 응시수수료 금액, 납부방법과 그 반환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준이 되는 법령이 대통 령령인 「공무원 임용시험령」이다. 특히, 최근에는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이라는 점에서 수수 료 관련 규정에서 그 사유를 명시적으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 다. 하지만, 응시수수료의 경우 법령에 그 금액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수수료율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관점에서 응시절차에 있어서 응시자에게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반드시 시험기간의 일정기간 이내에 철회한 경우 등에는 그 반 환과 환급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현행 법령상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수수료 |
| :--- | :--- |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 <br> 쟁시험규칙 |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
| 소방공무원임용령 | 소방공무원 및 소방간부후보생 <br> 응시수수료 |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 <br> 용 등에 관한 규정 | 응시수수료 |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수수료 |
| :--- | :---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응시수수료 |
| 경찰공무원 임용령 | 응시수수료 |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응시수수료 |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응시수수료 |
| 법원공무원규칙 | 응시수수료 |

(1) 공무원 임용 시험령

이 영은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으로서 시험의 원칙과 방법 및 기관, 시험과목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이 영에서 응시수수료는 각 직급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며130), 수 수료의 납부방법은 수입인지로 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응시수수료의 환급은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환급기간을 공고 하고 공고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한하여 공고한 절차와 방 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가 소요경비의 부담이라는 점에서 일정기간 이전에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 그 환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두어 규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직급별 수수료를 달리 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136) 5 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 1 만원, $6 \cdot 7$ 급 공무원채용시험: 7 천원, $8 \cdot 9$ 급 및 기 능직 공무원채용시험: 5천원
(2)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공개전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21조는 시험응시자에게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교육자치에 따라 각 광 역자치단체에서 그 시험을 치루고 있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 임하고 있다. 다만, 이 규칙에서는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만 을 규정하고 있다.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오납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에 책임 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 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 다. 응시철회에 따른 반환규정은 2011년 6월 22일에 전문개정된 사항 으로서 최근의 응시수수료에 대한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3) 소방공무원 임용령

이 임용령은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신규채용, 보직관리, 채용시험,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응시수수료는 이 영 제49조에서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소방간부 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의 구체적 금액은 공무원 임용령에 준하여 직급별로 부과하도록 하 고, 납부방법은 소방방재청장 및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하도록 하였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응시의사 철회에 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전진, 승진임용, 시험 및 전보의 제한 등 인사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고,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은 지도관과 지도사로 구분한다.

이 규정 중 제 27 조제 2 호에서 연구사 및 지도사의 채용•전직시험은 6 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전직 시험에 관한 시험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응시연령 및 응시수수료에 대해서는 6•7급 공무원에 관한 시험령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응시수수료는 7천원임을 의미한다.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 임용령 제64조는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자에게 응시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의 부과방법은 수입인지 도는 수입 증지로 하며,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의 방 법으로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수수료액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5 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 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인지로 주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증지 로 부과한다.

응시수수료 환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6) 경찰공무원 임용령

이 임용령 제44조는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경찰 간부후보생 공개 경쟁 선발시험의 응시자에게 응시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37).

[^8]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시험실시권자가 지정 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시험실시일 3 일 이전에 철회한 경우에 는 납부된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원칙적인 납부방법으로 하고, 반환에 관한 규 정을 두고 있다.
(7)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이 규칙 제73조는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응시원서에 수입인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 고 있다138). 이 경우 응시수수료는 환급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8)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이 규칙 제 73 조는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응시원서에 수입인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139). 다만, 예외적으로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는 환급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 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 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법원공무원규칙

이 규칙 제66조는 법원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응시원서 에 수입인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140).

[^9]다만, 예외적으로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인 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는 환급하지 않음을 규정 하고 있지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 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 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소 결

공무원 임용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각 직급별로 1 만원, 7 천원, 5 천원 등으로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수수료액은 그 부과기준과 부담의 적정성의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급별 차등 역시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납부방법도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 적으로 전자결제 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를 현대적 관점에 맞게 전자적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응시원서에 수입인지 또는 증지를 붙이는 방법을 쓰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최근의 임용시험의 응시자가 늘어나고 있어 미응시자 및 철회자에 대한 반환이 필수적인 바, 수수료 반환규정을 두어 입법적으로 보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은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점에서 수수료는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 할 것이며, 부담하는 경우에도 직급별 차등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며, 직급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입법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입법모델

제00조 (응시수수료) (1) 00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응시원서에 수입인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낼 수 있다.

1. 5 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 1 만원
2. 6-7급 공무원채용시험: 7천원
3. $8 \cdot 9$ 급 및 기능직 공무원채용시험: 5 천원
(2) 제 1 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 2 호 및 제 3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하여야 한다.
4.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5.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 한 경우
(3)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 를 면제할 수 있다.
7.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현행법상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중 법령에서 시험을 통하여 그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에 대하여 시험에 대한 수수 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와 민간 자격은 그 자격의 종류와 취득방법 및 자격자의 수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를 일률 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최소한 자격을 부여하는 방 법 등 입법의 체계는 유사한 체계를 두는 것인 적절할 것이며, 수수

료의 경우에 있어서도 최소한 법령에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최근의 반 환기준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법령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 건축사법 | 건축사 자격시험 및 건축사 예 비시험 응시수수료 |
|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응시수수료 |
| 교통안전 법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
| 도선법 |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응시수수료 |
|  | 도선사 시험 응시수수료 |
| 물류정책기본법 |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
| 선박직원 법 | 해기사시험 응시수수료 |
| 선원법 | 의료관리자시험 응시수수료 |
| 주택 법 |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
| 관광진흥 법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 규칙 | 준학예사 시험 응시 수수료 |
| 관세사법 시행령 | 응시 수수료 |
| 세무사법 시행령 | 시험 응시 수수료 |
|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 주류제조관리사 시험 응시 수수료 |
| 기르는 어업육성법 | 관리사 국가시험 응시 수수료 |


| 농산물품 질관리 법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
| :---: | :---: |
| 농어촌정비법 | 환지사 시험 응시 수수료 |
| 수의사법 |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
| 공인노무사법 | 응시 수수료 |
| 산업안전보건법 | 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 |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 응시수수료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수수료 |
|  | 방화관리자시험 응시수수료 |
| 소방기본법 |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수수료 |
| 위생사에 관한 법률 | 응시수수료 |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응시수수료 |
| 장애인복지법 |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 응 시수수료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
| 노인복지법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수수료 |
| 국민건강증진 법 | 보건교육사 응시수수료 |
| 장애인복지법 |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 응 시수수료 |
| 접골사 • 침사 • 구사 • 안마사자 격시험규정 | 자격시험 수수료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시험 응시 수수료 |


| 야생동•식물보호법 | 수렵면허시험 응시수수료 |
| :--- | :--- |
| 수도법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br> 응시수수료 |
| 행정사법 | 응시수수료 |
| 공인회계사법 | 응시수수료 |
| 보험업법 | 보험계리사 응시수수료 |

(1) 건축사법

건축사법 제 17 조는 이 법 제 14 조와 제 15 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응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국토해양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시행규칙 제 10 조제 1 항은 응시수수료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 조 제2항에 다른 수수 료는 그 금액을 지정하고 제3항에서 납부방법 등도 함께 규정하고 있 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5-533호(2005.6.17. 일부개정)로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있다.

- 다 음 -

| 구 분 | 응시수수료 |  |
| :---: | :---: | :---: |
|  | 종전금액 | 결정(인상)금액 |
| 건축사예비시험 | 33,000 원 | 35,000 원 |
| 건축사자격시험 | 73,000 원 | 80,000 원 |

이러한 일방적인 고시위임이 적절한 위임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이는 해당 부처의 자의적인 수수료 부과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즉, 법률에서 시 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고시로 포괄위임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 를 벗어난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응시수수료의 납부방 법 및 반환요건과 방법 등도 함께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법률 제4조제 1 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 • 도 지사가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2항에서 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에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이 경우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 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47조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 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업무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응시수수료를 결정 -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나 국토해양 부장관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현재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위 탁받아 28,000 원(1차: 13,700 원, 2 차: 14,300 원)을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에 한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환에 관한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다.

응시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구 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탁자에게 정하도록 하는 것 은 적절한 입법방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교통안전법

법률 제 53 조는 교통수단운영자에게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 한 운행 또는 운항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 - 관리하는 교통안 전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교통안전관 리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이 부여되 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시되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법률 제60조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규 칙 제 32 조는 제 1 항에서 응시수수료를 3 만원으로 규정하고 제 2 항에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반환에 관한 반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교통안전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 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7일전 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 분의 60 등이다.

이러한 반환기준에 관한 규정은 2011년 4월 7일에 신설된 규정으로 서 최근의 입법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방법으로 판단된다. 다만, 납부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방법을 법령상 적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험의 실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시행령 제48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도선법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선사수급계획에 따라 도선사 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을 실시하도록 법률 제 15 조에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 5 는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시험 시행일 60 일전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제38조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 응시 수수료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행규칙

제 32 조제 1 항은 별표 6 에서 5,000 원의 응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 수료의 납부방법은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만운영 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하고 있다. 이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5조에 따른 공고시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호, 2011.9.22. 신설). 이는 최근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반 영한 것이지만, 공고시 제시하기 보다는 다른 법령과 같이 법령에 직 접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제51조는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응시자격 과 과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서는 제 35 조 이하에서 자세한 시험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응시자의 응시수수료는 제 40 조제 3 항에서 국토해양부령에 재위임하고 있고, 응 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하여도 국토해양부령에 재위임하고 있다. 하지 만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은 응시수수료의 구체적인 액수와 납부방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있으며, 제2항에 수 수료 반환기준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1) 수 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 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 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10 일 전 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 분의 50 등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고시 등의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시험의 관리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며, 인터넷 응시만을 인정하고, 응시수수료는 30,000 원이고, 납부방법은 전자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환불방법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응시수수료의 경우에도 반환기준과 마찬가지로 그 구체적인 액 수와 납부방법 등은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6) 선박직원법

해기사는 일정 기준의 기술 또는 기능이 있어 선박의 운용과 관련 하여 특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면허받은 자격, 또는 그 자격 을 가진 자를 말한다. 선박직원법은 수행하는 업무영역 및 책임범위 에 따라 1 급 $\sim 6$ 급의 항해사•기관사, 1 급 $\sim 4$ 급의 운항사•통신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승선하여서는 선장•항해 사 - 기관장 - 기관사 - 통신장 - 통신사 - 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 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 해기사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해기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해기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에 국토해양부령 제25조제1항에서 별표3에 구체적인 수수료액 을 정하고 있으며141), 긱 급별 및 종별로 응시수수료를 차등으로 징수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 급이나 2 급 항해사. 기관사•운항사 또는 통신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소형선박 조종사의 시험 등 실기시험을 시행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에는 납부방법으로서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이 업무위탁을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현금
141) 1 급(항해사 • 기관사 • 운항사 • 통신사)와 2 급 (항해사 • 기관사 • 운항사 • 통신사) : 1 만 3 천원, 3 급(항해사 • 기관사 • 운항사 • 통신사)와 4 급 (항해사 • 기관사 • 운항사 • 통 신사) : 1 만 2 천원, 5 급(항해사•기관사)와 6 급(항해사•기관사) : 1 만 1 천원, 소형선박 조종사 : 5천원,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1만2천원,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1만2천원

으로 납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 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3 항). 수수료 반환에 관하여는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 한 경우 :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 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된 수수료의 100 분의 60 , (5)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된 수수료의 100 분의 50 등이다.

## (7) 선원법

선원법 제77조는 일정 규모이상의 선박에는 의무적으로 의사를 승 무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의 사의 승무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법 률 제 78 조에 따른 의료관리자를 반드시 승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자와 동등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 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관리자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의료관리자 자 격시험은 한국해양수산원의 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그 계획을 공고하고, 시험일시•시험장소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 30 일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률 제 127 조는 의료관리자시험 응시수수료를 국토해 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부령 제 59 조제 1 항제 5 호는 그 금액은 1 인당 5 천원으로 정하고 있다.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항만운영 전산망 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하지만, 한국 선원복지고용센터가 행하는 업무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 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 우 수수료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한국해양연수원의 수입으로 한다. 이와는 별도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 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영사가 선원에 대 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수수료액을 납 부당시의 외국 환매매율로 환산하여 주재국 화폐로 납부할 수 있다.
(8) 주택법

주택법 제55조는 일정한 요건하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 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관리사보 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에게 합격증을 발부받아 자격을 인정받는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응 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률 제56조제5항).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하였다(시행령 제118조제2항).

이 경우 응시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로 고시하고 있지는 않다142).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 항은 응시의사철회에 한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은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을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 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 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시행일 10 일 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
142)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참조(2011년 5월 9일 한국산업인력 공단 공고), 응시수수료는 1 차 : 21,000 원, 2 차 : 14,000 원 ; 수수료액의 결정에 관한 명확한 방법을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음. 반환기준에 "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전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수료의 100 분의 50 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시행령에서는 응시의사 철 회에 한하여 반환규정을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는 일반적인 반환기준 전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내용의 일치를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제3항에서는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 환방법은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9) 관광진흥법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 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법률 제38조제2항). 이 시 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 부하도록 하고 있다(법률 제79조제12호).

시행규칙 제69조제 1 항은 별표 23 에서 응시수수료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143), 제6항에서는 수수료 반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수수료 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 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 의 100 분의 50 이다.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령 제 3 조는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행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은 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낼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금액이나 금액결정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두 고 있지 않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응시수수료는 15,000 원이며, 납부방법은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143) 응시수수료 : 20,000원

가상계좌 중 택일)이용하고 있다. 법령에서 구체적인 금액과 납부방법 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방안이 될 것이다.

제3항은 수수료 반환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응시수수료 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 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 분의 50 이다.
(11) 관세사법 시행령

관세사법 제4조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관세사의 자격을 주고, 제 6 조제 3 항은 관세사 시험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에서 시험 에 관한 자세한 세부규정을 두고 있으며, 응시수수료에 관하여는 응 시절차를 규정한 제11조제2항에서 다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수수료 반환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그 기준은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수수료 전액, (2) 시 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 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 1 차 시험 시행 10 일 전까 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등 이다. 시행규칙 제 3 조는 수수료 금액을 1 만원으로 하고, 납부방법은 현 금 또는 전자방식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 하는 시험시행계획 공고에는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만을 정하고 있고, 환불에 관한 사항도 원수접수기간 내 취소자 환 불( $100 \%$ )만을 적시하고, 종료 후 환불불가를 공지하고 있다 144 ).
144) 2011년 제28회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참조(2011년 2월 1일 한국
(12)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 자격시험은 세무사법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주관 하는 시험으로서 과목과 그 박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 제6조는 수수료 금액은 다시 기획재정부령 에 위임하고, 반환기준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하고 있다. 그 기준은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낸 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낸 수수료 전액, (4) 응 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 1 차 시험 시행 10 일 전까지 접 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낸 수수료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등이 다. 시행규칙 제4조는 응시수수료 금액을 3 만원으로 규정하고, 납부방 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시행령 제 34 조의 2 제 2 항에서 세무사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한국산 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수납 및 환불에 관한 업무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시행령 별표 4 참조). 한국산업인력 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시행계획 공고에는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 체, 가상계좌) 이용만을 정하고 있고, 환불에 관한 사항도 원수접수기간 내 취소자 환불 $(100 \%)$ 만을 적시하고, 종료 후 환불불가를 공지하고 있다145).
(13)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규칙 제 8 조는 주류제고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에 3 만원의 수입인지를 붙이도록 하고(제2항), 반환기준에 대하여 제3항에 일반적인

[^10]반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 기준은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 소하는 경우 : 낸 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 1 차 시험 시행 10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낸 수수료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등이다.
(14)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제 18 조제 2 항은 수산질병관리사(면허자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부과근거규정을 두고 농림수산식품부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위 임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7조는 응시원서에 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서식에 응시원서 수수료 금액은 20,000 원 이며, 수입인지로 붙여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서식이 아닌 법령에 직접 금액과 납부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수수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
(15)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 30 조의 6 은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응시수수료 부 과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제2항). 그리고 예외적으로 시행규칙에 반환기준을 정하는 예외를 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반환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시행규칙 제 44 조의 3 은 응시수수료를 1 차 필기시험은 3 만원, 2 차 실 기시험은 5 만 5 천원으로 하고 반환기준은 시행령의 원칙적 금지규정과 는 달리 일반적인 반환규정을 두고 있다. 그 기준은 (1) 수수료를 과 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 일 전까지 접 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4）시 험 시행일 10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 분의 50 등이다．
（16）농어촌정비법
환지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 수료를 내야 한다（법률 제38조）．환지사（換地士）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 38 호서식에 따르며，환지사 시험 수수료는 1 만원으로 한다（시행령 제23조）．
（17）수의사법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8조제2호）．수의사 국가시험 의 응시수수료는 2 만원이다（시행규칙 제 28 조제 1 항제 2 호）．
（18）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 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내야 한다（법률 제11조제2항）．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하거나 시험 시행일의 일정 기간 전까 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수 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제 3 항）．
수수료는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시행규칙 제 3 조의 2 제 1 항）．공단 이사장은 제 1 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수수료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고 용노동부장관은 수수료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 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 한 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 금액을 승인하여 야 하며, 수수료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고용노동부 인 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제3항).

법률 제11조제3항의 수수료 반환에 관한 규정은 시행규칙에 그 내 용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는 반환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입법형식에 맞는 반환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 할 것이다.
(19) 산업안전보건법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률 제66조제1항제11호). 공단은 고용노동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수익자에게 그 업무 수 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2항).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시행규칙 제 145 조제 1 항). 수수료 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제2항).
(20)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규칙 제8조제1항). 수수료 액은 일반계약군무원 5호 이상 및 직장예비군부대 중대장 이상 응시자 는 1만원, 일반계약군무원 6호 및 7호 응시자는 7천원이다. 응시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체력검정 시행일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 료의 100 분의 70 등이다(제 2 항).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제2조에 따라 시험실시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각 군 참 모총장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2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수수료

이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률 제47조제 5 호). 수수료 금액은 별표 5 에 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시행규칙 재43조제 1 항), 1 만원으로 정하고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1)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 또는 교육실시기관의 귀책사 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 납입한 수 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3) 원서접수기간 또는 교육신청기간 내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4) 시험시 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20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5)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10 일 전 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 분의 50 등이다(법률 제43조제2항).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제3항).
(2) 방화관리자시험 응시수수료

시행규칙 제34조제7항은 방화관리자시험 실시와 관련한 응시수수료 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0호[시행 2009.9.1.]「방화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고시 제 6 조는 응시수수료 금액을 1 만원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수수료 반환은 금지되며, 다만, 시험 전일까지 환불을 요구 하는 시험 미 응시자에게 응시수수료를 환불 하여야 한다.
(22) 소방기본법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법률 제17조의2제4항). 소방안전교 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시행령 제7조의7제3항). 소방방재청장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제4 항). 응시수수료는 3 만원으로 하고(시행규칙 제 9 조의 3 제 1 항), 반환기준 은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 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시행일 20 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 납입한 수 수료의 전부, (4) 시험시행일 10 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한 경우 : 납입 한 수수료의 100 분의 50 등이다.

법률에서 동일한 의미의 내용을 시행령을 거친 이중 위임의 필요성 이 있는 지 의문이다. 반환기준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을 근거로 시행 규칙에 두는 것이 아닌 법률에 직접 두는 것이 적절한 입법방안이 될 것이다.
(23) 위생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5 조는 위생사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제1항). 이에 관하여 면허의 등록•수수료 및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국 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 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9조). 보 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 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1) 정부가 설립•운영 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등 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요건 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다(시행령 제9조).

시행령 제6조는 응시원서의 제출에 필요한 수수료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은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 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수 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현재 위생사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위탁받아 시행하 고 있다. 응시수수료 금액은 92,000 원으로 하고 있다.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2011년도 하반기 및 201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밝히고 있다. 환불 관련사항은 공고와 별도로 공 고하고 있다.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 \%$ 환불),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장소 공고 후 2 일 이내에 응시수수료 환 불신청을 한 경우( $50 \%$ 환불), $50 \%$ 환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험 일 10 일전까지 응시수수료를 환불신청을 한 경우( $40 \%$ 환불) ${ }^{146)}$.

[^11]환불규정과 관련 수수료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직 접 정하고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만을 위임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원칙 에 적합할 것이다.
(24)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규칙 제6조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관리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험관리기 관에 내야 한다(제3항). 수수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시험관리기관(한 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위탁하고 있다. 수수료 금액은 35,000원 이다. 환불규정은 (23) 참조.
(25)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 78 조는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 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 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수수료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국가시험관리기관(한국보건의료인 국가 시험원)에 위탁하고 있다.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 과목, 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 요한 사항을 시험을 실시하기 30 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 37 조제 3 항).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

으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국가시험관리기 관의 장이 공고한다. 수수료 금액은 120,000 원이다.
(2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5 조는 의료기사등 147 )의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제3호). 시행규칙 제25조 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제1항).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 법등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의무기록사•안경 사 응시수수료는 92,000 원, 치과위생사 - 치과기공사는 109,000 원 이다.
(27) 노인복지법

법률 제 39 조의 2 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 로 두도록 하고 있다(제1항).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 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 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이 주어진다(제2항). 이에 대하여 제5항은 요양 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 29 조의 6 은 응시수수료를 3 만원 148)으로 하고(제2항 본문), 납부방법으로 시•도지사가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하는 경우에는 수입 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147)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 위생사를 말하며, '의료기사등'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를 말한다.
148) 2011년 시험시행계획 공고(2010.12.17)에서는 응시수수료를 32,000원으로 하고 있다.

시•도지사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시험관리수탁기관이 자격시험을 실 시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험관리수탁기관(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납부 하도록 하고 있다.
(28) 국민건강증진 법

법률 제 12 조의 3 은 보건교육사 1 급 자격을 위한 국가시험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하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단서). 보건복지부장관(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 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제3항). 보건교육사 국가시 험의 응시수수료는 7 만 8 천원으로 한다(시행규칙 제 7 조의 4 제 1 항). 응시 수수료는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시 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 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시험 시행일 전까지 응시자격심사 과정에서 응시자격 결격사유로 접수가 취소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시험 시행일 10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의 100 분의 50 으로 반환한다 149 ).

보건교육사의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 위탁하고 있다.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 급 내지 3 급으로 하고(제 12 조의 2 제 3 항), 보건교 육사 1 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제 4 항)는 규정을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제 12 조의 2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고 시험사무를 위탁

[^12]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보건교육사 1 급• 2 급 3 급 모두 동일한 국가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별표2]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2011년 시험계획공고 참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제 12 조의 2 (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제 12 조의 2 (보건교육사 자격증의 등)
(4) 보건교육사 1 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 에 합격하여야 한다.

## 교부 등)

(4)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교부받 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 하여야 한다.
(29)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78조는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65조는 의 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 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도록 하 고 있다(제1항).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제3항)150).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국가시험관리기관(한국보 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장이 공고한다. 공고된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120,000 원이다.
(30) 접골사 • 침사 • 구사 • 안마사 자격시험규정

규정 제 8 조는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을 받으려면 수 수료로서 1 천환을 서울특별시 또는 도수입증지로써 납부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150) 다른 응시수수료와 관련된 반환규정과 규정상 형평이 맞지 않다.
(31)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30 조는 제 19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려면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이 수수료 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검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법률에 수수료에 관한 근거규정만을 두고 포괄적으로 업무위탁을 하면 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위탁업무의 방법은 아니다.

## (32) 야생동•식물보호법

법률 제 45 조는 수렵면허를 받으려면, 제 44 조제 2 항에 따른 수렵면허 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법령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제1항).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고,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 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56조는 수렵면허시험 응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 만원으로 한다(제2항). 수수료는 시 - 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3항). 시•도지사는 수수 료를 납부한 사람이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 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 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 분의 50 의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항).
（33）수도법
법률 제 42 조제 6 항은 자격시험의 출제•채점－응시절차•수수료，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로록 규정하고 있다．한국산 업인력공단（이하＂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의 장은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자격시험（이하＂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 항을 시험일 60 일 전까지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 12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 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낸 수수료는（1）수 수료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한 금액，（2）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 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전액，（3）응시원서 접수기 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전액，（4）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10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환경부 고시 제2009－194호）규정에서는 제1차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36，000원， 제2차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27，000원，자격증 발급수수료는 5，000원 으로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고시로 규정하기 보다는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 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34）행정사법
시행규칙 제 5 조는 행정사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3 천원으로 하고 있다 （제1항）．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해당 시험을 실시

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 여야 한다(제2항). 응시수수료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 다(제3항).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 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제4항).

다른 법령과의 입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한 적정한 반환기준을 법령 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5)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7조는 시험에 응시하려면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금융감 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2항).

수수료는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 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 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 액을 각각 반환한다(제2항).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은 ‘총리령으로 정하 는 금액'을 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36)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 49 조는 보험계리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시험수수료를 금융감독원에 내도록 하고 있다(제2항). 금융감독 원은 시험 응시자가 시험 전날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금 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제3항).

보험계리사 시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항).
(37) 소 결

대부분의 자격시험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 하기 보다는 공공기관이나 협회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시 험의 실시만을 위탁하고, 구체적인 수수료액과 납부방법, 반환기준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명시하도록 함.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 납한 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 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 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 10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 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 일 전까지 접수 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 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 한 수수료의 100 분의 50

> 3. 교육시험 응시수수료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br> 법률 | 적성시험 응시수수료 |
| :--- | :--- |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국비유학시험 응시수수료 |
| 고등교육법 | 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 |


| 국어기본법 시행령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응시 <br> 수수료 |
| :--- | :--- |
|  | 변호사시험 응시수수료 |
|  |  |
| 사법시험법 | 응시수수료 |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br> 규칙 | 응시수수료 |
| 약사법 |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
|  | 한약업사 응시수수료 |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3조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인 적성시험의 결과를 학생선발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 록 하고 있는 바, 제 24 조에서 교육기술부장관에게 이 시험의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제24조제3항은 적성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 고, 제5항에서 적성시험 응시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 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 제 16 조제 4 항은 지정기관이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 수수료는 지정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5 항은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과오납 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지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각각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제6항에서는 응시수수료의 반환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이 규정 제 20 조는 국비유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 시행규칙 제8조는 국비유학시험 응시를 위하여는 국립국제교 육원장이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응시수수료 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와 더불어 시행규칙 제11조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최종합격자 합격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합격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수 료로 통당 200 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서 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고등교육법

이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응시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 항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응시수수료를 잘못 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배점, 성적통지, 시 험일정 등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 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제36조). 이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관련사항을 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응시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세부계획 공고시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세 부계획은 지원자가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3 개 영역 이하는 37,000 원, 4 개 영역은 42,000 원, 5 개 영역은 47,000 원의 응시수수료를 납부고지서로 접수창구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환불에 관한 사항은 추후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시기에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환불에 관하여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가 환불대상이 된다. 백지답안지를 포함하여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환불기준을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 로 37,000 원 중 222,200 원, 42,000 원 중 25,200 원, 47,000 원 중 28,200 원 등이다.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입학전 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 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제 33 조제 1 항).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 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하여 공표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제 33조제2항).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시행계획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 원서대와 전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최소 실비만 책정하고 사회배려대상자 등에게는 부담 완화 등 고려하도록 하면서 다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 지난 학년도 지원율 및 전형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전형료를 적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시행 및 목적외 사용 금지, (2) 단계별 사정의 경우, 전단계 탈락자에 게는 다음 단계의 전형료, 대학 사전공지 미비에 따른 환불 발생의 경우 등 전형료 환불 규정 마련, (3)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발생 따른 전형료 환불방안 등 공정거래위원회 개선안 반영, (4) 전형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의혹 방지를 위해 전형료 예•결산 내용 공개 등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입학시험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필수시험과 정으로서 강제적 성격의 시험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아닌 평가원이나

개별 대학이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소한의 부과기준과 범위 등을 제시하고, 납부방법과 환불기준 등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 14 조제 1 항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실시에 관하여 규정 하면서 제7항은 시험응시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 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제8항은 시험의 응시 수 수료, 환불, 그 밖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25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시행 2011.7.1)을 제정하여 응시수수료는 필기와 면접 시험을 포함하여 50,000 원이며, 납부방법은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 체, 가상계좌) 이용하여 내도록 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은 원서접 수기간 내 취소자는 $100 \%$ 환불하며, 필기시험 시행 10 전까지 취소자 는 $50 \%$ 환불로 규정하고 있다.

고시의 규정사항은 시행규칙에 절차와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불반환규정도 보다 정교하고 상세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변호사시험법
(1) 변호사시험 응시수수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 수수료 를 내야 한다(제20조제1항).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 니한다(제2항 본문). 응시 수수료는 응시원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시행령 제13조제2항). 응시수수료의 구체적 금액은 법무부 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시행규칙 제 8 조 제 3 항은 20 만원의 응시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반환기준에 관하여는 시험개시일 전일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한 사람에게는 그가 낸 응시 수수료 전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3조제3항).

자격으로서의 성격과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응시수 수료가 사법시험(5만원) 등과 비교해서도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2) 법조윤리시험 응시 수수료

변호사시험과는 별도로 법조윤리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 임하고 있다(법률 제8조제4항). 시행령 제5조제2항은 시험응시자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지정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은 법무부장 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는 5 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5조제2항은 입법형식에 있어서 위임의 방법인 ‘법무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6)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8조는 시험응시자에게 법무부령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제1항). 다만, 법무부장관은 응시수수료 납부 대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이도록 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급하지 않 는다(제2항).

시행규칙 제 8 조는 사법시험의 응시수수료는 5 만원, 군법무관임용시 험은 1 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별도의 환급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며, 법률에 수수료에 관한 근거규 정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151)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 정하는 기관에게 대행하게 한다(제8조제2항). 이에 따라 한국간호평가 원에 위탁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제9조 제4항). 응시수수료는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 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 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20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5) 시험 시행일 10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 분의 50 을 반환한다(제5항).

구체적인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1 차시험 : 200,000원, 2차시험 195,000 원 으로 한국간호평가원장이 공고하는 시행계획에서 공지되고 있다. 납부 방법은 입금계좌를 제시한 입금방식(무통장, 인테넷 뱅킹 가능)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8) 약사법
(1) 약사 및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법률 제8조제1항은 약사와 한약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항은 시험관리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3]시행령 제3조제3항은 약사 및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 하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 부방법 등은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3항 단서).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 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제4항).

국가시험관리기관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며, 약사국가시험 의 응시수수료는 158,000 원한약사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174,000 원 으로 공고하고 있다.
(2) 한약업사 응시수수료

시행령 제 29 조제 2 랑은 한약업사 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 행규칙 제58조제2항은 응시수수료는 별표1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1에서 5,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수수 료는 수입인지(약사국가시험, 한약사국가시험 및 한약조제시험인 경우 에는 현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는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시행규칙 제105조).
(9) 의료법

법률 제 85 조제 1 항은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 항은 관계 전문기관은 납부받은 국가시험등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상의 국가시험등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 사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 등을 포함한다(법률 제9조제1항).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 금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영 제4조 제 3 항에 따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시행규칙 제7조제 3항).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 법으로 낼 수 있다(제4항).

이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며, 응 시수수료에 대하여 공공하고 있다. 의사 : 필기는 277,000 원, 실기는 545,000 원, 치과의사 : 174,000 원, 한의사 : 174,000 원, 조산사 : 101,000 원, 간호사 : 92,000 원 등이다.

## 제 2 절 위탁수수료

I . 위탁수수료의 개념

일반적으로 법령상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 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 고,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을 말하며,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따라서 여기에서 위탁수수료를 받 는 경우는 민간위탁의 경우와 민간간의 업무위탁를 의미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 ㅍ. 현행 법령상 위탁수수료의 종류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위임수수료 |
| :---: |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위임수수료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보상업무등의 위탁수수료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위탁시행 수수료 |
| 도로 법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수수료 |
| 도시개발법 |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
|  | 도시개발사업 위탁수수료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위탁수수료 |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수수료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수수료 |
| 선박직원법 | 업무위탁수수료 |
| 선원법 | 업무위탁수수료 |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토지매수업무 등 위탁수수료 |
| 신항만건설촉진법 | 토지매수업무 등 위탁수수료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승차권 판매 위탁 수수료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매수업무 등 위탁수수료 |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위탁업무수행 수수료 |
| 주차장법 | 주차장관리 위탁 수수료 |


| 철도건설 법 |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수수료 |
| :---: | :---: |
| 택지개발촉진법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수수료 |
| 하천법 |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수수료 |
| 한국도로공사법 | 업무 위탁수수료 |
|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 사업의 위탁 수수료 |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 사업 위탁 수수료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수수료 |
| 항공법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수수료 |
| 항만법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수수료 |
| 주택법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수수료 |
|  | 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위탁 수수료 |
|  |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관리 위탁 수수료 |
|  | 국민주택채권등록업무 수수료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수수료 |
| 관광진흥법 |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수수료 |
| 국민체육진흥법 | 수탁 수수료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수수료 |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 방송광고물의 수탁 수수료 |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 위탁수수료 |
| 관세법 | 위탁판매 수수료 |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 재정증권의 위탁 인수 발행 수수료 |
| :---: | :---: |
|  | 국공채 등의 매매위탁 수수료 |
|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 위탁 수수료 |
| 국채법 시행규칙 | 국채 위탁 인수 수수료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토지등의 수용•사용 위탁 수수료 |
|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 관리 수수료 |
| 한국투자공사법 | 위탁자산의 운용수수료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위탁 중개 수수료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수수료 |
| 농지 법 | 농지의 처분 위임 수수료 |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위탁업무 처리 수수료 |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수수료 |
| $\begin{aligned} & \text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 } \\ & \text { 금법 } \end{aligned}$ |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수수료 |
|  | 영농 위탁 수수료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업무 위탁 수수료 |
| 고용정책 기본법 | 위탁 수수료 |
| 근로복지기본법 | 구상권 행사 위탁 수수료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업무위탁 수수료 |
| 국민연금법 | 업무위탁 수수료 |
| 국민건강보험법 | 평가업무 위탁 수수료 |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br> 관한 규칙 | 검사위탁 수수료 |
| :---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br> 계약에 관한 법률 | 위탁수수료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br> 지원 특별법 | 위탁수수료 |

## 1. 위임수수료

위임수수료는 국가기관간과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간에 업무의 위임에 따라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 위임한 기관에서 위임을 받은 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하지만,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주는 위탁수수료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법 령에도 위임수수료를 별도로 산정하고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는 찾아 보기 어렵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7 조는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2항에서 국토해 양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개발부담금의 결정 -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징 수에 들어가는 실제비용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수수료를 지 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임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00 분의 7 을 지급하며, 분기별로 분기종료 다음 달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 28 조제 5 항).

납입금액의 근거는 제출된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납입•물 납 실적이며, 실제 금액은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한 금액 및

물납받은 토지의 가액에서 등기이전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필요한 금액을 정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령 제 40 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담금 의 부과•징수 실적과 납입•물납 실적을 근거로 하여 납입금액(시 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한 금액과 물납받은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의 일부를 위임수수료로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금액은 (1) 법 제 21 조제 1 항제 1 호 에 따른 부담금 152 ) : 징수금액의 100 분의 1 을 다음 회계연도 1 분기 말 까지 지급, (2) 법 제 21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부담금 : 징수금액의 100 분의 3 을 분기별로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 일까지 지급 등이다.

## (3) 도로법

법률 제 95 조제 1 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 2 항은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이나 손 실보상금액의 100 분의 2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 의 위임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73조제2항은 위임수수료의 요율기준을 별표4에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감정수수료와 등기수수료 등 법 정수수료는 위임수수료의 요율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152)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없거나, 복구할 필요가 없는 입안권자 또는 개발사업자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이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40 조에서 그 위임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별표 4]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임 수수료 요율기준표(제73조제2항 관련)

| $\begin{array}{c}\text { 토지매수 및 } \\ \text { 보상금액별 }\end{array}$ | $\begin{array}{c}\text { 위임 수수료 요율기준 } \\ \text { (토지매수 및 보상금액에 } \\ \text { 대한 비율) }\end{array}$ | 비 고 |
| :--- | :---: | :--- |\(\left.| \begin{array}{l}1. "토지매수 및 보상금액"이란 토지 <br>

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 <br>
리 또는 지상물의 보상비와 이주대 <br>
책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br>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end{array}\right\}\)| 20악원 이하 |
| :--- |
| 10 걱원 총수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법정 |
| 수수료는 위임 수수료의 요율에 가 |
| 산한다. |

(4) 농지법 시행령

시행령 제 12 조제 4 항은 농지의 처분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는 처분 을 위임한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수 산식품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 11 조는 농지처분에 따른 수 수료는 처분금액의 100 분의 1 로 하고,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자가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이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수수료는 농지처분에 따른 수수료의 2 분의 1 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제13조제2항은 농지저당권자가 농지의 처분을 한국농 어촌공사에 위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농지저당권자는 조 합•금융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이므로 기관간의 계약위임이라는 점 에서 행정기관간의 위임수수료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 2. 위탁수수료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조제1항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 업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위탁에 따른 업무범위와 수수료 등은 대통령 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 제43조제4항은 기관위탁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당연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위탁은 기관간의 협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수수료는 통상적인 업무153)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평가수수료•측량수수료•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과 같은 특별한 비용이 지출된 때에는 위탁수수료와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3) 위탁업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3)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사항의 조사, (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밖의 토지등의 보 상에 관한 조사, (7)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손실에 관한 조사, (8)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무를 제외한다),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업무, (11) 토지등의 등기관련 업무, (12)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등이다.

이 법률이 공익사업에 있어서 보상 등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위탁수수료 규정 역시 공익사업과 관련한 다른 법령 의 위탁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되고 있다. 다만, 각 법령상 사업의 규 모 등 요율산정의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다.

## [별 표]

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기준(제43조제4항관련)

|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 | 위탁수수료의 요율 <br> (보상액 또는 <br> 이주대책사업비에 <br> 대한 수수료의 비율) | 비 고 |
| :---: | :---: | :---: |
| 30 억 원 이하 | 20/1,000 | 1. "이주대책사업비"라 함은 이주정착지안 <br> 의 토지 등의 매수에 따른 보상액, 법 |
| 30 억원 초과 <br> 90억원 이하 | 6 천만원 +30 억원을 초과 <br> 하는 금액의 $17 / 1,000$ | 제 2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기본시 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조성비용이나 주택건설비용 등 의 합계액을 말한다. |
| 90억원 초과 <br> 150 억원 이하 | 1억6천2백만원+90억원을 <br> 초과하는 금액의 $15 / 1,000$ | 2. 평가수수료•측량수수료•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은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150 억원 초과 <br> 300 억원 이하 | 2 억 5 천 2 백만원 +150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3/1,000 | 3.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사업의 성격, 지역 적인 여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
| 300 억원 초과 | 4억4천7백만원+3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1,000$ | 4.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어 위탁수수료 요율 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기준요 율의 30 퍼센트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53조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에 따른 위탁시행 수수료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81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3) 도시개발법

법률 제 12 조제 1 항은 위탁업무의 내용을 항만•철도,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로 하 고, 재2항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 상 업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으로 하고 있다. 즉, 위탁업무의 내용 은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와 도시개발사업이며, 이 업무와 사업의 위 탁에 대하여 위탁수수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 제 12 조제 3 항은 사업시행자의 업무위탁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업무 위탁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18조는 수수료의 요율을 별표 2에서 토지매수와 보상업무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감정 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수수료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할 때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별표 2]

> 위탁수수료의 요율(제18조관련)

1.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

| 위탁금액 | 요율 <br> (위탁금액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 비 고 |
| :---: | :---: | :---: |
| 10억원 이하 | 20/1,000 이내 | 1. "위탁금액"이란 기초조사비, 토지매입비, 시 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이주대책사업을 하 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
| 10 억원 초과 <br> 30억원 이하 | 17/1,000 이내 |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수수료 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할 때에 가산한다. |
| 30억원 초과 <br> 50억원 이하 | 13/1,000 이내 | 3. 기초조사, 매수 및 보상업무의 완료 후 준 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지목변경 및 |

제 3 장 현행 법령상 수수료 현황분석

| 위탁금액 | 요율 <br> (위탁금액에 대한 <br> 수수료의 비율) |  |
| :--- | :--- | :--- |
|  |  | 관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에 소요되는 <br> 비용은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의 100 분의 30 <br> 의 범위에서 이를 가산할 수 있다. |
| 50 억원 초과 | $10 / 1,000$ 이내 |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 <br> 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 <br> 율을 조정할 수 있다. |

2. 도시개발사업

| 공사비 | 요율 <br> (공사비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 비 고 |
| :---: | :---: | :---: |
| 100억원 이하 | 90/1,000 이내 | 1. "공사비"란 재료비 • 노무비 • 일반관리비 • 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br> 공사비는 발주설계서 또는 직영설계서에 따 |
| $\begin{aligned} & 100 \text { 억원 초과 } \\ & 300 \text { 억원 이하 } \end{aligned}$ | 80/1,000 이내 | 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시공일괄입 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br> 3.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 |
| $\begin{aligned} & 300 \text { 억원 초과 } \\ & 500 \text { 억원 이하 } \end{aligned}$ | 75/1,000 이내 | 4. 2 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총 공사비 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 수수료를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
| 500억원 초과 | 70/1,000 이내 | 5. 위탁사업의 범위에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업 무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가산한다. <br> 6.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위탁하 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비에 합산하여 요율을 적용한다. |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 조는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의 위탁시행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5）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52조는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2항에서 위탁업무범위와 수수료는 대 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시행령 제37조는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 조는 산업단지개발사업중 항만•공업용수시설－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업무와 손 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 1 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 행할 수 있다．이 경우 같은 법 제81조제2항은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 여 준용한다．

## （7）선박직원법

법률 제23조제2항은 해기사시험의 관리와 면허갱신신청의 접수등 그 절차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해양수산연구원과 국토해양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기사가 회원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위 탁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제3항）．
하지만，현형 시행규칙에는 응시수수료와 서류와 증서 신청수수료만 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업무위탁수수료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8）선원법
법률 제 130 조는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업무의 위탁을 받 은 법인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 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업무위탁의 근거만 법령에 두고，관련 사항은 업무대행기관이 정하 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법령에 그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두 는 것이 필요하다．
（9）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 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법률 제16조제1항）．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항）．
（10）신항만건설촉진법
법률 제 22 조는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 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위 탁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시행령 제35조제2항은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등을 위탁하는 경우 사 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고 규정 하고 있다．
（1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 46 조는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 탁하여야 한다．다만，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 미널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제1항）．이 경우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판매 수수료는 운송사업 자와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제2항）．
（12）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 32 조는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손 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토지매수•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 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이에 따라 시행령 제45조제3항은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2 에 정하고 있다．
［별표 2］
위탁수수료의 요율（제45조제3항 관련）

| 위탁금액 | 요율 <br> （위탁금액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 비 고 |
| :---: | :---: | :---: |
| 30 억원 이하 | 20／1，000 | 1．＂위탁금액＂이란 토지매입비，시설의 매수 및 |
| 30억원 초과 <br> 90억원 이하 | 6천만원 +30 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7／1，000 | 이전비，권리 또는 지장물（支障物）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이주대책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
| 90억원 초과 <br> 150 억원 이하 | 1억6천 2 백만원 +90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1,000$ | 2．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수수료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할 때에 가산한다． <br> 3．매수 및 보상업무가 끝난 후 준공 및 관리처분 을 위한 측량，지목변경 및 관리이전을 위한 소 유권의 변경에 드는 비용은 위탁수수료의 요율 기준의 100 분의 30 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 위탁금액 | 요율 <br> (위탁금액에 대한 <br> 수수료의 비율) | 비 고 |
| :---: | :--- | :--- |
| 150 억원 초과 | 2 억5천2백만원+150 <br> 억원을 초과하는 금 <br> 액의 13/1,000 |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 <br> 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br> 조정할 수 있다. |

(1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22조제4항은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관리청이 유비쿼터 스 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 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4) 주차장법

법률 제 21 조의 2 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 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 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제5항).

|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 :---: | :---: | :---: | :---: |
| 제 1 항제 1 호의 경우 | 시장이 <br> 정하는 방법 | 구 리 시 주 차 장 조 례 시행규칙 제3조의 2 에 의한 위탁대행료 산 출금액 상당액 | 시장이 <br> 정하는 방 법 |
| 제 1 항 제 1 호 이외의 공익을 위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제 한 경 쟁 또는 수의 계약 | 구리시주차 장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2 에 의한 위탁 대행료 산 출금액 상당액 | 3 개월 단위로 <br> 선납 또는 시장 <br> 이 정하는 방법 |


|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 :---: | :--- | :--- | :--- |
| 기타의 경우 | 경쟁계약 | 입찰가격 | 3개월단위로 선 <br> 납 또는 시장이 <br> 정하는 방 법 |

예시) 구리시 주차장 조례 :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 을 수 있는 자(관리수탁자)의 자격은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 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 조의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4) 주민자치 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등이다.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시에 납부 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 와 같다.

## 구리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또는 하천일 경 우에는 인근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임야일 경우에는 지방재 정법시행령 제92조의규정에 따라 산출한다.<개정 2003. 4. 16>

1. 노상주차장 : 1 대당 주차구획면적 $\left(\mathrm{m}^{2}\right) \times$ 면수 $\times$ 해당(또는 인근)토 지의 개별공시지가 $\left(\mathrm{m}^{2}\right) \times 5 / 100 \times$ (점용일수 $/ 365$ ) $\times$ 지수 $\times(1$ 일평균 운 영시간/24시간)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 $\left(\mathrm{m}^{2}\right) \times$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left(\mathrm{m}^{2}\right) \times 25 / 1,000 \times($ 점 용일수 $/ 365) \times$ 지수 $\times(1$ 일평균 운 영시가 $/ 24$ 시간 $)$ ※ 지수 : 각급지별 1 회 주차요금 $(30$ 분 기준) $\div 1$ 급지 1 회 주차요금 (30분기준)
（15）철도건설법
법률 제14조제2항은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할 때 드는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 15 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 에는 위탁 내용과 위탁 조건에 관하여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제1항）．토지매수업무，손실보 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 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위 탁수수료의 요율기준에 따른다（제2항）．
（16）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 17 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1항）．토지매수업 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 분의 3 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시행령 제 12 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가 토지매수업무와 손실 보상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목적물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항）．토지매수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의 한다（제2항）．
(17) 하천법

법률 제 82 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의 매수청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 1 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 및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 에는 손실보상금액 및 매수금액의 100 분의 2 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 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위 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4와 같다(시행령 제90조제2항).

## [별표 4]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위탁수수료 요율(제90조제2항 관련)

| 손실보상금액 | 수수료 요율기준 <br> (손실보상금액에 관한 비율) |
| :---: | :---: |
| 10 억원 이하 | $20 / 1000$ 이내 |
| 10 억원 초과 |  |
| 30 억원 이하 | $17 / 1000$ 이내 |
| 30 억원 초과 <br> 50 억원 이하 | $15 / 1000$ 이내 |
| 50 억원 초과 <br> 100 억원 이하 <br> 100 억원 초과 | $13 / 1000$ 이내 |

※ 비 고

1. "손실보상금액"이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상물의 보상비 및 이주대책사업비(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수료는 위임•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할 때에 가산한다.
3. 손실보상업무 완료 후 준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 지목변경 및 관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절차에 드는 비용은 위임 - 위탁수수료 요율기준의 100 분의 30 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위임(위탁)자와 수임(수탁)자는 매수완료일부터 30 일 이내에 손실보상업무에 들 어간 비용을 정산한다.
(18)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제 12 조의 2 는 한국도로공사는 업무 154 )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 공사는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 제 11 조의 6 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는 공사와 수탁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공사가 수탁자에게 수탁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19)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4조는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사업의 일부를 위탁시행하려 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155)을 협의하여야 한다(제1항).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위탁시행하려면 미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항). 공사가 사업을 위탁받거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산정은 별표 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154) 제 12 조제 1 항 한국도로공사의 업무 제 1 호부터 제 15 호까지
155) 1. 사업의 개요, 2. 사업기간(착공일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정, 3. 위험 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위탁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별표] <개정 2010.12.13>
사업 위탁.수탁 수수료율 기준표(제34조제3항 본문 관련)

| 공사비 | 요 율 |
| :---: | :---: |
| 100 억원 이하 | 9.0퍼센트 이내 |
| 100 억원 초과 | 8.0 퍼센트 이내 |
| 300 억원 이하 |  |
| 300 억원 초과 |  |
| 500 억원 이하 | 7.5 퍼센트 이내 |
| 500 억원 초과 | 7.0 퍼센트 이내 |

<비 고>

1. "공사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공사비는 발주 설계서 또는 직영 설계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시 공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2 년 이상의 장기사업일 경우에는 총공사비에 대한 수수료의 범위에서 위탁자 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수수료를 연차별로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5. 위탁사업 또는 수탁사업의 범위에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와 이주대책 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로 가산한다.
6. 조사, 설계 등 부대사업에 드는 사업비는 이 기준표 상의 공사비로 본다.
(20)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법률 제 22 조는 이사장은 공단이 시행하는 제 7 조 각 호의 사업(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사업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국토해양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 공사"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2항).

시행령 제 23 조는 공단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개정 2009.7.1>
사업의 위탁수수료율 기준표(제23조제3항 관련)

| 공사비 | 요 율 | 비 고 |
| :---: | :---: | :---: |
| 50억원 이하 | 10.0퍼센트 <br> 이내 | 1. "공사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 50억원 초과 <br> 100억원 이하 | 9.0퍼센트 이내 | 2. 공사비는 발주 설계서 또는 직영 설계서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 |
| 100 억원 초과 <br> 300억원 이하 | 8.0퍼 센트 이내 | 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br> 3.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
| 300억원 초과 <br> 500억원 이하 | 7.5퍼센트 이내 | 따라 수수료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br> 4. 사업기간이 2 년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총공사 |
| 500억 원 초과 | 7.0퍼센트 <br> 이내 | 비에 대한 수수료의 범위에서 수탁자와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 수수료를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br> 5. 위탁사업의 범위에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업 무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 른 위탁수수료를 따로 가산한다. <br> 6.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이 기준표에 따른 공사비로 본다. |

(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제 15 조는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 매매•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매매•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제1항). 수탁의 기준과 수탁수수료의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제2항).

시행령 제 12 조는 공사가 법 제 8 조제 1 항제 4 호, 제 6 호, 제 10 호 및 제 15조에 따라 사업 등을 수탁할 경우 그 수탁수수료의 요율(料率) 기준 은 별표와 같다. 제 33 조제 1 항은 법 제 15 조에 따라 공사가 매매와 관 리를 수탁할 수 있는 토지의 수탁가격은 위탁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별표]

## 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제12조 관련)

1. 사업 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

| 공사비 | 수수료의 요율 기준 <br> (공사비에 대한 비율) | 참 고 |
| :---: | :---: | :---: |
| 100억원 이하 | 9.0\% 이내 | 가. "공사비"란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 |
| 100 억원 초과 | $8.0 \%$ 이내 | 비 - 이윤 -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 300 억원 이하 |  | 나. 공사비는 설계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 |
| 300억원 초과 | 7.5\% 이내 |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 500 억원 이하 |  | 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
| 500 억원 초과 | 7.0\% 이내 | 라. 2 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위탁자 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수수료를 연도별로 |
|  |  |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
|  |  | 마. 수탁사업의 범위에 토지 매수 및 보상 업 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수료 를 따로 가산한다. |
|  |  | 바.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에 드는 사업비는 이 기준표에 따른 공사비로 본다. |

2. 토지 매매•관리 수탁수수료 요율 기준표

가. 토지매매 수탁

| 토지매매금액 | 수수료 요율의 기준 (토지매매금액에 대한 비율) | 참 고 |
| :---: | :---: | :---: |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begin{aligned} & 1.7 \% \text { 이내 } \\ & 1.6 \% \text { 이내 } \end{aligned}$ | 감정수수료, 신문 공고료, 등기수수료, 그 밖의 법정수수료는 따로 가산한다. |
| 토지매매금액 | 수수료 요율의 기준 (토지매매금액에 대한 비율) | 참 고 |
| 1억원 초과 <br> 2억원 이하 <br> 2억원 초과 <br> 5억원 이하 | $\begin{aligned} & 1.5 \% \text { 이내 } \\ & 1.4 \% \text { 이내 } \end{aligned}$ |  |


| 토지매매금액 | 수수료 요율의 기준 <br> (토지매매금액에 대한 비율) | 참 고 |
| :---: | :---: | :---: |
| 5 억원 초과 | $1.3 \%$ 이내 |  |
| 10 억원 이하 |  |  |
| 10 억원 초과 | $1.2 \%$ 이내 |  |
| 30 억원 이하 |  |  |
| 30 억원 초과 | $1.1 \%$ 이내 |  |
| 50 억원 이하 |  |  |
| 50 억원 초과 | $1.0 \%$ 이내 |  |

나. 토지관리 수탁

| 구 분 | 수수료의 요율 기준 | 참 고 |
| :---: | :---: | :---: |
| 사용•임대관리 | $\begin{array}{c}\text { 사용•임대료(지연손해금 } \\ \text { 을 포함한다)의 } 10 \% \text { 이내 }\end{array}$ | $\begin{array}{c}\text { 1) 유지관리 및 가치증대에 필요한 비 } \\ \text { 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되, 감정수수 } \\ \text { 료, 신문 공고료, 등기수수료, 그 밖 } \\ \text { 의 법정수수료는 따로 가산한다. }\end{array}$ |
| 유지관리 | 유지관리 비용의 $10 \%$ |  |
| 이내 |  |  |\(\left.\quad \begin{array}{c}2) 관리 방법이나 수탁토지에 특수한 <br>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수수료의 요율\end{array}\right\}\)
(22) 항공 법

법률 제 100 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 1항).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위탁하는 경 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항).
(23) 항만법

법률 제 78 조는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1항）．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 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시행령 제 80조는 위탁수수료의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에 따른다（제3항）．
（24）주택법
（1）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수수료
법률 제 28 조는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1항）．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 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100 분의 2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해당 지방자 치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법 제28조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이란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요율을 말한다 （시행령 제33조제2항）．
（2）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위탁 수수료

법률 제 89 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건설한 국 민주택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 방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 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구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
(3)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관리 위탁 수수료

시행령 제86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하되, 그 금액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제 1 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수수료에 관한 국토해양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제 2 항).

시행규칙 제37조는 수수료는 월별로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로 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 만, 기금수탁자(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개모집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한 금액으로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위탁수수료는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국민주택채권등록업무 수수료

시행령 제91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채권등록기관에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제86조 제2항의 규정은 국민주택채권등록업무수수료에 관한 국토해양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제5항).
[별표 7] <개정 2008.9.11>

## 국민주택기금운용•관리사무 및 채권등록업무수수료(제37조제1항 관련)

1. 영 제 86 조제 1 항에 따른 월별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사무에 관한 위탁수수 료의 산정은 다음의 산정식에 의한다.

## $\sum$ (Xiai)

※ "Xi" 및 "ai"는 제2호의 표 중 각각 수수료동인 및 수수료단가를 말한다.
2. 제 1 호에 따른 수수료동인별 수수료단가

| 구 분 | 과 목 |  | 수수료동인(Xi) | 수수료단가(ai) |
| :---: | :---: | :---: | :---: | :---: |
| 조성 | 청약저축 |  | 신규좌수 | 13,209.38원 |
|  |  |  | 잔고좌수 | 558.12원 |
|  | 채권 | 발행/해약/상환건수 |  | 6,285.74원 |
|  |  | MT상환매수 |  | 119.34원 |
| 운용 | 사업자대출 | 신규 <br> 좌수 | 공공기관 | 1,937,042.51 원 |
|  |  |  | 민간 대출승인 | 8,232,430.65원 |
|  |  |  | 민간 준공급지급 | 9,200,951.91 원 |
|  |  |  | 매입임대 | 665,858.36원 |
|  |  |  | 대 환 | 605,325.78원 |
|  |  |  | 전 환 | 221,952.79원 |
|  |  | 잔고 <br> 좌수 | 공공기관 | 1,224.87원 |
|  |  |  | 민 간 | 11,023.84원 |
|  |  | 세대 수 | 세대별 근저당 분리 | 27,969원 |
|  | 수요자대출 |  | 신규좌수 | 269,752.24원 |
|  |  |  | 잔고좌수 | 3,417.18원 |

비고 : 1. 수수료동인은 정상처리된 것만을 말한다.
2. 사업자에게 대출된 자금 중 법인 앞으로 대환하는 경우는 사업자대출, 개 인 앞으로 대환하는 경우는 수요자대출로 한다.
3. 사업자대출 중 공공기관 및 민간에 대한 신규좌수 수수료동인에는 매입임 대, 대환, 전환 및 「임대주택법」 제 12 조의 2 제 3 항제 1 호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잔고좌수는 월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세대별 근저당 분리에 따른 세대수는 별도의 잔고 좌수로 보지 아니한다.
3. 영 제91조제 5 항에 따른 월별 채권등록업무 수수료의 산정은 다음의 산정 식에 의한다.

| 월별 채권등록업무 수수료 $=$영업일기준 일별 150 만원+영업일기준 일별 등록 <br> 금액 100 억원 초과금액의 $1 / 100,000$ |
| :--- |

（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 235 조는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그 밖에 도조 례가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1항）．토지등의 취득업무•손실 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제2항）．
（26）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49 조제 1 항은 관광단지개발자에게 법 제 55 조제 5 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제2항）．시행규칙 제63조는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별표 20］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제63조 관련）

| 용지매수의 <br> 금액별 | 위탁수수료의 기준 <br> （용지매수대금에 <br> 대한 백분율） | 비 고 |
| :---: | :---: | :---: |
| 10 억원 이하 | 2.0 퍼센트 이내 | 1．＂용지매수의 금액＂이란 용지매입비，시설의 매수 <br> 및 인건비，관리보상비 및 지장물보상비와 이주위 <br> 자료의 합계액을 말한다． |


| 용지매수의 <br> 금액별 | 위탁수수료의 기준 <br> (용지매수대금에 대한 백분율) | 비 고 |
| :---: | :---: | :---: |
| 10 억원 초과 <br> 30 억원 이하 | 1.7 퍼센트 이내 |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수료는 위 탁수수료의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
| 30 억원 초과 <br> 50 억원 이하 | 1.3퍼센트 이내 | 3. 개발사업의 완공 후 준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 지목변경, 관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 절차를 위한 관리비는 이 기준수수료의 100 분의 30 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 50 억원 초과 | 1.0퍼센트 이내 | 4. 지역적인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 위탁료율 을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증감 조정할 수 있다. |

(27)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 28 조는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 업 시행에 따른 운영 경비 및 수탁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위탁 운영 비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 분의 25 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8 조는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매매관리업무 등을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청장,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토지 등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 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29)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법률 제19조는 공사가 위탁한 광고물을 방송한 지상파방송 사업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고물의 수탁수수 료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제 1 항). 공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 탁수수료중 정관이 정하는 일정률을 광고주를 대행하여 당해 방송광 고물을 공사에 의뢰한 광고회사에 대하여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2 항). 공사의 운영경비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수수료에서 충 당하되, 그 운영경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어야 한다(제3항).

광고물을 방송한지상파방송사업자는 그 광고료의 100 분의 14 에 해 당하는 금액을 광고물의 수탁수수료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시행 령 제5조).
(30) 관세법

법률 제 210 조제4항은 위탁판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위탁판 매의 판매가격은 해당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위탁판매의 장소 • 방법 -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22조제5항).
(31) 국고금관리법
(1) 재정증권의 위탁 인수 발행 수수료

시행령 제 55 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 하거나 인수시켜 발행할 수 있다(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증권 을 발행한 때에는 발매대금의 1 천분의 10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국공채 등의 매매위탁 수수료
시행령 제 71 조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공채 및「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 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매매할 수 있다．이 경우 매매대금의 1 천분의 10 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32）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 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국유 일 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규칙 제1조）．제12조는 위탁수수료를 비용의 지출금액의 10 퍼센트 범위 안에서 총괄청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33）국채법
시행규칙 제 2 조는 국채는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제 1 항）．국채의 발행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제2항）．국채 발행시 발행금액의 100 분의 1 의 범위안에서 위탁받은 자 또는 인수한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3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 20 조는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제1항）．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

련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이주대책사업등의 시행을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 항).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관계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 18 조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 20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 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내용 및 조건과 위탁수수료율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지방자치단 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5)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규칙 제 8 조제 3 항은 전대차주는 전대원리금이외에 차관공여자로부터 정부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 관은 전대차주에게 제 7 조에 따른 원금, 제 1 항에 따른 이자, 제 3 항에 따른 수수료 및 부담금(이하 "전대원리금등"이라 한다)과 제11조에 따 른 연체금에 대하여 납입시마다 해당 납입금액의 1 만분의 5 에 상당하 는 관리수수료를 납입하게 할 수 있다.
(36) 한국투자공사법

법률 제 34 조는 위탁자산의 운용수익은 위탁기관에 귀속한다(제 1 항).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수익의 지급절차, 지급방식 및 운용수수료는 위 탁기관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7)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 42 조는 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1)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

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의 개 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 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 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시장도매인 또는 중 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 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도매시장의 개설 자가 도매시장의 쓰레기발생억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 중 비규격출하물량에 대하여 업무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하자.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 인•매매참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 등으로 한정하도 록 하고 있다(제1항). 수수료 및 사용료 등 부담금에 대한 법정화로서 이외의 금전적 부담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료와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제2항), 부 담금은 농수산물의 규격츌하촉진, 쓰레기감량화 및 하역기계화 등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제3항)하도록 하고 있다.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징수하는 도매시장사용료는 (1) 도매시장의 개 설자가 징수할 사용료의 총액이 당해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의 1 천분의 5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156), (2)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당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156) 다만,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그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 래금액의 1 천분의 3 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법 제 31 조제 4 항에 따라 같은 조 제 2 항 단서에 따른 물품을 법 제 70 조의 2 제 1 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전자거래소(이하 "농수산물전자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
나. 법 제 35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와 같은 항 제 2 호에 따라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 한 경우

기준으로 하여 징수할 것 등의 기준157)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다(제 1 항).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 의 2 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사무실 및 도체등 급판정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 천분의 50 (중도매인점포 - 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 천분의 1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 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 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제2항).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1) 양곡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2)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 천분의 70 , (3)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 천분 의 60 , (4) 축산부류 : 거래금액의 1 천분의 20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안 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 는 도살•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화훼부류 : 거래 금액의 1 천분의 70 , (6) 약용작물부류 : 거래금액의 1 천분의 50 과 같 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제3항).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 3 항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제4항).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 으로 정할 수 있다(제5항).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 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제3항에 따른 해당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 도의 2 분의 1 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 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제6항).
157)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 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8）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법률 제 12 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조•제4조의 2 및 제 5 조 에 따른 융자사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농림 수산식품부장관은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 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3항）．
（39）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영 제 25 조제 1 항（유지관리재원의 운용－관리위탁）에 따른 업무를 위 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데 따르는 위탁 수수료는 유지관리재원으로 부 담한다．이 경우 수수료의 지급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다（법률 제39조제1항，시행령 제25조제1항）．

위탁수수료의 재원에 관한 사항만을 시행규칙에 두고，장관이 정하 도록 하고 있으나，행정규칙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40）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9 조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 18 조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수납을「축산물가공처리법」제 2 조제 10 호에 따른 작업장 을 대표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위원회는 수납을 위탁받은 작업장 대표자（이하＂수납기관＂이라 한다）에게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제1항）．수수료 는 의무거출금의 100 분의 7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수납기관 과 협의하여 정한다（시행규칙 제 10 조）．
（41）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수수료
법률 제 24 조의 4 는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 하는 농지를 임대•사용대（使用貸）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 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受託）할 수 있다（제1항）．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料率基準）등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시행령 제 19 조의 8 은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수수료 의 요율기준은 별표 1 에서 정하고 있다．
［별표 1］＜개정 2009．6．26＞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19조의8 관련）

| 구 분 | 수수료 요율 | 비 고 |
| :---: | :--- | :--- |
| 임대 수탁 | 총임대료의 12퍼센트 이내 |  |
| 사용대 수탁 | 위탁계약 건당 20만원 이내 |  |
| 매도 수탁 | 매도금액의 1퍼센트 이내 | 감정평가수수료，신문 공고료， <br> 득기 수수료，법정수수료는 따로 <br> 계산한다． |

（2）영농 위탁 수수료
시행규칙 제 13 조제 3 항은 공사는 그 소유 농지가 매도되지 아니하거 나 임차한 농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 는 농업법인에 그 영농을 위탁할 수 있다．이 경우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영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의 관행에 따른다．
（4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는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46조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1）보험료，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2）보험료 등 잘못 낸 금액의 반환금 지급에 관한 업무，（3）제1 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등이다（제 1 항）．공단 또는 건강 보험공단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제2항）．
（4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 35 조제 1 항은（1）법 제 34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실업자 지원 사업，（2）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 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사업，（3）제 34 조 각 호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하＂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대책사 업을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제2항）．
（44）근로복지기본법
법률 제5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공단＂ 이라 한다）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할 수 있 는 금융회사 등은 법 제 12 조에 따른 융자업무취급기관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제 1 항）．구상권의 행사를 위탁할 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제2항）．
（4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9조는 공단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 무의 범위는（1）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2）제 1 호의 사항에 딸

린 업무 등이다. 공단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 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법률 제 30 조는 공단은 제 11 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시설의 이용료나 업무위탁 수수료 등 그 사업 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6)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은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공단 으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제2항).
(47)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 60 조는 심사평가원은 제 56 조제 1 항의 업무(같은 조 같은 항 제 5호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부담금 을 징수할 수 있다(제 1 항). 심사평가원은 제56조제 1 항제 5 호에 따라 급 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 는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제2항). 부담금 및 수수료의 금 액 -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3항).

시행규칙 제 30 조는 수수료는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의료급여비용심사에 관한 비용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항). 사평가원은 부담금 은 매분기별로, 수수료는 월별로 부과•징수한다(제4항). 부담금 및 수 수료의 징수.납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항).
(4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제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4 의 품질관리검사업무 위탁기준에 맞는 전문기관을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 5 조제 1 항의 검사업무를 위탁한다（제1항）．검사를 위탁받은 품질관리검사기관은 품질관리검사를 신청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으 로부터 품질관리검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검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제2항）．보건복지부장관은 특수의료장비 품질 관리검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 1 항에 따른 품질관 리검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제3항）．
（49）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 7 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 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중앙행 정기관의 장，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제1항）．계약사무 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 다．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제2항）．계약사 무의 위탁•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로 정한다（제3항）．
시행령 제 6 조제 3 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7 조제 1 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 수수료 및 그 밖 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위탁 수수료 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제6항）．
(5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법 제31조제3 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매입업무 를 위탁하는 때에는 매입할 토지•물건•권리 및 위탁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제 1 항). 사업시행자가 제 1 항에 따라 토지•물건•권리의 매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요율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지급 하여야 한다(제2항).
[별표 5]
토지매입업무의 위탁수수료 요율 기준표(제29조제2항관련)

| 보상액 | 위탁수수료의 요율 | 비 고 |
| :---: | :---: | :---: |
| 30억원 이하 | 20/1,000 | 1. 평가수수료•측량수수료•등기수수료 및 변 |
| 30 억원 초과 <br> 90억원 이하 | 6 천만원 +30 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7/1,000 | 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은 보상액 또 는 이주대책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90 억원 초과 <br> 150 억원 이하 | 1억6천 2 백만원 +90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1,000$ | 적인 여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이 |
| 150 억원 초과 <br> 300 억원 이하 | 2억5천 2 백만원 +150 억원을 <br> 초과하는 금액의 13/1,000 |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br> 3.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어 위탁수수료 요 |
| 300 억원 초과 | 4억4천7백만원+3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0 | 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기 준요율의 30 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

## 제 3 절 규제수수료

## I. 규제수수료의 의의와 범위

규제수수료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에 있어서 신청권자가 납부하는 금액

을 말한다. 규제수수료의 종류는 신고, 등록, 승인, 허가, 출입, 특허, 면허, 검사, 지정수수료 등이다.
․ 현행 법령상 규제수수료의 봉류

1. 허가 • 변경허가 • 인가 • 면허 • 특허 수수료

| 개항질서법 | 허가신청수수료 |
| :---: | :---: |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매립면허수수료 |
| 궤도운송법 | 허가•승인 또는 검사 수수료 |
| 도로 법 | 도로공사 허가 수수료 |
|  | 도로점용 허가 수수료 |
|  | 도로운행 허가 수수료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수수료 |
| 선박안전법 | 변경허가 신청수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면허 • 등록 - 허가 - 인가 등 신청수수료 |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수수료 |
| 지하수법 |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변 경허가수수료 |
| 하천법 | 허가 수수료 |
| 항만법 | 허가 등록 수수료 |
| 해운법 | 면허 등록 수수료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허가 - 인가 등 신청 - 신고 수수료 |


|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br>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br> 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br> 허가•변경허가, 등록•변경등록 또는 <br> 변경신고수수료 |
| :--- | :--- |
| 관광진흥법 |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br> 신청수수료 |
| 저작권법 |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신청 • 신 <br> 고수수료 |
|  |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 허 <br> 가 수수료 |
|  |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수수료 |$|$| 흑허보세구역의 설치 • 운영에 관한 |
| :--- |
| 특허 수수료 |


| 수의사법 | 수의사 면허 다시 부여수수료 |
| :---: | :---: |
| 원양산업 발전법 | 원양어업허가 신청수수료 |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면허수수료 |
| 축산물위생관리법 | 허가수수료 |
| 축산법 | 면허수수료 |
| 산업안전보건법 | 허가수수료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허가 수수료 |
| 출입국 관리법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
|  | 각종 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 허가수수료 |
| 소하천정비법 |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허가 • 신고 • 신청 - 검사등 수수료 |
| 공중위생 관리법 |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 신청수수료 |
| 식품위생법 | 영업허가•신고 및 변경허가•신고 수수료 |
|  | 조리사 면허수수료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취급자 허가 • 변경허가 수수료 |
|  | 수출•수입 또는 제조품목 허가• 변경허가 수수료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지정 • 등록 • 허가 • 승인 • 신고 및 변경 수수료 |
| 약사법 | 면허 • 허가 • 등록 • 검정 • 재검정 • 재생판매•광고심의 신청 수수료 |
| 공중위생 관리법 |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수수료 |


| 의료기기법 | 허가 - 변경허가 수수료 |
| :---: | :---: |
| 먹는 물 관리법 | 샘물 등의 개발의 허가•변경허가, 연장허가 수수료 |
|  |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의 허가•변 경허가 수수료 |
| 대기환경보전법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수수료 |
| 야생동 - 식물보호법 | 수립면허•갱신수수료 |
| 폐기물관리법 | 허가 - 변경허가 수수료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배출시설 허가 - 변경허가 수수료 |
|  |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 수수료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 | 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 변경신고 수수료 |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수출입 허가 수수료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수수료 |
| 소음 - 진동관리 법 |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 허가 수수료 |
| 하수도법 | 분뇨수집 - 운반업의 허가 수수료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의 허가 및 변경허가수수료 |
|  | 취급제한 • 금지물질영업의 허가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변경허가 수수료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허가 • 신고 수수료 |
| :--- | :--- |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 <br> 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br>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등록 • 신고 • 변경신고 • 허가 • 변경수료 <br> 형 |
| 온천법 | 토지의 굴착허가 수수료 |
|  |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심도증가 <br> 허가수수료 |
|  | 동력장치의 설치허가 수수료 |
|  |  |

(1) 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에서 규 정한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법률 제43조).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은 별표 3 에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납부방법은 수입인지, 현금,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
[별표3] <개정 2010.1.15>
수수료(제21조제1항 관련)

| 건 명 | 금액: 건당 |
| :--- | :---: |
| 1. 법 제33조에 따른 공사 등의 허가 신청 | 1,000 원 |
| 2. 법 제34조에 따른 선박경기 등의 행사 허가 신청 | 1,000 원 |
| 3. 법 제36조에 따른 부유 등의 허가 신청 | 2,000 원 |

(2)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34조는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로부터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 1 항）．다만，（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법인 또는 공 공단체158）가 시행하는 매립，（2）제3조제 3 항제 1 호에 따른 수산물양식장 의 축조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단서）．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3조제1항）．매립면허가 취소되거나 매립면 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납부한 매립면허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제2항）．매립면허 수수료는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가 징수한 것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으 로 하고，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 임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것은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며，그 외의 자가 징수한 것은 국고의 수 입으로 한다（제3항）．매립면허 수수료의 납입기한은 공유수면매립면허 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로 한다（시행규칙 제25조제 2 항）．시 행규칙 제 25 조에서 별표3으로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별표 3］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 등 급 | 등급내용 | 요 율 |
| :---: | :---: | :---: |
| 1등급 | 1．특별시•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br> 2．「항만법」제 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무역항（이하 이 표에서＂무역항＂이라 한다）중 경인항－부산항－인 천항 및 울산항의 항만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 수면매립 | 인접한 토지가격의 1 천분의 15 |
| 2등급 | 1．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인구 50 만 이상의 시의 도시 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br> 2．경인항－부산항－인천항 및 울산항을 제외한 무역항 의 항만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 인접한 토지가격의 <br> 1 천분의 10 |

158）1．「수산업협동조합법」 제 2 조제 4 호 • 제 5 호 및 제 15 조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어촌계，2．「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등 급 | 등급내용 | 요 율 |
| :---: | :---: | :---: | :---: |
| 3등급 | 1．인구 50 만 미만의 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 <br> 하는 공유수면매립 <br> 2．「항만법」 제3조제 1 항제 2호에 따른 엽안항의 항만 토지가격의 <br> 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 1천분의 5 |
| 4등급 | 위의 각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수면매립 | 인접한 토지가격의 <br> 1 천분의 3 |

비고 ：1．＂인접한 토지가격＂이란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 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 에는 그 매립예정지의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다만，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하거나 그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 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2．매립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의 인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 는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 로 한다．다만，매립예정지의 인접한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매립예정지와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가격을 기준 으로 한다．
3．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제 11 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 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매립면허관청이 결정한다．
4．농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의 요율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토지가격의 1 천분의 1 로 한다．
5．매립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 한다．
（3）궤도운송법
법률 제 31 조는 허가•승인 또는 검사신청시 수수료 납부규정을 두 고 있으며，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 25 조는 궤도사업의 허가•변경허가，전용궤도의 승인• 신고，준공검사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각각 2 만원의 수수료를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제1항）．

궤도시설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엔지리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 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 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4) 도로법

법률 제89조는 도로공사허가(제34조), 도로점용허가(제38조), 도로운행 허가(제59조제1항)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제1항). 제2항에서는 수수료 감면에 관하여 점용료 감면규정(제42조159))을 준용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 42 조는 허가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법 제34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허가 시의 공사비 (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 천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 38 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1 천원, (3) 법 제59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차량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5 천원 등이다 (제1항). 수수료 납부하는 방법은 (1)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 : 수입인지, (2) 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제2항). 이와는 별도로 관리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제3항).
159) 제 42 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 38 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63조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의 신청 과 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 양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31조는 수수료의 구체적인 사항 은 별표 5 에서 정하고 있다.
[별표 5] <개정 2011.4.7>
수수료(제31조 관련)

| 신청내용 | 금액(1건당) |
| :---: | :---: |
| 1.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 20,000 원 |
| 및 변경등록의 신청 |  |
| 2. 법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 <br> 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신청 | 15,000 원 |

(6) 선박안전법

법률 제 80 조에서는 18 개의 사항에 대하여 수수료 납부를 정하고 있 다. 제 3 호에서는 제 15 조제 2 항에 따른 변경허가(선박의 길이•너비•깊 이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는 하가)를 신청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 제 21 조제 1 항제 2 호에서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 해양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에서는 수수료 금액과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법에 따라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 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

해양부장관이 제7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 기관에 내야 한다(법률 제80조). 시행규칙 제102조제1항은 별표 7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수수료 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수입인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수입증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붙여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제2항). 이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제3항).
[별표 7] <개정 2009.12.2>

## 수수료(제 102 조제 1 항 관련)

| 납부자 | 금 액 |
| :---: | :---: |
| 1. 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 <br> 2. 법 제7조 본문에 따라 수송시설의 확인신청을 하는 자 <br> 3.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 개시일의 연기 또는 기간연장신청을 하는 자 <br> 4. 법 제 8 조제 1 항 - 제 2 항 또는 법 제 41 조제 1 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 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 <br>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 요금 <br>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사용료 <br> 5. 법 제 9 조제 1 항, 법 제 31 조제 1 항 및 법 제 40 조제 1 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 를 하려는 자 <br> 가. 운송약관 <br> 나. 대여약관 <br>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br> 6. 법 제 10 조제 1 항 - 제 2 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 고를 하려는 자(법 제 35 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 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을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 1 건당 기본 14,000 원에 자 동차 1 대당 2,000 원씩을 합 산한 금액 <br> 1건에 6,000원 <br> 1건에 3,200원 <br> 1 건에 1,000 원 <br> 1 건에 4,000원 <br> 1건에 1,400 원 <br> 1 건에 1,400 원 <br> 1건에 4,000원 |


| 납부자 |
| :--- |
| 가. 증차 |
| 나. 운행계통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운행계통별 운행 |
| $\quad$ 시간의 변경 |
| 다. 자동차의 총 대수 • 승차정원의 변경 또는 차고 • |
| $\quad$ 정류소 • 영업소의 변경 |
| 라. 운행계통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운행시간의 변경 |
|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 | 를 위탁하려고 신고하는 자(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 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고 허가를 신 청하는 자를 포함한다)

8. 법 제 14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운송사업자인 법 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 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 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 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양도.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9. 법 제 15 조제 1 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 35 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 48 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 는 자 및 법 제49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10. 법 제 16 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1 건당 기본 5,000 원에 자동 차 1 대당 2,000 원씩을 합산 한 금액
1 건에 2,000원

1건에 2,000 원

1 건에 1,400 원
1 건에 1,400원

1건에 3,000원

1 건에 3,000 원

1 건에 1,400 원

일부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하려는 자(법 제 35 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 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 48 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법 제49 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 납부자 | 금 액 |
| :---: | :--- | :--- |
| 11. 법 제 28 조제 1 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br> 하려는 자 | 1 건당 기본 14,000 원에 자 <br> 동차 1 대당 2,000 원씩을 합 <br> 산한 금액 |
| 12. 법 제 36 조제 1 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으 <br> 려는 자 | 1 건에 20,000 원 |

(8)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76조제6호는 제27조에 따른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임시운행허가권자인 국토 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 156 조는 별표 30 에서 임시운행허가에 대하여 1 대당 1 천 800 원의 수수료액을 정하고 있다. 수수료는 시행령 제 17 조제 3 항제 17 호에 따라 해당 업무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시•군 또는 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공무상 필요(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 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와 재 해의 발생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9) 지하수법

법률 제 33 조는 지하수개발 - 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 7 조제 1 항 - 제 6 항, 제 13 조제 1 항제 1 호)의 신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 는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본문 및 제1호•제2호). 허가를 신 청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는 근 거를 두고 있다(단서).

시행규칙 제 33 조제 1 항은 법 제 7 조제 1 항과 제 1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제 1 호 • 제 3 호)는 3 만원의 허가 수수료액을 규정하고 있고, 제 2 호는 기간연장허가를 포함한 법 제7조제6항의 규 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 이용의 변경허가는 1 만 7 천원의 수수료액을 정 하고 있다.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2항).
(10) 하천 법

법률 제 89 조는 하천법상의 허가(제 30 조 • 제 33 조 • 제 38 조 • 제 50 조)를 받으려면,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공 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수수료 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 37 조제 5 항제 1 호(점용료 감면규정)를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41조제 1 항에서 법 제 89 조제 1 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6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수수료는 현금이나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

제 3 장 현행 법령상 수수료 현황분석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항). 허가권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제3항).
[별표 6]

> 허가수수료의 기준(제41조제1항 관련)

| 사항별 |
| :--- |
| 1. 법 제 30 조제 1 항에 따른 하천공사 또는 |
| 하천의 유지 • 보수에 관한 허가 |
| 2. 법 제 33 조제 1 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
| 가.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 |
| 나.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그 밖의 | 토지의 형질변경

다. 하천시설의 점용 및 토석•모래•자 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 취

라. 토지의 점용, 스케이트장•유선장• 도선장의 설치, 식물의 식재, 수상레 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또는 선박 의 운항
3. 법 제 50 조제 1 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 가의 신규 또는 변경
4. 법 제 38 조제 1 항에 따른 하천예정지 안 에서의 행위허가
가.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다. 죽목(竹木)의 식재
5.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허가를 받는 경우
(11) 항만법

법률 제 93 조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 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 고 있다. 시행규칙 제33조는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허가신청(법률 제9조제2항)과 예선업의 등록신청(법률 제32조)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제1항). 수수료는 5 천원으로 하고, 수입인지 또 는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 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3항).

시행령 제 91 조제 1 항제 39 호는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그 권한을 지 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 (12) 해운 법

법률 제52조는 이 법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52 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수 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 만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3항).
[별표 6]
수수료(제29조제1항 관련)

| 구 분 | 수수료 금액 |
| :--- | :---: |
| 1. 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 |  |
| 가.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1만원 |
| 나.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2만원 |
| 다. 순항 여객운송사업 | 2만원 |
| 라.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 2만원 |


| 구 분 | 수수료 금액 |
| :--- | :---: |
| 2. 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 |  |
| 가. 내항 화물운송사업 | 1만원 |
| 나.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 | 2만원 |
| 3. 해운중개업등 등록신청 | 3천원 |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65조는 이 법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려 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려면 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 - 도지사가 위탁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기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규칙 제58조는 별표7에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수수료 중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하고, 시 • 도지사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영 제14조에 따라 시•도지사 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별표 7] <개정 2010.12.29>

> 수수료(제58조 관련)

| 납부자 | 수수료 |
| :--- | :--- |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br> 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 1 건당 기본 14,000 원에 차량 1 대 <br> 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
| 2. 법 제 3 조제 3 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 <br> 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 1 건당 기본 5,000 원(증차를 수반 <br> 하는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에 <br> 는 기본 5,000 원에 증차된 차량 1 <br> 대당 2,000 원씩을 합산한 금액) |


| 납부자 | 수수료 |
| :--- | :--- | :--- |
| 3. 법 제 5 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br>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
| 4. 방 제 3 조(법 제28조 및 제 33 조에서 준용하는 |  |
|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약관의 당 2,000 인고 또는 |  |
|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


| 납부자 | 수수료 |
| :--- | :--- |
| 15. 제 37 조제 1 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 <br> 업의 영업소 허가를 받으려는 자 | 1 건당 16,000 원 |
| 16. 제41조의 6 제 2 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 <br> 사업의 영업소 허가를 받으려는 자 | 1 건당 기본 30,000 원에 직접 소유 <br> 하는 차량 1 대당 2,000 원씩을 합 <br> 산한 금액 |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41조제 1 항제 2 호는 게임제공업(허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등록)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의 허가•변경허가를 받 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에 대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게임제공업(등록)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규정이 없다. 하 지만, 수수료 규칙에는 규정하고 있다.

예시) 창원시 수수료 규칙 : 청소년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당 20,000 원), 청 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당 5,000원),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 청(1건당 20,000 원), 변경허가신청( 1 건당 5,000 원)

예시) 천안시 수수료 규칙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예시) 노원구 수수료 규칙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1건당 30,000 원), 변경 허가( 15,000 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1건당 20,000 원), 변경등록 (1건당 10,000 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1건당 20,000 원), 변경 등록( 10,000 원), 인테넷컴퓨터게입시설제공업 등록(1건당 20,000 원), 변경등록 ( 1 건당 10,000 원)
(15) 관광진흥법

법률 제79조제3호는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고수수료 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에서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허가 수수료는 해당 시• 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시) 노원구 수수료 조례 : 종합유원시설업 허가(1건당 60,000원), 변경허가(1건당 30,000 원), 일반유원시설업 허가(1건당 30,000 원), 변경허가(1건당 15,000 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1건당 30,000 원), 변경신고( 15,000 원)
예시) 천안시 수수료 조례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조건부영업 허가 신청서) [1건당 40,000원], 유원시설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허가 사항 변경신고서) [1건당 20,000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1건당 20,000 원), 변경신고( 10,000 원)
예시) 창원시 수수료 조례 : 유원시설업(종합•일반)허가신청(1건당 50,000 원), 유원시설업(종합 - 일반)허가변경신청(1건당 25,000 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1건당 25,000 원), 변경신고(13,000원)
(16) 저작권법

법률 제132조제3호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신청•신고수수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23조 는 수수료 금액은 별표로 정하고 있다. 별표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 10,000 원),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5,000원) 등이다.
(17) 관세법
(1)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수수료

법률 제 134 조는 외국무역선의 선장이나 외국무역기의 기장이 개항 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 62 조제 1 항은 개항이 아 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외국무역선의 경우에는 1 회 출입에 대하여 당해 선박의 순톤수 1 톤당 100 원으로 하 고, 외국무역기의 경우에는 1 회 출입에 대하여 당해 항공기의 자체무 게 1 톤당 1 천 2 백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50 만원을 초 과하지 못한다.

세관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출입허가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입항하는 경우, (2) 급병환자, 항해중 발 견한 밀항자, 항해중 구조한 조난자•조난선박•조난화물 등의 하역 또는 인도를 위하여 일시입항하는 경우, (3) 위험물품 • 오염물품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의 취급, 유조선의 청소 또는 가스발생선박의 가스 제거작업을 위하여 법령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등이다. 세관장은 영 제 156 조제 1 항제 3 호의 기 간이 개시되기 전날까지 당해 출입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2)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수수료

법률 제 156 조제 1 항은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 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 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허 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 65 조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는 1 만 8 천원으로 한 다. 이 경우 동일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 수입된 동일한 화주의 화물을 동일한 장소에 반입하는 때에는 1 건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신청으로 보아 허가수수료를 징수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면제한다.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보 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일괄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수수료

법률 제 174 조제 1 항은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 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고,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 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 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 여야 한다(제2항).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은 특허신청 수수료는 4만5천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174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세공장과 목재만 장 치하는 수면의 보세창고에 대하여는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4분 의 1 로 한다(제 2 항). (1)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 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7만2천원, (2)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 천제곱미터 이상 2 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0 만 8 천원, (3) 특허보세구 역의 연면적이 2 천제곱미터 이상 3 천 5 백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4 만4천원, (4)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3 천 5 백제곱미터 이상 7 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8 만원, (5) 특허보세구역의 연 면적이 7천제곱미터 이상 1 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22 만5천원, (6)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 만 5 천제곱미터 이상 2 만 5 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29 만 1 천원, (7) 특허보세구역의 연면 적이 2 만 5 천제곱미터 이상 5 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36 만원, (8)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5 만제곱미터 이상 10 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43 만 5 천원, (9)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0 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매 분기당 51 만원 등이다.

특허수수료는 분기단위로 매분기말까지 다음 분기분을 납부하되, 특 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은 날이 속하는 분기분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운영인이 원하는 때에는 1 년 단위로 일 괄하여 미리 납부할 수 있다(제3항). 특허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은 날의 상태에 의하되,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 일의 상태에 의한 다(제4항).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수수료납부 후에 변경된 경우 납 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증가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5일 내에 그 증가분을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감소한 때에는 그 감소분을 다음 분기 이후에 납부하는 수수 료의 금액에서 공제한다(제 5 항). 영 제19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 구역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외국물품 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다음 분기의 특허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휴지 또는 폐지를 한 날이 속하는 분기분의 특허수수료는 이를 환급 하지 아니한다(제6항).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공관이 직접 운영하는 보 세전시장에 대하여는 특허수수료를 면제한다(제7항).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특허신청서 등 에 첨부하여야 한다(제8항).
(4) 항외 하역 허가수수료

법률 제 142 조는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제 1항), 선장에게 허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시행규칙 제63조는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는 하역 1 일마다 4 만 원으로 이지만，수출물품（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 서 제조•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하역 인 경우에는 하역 1 일마다 1 만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 3 조제 1 항은 군용선이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 는 물품을 싣고 있을 때에는 그 물품의 무게가 모든 적재물품의 무게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관세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선 박의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상당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을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로 징수한다．군 용기가 「관세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개항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외 국을 왕래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을 준용한다（제 2 항）．제 1 항 및 제 2 항을 적용받으려는 군용선의 선장 또는 군용기의 기장은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군용선 또는 군용기임을 세관에 증명하여야 한다（제 3 항）．
（19）주세법 시행령
시행령 제67조제 1 항은 법률 제 6 조제 1 항（주류제조면허），제 7 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제 8 조제 1 항（주류 판매업면허），제 19 조제 2 항（주 류제조관리사）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수수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 10 조의 2 는 시행령 제 6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1）주 류제조면허 ：5만원，（2）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5 만원，（3）주류

판매업면허 : 가. 종합주류도매업 • 특정주류도매업 • 주정도매업 • 주류 수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5만원, 나. 주류소매업 : 3만원
(20) 내수면어업법

이 법에 따른 면허160) 또는 허가161)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23조).

예시) 창원시 수수료 조례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1건당 2,000원), 내수 면어업 면허신청(1건당 5,000 원)

예시) 사천시 수수료 조례 : 내수면 어업허가(1건당 4,000원), 내수면 어업면허(1건당 5,000 원)
(21) 농지법

법률 제 56 조는 제 34 조(농지의 전용허가)나 제 36 조(농지의 타용도 일 시사용허가•변경허가)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74조제 2 호는 법 제 34 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및 법 제 43 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 5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 만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 천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 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 가의 신청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 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 만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 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 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 제곱미터마다 1 천원을 가산한 금액 등이다.

[^14]수수료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해당 농지원부를 작성 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 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약사법 제82조는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등록•신고•승인•지 정, 사전검토,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 광고심의 신청을 하려는 자, 신 제품의 기준을 정하거나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의료기기법 제50조162)의 수수료(1)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 변경, (3) 이 법에 따라 기술문 서,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재심 사, (4) 제 11 조에 따라 사전 검토, (5) 제 25 조에 따라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 심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칙에 두 조항의 수수료를 별표4에 정하고 있다(규칙 제56조제 1항). 수수료는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4조 또는「의료기기법」 제44163)조에 따 라 시•도지사등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수 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 로 납부하여야 한다.
162) 규칙에는 의료기기법 제 42 조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규정의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163) 규칙에는 의료기기법 제 37 조로 규정하고 있다.
[별표 4] <개정 2008.5.19>

##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등의 수수료(제56조관련)

1.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 3 만원
2.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소재지 또는 시설의 변경허가•신고 : 2만원
3.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 및 수입품목 허가(품목당) : 1 만원
4.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 및 수입품목의 변경허가•신고(품목당) : 5천원
5. 동물약국 개설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 : 1 만원
6.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 2 만원
7.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변경신고) : 1 만원
8. 허가증•등록증 재교부신청 : 1 천원
9. 기타 그밖의 허가•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5 천원
10. 제조관리자등의 승인 및 변경신고 : 1 천원
11. 동물용의료기기의 수입업허가 : 3 만원
12. 동물용의료기기의 수리업신고 : 1 만원
13. 허가사항 영문증명 : 5천원
14.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1 만원
(23) 수산업법

법률 제94조는 이 법에 따른 면허(외국인에 대한 어업면허, 면허어 업, 마을어업 등의 면허, 협동양식어업면허, 외해양식어업면허, 한정어 업면허)•허가(외국인에 대한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하가, 허가어 업, 한시어업허가) • 승인•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예시) 사천시 수수료 조례 : 어업면허 신청(1건당 5,000원), 어업면허 연장 허가신청(1건당 5,000 원)
예시) 창원시 수수료 조례 : 어업면허 신청(1건당 5,000원),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1건당 3,000원)
(24) 수의사법

법률 제 38 조는 (1) 제 6 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을 재발급, (2) 제 32 조 제3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다시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28조는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 려는 사람 및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2천원으로 하고 있다.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도록 하고 있다 (제2항).
(25)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제31조는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 고를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 입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 31 조제 1 호는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원양 어업허가 신청은 건당 4천원으로 하고 있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승인 신청은 건당 2 천원으로 하고 있다.
(2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0 조제 6 항은 조교사 또는 심판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경 기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시행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로부터 조교사 또는 심판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경기시행자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8항).

시행규칙 제 12 조는 조교사의 면허수수료는 별표 2 에서 정하고 있다
[별표 2]
등록 및 면허수수료(제12조관련)

| 등록사항 |  | 금 액 (원) |
| :---: | :---: | :---: |
| 조교사 및 심판 | 면 허 | 15,000 |

## (27) 축산물위생관리법

법률 제 41 조는 제 22 조제 1 항 164 )(영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및 제2항165) (변경사항의 허가에 관한 사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제12호)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164) 제 22 조 (영업의 허가) (1) 제 21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축 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5) (2) 제 1 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 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제 21 조제 1 항제 1 호의 도축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같은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같은 작업장에서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 65 조는 영업의 허가수수료는 별표 15 에서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신용 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 법으로 내야 한다.
[별표 15]
허가 등 수수료(제60조관련)

| 구 분 | 수수료 |
| :--- | :--- |
| 1. 영업의 허가 및 신고 | 1만원 |
| 2.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1만원 |
| 3. 허가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 5천원 |
| 4. 허가증 및 신고증의 재교부 | 5천원 |

허가와 신고에 관한 수수료의 금액을 동일하게 정하는 것은 규제수 수료의 금액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28) 축산법

법률 제49조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시행규칙 제 51조는 가축인공수정사면허 수수료는 6천원(제1호)이다.
(29)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66조는 제38조제1항(물질의 제조 및 사용허가)에 따른 허가 를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규 정하고 있다(제 1 항제 7 호). 시행규칙 제 145 조는 허가수수료는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수수료 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제2항).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노동부고시 제2009-38호)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제4호).
(단위 : 원)

| 구 분 | 제조 등 허가수수료 |
| :--- | :--- |
| 허가신청 사업장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와 동일한 시 <br>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7,900 |
| 기타의 경우 | 32,000 |

허가수수료의 고시규정을 시행규칙의 별표로 정하는 것이 적절.
(3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40 조는 제 7 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와 제 10 조(갱신허가)의 허가를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 20 조는 수수료의 금액은 (1) 신규허가 : 3 만원, (2) 변경 허가 : 2 만원, (3) 갱신허가 : 1 만원으로 하고,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 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31)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 87 조는 이 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 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국제 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이나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협정 등 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제2항). "그 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 는 대한민국의 기관 또는 단체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인도주의적 차원 에서 초청한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허가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수수 료의 면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대한민국정부，「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등이 학비 등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초청한 외국인이 영 별표 1 중 10 ． 문화예술（D－1），11．유학（D－2）또는 13．일반연수（D－4）에 해당하는 체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재입 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3）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외교（A－1）내지 3．협정（A－3）또는 체류자격 17．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4）전자문서로 제 72 조제 11 호•제 12 호의 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 하는 경우，（5）국가이익이나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 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이 규정과는 별 도로 시행규칙 제32조는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 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와 출 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로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제3항）

시행규칙 제71조는 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제11조제1항（단 체사증의 발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한다）를 정하고 있다．（1）단수사증 ：체류기간 90 일이하［미합중국통화 （이하＂미화＂라 한다） 30 불상당의 금액］，체류기간 91 일이상（미화 50 불 상당의 금액），（2）복수사증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미화

60 불 상당의 금액), 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미화 80 불 상당의 금액) 등이다. 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 하는 때의 심사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상당금액으로 한다(제2항). 재 외공관의 장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수수료를 주재국의 통화로 징수하는 때에는 환시세의 변동을 감안하여 그 기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주재국의 공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대사가 이를 정한다(제 3 항). 재 외공관의 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제4항).

시행규칙 제72조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 국사실증명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하는 입국허가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의 발급 4만원(영 제 10 조제 4 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 만원), (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6만원[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1. 유학(D-2) 또는 13. 일반연 수(D-4)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시간제 취업 허용 등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 만원,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을 가 지고 있는 경우에는 3 만원)], (3) 근무처의 변경 • 추가허가 6 만원, (4) 체류자격부여 4만원[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 또는 28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만원], (5) 체류자격변경허가 5 만 원, (6) 체류기간연장허가 3 만원[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만원], (7) 단수재입국허가 3 만원, (8) 복수재입국허가 5 만원, (9)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미화 20 불상당의 금액, (10) 외국인등록증발급 및 재발급 1 만원, (11)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1통당) 1 천원, (12) 외국인등록사실증명(1통당) 1 천원, (13) 난민여행 증명서발급 및 재발급 1 만원, (14)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미화 5 불상당의 금액 등이다.

시행규칙 제73조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정하고 있다. (1) 출입국관 리사무소•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다만, 외국 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2) 시•군•구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3) 재외공 관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이다.
(32)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 31 조는 승인•허가•검사 또는 교육 등을 받고자 하거나 등 록 또는 신고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 는 교육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제5조제2항제 1 호의 규정 에 따른 임시저장•취급의 승인 수수료, (2) 제 6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 른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수수료, (3) 제 8 조의 규정에 따 른 제조소등의 탱크안전성능검사 수수료, (4)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 조소등의 완공검사 수수료, (5) 제 10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수수료, (6) 제 16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수수료, (7) 제 16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수수료, (8) 제 18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 (9) 제 20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의 검사수수료, (10) 제 28 조의 규정 에 따른 안전교육비 등이다.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은 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25 에서 정하고 있다.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당해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시에 당 해 허가 등의 업무를 직접 행하는 기관에 납부하되, 시 -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 시 • 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 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2항).
[별표 25] <개정 2008.12.18>

## 수수료 및 교육비(제79조제1항관련)

1. 법 제 5 조제 2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은 승인 : 2 만원
2. 법 제 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 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 구 분 |  |  |  |  |  | 수수료(원)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제 } \\ & \text { 조 } \\ & \text { 소 } \end{aligned}$ | 지정수량의 <br> 3,000 배 미만인 것 |  | 지정수량의 10 배 이하인 것 |  |  | 4만원 |
|  |  |  | 지정수량의 10 배 초과 50 배 이하인 것 |  |  | 5만원 |
|  |  |  | 지정수량의 50 배 초과 100 배 이하인 것 |  |  | 6만5천원 |
|  |  |  | 지정수량의 100 배 초과 200 배 이하인 것 |  |  | 7만5천원 |
|  |  |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3,000배 미만인 것 |  |  | 9만원 |
|  | 지정수량의 <br> 3,000 배 이상인 것 |  | 구조•설 비의 기술 검토 |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 기준공량(지정수량 의 3천배 이상 1 만배 미만) |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 른 엔지니어 링사업 대가 의 기준의 실 비정 액가 산방식을 적 용하여 산출 한 금액 |
|  |  |  |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 (특급기술자) | 0.25 |  |
|  |  |  | 제조•취급시설의 설계 심사(고급기술자) | 0.80 |  |
|  |  |  | $\begin{aligned} & \text { 소화설비의 } \\ & \text { (겁급계심사술자) } \end{aligned}$ | 1.32 |  |
|  |  |  | 보고서작성 및 <br> 기록관리(중급기술자) | 0.25 |  |
|  |  |  | 기타사항의 심사 | 2만원 |  |
| 저장소 | 옥내 <br> 저장소 |  |  | 지정수량의 10 배 이하인 것 |  |  | 2만원 |
|  |  |  | 지정수량의 10 배 초과 50 배 이하인 것 | 2만5천원 |  |
|  |  |  | 지정수량의 50 배 초과 100 배 이하인 것 | 4만원 |  |
|  |  |  | 지정수량의 100 배 초과 200 배 이하인 것 | 5만원 |  |
|  |  |  |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 6만5천원 |  |
|  |  | 특정옥외 |  | 지정수량의 100 배 이하인 것 |  |  | 2만원 |
|  | 탱크 |  |  | 지정수량의 100 배 초과 10,000 배 이하인 것 |  |  | 2만5천원 |
|  |  | 탱크 저장소 <br> 외의 것 |  | 지정수량의 10,000 배를 초과하는 것 |  |  | 4만원 |


| 특정 <br> 옥외탱크 <br> 저장소 및 <br> 준특정 <br> 옥외탱크 <br> 저장소 | 기초•지 <br> 반 및 <br> 탱크 <br> 본체의 <br> 기술 <br> 검토 | 기술인력별 <br> 구분 작업 <br>   <br>   <br> 기술협의 및 서류 <br> 감토 (특급기술자) 0 |  | 기준공량 (1백만 $\ell$ 이상 3 백만 $\ell$ 미만) |  |  | 「엔지니어링기 <br> 술 진홍법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begin{gathered} \text { 탱크본글 } \\ \text { 심사 } \end{gathered}$ | $\begin{array}{l\|l} \text { 체 } & \begin{array}{l} \text { 기초 } \\ \text { 지반 } \\ \\ \text { 심사 } \end{array} \end{array}$ | 제 10 조에 따 른 엔지니어 링사업대가의 |
|  |  |  |  | 0.250 | 0.125 | 0.125 | 기준의 실비 정액가산방식 |
|  |  | 기초•지반의 설게 심사 (고급기술자) |  | 1.250 | 0 | 1.250 | $\begin{aligned} & \text { 을 적용하여 } \\ & \text { 산출한 금액 } \end{aligned}$ |
|  |  | 탱크구조등의 실 <br> 심사 (고급기술자) | 쳘계 | 0.833 | 0.833 | 0 |  |
|  |  | 보고서작성 및 기 관리 (중급기술지) |  | 0.291 | 0.125 | 0.166 |  |
|  |  | 용량이 50만 $\ell$ | 이상 | 상 100 | 만 $\ell$ 미 | 만인 것 | 6만원 |
|  |  | 용량이 100만 $\ell$ | 이상 | 상 500 | 만 $\ell$ 미 | 만인 것 | 8만원 |
|  | 기타 | 용량이 500만 | 이상 | 1,000 | 만 $\ell$ 미민 | 만인 것 | 10 만원 |
|  |  | 용량이 1,000만 $\ell$ | 이상 | 5,상 5,00 | 0만 $\ell$ 미 | 미만인 것 | 12만원 |
|  |  | 용량이 5,000 | 이상 | 이상 1 윽 | 억 $\ell$ 미만 | 만인 것 | 14만원 |
|  |  |  | 이상인 | 인 것 |  |  | 16만원 |
|  |  | 기술인력별 |  | $\begin{gathered} \text { 준공량 } \\ \text { 4억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량(탱크용 } \\ & \ell \ell \text { 미만) } \end{aligned}$ | 용량이 |  |
|  |  | 작업구분 | 합계 |  | $\begin{aligned} & \text { 븡본체 } \\ & \text { 심사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기초지반 } \\ & \text { 심사 } \end{aligned}$ | r 엔지니어링 |
|  | 기초. <br> 지반 및 | 기술협의 및 <br> 서류검토 (특 <br> 급기술자)  <br> 강․  | 2.000 |  | 1.000 | 1.000 | 기술 진흥법」 제 10 조 에 따른 엔지니 |
| 암반탱크저장소 | 탱크 <br> 본체의 <br> 기술 | $\begin{aligned} & \hline \text { 기초•지반의 } \\ & \text { 설계심사 } \\ & \text { (고급기술자) } \\ & \hline \end{aligned}$ | 7.541 |  | 0 | 7.541 | 어링사업대 가의 기준의 실비정 액가 |
|  |  | $\begin{aligned} & \text { 탱크구조등의 } \\ & \text { 설계심사 (고 } \\ & \text { 급기술자) } \end{aligned}$ | 6.541 |  | 6.541 | 0 | 산방식을 적 용하여 산출 한 금액 |
|  |  | $\begin{aligned} & \text { 보고서작성 및 } \\ & \text { 기록관리 (중급 } \\ & \text { 기술자) } \end{aligned}$ | 0.500 |  | 0.250 | 0.250 |  |

제 3 장 현행 법령상 수수료 현황분석


비 고

1. 지정수량 3,000 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수수료는 이 표에 정하는 기술 검토에 대한 수수료와 기타사항의 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지정수량 3,000 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 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대한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의 기준공량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취급량별 또는 탱크의 용량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얻은 표준공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 천원 미만은 버리며,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중 기 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심사에 대한 것은 각각 190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취급량별 보정계수

| 취급량(단위 kl 또는 ton) | 보정계수 |
| :---: | :---: |
| 1,000 이하 | 1.00 |
| 1,000 초과 1,500 이하 | 1.15 |
| 1,500 초과 2,000 이하 | 1.34 |
| 2,000 초과 | 1.56 |

(비고) 지정수량의 단위가 다른 2 이상의 위험물에 있어서는 1 kg 을 $1 \ell$ 로 본다.
나. 특정옥외탱크저장소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 탱크용량( $\ell$ ) | 보정 <br> 계수 | 탱크용량 | 보정 <br> 계수 | 탱크용량 | 보정 <br> 계수 |
| :---: | :---: | :---: | :---: | :---: | :---: |
| 5십만-1 백만 미만 | 0.58 | 3천만-4천만 <br> 미만 | 4.42 | 9천만-1억 미만 | 9.48 |
| 1백만-3백만 미만 | 1.00 | 4천만-5천만 <br> 미만 | 5.22 | 1억-1억1천만 <br> 미만 | 9.97 |
| 3백만-6백만 미만 | 1.42 | 5천만-6천만 <br> 미만 | 6.21 | 1억1천만-1억2천만 <br> 미만 | 10.06 |
| 6백만-1천만 미만 | 2.36 | 6천만-7천만 <br> 미만 | 7.36 | 1억2천만 이상 | 11.6 |
| 1천만-2천만 미만 | 3.03 | 7천만-8천만 <br> 미만 | 8.03 |  |  |
| 2천만-3천만 미만 | 3.75 | 8천만-9천만 <br> 미만 | 8.81 |  |  |

다. 암반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 탱크용량 | 보정계수 |
| :---: | :---: |
| 용량이 4억 $\ell$ 미만인 것 | 1.00 |
| 용량이 4 억 $\ell$ 이상 5억 $\ell$ 미만인 것 | 1.26 |
| 용량이 5 억 $\ell$ 이상인 것 | 1.86 |

3. 제 2 호의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 10 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노임단가에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하고, 직접 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 $\times 20 \%$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 $\times 110 \%$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 경비 $) \times 20 \%$
4. 동일한 시기에 설치장소와 설계조건이 동일한 2 개 이상의 제조소•일반취급소 또는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외의 나머지 대상에 대한 기술검토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한다.

나.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 가목에 정하는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 / 2$ 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변경이 있는 구조•설 비•기초•지반 또는 탱크본체에 대한 설치허가에 따른 기술검토 수수료의 $1 / 2$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3) 소하천정비법

법률 제 22 조는 제 10 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 14 조에 따 른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 3 항). 관리청은 제 10 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 14 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항). (1) 공용 . 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5항).
(3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 42 조는 허가•신고•신청•검사 등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제5 조제 1 항에 따른 영업허가•변경허가 또는 같은 조 제 2 항에 따른 변경 신고, (2) 제6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3) 제 7 조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또는 변경신고, (4) 제 8 조제 1 항부터 제 3 항 에 따른 수입신고, 검사 또는 수입건강기능식품사전확인등록 신청, (5) 제 14 조제 2 항 또는 제 15 조제 2 항에 다른 기준•규격 및 원료 등의 인정 을 위한 검사, (6)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기능성표시•광고 심의 신청, (7) 제 21 조제 2 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의 위탁 검사, (8) 제 22 조제 2 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지정 신청, (9) 제 22 조의 2제 1 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 등이다.

시행규칙 제 35 조제 1 항에서 수수료는 별표11에서 정하고 있다. 수수 료는 허가•신고•신청•검사 등의 해당 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 입인지로, 허가•신고•신청•검사 등의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제2항).
[별표 11] <개정 2011.4.1>
수수료(제 35 조관련)

| 구 분 | 수수료 |
| :--- | :--- |
| 1. 영업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  |
| 가. 영업허가(신규) | 50,000 원 |
| 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 30,000 원 |
| 다. 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 | 5,300 원(전자정부법」 제9조 |
|  |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 <br> 민원창구를 통한 신청의 경우 <br>  <br> , 000 원) |


| 구 분 |
| :--- |
| 2.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
| 가. 영업신고(신규) |
| 나. 변경신고 |
| 다.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 |

3. 품목제조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 품목제조신고
나. 변경신고
다. 품목제조신고증 재교부신청
4. 수입신고, 검사 또는 수입건강기능식품 사전확인 등록신청
가. 수입신고
나. 수입검사

다. 사전확인등록신청
(1) 신규등록
(2) 변경등록
5. 기준•규격의 인정을 위한 신청
6. 기능성 원료•성분의 인정을 위한 신청
7. 기능성 표시•광고심의 신청
8.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

28,000원
9,300원(소재지 변경을 포함 하는 경우 26,500 원)
5,300원

20,000원
10,000 원
5,300원

20,000원
식품의약품안 전 청 및질 병 관리 본부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시험수수료액표에 의한다. 다 만, 별표 2 제 1 호다목(2)•(3)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건강기능 식품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건강기 능식품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28,000원(다만, 현지실사에 소 요되는 국외여비 등 경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7,000 원
100,000 원(다만, 검사에 필요 한 별도의 수수료는 식품의약 품안전청및질 병 관리본부시험 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시험수 수료액표에 의한다)
100,000 원
100,000 원
식품위생법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각 식품위생검사 기관의 수수료규정에 의한다.

| 구 분 | 수수료 |
| :--- | :--- |
| 9.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 지정 |  |
| 가. 신규신청 | 200,000 원 |
| 나. 변경신청 | 100,000 원 |
| 10.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9,300 원 |
| 11. 영문증명신청 | 각 2,000 원 |

(35)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재 19 조의 2 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 10 조의 2 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 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금액은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2) 이 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 등 이다.
(36) 식품위생법

법률 제 92 조는 (1) 제 18 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는 자, (2) 제 19 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 24 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지 정을 신청하는 자, (4) 제 37 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자, (5) 제 48 조제 3 항(제 88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해요 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 49 조제 1 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7) 제53조에 따른 조 리사 면허를 받는 자, (8)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97조는 별표 26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수 수료는 허가관청, 면허관청 또는 신고•신청 등을 받는 관청이 국가 인 경우에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단서).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 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제2항).
[별표 26] <개정 2011.4.7> 수수료(제97조 관련)

1. 영업허가 및 신고 등

○ 신규: 28,000원
○ 변경: 9,300원(소재지 변경은 26,500 원으로 하되, 영 제 26 조제 1 호 및 제94조제5항의 변경사항인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조건부영업허가: 28,000 원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28,000 원
$\bigcirc$ 허가증(신고증) 재발급: 5,300원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9,300원
2. 지정 등 신청

유전자재조합식품안전성 평가 신청: 4,000,000원
$\bigcirc$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변경)신청: 28,000원(국외여비는 별도) ※ 국외여비는 공무원국외여비기준에 따라 별도 징구
○ 우수수입업소 등록(변경)신청: 28,000원
$\bigcirc$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 100,000 원
$\bigcirc$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지정:

- 신청: 200,000원
- 변경(소재지, 중요관리점): 100,000 원

3. 조리사면허

인규: 5,500원
$\bigcirc$ 면허증 재발급: 3,000 원
$\bigcirc$ 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 890원
4. 식품등의 수입신고

가. 검사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에서 정하는 시험수수료액표에 따른다.
나. 수수료의 면제

1) 검사수수료 면제

가) 별표 4 제2호다목 2) 및 5)에 해당하는 식품등
나) 별표 4 제 2 호라목에 해당하는 식품등
다) 별표 4 제 3 호가목제 4 호에 따라 정밀검사를 하는 식품등
(3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55 조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 허가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나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 규칙 제51조는 허가 또는 지정신청 등을 하려는 자, 허가 또는 지정사 항을 변경신청하려는 자,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 는 법 제 55 조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허가관청에 납부하 여야 한다(제1항). 수수료는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장의 소관 업무인 경우 : 현금,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 (2)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 업무인 경우 : 수입증지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4] <신설 2008.10.31>
수수료(제 51 조제 1 항 관련)

| 종 목 | 수수료 |  |
| :---: | ---: | ---: |
|  | 전자민원의 경우 | 방문•우편 등의 경우 |
| 1. 마약류취급자 허가 <br> 가.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마약 <br> 류수출입업자 |  |  |



(3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등록•허가•승인을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 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법률 제44조).

시행규칙 제32조는 별표 6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으며, 수수료 납 부방법은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단서).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19 조의 2 제 1 항제 16 호는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별표 6] <개정 2009.12.31>
수수료(제32조 관련)

| 관련 조문 | 대 상 | 수수료 |
| :--- | :--- | :--- |
| 법 제14조제1항 |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 | 10,000 원 |
| 법 제 18 조 | 배아연구기관 등록신청 | 10,000 원 |


| 관련 조문 | 대 상 | 수수료 |
| :--- | :--- | :--- |
| 법 제19조제1항 | 배아연구계획서 승인신청 <br> 배아연구계획서 변경 승인신청 | 10,000 원 |
| 법 제23조제1항 | 체세포복제배아 생성 및 연구기관 등록신청 | 10,000 원 |
| 법 제23조제2항 |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계획서 승인신청 <br>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계획서 변경 승인신청 | 10,000 원 |
|  |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 10,000 원 |
| 법 제24조 | 유전자연구기관 신고 | 10,000 원 |
| 법 제24조 | 유전자은행 허가신청 | 10,000 원 |
| 법 제32조제1항 |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 10,000 원 |
| 봅조제1항 |  | 10,000 원 |

(39) 약사법

이 법에 따른 면허•면허증의 재교부•허가•등록•검정•재검정• 재생판매•광고심의 신청 또는 신제품의 기준을 정하거나 시험에 응 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 다. 면허•허가 또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 률 제82조).

시행규칙은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 에 따른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조제2항), 한약업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 에 따른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제53조제2항). 한약업사자 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 에 따른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고(제55조제4항), 한약방의 이전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 에 따 른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제57조제4항).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 에 따른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고(제59조제4 항), 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 에 따른 수수료 를 내도록 하고 있다(제87조제2항). 이 법에 따른 허가사항의 등의 변

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 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1 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어야 하지만(제88조제7항),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항 단서). 면 허증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 에 따른 수수료를 내도록 하 고 있고(제 100 조제 4 항), 면허의 재부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 에 따 른 수수료를 내어야 한다(제102조제2항).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수입인지(약사국가시험, 한약사국가시험 및 한 약조제시험인 경우에는 현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 업무에 관 하여는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수입증지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별표 1] <개정 2009.6.19>
수수료(제 7 조제 2 항, 제 53 조제 2 항, 제 55 조제 4 항, 제 57 조제 4 항, 제 58 조제 2 항, 제 59 조제 4 항, 제 87 조제 2 항, 제 88 조제 7 항, 제 100 조제 4 항, 제 102 조제 2 항, 보건복지부령 제 434 호 부칙 제 6 조제 3 항 및 제 7 항 관련)

| 종 목 | 수수료 |
| :--- | ---: |
| 약국개설등록신청 | 10,000 원 |
|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신청 | 5,000 원 |
| 한약업사(약업사) 허가신청 또는 한약방(약방) 이전 허가신청 | 5,000 원 |
| 한약업사(약업사) 자격증 발급신청 | 1,000 원 |
| 한약업사시험 응시 | 5,000 원 |
|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 20,000 원 |
| 의약품 도매상 허가사항 변경신청 | 10,000 원 |
| 면허증등의 재발급신청 | 2,000 원 |
|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의 재부여 신청 | 2,000 원 |
| 약사면허증 또는 한약사면허증의 국문•영문 증명 | 500 원 |

(40) 공중위생관리법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법률 제19조의2). 수수료는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시행령 제10 조의 2 본문), 그 금액은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 는 경우 : 5 천 500 원,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 천원 등이다(단서).
(41) 의료기기법

법률 제42조는 (1)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2) 이 법에 따 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변경, (3) 제 23 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 기에 대한 광고심의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 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39조는 별표 8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본문). 다만, 허 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써 변경의 사유가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등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책임없는 경 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단서). 수수료를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때에 는 수입인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는 현금 또는 현 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 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제2항).
[별표 8] <개정 2010.12.13>

> 수수료액(제39조제1항 관련)

| 종 목 | 전자민원의 경우 | 방문•우편민원의 경우 |
| :--- | ---: | ---: |
| 1. 제조•수입업 허가 신청 | 144,000 원 | 160,000 원 |
| 2. 제조•수입업 변경 허가 신청 |  |  |


| 종 목 | 전자민원의 경우 | 방문우편민원의 경우 |
| :--- | ---: | ---: |
| 가. 대표자 변경(양도.양수•상속) | 81,000 원 | 90,000 원 |
| 나. 소재지 변경 | 45,000 원 | 50,000 원 |
| 다. 그 밖의 허가사항 변경 | 27,000 원 | 30,000 원 |
| 3. 제조•수입 품목 허가 신청 |  |  |
| 가. 안전성•유효성의 심사를 요하는 경우 | 402,000 원 | 447,000 원 |
| 나. 기술문서의 심사를 요하는 경우 | 195,000 원 | 217,000 원 |
| 다. 기술문서 등의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 | 42,000 원 | 47,000 원 |
| 하는 경우 |  |  |
| 4. 제조•수입 품목 신고 | 35,000 원 | 39,000 원 |
| 5. 기술문서 등 심사 |  |  |
| 가. 안전성•유효성 심사의 경우 | 360,000 원 | 400,000 원 |
| 나. 기술문서 심사의 경우 | 153,000 원 | 170,000 원 |
| 다. 기술문서 변경 심사의 경우 | 117,000 원 | 130,000 원 |
| 6. 재심사 신청 | 90,000 원 | 100,000 원 |
| 7. 제조•수입 품목 허가사항 등의 변경 신청 |  |  |
| 가. 안전성•유효성의 심사를 요하는 경우 | 270,000 원 | 300,000 원 |
| 나. 기술문서의 심사를 요하는 경우 | 148,000 원 | 165,000 원 |
| 다. 기술문서 등의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 | 32,000 원 | 36,000 원 |
| 하는 경우 |  |  |
| 8. 제조•수입 품목 변경 신고 | 23,000 원 | 26,000 원 |
| 9. 수리업 신고 | 45,000 원 | 50,000 원 |
| 10. 수리업 변경 신고 |  |  |
| 가. 대표자 변경(양도.양수•상속) | 32,000 원 | 36,000 원 |
| 나. 소재지 변경 | 27,000 원 | 30,000 원 |
| 다. 그 밖의 신고사항 변경 | 22,000 원 | 25,000 원 |
| 11.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 9,000 원 | 10,000 원 |
| 12.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변경 신고 | 4,000 원 | 5,000 원 |
| 13. 영문증명 바ㄹㅡㅡㅂ | 14,000 원 | 16,000 원 |
| 14. 허가증 재발급 | 1,400 원 | 1,600 원 |
| 15. 광고사전심의 신청 | 해당없음 | 100,000 원 |
|  |  |  |

(42) 먹는 물 관리법

법률 제 56 조는 (1) 제 9 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제 12 조제 2 항에 따른 연장의 허가, (2) 제 15 조에 따른 환경영향조 사 대행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3)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먹는샘물등 의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4) 제 21 조제 2 항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제 21 조제 3 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6) 제 21 조제 4 항에 따른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7) 제 21 조제 5 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8) 제 21 조제 5 항 - 제 36 조제 2 항 및 제 41 조제 2 항에 따른 검사 등을 받으려면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 44 조제 1 항은 (1) (7)의 수수료는 별표 10 에서 정하고 있 다(제1항). (8)의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항). 수수료는 그 허가•등록•신고 또는 지정기관이 지방환경관 서의 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그 지 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8조제 1 항 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제 3 항).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 2 항에 따른 검사수수 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 일(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 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사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산정명세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 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제4항).
[별표 10] <개정 2011.3.23>
수수료(제44조 관련)

| 종 별 | 근거조문 | 수수료 |
| :--- | ---: | :---: |
| 1. 샘물등의 개발 허가•변경허가 또는 연장허가 | 법 제9조 | 50,000 원 |
| 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 법 제15조 | 50,000 원 |
| 3.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 | 법 제15조 | 30,000 원 |
| 4.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 | 법 제21조제1항 | 50,000 원 |
| 5.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변경허가 | 법 제21조제1항 | 30,000 원 |
| 6.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 법 제21조제2항 | 30,000 원 |
| 7. 수처리제 제조업의 변경등록 | 법 제21조제2항 | 20,000 원 |
| 8.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 법 제21조제3항 | 50,000 원 |
| 9.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변경등록 | 법 제21조제3항 | 30,000 원 |
| 10.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법 제21조제4항 | 30,000 원 |
| 11.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 | 법 제21조제4항 | 20,000 원 |
| 12.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 | 법 제21조제 5 항 | 30,000 원 |
| 13.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 | 법 제21조제 5 항 | 20,000 원 |

(43)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 86 조는 제 23 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 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 135 조제 1 항은 (1) 법 제 23 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1 만원, (2) 법 제 23 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5 천원 이다. 수수료는 시 -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 -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그 수수료를 내도록 할 수 있다(제2항).

법률 제86조에서는 변경신고에 관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 규칙에서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정하고 있지 않다. 무료일 경우에도 이를 조문에서 명문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44) 야생동•식물보호법

법률 제44조는 수렵장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려면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또한 수렵면허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수렵면허를 받거나 수렵면허를 갱신하거나 또는 수렵면 허를 재교부 받으려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 여야 한다(제4항).

시행규칙 제53조는 수렵면허를 받거나 수렵면허를 갱신 또는 재교 부를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 만원으로 한다. 수수 료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 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 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5)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59조는 제25조제3항(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허가를 받으 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82조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수수료는 별표 20 에서 정하고 있다(제1항).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수수료는 신규허가의 경우 40,000 원, 변경허가의 경우 15,000 원으로 한다(별표 20).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수수료는 허가관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면 수입인지로, 시• 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각 각 내야 한다(제2항).

변경허가는 제 25 조제 11 항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어서 수수료 규정을 위임받은 규정에서 누락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에서는 변경허가의 수수료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제 11 항 후단의 변경신고사항에 대하여도 수수료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만약 무료라고 하더라도 무료로 확인임을 하는 규정 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예) 법률 제 59 조 중 "제 25 조제 3 항에 따른 허가"를 "제 25 조제 3 항에 따른 허가와 같은 조 제 11 항에 따른 변경허가와 변경신고"로 개 정하고, 시행규칙 제82조 중 "허가수수료는"을 "허가 및 신고수 수료"로 하고, 별표 20 은 "변경신고는 무료"를 추가.
(4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 45 조는 (1) 제 11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3) 제 27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4) 제 28 조제 1 항 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 제3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50조는 관련 수수료는 별표 12 에서 정하고 있고, 납부방 법은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별표 12]

>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50조 관련)

| 구 분 | 신 규 | 변 경 |
| :--- | :---: | ---: |
|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10,000 원 | 5,000 원 |
| 2.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 30,000 원 | 15,000 원 |
| 3.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 23,000 원 | 14,000 원 |

법률에서는 신고와 변경신고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 으나, 시행규칙과 별표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서식 5)와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서(서식 6)•신고대상 배출시설변경신고서(서식8), 가축분뇨(재활용•재활용변경)신고서(서식 14)에서 수수료가 없음을 표시하고 있다. 수수료 관련 법률의 규정에 서 삭제하거나, 시행규칙 규정에 포함하여 수수료가 무료임을 별표에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166)}$.
(4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 73 조는 (1) 제 33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의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 (2) 제 53 조의 규정에 의한 신 고•변경신고, (3) 제 6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 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4) 제62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면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 106 조는 법 제 33 조제 1 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는 1 만원, 법 제 33 조제 2 항 전단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는 5 천 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제1호•제2호). 수수료는 시•도지사에게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2항).
(48)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3 조는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제 10 조제 1 항에 따 른 수입허가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수수
166) 환경부관령 법령에서는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에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의 서식에서 수수료 없음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료의 산출방법, 납부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징수하는 수수료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 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제3항) ${ }^{167 \text { ). }}$

시행령 제 20 조는 수수료의 산출방법을 자세히 정하고 있다.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이하 "수출입허가수수료"라 한다)는 다음의 방 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원미만은 산출금액에서 제외하며, 기준금액이 외국환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납입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다. (1) 수출의 경우 : 해당 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 $\times 1 \div 1,000$, (2) 수입의 경우 : 해당 폐기물의 선적가격(C.I.F.) $\times 1 \div 1,000$, (3) 본선인도가격 또는 선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당해 폐기 물의 처리비용 $\times 1 \div 1,000$ 등이다(제 1 항).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 자 하는 자(이하 "수출입자"라 한다)는 수출입허가수수료를 산출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수출입허가수수료 납부서에 의하여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해당 폐기물의 수출입허가신청시에 그 납부영수증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 환경부장관 은 포괄수출 또는 포괄수입의 경우 수출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출입 허가수수료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수출 또는 수입시마다 당해폐기물 에 대한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총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3항).
(4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재 60 조는 제 21 조제 3 항에 따른 허가 및 제 22 조제 1 항에 따른 변 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 31 조는 허가의 수수료는 40,000 원, 변경허가의 수수 료는 15,000 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167) 수수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50) 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 53 조는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법률에 수수료에 관한 근거규정만을 두고 포괄적인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예) 노원구 수수료조례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는 1 건당 10,000 원, 소음 • 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는 1 건당 5,000 원 으로 정하고 있다.
(51) 하수도법

법률 제 70 조는 (1) 제 45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 • 운반업의 허가, (2) 제 51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3) 제 52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 시설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제52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 검사, (5) 제 53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73조는 허가나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17 에서 정 하고 있으며(제1항 본문), 납부방법으로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제1항 단서).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의 성 능과 재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70조에 따라 검사에 드는 기간 과 재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기 관에 내야 한다.
[별표 17]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73조 관련)

| 구 분 | 신 규 | 변 경 |
| :--- | :---: | :---: |
| 1.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 30,000 원 | - |
| 2.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 23,000 원 | - |
| 3.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 23,000 원 | 15,000 원 |
| 4.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 23,000 원 | - |

(5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률 제 54 조는 (1) 제 9 조제 2 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 10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3) 제 10 조제 2 항 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4) 제14조에 따른 시험 기관의 지정, (5) 제 19 조에 따른 유독물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6) 제 20조제 1 항 본문 및 제 2 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의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7) 제 22 조제 1 항(제 34 조제 6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정기•수시검사, (8) 제 22 조제 2 항에 따른 안전진단, (9) 제 31 조 에 따른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10) 제33조에 따른 취 급제한•금지물질 수입의 허가 및 변경허가, (11) 제 34 조제 1 항, 제 2 항 단 서 및 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변 경신고, (12) 제 37 조제 1 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및 변 경승인 등을 받으려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58조는 별표11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별표 11] <개정 2011.3.31>
수수료(제58조 관련)
화학물질확인증명서 발급 등의 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안전 진단 수수료는 취급시설의 시설규모별 인건비•경비 및 출장비 등을 고 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종 별 | 수수료 |
| :--- | :---: |
| 가. 화학물질확인증명서 발급 | 10,000 원 |
| 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 50,000 원 |
| 다.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면제확인 | 10,000 원 |
| 라. 시험항목별 시험기관의 지정 | - |
| 마. 유독물의 수입신고 | 13,000 원(매품목당) |
| 바. 유독물의 수입 변경신고 | 9,000 원 |
| 사. 유독물영업의 등록 | 13,000 원 |
| 아.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9,000 원 |
| 자.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 13,000 원(매품목당) |
| 차. 관찰물질의 제조•수입 변경신고 | 9,000 원 |
| 카.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 13,000 원(매품목당) |
| 타.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 변경허가 | 9,000 원 |
| 파.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 13,000 원 |
| 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9,000 원 |
| 거.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 13,000 원 |
| 너.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의 변경승인 | 9,000 원 |
| 더.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 20,000 원 |

비고 : 수수료는 지방환경청장.유역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 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5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38 조는 제 14 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제 26 조에 따라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42조는 (1) 법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 : 10 만원, (2) 법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 10 만원(할당받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법 제 14 조제 3 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 신고 ： 5 만원，（4）법 제 26 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다）시험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또는 환경부장관이 시험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정하고 있다．
（5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률 제 17 조는（1）제 3 조제 1 항（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2）제9조제 1 항（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도 검사，（3）제 11 조제 1 항（옥외광고업의 등록）에 따른 등록에 대하여 그 허가 신청시•신고시•안전도검사시 또는 등록신청시에 각각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55）지방자치법 제 139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제 139 조제 1 항은＂사용료 •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다만，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에 근 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 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다．
규정 제 2 조는 「지방자치법」 제 139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다만，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 의 100 분의 10 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 3 장 현행 법령상 수수료 현황분석
［별표］＜개정 2010．9．17＞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 관련）

| 종 류 | 금 액 |
| :---: |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신규）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갱신 또는 기간연장）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 5 조 제 3 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 1건당 800원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수수료 | 1건당 20,000 원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9조 제 1 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수수료 | 1건당 30,000 원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1 조제 2 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 1건당 800원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 | 1건당 800 원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 2 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 1필지당 800 원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 16 조제 2 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 1주택당 800 원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 17 조제 1 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 1주택당 800원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 수수료 | 1건당 1,000 원 |
| 「소방기본법」제 29 조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화재증명원）의 발급 수수료 | 1건당 800원 |
| 「수산업법」제17조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1건당 800원 |
| 「수산업법」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 원 |
| 「수산업법」제41조，제42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어 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 1 건당 1,000 원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보수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 1건당 4，000원 |


| 종 류 | 금 액 |
| :---: | :---: |
| 「어선법」제 13 조제 1 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1건당 800 원 |
| 「의료법」제33조제 3 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수수료 | 1 건당 40，000원 |
| 「의료법」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수수료 | 1건당 100，000원 |
| 「의료법」제 33 조제 5 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의료법」제 33 조제 5 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 수수료 | 1건당 40，000원 |
| 「의료법」제 80 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 1 건당 800원 |
| 「전기공사업법」제 4 조제 1 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 발급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전력기술관리법」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감리업）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 1건당 5，000원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 20 조에 따른 체육시설 업의 신고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 업의 변경 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 원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10 조제 2 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 인서의 발급 수수료 | 1 필지당 1,000 원 <br> （칼라 발급의 <br> 경우에는 1,500 원） |

（56）온천법
법률 제 31 조는 제 12 조제 1 항•제 14 조제 1 항 및 제 1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제 1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 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 22 조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1）법 제 12 조제 1 항 전단 에 따른 토지의 굴착허가 ：공당 6 만원，（2）법 제 12 조제 1 항 후단에 따 른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심도증가 허가 ：공당 3 만원，（3）법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 ：개소당 3 만원，（4）동력장치의 변경허가 ：개소당 1 만 5 천원，（5）법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온천의 이용

허가 : 건당 10 만원, (6) 법 제 19 조제 1 항에 따른 수질검사 : 건당 2 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7) 법 제 19 조제 1 항에 따른 성분검사 : 건당 200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등이다(제1항). 수수료는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 3 항).
2. 신고•변경신고 수수료

| 건축사법 | 건축사보 신고수수료 |
| :--- | :--- |
|  | 건축사 업무신고 수수료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br>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분사무소 설치신고수수료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신고수수료 |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 양수 또 <br> 는 합병 신고수수료 |
|  | 게임물의 내용수정 신고수수료 |
| 관광진흥법 | 유원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br> 수수료 |
|  | 지위 승계 신고수수료 |
|  |  |
| 한 법률 | 영화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수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음반 • 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 <br> 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수수료 |
| :--- | :--- |
|  | 음반 • 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 <br>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 <br> 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 <br> 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수수료 |
|  |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수수료 |


| 의료기기법 | 신고•변경신고 수수료 |
| :---: | :---: |
| 먹는 물 관리법 | 먹는 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변경신고 수수료 |
|  |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 <br> 의 신고•변경신고 수수료 |
| 대기환경보전법 |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 변경신고 수수료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 한 법률 | 수입신고 수수료 |
| 악취방지법 |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수 수료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 배출시설 신고 수수료 |
|  | 재활용 신고 수수료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신고•변경신고 수수료 |
|  |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변경신고 수수료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유독물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수 수료 |
|  |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및 변 경신고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수수료 |
| 인감증명법 |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

## (1) 건축사법

법률 제 17 조는 건축사보 신고수수료,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 비시험 응시수수료, 건축사업무신고수수료,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가 국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무 를 수행하기 위한 신고수수료,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신고수 수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국 토해양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 10 조는 수수료 중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건축사보신 고필증의 교부, 자격증 및 자격수첩의 교부 등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은 (1) 건축사보의 신고 및 신고필증의 교부와 재교부수수료는 2천원, (2)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재교부수수료는 2천원, (3)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2천원, (4) 건축사업무신고수수료는 2 만원, (5)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 및 신고필증교부는 2 만원, (6) 외국건축 사자격취득자의 신고필증재교부는 2 천원, (7)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 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의 업무 신고수수료는 2 만원, (8) 건축사 업무신고필증의 재교부는 2 천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수 수료 중 해당 사무가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것 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지만, 특 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9조는 중개사무소 개설에 대하여 등록사무로 규제하고 있지 만,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신고사무로 규제하고 있다(제13조3항).

이에 법률 제47조는 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설치의 신고(제5호)를 위하 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 도록 하고 있다.

예시) 노원구 수수료 조례 :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1건당 20,000원) - 해당조례에는 징수방법(법령상 징수방법과 동일)과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및 징수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 80 조는 신고수수료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규칙 베102조는 별표 7에서 신고수수료의 금액 등을 정하도록 하 고 있다. 신고수수료는 신고서에 수입인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수입 증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를 붙여서 제출하지만, 이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이 법률상 신고수수료의 종류는 운임 • 요금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 료,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 대여약관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사업관리 위탁신고 수수료, 사업의 양수•양도 와 법인합병 신고수수료, 사업의 휴업•폐업 신고수수료, 운송가맹약 관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 등이 있다.
[별표7] 중 신고수수료

| 납부자 | 금 액 |
| :--- | :---: |
| 4. 법 제8조제1항 • 제2항 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 |  |
| 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  |
|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 |  |
|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 요금 | 1건에 1,000원 |


| 납부자 | 금 액 |
| :---: | :---: |
| 5. 법 제 9 조제 1 항, 법 제 31 조제 1 항 및 법 제 40 조제 1 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br> 가. 운송약관 <br> 나. 대여약관 <br>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 1건에 1,400원 1 건에 1,400 원 1건에 4,000원 |
| 6. 법 제 10 조제 1 항 - 제 2 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 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168)(법 제 35 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 업의 사업계획 변경을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  |
| 가. 증차 <br> 나. 운행계통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운행계통별 운행시 간의 변경 <br> 다. 자동차의 총 대수•승차정원의 변경 또는 차고•정 류소•영업소의 변경 <br> 라. 운행계통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운행시간의 변경 | 1 건당 기본 5,000 원에 자동차 1 대당 2,000 원 씩을 합산한 금액 1건에 2,000원 1 건에 2,000 원 1건에 1,400 원 |
| 7. 법 제 13 조제 1 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고 신고하는 자(법 제 32 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 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고 허가를 신청하는 자 를 포함한다) | 1건에 1,400원 |
| 8. 법 제 14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 병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 35 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 여사업의 양도 -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 48 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 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9 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양 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 1건에 3,000원 |
| 10. 법 제 16 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 | 1건에 1,400원 |

168) 법률 제 10 조의 각 규정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 납부자 | 금 액 |
| :---: | :---: |
| (법 제 35 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48조에 따라 준 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 가를 받으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  |
| 14. 법 제 43 조제 1 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규 모 및 구조•설비 등의 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169) | 1건에 15,000원 |
| 14의3. 법 제 49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 | 1건에 5,000원 |
| 14의4. 법 제49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운송가맹약관의 신고 또 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1건에 1,400원 |

(4) 자동차관리법

이 법률상 신고수수료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수수료(법률 제55조제1항과 제2항)가 있다. 이 수수료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시행규칙 제 156 조는 별표 30 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수입증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로 납부하도록 하지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고수수료 금액은 1 건에 대하여 1 만2천원을 부과하고 있다.

[^15]169) 법령 본문은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의 규정이 없지만, 별표에만 규정하고 있음.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6조제3항단서에서는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 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사항에 대한 중요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률 제41조는 변경신고에 한하여 시•군•구의 조례 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즉, 법률 제 42 조제 1 항제 2 호에는 신고에 대하여는 수수료 관련 규정이 없지만 관련 조례에서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170).

예시) 창원시와 노원구 수수료 조례를 보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 고는 10,000 원, 변경신고는 5,000 원으로 하고 있다.
(6) 관광진흥법

법률 제79조는 유원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제3호)에 관한 사항 과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제5호)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은 제3호의 수 수료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5호의 관광 사업의 지위승계 신고수수료는 별표 23 에서 20,000 원으로 정하고 있다.

예시) 노원구 수수료 조례를 보면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수수료는 1건당 30,000 원, 변경신고수수료는 1 건당 15,000 원이며, 창원시는 25,000 원, 13,000 원으로 하고 있다.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 90 조제 3 항은 영화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제1호의2)과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및 변경신

[^16]고에 관한 사항(제4호)에 대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예시) 창원시와 노원구 수수료 조례를 보면 영화업(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 영화배급업자 • 영화상영업자)신고는 1 건당 20,000 원, 영화업(영화제작업자 • 영화수입업자 • 영화배급업자 • 영화상영 업자) 변경신고는 1 건당 10,000 원,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신고는 20,000 원,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는 10,000 원으로 하고 있다.
(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 31 조는 (1)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 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2) 제 16 조제 2 항에 따른 온라인음 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3) 제 18 조제 1 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4)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 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 경등록을 하려면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예시) 노원구 수수료 조례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신고 : 1 건당 20,000원, 변경신고 : 1 건당 10,000 원),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 1 건당 20,000 원, 변경신고 : 10,000 원), 노래연습장업(등록 : 1 건당 20,000 원, 등록변경 : 10,000 원)
(9) 저작권법

법률 제 105 조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은 허가업으로, 저작권대리중개업 은 신고업으로 하고 있다(제1항).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제4항).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5항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은 제 5 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에 제 112 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 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제6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5 항의 규 정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및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 여야 한다(제7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 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 5 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제7항).

시행규칙 제 23 조는 별표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1항). 국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3조 및 법 제54 조 (법 제63조제 3 항, 제 90 조, 제 98 조 및 101 조의 6 제 6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저작권 등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50 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 1 항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제2항). 법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신탁 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저작자가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제9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저작권등록을 신청하거나, 저 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법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 101조의6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권리변동 등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제 3 항).
[별 표] <개정 2009.7.24>
수수료 금액(제23조 관련)

| 구 분 | 수 수 료 |
| :---: | :---: |
|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법 제89조 및 제97조에서 <br>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 <br> 작물의 이용승인 신청 | 10,000 원 |


| 분 |  | 수 수 료 |
| :---: | :---: | :---: |
| 2.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제 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등록신청 | 프로그램인 경우 | $\begin{aligned} & 60,000 \text { 원 } \\ & \text { (신청물 } 10 \text { 건 초과시 } \\ & \text { 추가건당 } 10,000 \text { 원) } \end{aligned}$ |
|  | $\begin{gathered} \text { 프로그램 외의 } \\ \text { 경우 } \end{gathered}$ | $\begin{gathered} 30,000 \text { 원 } \\ \text { (신청물 } 10 \text { 건 초과시 } \\ \text { 추가건당 } 10,000 \text { 원) } \end{gathered}$ |
| 3. 법 제54조(법 제63조제3항, 제 90 조, 제 98 조 및 제 101 조의 6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신청 | 프로그램인 경우 | $\begin{aligned} & 70,000 \text { 원 } \\ & \text { (신청물 } 10 \text { 건 초과시 } \\ & \text { 추가건당 } 15,000 \text { 원) } \end{aligned}$ |
|  | $\begin{gathered} \text { 프로그램 외의 } \\ \text { 경우 } \end{gathered}$ | $\begin{gathered} 40,000 \text { 원 } \\ \text { (신청물 } 10 \text { 건 초과시 } \\ \text { 추가건당 } 15,000 \text { 원) } \end{gathered}$ |
| 4. 법 제 105 조제 1 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 |  | 10,000원 |
| 5. 법 제 105 조제 1 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  | 5,000원 |
| 6. 영 제 30 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등의 등록신청 및 영 제 48 조제 3 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변경 신고 |  | 3,000원 |
| 7. 법 제55조제3항(법 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부 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  | 1,000 원 |

비 고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10,000 원(신청물 10 건 초과 시 추가 건에 대한 감 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감액하고, 제6호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1,000 원을 감액한다.
2.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 제 6 호 및 제 7 호의 수수료는 신청물 1 건 을 기준으로 한다.
(10)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 37 조는 제 20 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나 변경신고(제3호) 를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29조는 수수료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또는 자치 구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예시) 노원구 수수료 조례 : 체육시설업 신고(1건당 30,000원), 체육 시설업 변경신고(1건당 10,000 원)
(11) 낚시어선업법

법률 제 21 조의 2 는 제 4 조제 1 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 는 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 부하도록 하고 있다.

예시) 사천시 수수료 조례 : 낚시어선업 신고(1건당 1,500원)
(12) 농지 법

법률 제 56 조는 (1) 제 8 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 34 조나 제 36 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 35 조나 제 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자, (4) 제 40 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 50 조에 따라 농지원부 등본 교부를 신청하 거나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 74 조는 농지전용 신고수수료는 5 천원으로 하고 있다(제 1 항제 4 호). 수수료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해당 농지원부 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 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2항).
(13) 비료관리법

법률 제 12 조는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항). 비료 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 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3항）．
（14）수의사법
법률 제 38 조는 제 17 조제 3 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제 3 호）하 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 28 조는 수수료 금액으로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 원 개설 신고수수료는 5 천원이다（제 1 항제 3 호）．수수료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제2항 후단）．
（15）인삼산업법
（1）인삼유제조업의 신고 수수료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은 인삼류제조업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8 호서 식의 인삼류제조업등 신고서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에 따른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제2항）．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품 류의 제조•가공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 2 서식의 인삼 제품류 영업신고통보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첨 부하여 그 납부받은 수수료와 함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 보하여야 한다（제4항）．
（2）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수수료
시행규칙 제 14 조제 1 항은 법 제14조제 2 항에 따라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20 일 이내에 별지 제 12 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 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류제조업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삼제품류의 제조의 승계를 함께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33 조제 1 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는 제 1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품류의 제조의 승계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 12 호의 2 서식의 인삼제품류 제조승계신고통보서에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받은 수수료와 함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제3항).
(16) 축산물위생관리법

법률 제 41 조는 제 15 조제 1 항 171 )(수입축산물의 신고에 관한 사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제9호), 제22조제5항172)(경미사항)에 따른 변경신 고를 하는 자(제13호), 제24조173)(영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에 따른 신 고를 하는 자(제14호), 제26조174)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를 하는 자(제
171) 제 15 조 (수입축산물의 신고 등) (1)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 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72) (5) 제 1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 가받은 사항 중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73) 제 24 조 (영업의 신고) (1) 제 21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 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 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 21 조제 1 항제 7 호의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 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74) 제 26 조 (영업의 승계)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5호)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 59 조제 3 항은 제 15 조제 1 항의 신고를 신청하는 자는 축산 물위생검사기관의 장 또는 검역원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 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제4항).

신고수수료는 별표 15 에서 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60조).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 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제60조 단서).
[별표 15]

> 허가 등 수수료(제60조관련)

| 구 분 | 수수료 |
| :--- | :--- |
| 1. 영업의 허가 및 신고 | 1 만원 |
| 2.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1 만원 |
| 3. 허가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 5 천원 |
| 4. 허가증 및 신고증의 재교부 | 5천원 |

신고수수료와 허가수수료를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17)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34조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3호)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은 별표 7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 다.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교육비는 현금으로 납부 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 부할 수 있다(제2항).

별표 7) 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2만원
(1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47 조는 제 17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제4호),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 (제8호)하려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은 별표 5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제1항). 법 제47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제3항).

별표 5) 1. 수수료
라. 법 제 17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 고하는 자 : 2 만원
자. 법 제 3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 2 만원
※ 납부방법 :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마목•차목 및 카목 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9) 화장품법

법률 제 24 조는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 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 항 또는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규칙 제20조는 법 제24조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신 고•심사 및 변경신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5] <개정 2010.3.12>

> 수수료(제20조 관련)

| 종 류 | 수수료 |  |
| :--- | :---: | :---: |
|  | 전자민원의 <br> 경우 | 방문•우편 등의 <br> 경우 |
| 1. 화장품 제조업신고 | 27,000 원 | 30,000 원 |
| 2. 제조업자, 상호 또는 소재지 변경신고 | 9,000 원 | 10,000 원 |
| 3.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의뢰 | 189,000 원 | 210,000 원 |
| 4. 새로운 원료의 규격 및 안전성 심사 의뢰 | 252,000 원 | 280,000 원 |
| 5.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사항의 변경 <br> 심사 의뢰 <br> 가. 원료의 규격 중 시험방법 변경, 효능•효과 변경 <br>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이 생 <br> 략되는 경우 제외), 기준 및 시험방법(pH 및 메 <br> 탄올 제외) 변경의 경우 <br> 나. 가목 외의 변경사항의 경우 |  |  |

(20) 의료기기법

법률 제42조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변경(제2호)하 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39조는 별표 8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써 변경의 사유가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등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가기관 에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 업무에 관 하여는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제2항).
[별표 8] <개정 2010.12.13>
수수료액(제 39 조제 1 항관련)

| 종 목 | 전자민원의 경우 | 방문•우편민 <br> 원의 경우 |
| :---: | :---: | :---: |
| 1. 제조•수입업 허가 신청 | 144,000원 | 160,000 원 |
| 2. 제조.수입업 변경 허가 신청 |  |  |
| 가. 대표자 변경(양도.양수.상속) | 81,000원 | 90,000원 |
| 나. 소재지 변경 | 45,000원 | 50,000 원 |
| 다. 그 밖의 허가사항 변경 | 27,000원 | 30,000 원 |
| 3. 제조.수입 품목 허가 신청 |  |  |
| 가. 안전성•유효성의 심사를 요하는 경우 | 402,000원 | 447,000원 |
| 나. 기술문서의 심사를 요하는 경우 | 195,000원 | 217,000원 |
| 다. 기술문서 등의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 42,000 원 | 47,000 원 |
| 4. 제조-수입 품목 신고 | 35,000원 | 39,000원 |
| 5. 기술문서 등 심사 |  |  |
| 가. 안전성•유효성 심사의 경우 | 360,000 원 | 400,000원 |
| 나. 기술문서 심사의 경우 | 153,000원 | 170,000원 |
| 다. 기술문서 변경 심사의 경우 | 117,000원 | 130,000원 |
| 6. 재심사 신청 | 90,000원 | 100,000원 |
| 7. 제조•수입 품목 허가사항 등의 변경 신청 |  |  |
| 가. 안전성•유효성의 심사를 요하는 경우 | 270,000원 | 300,000원 |
| 나. 기술문서의 심사를 요하는 경우 | 148,000원 | 165,000원 |
| 다. 기술문서 등의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 32,000원 | 36,000 원 |
| 8. 제조-수입 품목 변경 신고 | 23,000원 | 26,000원 |
| 9. 수리업 신고 | 45,000원 | 50,000원 |
| 10. 수리업 변경 신고 |  |  |
| 가. 대표자 변경(양도.양수.상속) | 32,000원 | 36,000원 |
| 나. 소재지 변경 | 27,000원 | 30,000 원 |
| 다. 그 밖의 신고사항 변경 | 22,000원 | 25,000원 |
| 11.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 9,000원 | 10,000 원 |
| 12.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변경 신고 | 4,000원 | 5,000원 |
| 13. 영문증명 발급 | 14,000 원 | 16,000원 |
| 14. 허가증 재발급 | 1,400원 | 1,600원 |
| 15. 광고사전심의 신청 | 해당없음 | 100,000원 |

(21) 먹는 물 관리법

법률 제 56 조는 제 21 조제 4 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제5의 2 호), 제 21 조제 5 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 이나 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제6호)를 받으려면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44조제 1 항은 별표 10 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제 1 항 에 따른 수수료는 그 허가•등록•신고 또는 지정기관이 지방환경관 서의 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그 지 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 38 조제 1 항 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제3항).
[별표 10] <개정 2011.3.23>
수수료(제44조 관련)

| 종 별 | 근거조문 | 수수료 |
| :--- | :---: | :---: |
| 1. 샘물등의 개발 허가•변경허가 또는 연장허가 | 법 제9조 | 50,000 원 |
| 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 법 제15조 | 50,000 원 |
| 3.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 | 법 제15조 | 30,000 원 |
| 4.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 | 법 제21조제1항 | 50,000 원 |
| 5.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변경허가 | 법 제21조제1항 | 30,000 원 |
| 6.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 법 제21조제2항 | 30,000 원 |
| 7. 수처리제 제조업의 변경등록 | 법 제21조제2항 | 20,000 원 |
| 8.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 법 제21조제3항 | 50,000 원 |
| 9.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변경등록 | 법 제21조제3항 | 30,000 원 |
| 10.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법 제21조제4항 | 30,000 원 |
| 11.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 | 법 제21조제4항 | 20,000 원 |
| 12.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 | 법 제21조제5항 | 30,000 원 |
| 13.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 | 법 제21조제5항 | 20,000 원 |

(22)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30 조는 제9조제 1 항부터 제 3 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 인을 얻거나 수입신고하려는 자(제1호)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시행규칙 제 30 조는 법 제 30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3 에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별표에는 형식승인과 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수수료에 관 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별지 제1호•제4호서식에서 승 인 - 변경승인 - 신고시에 수수료가 없음을 정하고 있다.
(23) 악취방지법

법률 제 23 조는 제 8 조제 1 항 또는 제 5 항이나 제 8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행규칙 제 20 조는 (1) 법 제 8 조제 1 항 전단 및 제 5 항 본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1 만원, (2) 2. 법 제 8 조의 2 제 2 항 전단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신고: 1 만원의 수 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다.
(2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재 45 조제 2 호와 제 3 호에서는 배출시설 신고와 재활용 신고에 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는 관련 수수 료 규정이 없으며, 서식에서 수수료가 없음을 표시하고 있다.
(2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 73 조는 (1) 제 33 조제 1 항부터 제 3 항 175)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 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 (2)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3) 제60조제 1 항에 따른 그 밖의 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4) 제62조제 1 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면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 부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 106 조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는 1 만원의 수수료를 내 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는 시•도지사에게 수입증지로 납부하여 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 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2항).
(1)의 변경신고와 (2)의 신고•변경신고, (3)의 설치신고•변경심고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서(서식 15)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서식 33) • 비점오염원 설치변경 신고서(서식 35)•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서식 37)에서 ‘수 수료 없음'을 표시하고 있다.
(2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률 제 54 조는 (1) 제9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 10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3) 제 10 조제 2 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4) 제 14 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5) 제 19 조에 따른 유독물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6) 제 20 조제 1 항 본문 및 제 2 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의 등록•변경등 록 및 변경신고, (7) 제22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수시검사, (8)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175) 제 1 항은 허가•신고, 제 2 항은 변경허가, 제 3 항은 변경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9) 제 31 조에 따른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10) 제 33 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의 허가 및 변경허가, (11) 제34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및 제 3 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 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2)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 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 등을 받으려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수 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58조는 별표11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별표 11] <개정 2011.3.31>
수수료(제58조 관련)
화학물질확인증명서 발급 등의 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안전진단 수수료는 취급시설의 시설규모별 인건비•경비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종 별 | 수수료 |
| :--- | :---: |
| 가. 화학물질확인증명서 발급 | 10,000 원 |
| 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심사 | 50,000 원 |
| 다.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면제확인 | 10,000 원 |
| 라. 시험항목별 시험기관의 지정 | - |
| 마. 유독물의 수입신고 | 13,000 원(매품목당) |
| 바. 유독물의 수입 변경신고 | 9,000 원 |
| 사. 유독물영업의 등록 | 13,000 원 |
| 아.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9,000 원 |
| 자.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 13,000 원(매품목당) |
| 차. 관찰물질의 제조•수입 변경신고 | 9,000 원 |
| 카.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 13,000 원(매품목당) |
| 타. 취급제한•ㅡㅁ지물질의 수입 변경허가 | 9,000 원 |
| 파.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 13,000 원 |
| 하. 취급제한•ㅡㅁ지물질영어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9,000 원 |
| 거.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 13,000 원 |
| 너.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의 변경승인 | 9,000 원 |
| 더.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 20,000 원 |

비 고 ：수수료는 지방환경청장•유역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 자결제 등의 방법으로，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7）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38 조는 제 14 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제 26 조에 따라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42조는（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 10 만원，（2）법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 10 만원（할당받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법 제 14 조제 3 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 신고 ： 5 만원，（4）법 제26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다）시험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또는 환경부장관이 시험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정하고 있다．
（28）인감증명법

법률 제 15 조는（1）제 12 조제 1 항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 람，（2）제 13 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시행령 제19조는（1）인감증명 발급 ：통당 600 원，（2）인감변경신고 ：회당 600 원의 수수료로 정하고 있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2）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3）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신 청하는 경우，（5）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 무화하고 있는 경우，（6）「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 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등과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 는 경우，（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 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한 경 우，（8）「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 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등이 신청하는 경우，（9）「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경우，（10）「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 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11） 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감을 변경하 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명신고하고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31）소 결
일반적으로 신고 등 규제관련 수수료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며，신 고와 변경신고의 수수료금액은 $1 / 2$ 임을 알 수 있다．납부방법은 수입 증지의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예외 등을 자 세히 규정하고 있다．

3．등록－변경등록 수수료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업 등록 신청수수료 |
|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br>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수수료 |


| 교통안전 법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변 경등록을 포함)수수료 |
| :---: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수수료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 물류정책기본법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또는 변 경등록의 신청수수료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부동산개발업등록 수수료 |
| 선박법 | 선박의 등록신청 수수료 |
|  |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수수료 |
|  | 선적항의 변경(지방청장의 관할구 역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을 수반하는 변경등록 신청수수료 |
|  | 선박의 말소등록 신청수수료 |
| 유료도로 관리권등록령 | 등록신청 수수료 |
| 자동차관리법 | 신규등록 수수료 |
|  | 등록 신청수수료 |
|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신청수수료 |
| 주차장법 | 등록신청 수수료 |
| 지하수법 |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수수료 |
|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수수료 |


|  |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수수료 |
| :---: | :---: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수수료 |
|  | 측량업의 등록 신청수수료 |
|  | 수로사업의 등록 신청수수료 |
|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신청수수료 |
|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저당권의 등록 수수료 |
| 항만운송사업법 | 등록신청 신고 수수료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심판변론인의 등록신청 수수료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저당권 등록 수수료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등 록•변경등록수수료 |
| 경륜 - 경정법 | 선수 • 심판 및 용구의 등록 수수료 |
| 공연 법 |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 |
| 관광진흥 법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또 는 변경등록 신청수수료 |
|  | 관광종사원의 등록신청수수료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 |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수수료 |
|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신청 수수료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수수료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 신청수수료 |


| 농산물품질관리법 | 지리적표시의 등록수술 |
| :---: | :---: |
| 농약관리법 | 등록수수료 |
| 동물보호 법 | 동물등록 수수료 |
|  |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 등록 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 |
| 비료관리법 | 비료생산업의 등록 수수료 |
| 사료관리 법 | 제조업 등록수술 |
|  | 사료성분등록신청수수료 |
| 수산물품 질관리 법 |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숫료 |
|  | 친환경수산물인증 등록숫ㄹㄹㅛ |
|  | 지리적표시 등록ㅅㅜㅜㄹㅛ |
|  | 수산물가공업 등록수수료 |
|  | 생산 - 가공시설등의 등록수수료 |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등록수수료 |
| 종자산업법에 따른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
| 축산법 | 등록수수료 |
|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 등록수수료 |
| 산업안전보건법 | 등록수수료 |
| 직업안정법 |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수수료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저당권에 관한 등록 수수료 |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업 등록숫료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방염처리업의 등록 수수료 |
| 에 관한 법률 | 방염처리업등록사항 변경신고수수료 |


|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수료 |
| :---: | :---: |
|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 고수수료 |
| 위험물안전관리법 | 탱크시험자의 등록 및 등록변경 수수료 |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 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대행자의 등록숫료 |
| 식품위생 법 | 지정 - 평가 - 등록 수수료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장기등 이식대기자 등록수수료 |
|  | 동물실험시설의 등록•변경등록 수수료 |
|  |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변경등 록 수수료 |
|  |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변 경등록 수수료 |
| 먹는 물 관리법 |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변경등 록 수수료 |
|  | 먹는 샘물 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변경등록 수수료 |
|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측정대행업 등록 •변경등록 수수료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설계•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수 수료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폐수처리업의 등록•변경등록 수 수료 |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방지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 수 수료 |


| 하수도 법 | 개인하수처리시설설 계 - 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 |
| :---: | :---: |
|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 |
|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유독물영업자의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수수료 |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지하수정화업의 등록•변경등록 수수료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승강기보수업 등록숫료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등록 수수료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공연장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 |
| 공사채 등록법 | 공사채 등록수수료 |
| 보험업법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 험중개사 등록수수료 |
|  | 보험계리업 등록 수수료 |
|  | 손해사정업 등록수수료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

(1)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92조는 건설업등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등록수 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업은 업종별로 등록을 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제9조제1항). 이를 기준으로 시행규칙 제 38 조는 별표 5 에 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건설업 중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 공사업의 등록수수료는 6 만원,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은 9만원,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 을 제외한 전문공사업은 2 만원 등이다. 이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 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 부할 수 있다(제4항).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 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 일간 그 내용을 게 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 일간 게시할 수 있다(제 3 항).

수수료 관련규정은 징수의 근거규정(제92조)만을 법률에 두고 그 밖 의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 역시 수수료 금액과 납부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수수료 요율의 결정기준 등 구 체적인 사항은 재량적 부분으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제3항 에 수수료 결정에 관한 의견수렴과 승인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는 것 은 특징적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장관의 승인절차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두지 않고 승인을 전제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조문의 내용 상 조화롭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법률 제87조의 위탁관련규정이나 제 92조에서 위탁기관이 수수료 결정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 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 47 조제 1 항제 3 호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제9조제 1 항)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예시1) 노원구 수수료 조례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수수료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1 건당 20,000 원, 법인인 중 개업자는 1 건당 30,000 원으로 정하고 있다.

예시2) 창원시 수수료 조례는 법인 30,000 원, 분사무소 20,000 원, 공인 사무소 20,000 원
(3) 교통안전법

법률 제 60 조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32조는 응시수수료와 자격증 교부(재교부 포함)에 대하여 만 규정하고 있다. 등록서식(시행규칙 별표서식2)에도 별도의 등록수 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69조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2항에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둥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 제64조는 등록절차와 수수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 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등 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 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신청에 있어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제3항). 시행규칙 제19조는 등록수수료는 1 건당 1 만원으로 하되, 수입증지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은 없으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관리와 등록증 교부도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하는 방 안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63조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의 신청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31 조는 별표5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별표5] 1.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 1 건당 20,000 원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6)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제69조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수수료 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제2호). 수수 료의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시행령 제 51 조제 1 항제 1 호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시행규칙 제 15 조에서 수수료는 1 건당 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 산정액만을 정하고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절차로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법률 제33조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수수료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 도록 위임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24조는 별표2에서 등록수수료의 금 액을 5 만원으로 하고 있다(제1항). 제1항에서는 납부방법으로 수입증

지를 원칙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 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선박법

법률 제 30 조는 선박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시행규칙 제34조는 별표2에서 등록수 수료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선박의 등록신청수수료 : 1,500 원,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 청수수료 : 500 원, 선적항의 변경(지방청장의 관할구역 안에서 변경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반하는 변경등록 신청수수료 : 1,000 원, 선박 의 말소등록 신청수수료 : 200원으로 하고 있다. [별표2] 비고2에서 수 수료는 현금이나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 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별표2] 비고1에서는 다른 신청수수료의 경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구구료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등록에 관한 사항에서는 면제사 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민원수수료와 규제수수료를 구분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 (9)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이 등록령은 유료도로법 제13조에서 유료관리권과 관리권을 목적으 로 하는 저당권 설정•변경 • 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관 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다(제1항).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에 위임(제2항)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제정된 것이 이 등록령이다. 이 등록령은 등록의 내용과 절차 등 관 련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등록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에 재위임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5조는 등 록수수료는 500원176)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하지만, 도로
176) 수수료를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임

관리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등록은 당사자의 신청에 한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관리청의 촉탁과 관리청이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등록령 제 16 조제 3 항 단서)
(10)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76조는 법률상 수수료 납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에 따라 시행규칙 제156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자동차등록의 종류는 (1) 신규등록 :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2) 변경 등록 : 법 제 11 조에 따른 등록, (3) 이전등록 : 법 제 12 조에 따른 등록, (4) 말소등록 : 법 제 13 조에 따른 등록, (5) 압류등록 : 법 제 14 조에 따 른 등록, (6) 저당권등록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설정등록 - 변경등록 -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7) 경정등록 : 제 43 조에 따른 등록, (8) 예고등록 : 제 44 조에 따른 등록 등이다(자동 차등록령 제3조).

법률 제 8 조는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 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또한,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제 3 항). 자동차제작 • 판매자등이 제 1 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제4항).
이 수수료는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이며,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자가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해당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에 드는 실비로 한다.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 는 자는 자동차를 산 사람이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에 든 비용의 산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산출 명세를 명시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신규등록(법률 제8조제1항)은 시행규칙 제 156 조제 1 항은 별표 30 에서 정하고 있는 바, 1 대에 2,000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사용본거 지와 다른 시 • 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 대에 2,500 원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변경등록(법률 제 11 조제 1 항)은 1 대에 1,300 원(동일 시•도안의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은 제외), 이전등록(법률 제12조제1항)은 1 대 에 1,000 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 • 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 대에 1,500 원), 말소등록(법률 제 13 조)은 1 건에 1,000 원으로 하고 있다.

저당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 제11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를 등록관청에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고, 부과 및 면제기준에 필 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 제 10 조제 1 항제 1 호 는 자동차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은 채권가액의 1 천분의 4 ,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은 대당 1 천원이다.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등록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붙이는 방법이나,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제2항).

법률 제 53 조제 1 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항은 제 1 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 156 조제 1 항은 별표 30 에서 등록과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등록은 1 건에 2 만원, 변경등록 은 1 건에 1 만 3 천 100 원이다.

해당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의 수입증지 (영 제 17 조제 3 항 또는 영 제 1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무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군 또 는 구의 수입증지를 말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공무상 필요(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 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재해의 발 생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1) 주차장법

법률 제 19 조의 14 제 1 항은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등록신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수수 료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 17 조는 별표에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별표에서는 보수업 등 록신청에 대하여 건당 50,000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12) 지하수법

법률 제 33 조 제4호•제 5 호 • 제 6 호에서 등록과 변경등록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4호•제5호는 국토해양부령, 제6호는 환경부령으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자가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지 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 5 만원, 변경등록 : 3 만원, 지하수영향 조사기관의 등록 : 5 만원, 변경등록 : 3 만원(시행규칙 제 33 조제 1 항제 4 호

부터 제7호)이다.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 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등록 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수수료를 면제한다(제3항). 환경부령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 17 조에서는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 5 만원(제 2 호), 변경등 록 : 3 만원(제 3 호)이다.
(1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93 조는 제 92 조제 1 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 행하려는 자는 측량기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항). 성 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발급, 검사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제5항).
(14)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는 항만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관리권을 목 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수수료는 5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 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 항만운송사업법

법률 제 28 조는 제 4 조 • 제 7 조 또는 제 26 조의 3 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 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 34 조제 1 항은 (1) 법 제 4 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 1 만원, (2) 법 제 7 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 : 5 천원, (3) 법 제 7 조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 : 5천원, (4) 법 제 26 조의 3 에 따른 항 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 1 만원의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제 1 항 각 호의 업무 중 영 제 27조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 가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하며, 이는 한 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수입으로 한다(제2항). 국토 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시•도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제3항).
(1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심판변론인 등록신청을 하려면 1천원의 등록수수 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제2항). 다만, 중앙심판원장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7)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률 제11조는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제1항). 수수료의 부과 및 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시행령 제 10 조는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면, (1) 건설기계 및 자 동차 : (a)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 채권가액의 1 천분의 4 , (b)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 대당 1 천원, (2) 소형선박 : (a) 저 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 만분의 2 , (b)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채권가액의 10 만분의 2 이지만, 채권가액이 2 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3) 항공기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등이다.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등록관청이 속 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붙이는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제3항).
(18) 관광진흥법

법률 제79조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 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제1호), 관광종사원의 등록신청(제13호) 을 하려면 믄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 는 시행규칙 별표 23 에서 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69조제1항).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는 해당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내야 한다(제7항).
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관광사업의 신규등록(30,000원, 숙박시설 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 원을 가산한 금액), 변경등록 $(15,000$ 원, 숙박 시설 중 객실변경 등록의 경우 매 실당 600 원을 가산한 금액), 관광종 사원 등록 신청(5,000원) 등이다.
(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 31 조는 제 18 조제 1 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변경등록을 하려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예시) 노원구 수수료 조례 : 노래연습장업(등록 : 1 건당 20,000 원, 등록 변경 : 10,000 원)
(20)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 37 조는 제 19 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제2 호)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29조는 수수료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또는 자치 구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예시) 체육시설업 등록(1건당 30,000 원), 변경등록 ( 1 건당 10,000 원)
(21) 비료관리법

법률 제11조는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 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 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특별자치도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 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5항).
(2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0 조는 소싸움에 싸움소를 출전시키고자 하는 싸움소주인은 싸움소의 종류•특성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수산 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1 항). 싸움소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경기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항). 경기시행자는 싸움소와 싸움소주인을 등록하려면 농림수산식 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8항).

시행규칙 제12조는 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등록수수료를 별표 2에 서 정하고 있다.
[별표 2]
등록 및 면허수수료(제12조관련)

| 등록사항 |  | 금액(원) |
| :---: | :---: | :---: |
| 싸움소 및 싸움소주인 | 신규등록 | z15,000 |
|  | 변경등록 | 10,000 |
| 조교사 및 심판 | 면허 | 15,000 |

(23) 축산법

법률 제 49 조는 제 15 조제 1 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제 1 항제 2 호). 시행규칙 제 51 조는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수수료는 8 천원이다(제 1 항제 2 호).
(24)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 66 조는 제 52 조의 4 (지도사의 등록)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항제12호).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시행규칙 제 145조제1항). 수수료 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전자정부법」 제 14 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 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제2항).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노동부고시 제2009-38호)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만 등록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012년 1월 26일에 시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다.
(25)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 34 조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제1호)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 행규칙 제 37 조는 별표 7 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제 1 항).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교육비는 현금으로 납부하되,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항).
별표 7) 1. 법 제4조제 1 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4만원
나.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분야별 2만원

다.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4만원
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분야별 2 만원
마.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 4만원
바. 일반 소방공사감리업 : 분야별 2 만원
(2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47 조는 제 14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 또는 제 16 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제 2 호), 제 29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6호)하려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 43 조제 1 항은 별표 5 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제 1 항). 법 제47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제3항).
별표 5) 1. 수수료,
다. 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 2 만원
바. 법 제 29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고 자 하는 자: 4만원

아. 법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를 하고자 하는 자: 2 만원
※ 납부방법 :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마목•차목 및 카목 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7) 먹는 물 관리법

법률 제 56 조는 제 15 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제 2 호), 제 21 조제 2 항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제4호), 제 21 조제 3 항에 따른 먹는 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제5호)을 받으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 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 44 조제 1 항은 별표 10 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제 1 항 에 따른 수수료는 그 허가•등록•신고 또는 지정기관이 지방환경관 서의 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그 지 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 38 조제 1 항 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제3항).
[별표 10] <개정 2011.3.23>
수수료(제44조 관련)

| 종 별 | 근거조문 | 수수료 |
| :--- | ---: | ---: |
| 1. 샘물등의 개발 허가-변경허가 또는 연장허가 | 법 제9조 | 50,000 원 |
| 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 법 제15조 | 50,000 원 |
| 3.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 | 법 제15조 | 30,000 원 |
| 4.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 | 법 제21조제1항 | 50,000 원 |
| 5.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변경허가 | 법 제21조제 1 항 | 30,000 원 |
| 6.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 법 제21조제2항 | 30,000 원 |
| 7. 수처리제 제조업의 변경등록 | 법 제21조제2항 | 20,000 원 |
| 8.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 법 제21조제3항 | 50,000 원 |
| 9.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변경등록 | 법 제21조제 3 항 | 30,000 원 |
| 10.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법 제21조제4항 | 30,000 원 |
| 11.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 | 법 제21조제4항 | 20,000 원 |
| 12.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 | 법 제21조제 5 항 | 30,000 원 |
| 13.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 | 법 제21조제 5 항 | 20,000 원 |

(28)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30 조제 1 항은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제4호)을 하려면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시행규칙 제 30 조제 2 항은 측정대행업 등록 수수료는 1 만원, 변경등록 수수료는 5천원이며, 수입인지로 내도록 하고 있다.
(2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 45 조는 제 5 호에서 제 34 조제 1 항에 따른 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50조는 관련 수수료는 별표 12 에서 정하고 있고, 납부방 법은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별표 12]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 50 조 관련)

| 구 분 | 신 규 | 변 경 |
| :--- | :---: | :---: |
|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10,000 원 | 5,000 원 |
| 2.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 30,000 원 | 15,000 원 |
| 3. 처리시설 설계 • 시공업의 등록 | 23,000 원 | 14,000 원 |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 73 조는 (1) 제33조제 1 항부터 제3항177)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 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 (2)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177) 제 1 항은 허가•신고, 제 2 항은 변경허가, 제 3 항은 변경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3) 제60조제 1 항에 따른 그 밖의 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4) 제62조제 1 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면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 부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 106 조는 법 제62조제 1 항 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 록은 1 만원, 법 제 62 조제 1 항 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변경등록은 5 천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는 시 - 도지사에게 수 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2항).
(3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법률 제 15 조는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 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 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항).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수 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제6항).

시행규칙 제 53 조제 3 항은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수수료는 1 만원, 변 경등록은 5 천원의 수수료를 수입입지로 내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장 관은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제 5 항).
(32) 하수도법

법률 제 70 조는 (1) 제 45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2) 제 51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 시설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제52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 검사, (5) 제 53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73조는 허가나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17 에서 정 하고 있으며(제1항 본문), 납부방법으로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제 1 항 단서).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의 성 능과 재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70조에 따라 검사에 드는 기간 과 재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기 관에 내야 한다.
[별표 17]

>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73조 관련)

| 구 분 | 신 규 | 변 경 |
| :--- | :---: | :---: |
| 1.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 30,000 원 | - |
| 2.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 23,000 원 | - |
| 3.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 23,000 원 | 15,000 원 |
| 4.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 23,000 원 | - |

(3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률 제 54 조는 (1) 제9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 10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3) 제 10 조제 2 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4) 제14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5) 제 19 조에 따른 유독물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6) 제 20 조제 1 항 본문 및 제 2 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의 등록•변경등 록 및 변경신고, (7) 제22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수시검사, (8) 제 22 조제 2 항에 따른 안전진단, (9) 제 31 조에 따른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10) 제33 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의 허가 및 변경허가, (11) 제34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및 제 3 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 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2) 제 37 조제 1 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 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 등을 받으려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수 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58조는 별표11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별표 11] <개정 2011.3.31>
수수료(제58조 관련)
화학물질확인증명서 발급 등의 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안 전진단 수수료는 취급시설의 시설규모별 인건비•경비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종 별 | 수수료 |
| :--- | :---: |
| 가. 화학물질확인증명서 발급 | 10,000 원 |
| 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 50,000 원 |
| 다.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면제확인 | 10,000 원 |
| 라. 시험항목별 시험기관의 지정 | - |
| 마. 유독물의 수입신고 | - |
| 바. 유독물의 수입 변경신고 | 13,000 원(매품목당) |
| 사. 유독물영업의 등록 | 9,000 원 |
| 아.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13,000 원 |
| 자.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 9,000 원 |
| 차. 관찰물질의 제조.수입 변경신고 | 13,000 원(매품목당) |
| 카.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 9,000 원 |
| 타.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 변경허가 | 13,000 원(매품목당) |
| 파.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 9,000 원 |
| 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13,000 원 |
| 거.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 9,000 원 |
| 너.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의 변경승인 | 13,000 원 |
| 더.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 9,000 원 |

비 고 ：수수료는 지방환경청장．유역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 자결제 등의 방법으로，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4）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제17조는 「지하수법」제33조 본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1）법 제 20 조제 1 항에 따른 수질검사：영 제 30 조제 1 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 기관이 정하는 금액（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 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2）법 제 29 조의 2 제 1 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5 만원，（3）법 제 29 조의 2 제 1 항 후단에 따른 지하 수정화업의 변경등록： 3 만원이다．
（35）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 22 조는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및 제 13 조 의 2 제 1 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1항）．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2항）．

시행규칙 제 28 조는 법 제 22 조제 1 항에 따른 검사 수수료 및 정밀안 전검사 수수료와 제 20 조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수수 료는 별표 9에서 정하고 있다（제1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의 장은（1）법 제 13 조제 1 항에 따라 승객용으로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 로서 비상용 전원에 의한 수시검사를 받는 승강기，（2）법 제 13 조제 2 항에 따라 검사를 다시 받는 승강기178），（3）「아동복지법」 제 16 조제 1 항

178）다만，하중시험 불합격으로 분동（分銅）을 사용하여 검사를 다시 받는 승강기는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4）「노인복지법」 제3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양로시설과 같은 법 제 34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승강기179），（5）「장애인복지 법」 제 58 조제 1 항 1 호 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별표 9］＜개정 2011．3．29＞

> 검사 수수료 등(제28조제1항 관련)

1．검사 수수료

|  |  |  |  |  |  | 기준 | 수수료（ |  |  | 체증 오 | 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  |  | $\begin{aligned} & \text { 기준 } \\ & \text { 층 } \\ & \text { 또는 } \\ & \text { 기준 } \\ & \text { 높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완성검사 } \\ & \text { 및 } \\ & \text { 수시검사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정기 } \\ & \text { 검사 } \end{aligned}$ | 정밀 <br> 안전 <br> 검사 | 기준 | $\begin{gathered} \text { 완성 } \\ \text { 검사 } \\ \text { 및 } \\ \text { 수시 } \\ \text { 검사 } \end{gathered}$ | 정기 검사 | 정밀 <br> 안전 <br> 검사 |
|  |  | 로 | 교 | 가변 <br> 전압， <br> 가변 <br> 주파수 | 8층 | 216，000 | 103，500 | 232，700 | 층당 | 2，700 | 2，700 | 3，200 |
| 엘 | 객 | 프 |  | 기타 | 5층 | 198，000 | 76，500 | 212，600 | 층당 | 2，250 | 2，250 | 2，800 |
| $\begin{aligned} & \text { 리 } \\ & \text { 베 } \end{aligned}$ | 용 |  | 직 | 기어 | 8층 | 184，500 | 90，000 | 220，400 | 층당 | 2，700 | 2，250 | 2，700 |
| plon |  |  | 류 | 무기어 | 12층 | 211，500 | 90，000 | 229，100 | 층당 | 1，800 | 1，800 | 2，200 |
|  |  |  | 유 | 식 | 3층 | 211，500 | 90，000 | 203，100 | 층당 | 2，700 | 2，700 | 3，300 |
|  | 화 |  | 로 | 픅 | 3 층 | 211，500 | 90，000 | 238，200 | 층당 | 2，700 | 2，250 | 2，800 |
|  | 불 |  | 유 | 압식 | 2 층 | 216，000 | 90，000 | 221，400 | 층당 | 2，700 | 2，700 | 3，500 |
|  |  | 컥 | \|이 |  | 4 m | 133，200 | 85，500 | 110，600 | m당 | 1，350 | 1，350 | 1，500 |
|  |  | 덤 | 터 |  | 3 층 | 67，500 | 40，500 | 117，500 | 층당 | 2，250 | 1，800 | 2，400 |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79）다만，「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 14 조제 1 항제 1 호라목 또는 제 18 조제 1 항제 1 호라목 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 요양시설은 제외한다．

| 구 분 |  | $\begin{gathered} \text { 기준 } \\ \text { 층 } \\ \text { 또는 } \\ \text { 기준 } \\ \text { 높이 } \end{gathered}$ | 기준 수수료（원） |  |  | 체증 요금（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완성검사 } \\ & \text { 및 } \\ & \text { 수시검사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정기 } \\ & \text { 검사 } \end{aligned}$ | 정밀 <br> 안전 <br> 검사 | 기준 | $\begin{aligned} & \text { 완성 } \\ & \text { 검사 } \\ & \text { 및 } \\ & \text { 수시 } \\ & \text { 검사 } \end{aligned}$ | 정기 검사 | 정밀 안전 검사 |
| 휠체어 <br> 리프트 |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 |  | 4 m | 84，000 | 53，800 | 84，000 | m 당 | 1，050 | 1，050 | 1，000 |
|  |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 | － | 105，000 | 67，000 | 105，000 | － | － | － | － |
| ＜비고＞ |  |  |  |  |  |  |  |  |  |
| 검사 수수료는 기준 수수료 및 체증 요금의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  |  |  |  |  |  |  |  |

2．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수수료 ： 1 건당 10,000 원
（36）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률 제 17 조는（1）제 3 조제 1 항（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2）제9조제 1 항（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도검 사，（3）제 11 조제 1 항（옥외광고업의 등록）에 따른 등록에 대하여 그 허가 신청시•신고시•안전도검사시 또는 등록신청시에 각각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37）공사채 등록법
법률 제 13 조는 등록기관 180 ）은 공사채의 등록，공사채등록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이나 공사채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에 관하 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이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18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과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0 조제 2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금융기관이 등록기관이다（시행령 제 1 의 2 조제 1 항）．
(38) 보험업법

법률 제94조는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 록) 및 제 89 조(보험중개사의 등록)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 는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행규칙(총리령) 제28조는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을 정하고 있다. (1) 보험설계사 : 6천원, (2) 개인인 보험대리점 : 2 만원, (3) 법인인 보험대 리점 : 20 만원, (4) 개인인 보험중개사 : 5 만원, (5) 법인인 보험중개사 : 20만원, (6)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또는 금융기관보험중개사 : 100 만원

법률 제 183 조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제1항).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3항). 제 187 조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 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제1항).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 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2항). 시행규칙(총리령) 제56조는 보험계리업 과 손해사정업의 등록수수료로 1 만원으로 하고 있다.
(3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7 조제 10 호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는 등록절차 및 등록절차의 관리 에 필요한 인적 • 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되 2 만원 내로 한다(시행규칙 제7조).
4. 승인 • 변경승인 수수료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br> 보안에 관한 법률 | 선박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br> 수수료 |
| :--- | :--- |


|  |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 승인 수수료 |
| :---: | :---: |
| 선박안전법 | 도면의 승인 신청수수료 |
|  |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 신 청수수료 |
|  |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 승인 신청수수료 |
|  |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신청수수료 |
|  | 복원성자료의 승인 신청수수료 |
|  |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 신청 수수료 |
|  | 위험물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 사 또는 승인 신청수수료 |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변경 승인 신청수수료 |
|  | 경매장 개설의 승인 신청수수료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수로도서지의 복제 등의 승인 신청수수료 |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승인 수수료 |
| 관광진흥 법 |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수수료 |
| 저작권법 | 법정허락 승인 신청수수료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신청수수료 |


| 농지법 | 용도변경 승인신청 수수료 |
| :--- | :--- |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br>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br> 행사에 관한 법률 | 승인신청 수수료 |
| 원양산업발전법 | 시험어업승인 신청수수료 |
| 위험물안전관리법 | 임시저장 또는 취급 승인수수료 |
|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br> 법률 | 형식승인 • 변경승인 수수료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의 승 <br> 인 및 변경승인 |

(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 43 조는 제 10 조제 3 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제 11 조 에 따른 선박보안심사•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 제25 조제 3 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및 제 26 조에 따른 항만시 설보안심사•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대행기관이 보안심사를 대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를 받으려 는 자는 대행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2항). 대행기관 이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및 요율 등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 도 또한 같다(제3항).

시행규칙 제 55 조는 법 제 43 조제 1 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변경승인, 선박보안심사, 임시선박보안심사, 특별선박보안심사, 항만시 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 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별표 7]

##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 등의 수수료

(제55조 관련)

1. 선박보안심사 등의 수수료


비 고

1. 공휴일 보안심사 및 국외 보안심사의 수수료

가. 공휴일에 하는 보안심사의 수수료는 위 표에 따른 수수료에 50 퍼센트를 가산한다.
나. 국외에서의 선박보안심사 - 임시선박보안심사 수수료는 위 표에 따른 수수료의 4 배 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한다.
2. 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보안심사자의 출장에 드는 실비를 별도로 부담한다.
2.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수수료

| 구 분 | 규 모 | 수수료 |  | 비 고 |
| :---: | :---: | :---: | :---: | :---: |
| 항 만시 설보안 계 획서 승인 또는 변경승인 | 항만시설 1건당 | 승인: 55,700원 <br> - 변경승인: 27,850 원 |  |  |
| 항만시설보안심사 | 대상 항만시설 면적 | 최초 - 갱신심사 | 중간심사 |  |
|  | $10,000 \mathrm{~m}^{2}$ 미만 | 111,400원 | 55,700원 |  |


| 구 분 | 규 모 | 수수료 |  | 비 고 |
| :---: | :---: | :---: | :---: | :---: |
|  | $\begin{aligned} & 10,000 \mathrm{~m}^{2} \text { 이상 } \\ & 50,000 \mathrm{~m}^{2} \text { 미만 } \end{aligned}$ | 222,800원 | 111,400원 |  |
|  | $\begin{aligned} & 50,000 \mathrm{~m}^{2} \text { 이상 } \\ & 100,000 \mathrm{~m}^{2} \text { 미만 } \end{aligned}$ | 401,000원 | 200,500원 |  |
|  | $\begin{aligned} & 100,000 \mathrm{~m}^{2} \text { 이상 } \\ & 200,000 \mathrm{~m}^{2} \text { 미만 } \end{aligned}$ | 641,600원 | 320,800원 |  |
|  | $\begin{aligned} & 200,000 \mathrm{~m}^{2} \text { 이상 } \\ & 500,000 \mathrm{~m}^{2} \text { 미만 } \end{aligned}$ | 898,200원 | 449,100원 |  |
|  | $500,000 \mathrm{~m}^{2}$ 이상 | 1,077,800원 | 538,900원 |  |
|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  | 음 |  |  |

(2) 선박안전법

법률 제 80 조는 (1) 제 13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 신청(제 2호), (2) 제 18 조제 1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 승인 신청(제4호), (3)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을 신청 (제9호), (4) 제 23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 신청(제 10 호), (5) 제 24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 점검방법의 승인 신청(제 12 호), (6) 제 28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 자료의 승인 신청(제 13 호), (7) 제 39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적재고 박지침서의 승인 신청(제 15 호), (8) 제 41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 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 신청(제 16 호)하려면 국토해양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 고 있다(제1항).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확인•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제 1 항 단서)

대행검사기관이 제 1 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제3항). 수수료 수입은 대 행검사기관의 수입으로 한다(제4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령 제21조

제 1 항제 16 호에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 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 게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 수료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은 품목 1 건을 기 준으로 3,000 원이다. 공휴일에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내 지 별표 5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1.5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 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규칙 제3조). 외국에서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검사를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 14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선박 검사관의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규칙 제4조). 수수 료등을 적용함에 있어 10 원단위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제5 조제1항). 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2항).

## (3)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 76 조는 (1) 제 7 조제 4 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 8 조제 1 항, 제 11 조제 1 항, 제 12 조제 1 항 및 제 13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자, (3) 제 18 조제 2 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 19 조 및 제 49 조에 따라 등록번호판 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받 는 자, (5) 제 20 조, 제 44 조, 제 44 조의 2 , 제 45 조, 제 45 조의 2 또는 제 47 조 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 27 조에 따라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 (7) 제 30 조제 3 항(제 52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자동차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8) 제 30 조의 4 (제 52 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기인증의 면제를 신청하는 자, (9) 제 3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되 는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을 받는 자, (1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 의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자, (11) 제 40 조에 따라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를 신청하는 자, (12) 제43조 또는 제43조의 2 에 따라 자동차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신청하는 자, (13) 제47조에 따라 택시미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14) 제 53 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 록을 신청하는 자, (15)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는 자, (16) 제 60 조제 1 항에 따라 경매장 개설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7) 제 69 조제 2 항에 따라 전산자료 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 신청 또는 종합검사의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성능 시험대행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본문).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제 30 조제 3 항(제 52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확인, 제 32 조제 3 항(제 52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제 44 조제 1 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 44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 45 조제 1 항 에 따른 정기검사, 제 4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 47 조제 2 항에 따 른 택시미터의 검정, 제77조제6항에 따른 자기인증의 면제 및 기계• 기구의 정밀도검사, 제 77 조제 7 항에 따른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에 관한 승인, 제 77 조제 9 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 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내야 한다(단서).

시행규칙 제156조는 법 제76조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 료는 제 12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30 과 같다(제1항). 수수료는

영 제 1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의 수입증지(영 제17조제 3 항 또는 영 제 1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무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군 또는 구의 수입증지를 말한다)로 납부하여 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 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2항). (1) 공 무상 필요(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재해의 발생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제 1 항 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제4항).
[별표 30] <개정 2010.11.25>
수수료(제 156 조제 1 항 관련)

| 납부자 | 금 액 |
| :---: | :---: |
| 1. 법 제 7 조제 4 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자동차 등록원부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 <br> 가.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br> 나. 등록원부의 열람 <br>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 청하는 자 <br>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동일 시•도 안의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은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 <br> 4. 법 제 12 조제 1 항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 청하는 자 | 1 건에 대하여 300 원. 다만, 전자민원창구 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건에 대하여 100 원. 다만, 전자민원창구 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대에 대하여 2천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천 500 원으로 한다. <br> 1대에 대하여 1천 300 원 <br> 1 대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천 500 원으로 한다. |


| 납부자 |  |
| :--- | :---: |
| 5.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 |  |
| 는 자 |  |
| 6. 법 제 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  | 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하
1 건에 대하여 700 원. 다만, 전자민 원창구 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600 원으로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변경사항의 기재란
이 부족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7. 법 제 20 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8. 법 제 27 조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 으려는 자
9. 법 제 44 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0. 법 제 45 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1. 법 제47조에 따라 택시미터전문검정 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2. 법 제 47 조에 따라 택시미터의 검정 (제 95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수리검정만 해당한다)을 신청하는 자
13.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가. 등록
나. 변경등록
14. 법 제 55 조제 1 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 업의 양도. 양수신고를 하는 자
15. 법 제 55 조제 2 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 업의 합병신고를 하는 자
16. 법 제 60 조제 2 항에 따라 경매장개설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7. 법 제 69 조제 2 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가. 전산자료의 이용승인
나. 전산자료의 제공

1건에 대하여 2만원

1 대에 대하여 1 천 800 원

1건에 대하여 2만원

1건에 대하여 2만원

1건에 대하여 2만원

1대에 대하여 3천원

1건에 대하여 2만원
1 건에 대하여 1 만 3 천 100 원
1 건에 대하여 1 만 2 천원

1건에 대하여 1만2천원

1건에 대하여 2만원


1건에 대하여 1 만원
1건에 대하여 300원
(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06 조제 1 항제 8 호는 제 36 조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복제 등의 승인 신청을 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 도록 하고 있다. 제 1 항제 8 호의 신청자가 우리나라 정부와 협정을 체 결한 외국정부인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 또는 경감한다(제 5 항제 5 호와 단서). 제 1 항 및 제 4 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6항).

시행규칙 제 23 조제 4 항은 법 제 106 조제 1 항제 8 호에 따른 수로도서지 의 복제 등의 승인 신청 수수료 산정기준은 별표 15 와 같다.
[별표 15]
수로도서지 복제 등의 승인신청 수수료의 산정기준(제 115 조제 4 항 관련)

| 구 분 |  | 원판 사용료 |
| :---: | :---: | :--- |
| 복제 | 인쇄물 | 판매가격 $\times 0.6 \times$ 복제품수량 |
|  | 수치제작물 | 판매가격 $\times 1.0 \times$ 복제품수량 |
| 유사제작물 <br> 발행 | 인쇄물 | 해도류: 도엽당 판매가격의 $0.5 \times$ 제작물수량 <br> 서지류: 면당 5 원 $\times$ 제작물수량 |
|  | 수치제작물 | 해도류: 킬로바이트 $(\mathrm{KB})$ 당 1 원 $\times$ 제작물수량 <br> 서지류: 킬로바이트 $(\mathrm{KB}) ㄷ ㅏ ㅇ ~$ l 원 $\times$ 제작물 수량 |

1. 수수료는 100 원 단위까지만 계산한다.
2. 도엽의 크기는 전지규격 $(788 \times 1,092$ 밀리미터 $)$ 을 기준으로 $1 / 4$ 도엽을 최소 단위로 계산한다.
3. 유사제작물 인쇄물에서 "면"은 원본용지의 크기에 관계없이 실제 정보가 수록된 면의 $1 / 2$ 이상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1 면으로 계산한다.
4. 수치제작물의 경우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원본자료에서 해당 유사제 작물을 만드는데 사용된 자료의 양을 킬로바이트(KB)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제작물의 수량은 5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으로 본다.
5. 웹 사이트에 제공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복제품 또는 제작물 수량은 50으로 계산한다.
6.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수치제작물의 경우 1 년 단위로 유사제작물발행을 재신청해야한다.
(5) 관광진흥법

법률 제79조는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대 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제6호)을 하려면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수수료는 시행규칙 별표 23 에서 정하고 있다. 수수료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지정 하는 은행에 내야 한다.

구체적인 수수료의 금액은 신규사업 계획의 승인은 50,000 원(숙박시 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 원을 가산한 금액),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50,000 원(숙박시설 중 객실변경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 원을 가산한 금액) 이다.
(6) 저작권법

법률 제 132 조제 1 호는 제 50 조 내지 제 52 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제89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 부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23조는 별표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1항). 국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3조 및 법 제 54 조 (법 제63조제 3 항, 제 90 조, 제 98 조 및 101 조의 6 제 6 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저작권 등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50 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 항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제2항). 법 제 105 조에 따른 저작 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저작자가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저작권등록을 신청하 거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법 제63조제 3 항, 제 90 조, 제 98 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 한다(제3항).

별표에서는 법 제50조부터 제52조(법 제89조 및 제97조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승인 신청수수 료는 10,000 원으로 정하고 있다.
(7)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 37 조는 제 12 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나 변경승인(제1호)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29조는 수수료는 특별시•광역시• 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예) 노원구 수수료 조례 : 사업계획 승인신청(1건당 50,000원), 변경 승인신청(1건당 20,000원)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신청수수료
(8) 농지법

법률 제 56 조는 (1)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 34 조나 제 36 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 35 조나 제 43 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자, (4) 제 40 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 50 조에 따라 농지원부 등본 교부를 신청하 거나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 74 조는 용도변경 승인수수료는 5 천원으로 하고 있다(제 1 항제 5 호). 수수료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해당 농지원부 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2항).
(9)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30 조는 제 9 조제 1 항부터 제 3 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 인을 얻거나 수입신고하려는 자(제1호)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시행규칙 제 30 조는 법 제 30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3 에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별표에는 형식승인과 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별지 제1호•제4호서식에서 승인• 변경승인•신고시에 수수료가 없음을 정하고 있다.
(1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률 제54조는 (1) 제9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 10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3) 제 10 조제 2 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4) 제 14 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5) 제 19 조에 따른 유독물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6) 제 20 조제 1 항 본문 및 제 2 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의 등록•변경등 록 및 변경신고, (7) 제22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수시검사, (8)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9) 제 31 조에 따른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10) 제33 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의 허가 및 변경허가, (11) 제34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및 제 3 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 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2) 제 37 조제 1 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 등을 받으려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58조는 별표11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별표 11] <개정 2011.3.31>
수수료(제58조 관련)
화학물질확인증명서 발급 등의 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안 전진단 수수료는 취급시설의 시설규모별 인건비.경비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종 별 | 수수료 |
| :--- | :---: |
| 가. 화학물질확인증명서 발급 | 10,000 원 |
| 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 50,000 원 |
| 다.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면제확인 | 10,000 원 |
| 라. 시험항목별 시험기관의 지정 | - |
| 마. 유독물의 수입신고 | 13,000 원(매품목당) |
| 바. 유독물의 수입 변경신고 | 9,000 원 |
| 사. 유독물영업의 등록 | 13,000 원 |
| 아.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9,000 원 |
| 자.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 13,000 원(매품목당) |
| 차. 관찰물질의 제조•수입 변경신고 | 9,000 원 |
| 카. 취급제한•ㅡㅁ지물질의 수입허가 | 13,000 원(매품목당) |
| 타.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 변경허가 | 9,000 원 |
| 파.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 13,000 원 |
| 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9,000 원 |
| 거.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 13,000 원 |
| 너.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의 변경승인 | 9,000 원 |
| 더.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 20,000 원 |

비 고 : 수수료는 지방환경청장•유역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 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5. 검사 • 출입, 그 밖에 수수료

| 물류정책기본법 |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신청수수료 |
| :---: | :---: |
| 선박안전 법 | 건조검사, 선박검사, 별도건조검사 <br> 또는 국제협약검사 신청수수료 |
|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신청수수료 |
|  | 우수사업장의 지정 신청수수료 |
|  | 예비검사 신청수수료 |
|  | 컨테이너검정 신청수수료 |
|  | 예인선항해검사 신청수수료 |
| 해양환경 관리법 | 형식승인 • 정도검사 • 인증 • 검인 • 검 사•성능시험•검정 및 인정 수수료 |
|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 선박안전법 제 16 조의 4 제 1 항과 제 4 항에 따라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 의 검사 • 인정 • 확인 • 승인 • 검정 등(이하 "검사등"이라 한다) 신청 수수료 |
| 자동차관리법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 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 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 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신청수수료 |
|  | 정밀도검사 신청수수료 |
|  | 자동차검사 또는 종합검사 신청수 수료 |


|  | 택시미터의 검정 신청수수료 |
| :---: | :---: |
| 지하수법 | 수질 검사수수료 |
| 항만법 | 시설장비의 검사 수수료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질검사 수수료 |
| 해양환경 관리법 | 형식승인 • 정도검사 • 인증 • 검인 • 검 사•성능시험•검정 및 인정 수수료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기술심의수수료 |
| 관광진흥 법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수수료 |
|  | 카지노시설 검사수수료 |
|  | 카지노기구 검정수수료 |
|  | 카지노기구 검사수수료 |
|  |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수수료 |
| 저작권법 | 감정 수수료 |
| 가축전염병예방법 | 병성감정（혈액검사，혈청화학검사，세 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시험， 분변（糞便）내 기생충 검사，병리조직 검사，전자현미경검사，원유성분검사， 유산（流産）관련 질병검사，항원검사 （PCR），항원검사（RT－PCR））수수료 |
|  | 혈청검사 수수료 |
|  | 검역신청수수료 |
|  | 정밀검사수수료 |


|  | 현물검사수수료 |
| :---: | :---: |
| 낚시어선업법 | 낚시어선검사 수수료 |
| 농산물품질관리 법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
|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 수 수료 |
|  | 농산물의 검사수수료 |
|  | 농산물 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
|  | 농산물 검정 수수료 |
|  | 검정기관 지정 수수료 |
|  | 농지, 용수, 농자재 검정수수료 |
| 농약관리법 | 농약등에 대한 검사료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신약 등의 재심사 수수료 |
|  | 국가검정 수수료 |
| 사료관리법 | 사료의 재검사 수수료 |
|  | 자가품질검사료 |
|  | 검사수수료 |
|  | 재검사수수료 |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 병성감정 검사항목별 수수료 |
| 수산물품질 관리법 | 검사 및 재검사수수료 |
| 식물방역 법 | 검사수수료 |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 품질검사 수수료 |
| 인삼산업법 |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


| 축산물위생관리법 | 지정 신청숫료 |
| :---: | :---: |
|  | 검사수수료 |
|  | 검사관 검사수수료 |
|  | 재검사수수료 |
|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수수료 |
| 친환경농업육성법 | 인증기관 지정수수료 |
|  | 인증기관 재지정수수료 |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검사수수료 |
|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수수료 |
| 위험물안전관리법 | 탱크안전성능검사수수료 |
|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수수료 |
| 의료 법 | 의료광고 심 의수수료 |
| 식품위생 법 | 검사수수료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관리자 지정 - 변경지정 수수료 |
|  | 수입허가 공인증명 수수료 |
|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 전산이용수수료 |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지정변 경 수수료 |
|  |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지정변 경 수수료 |
|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 광고심의 수수료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품질인증식품 표시수수료 |
| 먹는 물 관리법 | 검사수수료 |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현장평가 수수료 |
| :--- |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안전도검사 수수료 |
| 온천법 | 수질검사 수수료 |
|  | 성분검사 수수료 |

(1) 선박안전법

법률 제 80조제1항은 (1) 건조검사, 선박검사, 별도건조검사 또는 국 제협약검사를 신청하는 자, (2) 제 13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 인을 신청하는 자, (3) 제 15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 는 자, (4) 제 18 조제 1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그 변 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 는 소형선박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 20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 20 조제 3 항 단서의 규정에 따 른 확인을 신청하는 자, (8) 제 22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 (9) 제 22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0) 제 23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11) 제 23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 검정을 신청하는 자, (12) 제 24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3) 제 28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자료의 승 인을 신청하는 자, (14) 제 34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을 신청하는 자, (15) 제 39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6) 제 41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 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자, (17) 강화검사 또는 예 인선항해검사를 신청하는 자, (18) 제 7 조제 2 항, 제 8 조제 2 항, 제 10 조제 3 항, 제 11 조제 2 항, 제 12 조제 2 항 • 제 4 항, 제 18 조제 7 항, 제 20 조제 4 항, 제 22 조제 3 항, 제 23 조제 4 항 후단, 제 34 조제 2 항 및 제 43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증서 등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1 항）．다만，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확인•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제 1 항 단서）．

대행검사기관 또는 두께측정대행업체가 제 1 항 단서 및 제 2 항의 규 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제3항）．대행검사기관 또는 두께측정대행업체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입은 대 행검사기관 또는 두께측정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한다（제4항）．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 60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선체두께를 측정하 는 경우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두께측정대행업체가 선체두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두께측정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제2항）．국토해양부장관은 제68조의 규정 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동조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 정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국 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필요 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5항）．제6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료 등 필요한 설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6항）．

시행규칙 제99조는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37 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 100 조는 법 제 80조제6항의 수수료（특별점검수수료）는 특별점검을 위하여 발생한 항 공료，숙박비，식비 및 현지 교통비 등을 포함한다（제1항）．수수료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지만，「공무원여비규정」의 지급 기준보다 초과 지출된 숙박비는 실비를 적용한다（제 2 항）．제 1 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및 관리는「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정부보 관금 취급규칙」을 준용한다（제3항）．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검사•인정•확인•승인•검정등（이하＂검 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와 그 납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선박의 검사 등에 관 한 수수료 규칙」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이 규칙에서는 선박검사 수수료（별표 1），제조검사수수료（별표 2），예비검사수수료（별표 3），우 수사업장인정 및 확인수수료（별표 4），형식승인 및 검정 수수료（별표 5）， 증서교부 및 재교부수수료（별표 6）등을 정하고 있다（규칙 제2조제1항）． 중고품인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2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 여야 한다（제2항）．외국에서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내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4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수료 로 납부하여야 한다（제3항）．
（2）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검사•인정•확인•승인•검정등（이하＂검 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와 그 납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선박의 검사 등에 관 한 수수료 규칙」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이 규칙에서는 선박검사 수수료（별표 1），제조검사수수료（별표 2），예비검사수수료（별표 3），우 수사업장인정 및 확인수수료（별표 4），형식승인 및 검정 수수료（별표 5），증서교부 및 재교부수수료（별표 6）등을 정하고 있다（규칙 제2조제 1항）．중고품인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2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 부하여야 한다（제2항）．외국에서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내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

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제3항). 공휴일에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내지 별표 5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1.5 배에 해당하는 금액 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제3조). 외국에서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검사를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 14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의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제4조). 제2 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을 적용함에 있어 10 원단위 미 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제 5 조제 1 항). 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제2항 본문).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단서).
(3)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 20 조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 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제1항).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제3항).
시행규칙 제 12 조는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발급 및 봉인수수료 (등록 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제1항).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 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명확 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제2항).
（4）항만법
법률 제 26 조는 시설장비관리자는 그가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제조검사，설치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의 구분에 따라 국토 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제 1 항）．검사를 받으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2항）．

제 28 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제 26 조제 1 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국토해 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 1 항）．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 2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검사대행기관에 내어야 한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항만시설 장비관리 규칙」제9조는 검사수수료 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 10 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검사수수료는 검사를 신청할 때 에 내어야 하지만，제조검사나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관리청 또는 검사대행기관이 협의하여 검사완료일까지 분할하여 낼 수 있다 （제2항）．
（5）관광진흥법
법률 제 79 조는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제4호），카지노시설 검사 （제8호），카지노기구 검정（제9호），카지노기구 검사（제10호），안전성검 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제11호） 를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제4호）수수료와 카지노기구 검사（제10호） 수수료는 시행규칙 별표 23 에서 정하고 있다．구체적인 수수료 금액 은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 수수료는 20,000 원，카지노기구 검사수 수료 중 카지노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만 해당한다）는 대

당 135,000 원，주요부문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부품교환 등에 따른 확 인검사는 대당 15,000 원（다만，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는 무료로 한다）이다．
카지노시설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검 사공정별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직접인건비，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시행규칙 제69조제3항）．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안전 성검사기관이 정하되，「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 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검사의 난이도，검사에 걸린 시간 등에 따른 유기기구 종류별 금액을 정하여 야 한다（시행규칙 제69조제4항）．경비의 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2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르며，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 와 요율 및 직접인건비의 기준금액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 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법률 제 79 조제 9 호의 카지노시설의 검정에 관한 수수료는 시행규칙 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제25조제2항은 위임•위탁의 규 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6）저작권법
법률 제 119 조는（1）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 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2）제114 조의 2 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 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 우에는 위원회가 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감정절 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위원회는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제3항).

위원회가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기보다는 하위법령에서 그 기준과 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7) 낚시어선업법

법률 제9조는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어선을 이용하여 낚시 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어선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1항). 낚시어선검사의 유효기간 및 검사수수료는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시행규칙 제4조제 2 항은 법 제9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검사 의 검사수수료는「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규칙」에 의한 정기검 사 수수료의 금액으로 한다.
(8) 농산물품질관리법

법률 제 32 조는 (1) 제5조제 3 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 6 조제 2 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3) 제 7 조제 2 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4) 제8조제 2 항에 따 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 19 조에 따라 농산물의 검 사를 신청하는 자, (6)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 27 조제 1 항에 따라 농산물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8) 제 27 조제 3 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수매 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46조는 법 제32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인증기 관의 지정신청,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신청,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농 산물의 검사신청,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농산물의 검정신청, 농산

물검정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2 에서 정하고 있다(제 1항). 법 제 32 조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농산물은 (1) 법 제 27 조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검정을 신청하는 농산물. 다 만,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검정하는 농산물을 제외한다. (2) 영 제 28 조 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사하는 농 산물,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다만, 지정검사•검정기관의 장이 검사• 검정하는 농산물을 제외한다(제2항). 인증기관의 장이나 지정검사•검 정기관의 장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신청 및 검사•검정에 관한 수 수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그 경비와 해당 농산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제3항). 수수료의 징 수방법은 해당 인증기관의 장이나 지정검사•검정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제4항).
[별표 12] <신설 2009.12.17>

## 수수료(제46조제1항 관련)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수수료

가. 신청수수료

| 항 목 | 건 수 | 수수료(원) |
| :---: | :---: | :---: |
|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청(신규•갱신: 5 농가 기준) <br> - 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2,000원씩을 추가하되, <br>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 | 50,000 |

나.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1)「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 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인 증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1 일과 목적지까지 왕복에 필요한 기 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 명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건당 농가수가

많아 심사기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제 심사에 소요된 일수를 적 용할 수 있다.
3)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수질 및 농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비용 은 공인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인증신청인이 이를 납부하 여야 한다.
2.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 수수료

| 항 목 | 건 수 | 수수료(원) |
| :---: | :---: | :---: |
|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신청(신규 • 갱신) | 1 | 100,000 |

3.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가. 신청수수료(국내외)

| 항 목 | 건 수 | 수수료(원) |
| :---: | :---: | :---: |
| ○ 농산물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신청(신규 • 갱신) | 1 | 200,000 |

나.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출장비(국외)

1)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과 목적지까지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 명으로 한다.
2) 국외출장비는 국외여비정액표의 기준에 따르며, 국외항공운임은 2 등 정액으로 하고, 국외자동차운임은 실비로 한다.
4. 지리적표시 등록수수료

| 항 목 | 건 수 | 수수료(원) |
| :---: | :---: | :---: |
| $\bigcirc$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 1 | 100,000 |

5.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 항 목 | 건 수 | 수수료(원) |
| :---: | :---: | :---: |
| ○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신청 | 1 | 200,000 |

6.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 항 목 | 건 수 | 수수료(원) |
| :---: | :---: | :---: |
| $\bigcirc$ 농산물검정기관의 지정신청 | 1 | 200,000 |

7. 농산물 검사수수료

| 종류별 | 품 목 | 중 량 | 단 위 | 수수료(원) |
| :---: | :---: | :---: | :---: | :---: |
| 곡류 | $\bigcirc$ 팥 <br> $\bigcirc$ 녹두 <br> ○ 기타 곡류 전품목 | 40 kg | 대 | 30 |
|  |  | 40 kg | 대 | 30 |
|  |  | 40 kg | 대 | 20 |
| 서류 | $\bigcirc$ 전품목 | 40 kg | 대 | 20 |
| $\begin{gathered} \text { 특용 } \\ \text { 작물류 } \end{gathered}$ | ○ 참깨 <br> ○ 기타 특용작물 전품목 | 40 kg | 대 | 40 |
|  |  | 40 kg | 대 | 20 |
| 과실류 | $\bigcirc$ 전품목 | 15 kg | 상자 | 20 |
| 채소류 | $\bigcirc$ 고추 <br> ○ 기타 채소류 전품목 | 20 kg | 대 | 30 |
|  |  | 20 kg | 대 | 20 |
| 잠사류 | $\begin{aligned} & \bigcirc \text { 누에씨 } \\ & \bigcirc \text { 누에고치 } \end{aligned}$ | - | - | 없음 |
|  |  | 10 kg | - | 20 |
| 수입 <br> 농산물류 | 정곡기타 수입농산물류 전품목 | 1톤 | - | 70 |
|  |  | 1톤 | - | 60 |

주)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수수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8. 농산물 검정수수료

| 구 분 | 검정항목 | 단위 | $\begin{gathered} \text { 1항목당 } \\ \text { 수수료(원) } \end{gathered}$ |
| :---: | :---: | :---: | :---: |
| (1) 품위 | ○ 정립, 피해립, 이종종자, 이물, 용적 중, 싸라기, 입도, 이종곡립, 분상질 립, 착색립, 사미, 세맥, 다른종피 색, 과균비율, 색깔비율, 결점과율 (조)회분 <br> 사 분 | 1항목 <br> 1점 <br> 1점 | $\begin{aligned} & 8,600 \\ & 13,700 \\ & 17,200 \end{aligned}$ |
| (2) 발아율 | $\bigcirc$ 발아율, 발아세 | 1항목 | 30,800 |
| (3) 도정율 | 미곡의 제현율, 현백율 맥류의 정백율 | $\begin{aligned} & \text { 1항목 } \\ & \text { 1항목 } \end{aligned}$ | $\begin{gathered} 9,100 \\ 18,200 \end{gathered}$ |
| (4) 일반성분 | $\begin{array}{ll} \hline \mathrm{O} & \text { 수분 } \\ \mathrm{O} & \text { 단백질 } \\ \mathrm{O} \text { 지방 } \end{array}$ | 1점 <br> 1점 <br> 1점 | $\begin{aligned} & 12,000 \\ & 26,000 \\ & 26,000 \end{aligned}$ |


| 구 분 | 검정항목 | 단위 | $\begin{gathered} \hline \text { 1항목당 } \\ \text { 수수료(원) } \end{gathered}$ |
| :---: | :---: | :---: | :---: |
|  | $\bigcirc$ 조섬유 | 1점 | 8,600 |
|  | O 산가 | 1점 | 8,600 |
|  | $\bigcirc$ 산도, 당도 | 1항목 | 8,600 |
| (5) 무기서눈 | $\bigcirc$ 칼슘, 인, 식여口ᄆ, 나트륨, 칼륨 등 | 1성분 | 46,000 |
| (5) 부기운 | ○ 질산염 | 1점 | 15,000 |
| (6) 유해중금속 | ○ 비소, 납, 아연, 구리, 수은 등 | 1성분 | 40,000 |
| (7) 잔류농약 | 클로로피리포스, 엔도설판, DDT , 프로시미돈, 다이아지논, 카벤다짐 등. 다만, 1 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한 농약은 1 성분으로 인정한다. | 1성분 | 81,400 |
| (8) 곰팡이 독소 | $\bigcirc$ 아플라톡신 B1, B2, G1, G2 등 | 1성분 | 87,000 |
| (9) 항생물질 | $\bigcirc$ 항생제 | 1성분 | 40,000 |
|  | $\bigcirc$ 합성항균제 | 1성분 | 40,000 |
|  | $\bigcirc$ 호르몬제 | 1성분 | 180,300 |

주1)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검정수수료는 유사항목 또는 관련 기관의 수수 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주2)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하여 1성분으로 인정하는 농약의 범위 등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한다.
9. 농지, 용수, 농자재 검정수수료

| 구 분 | 검정항목 | 단 위 | $\begin{gathered} \hline \text { 1항목당 } \\ \text { 수수료(원) } \end{gathered}$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농지 } \\ & \text { (토양) } \end{aligned}$ | 카드뮴 - 구리 - 납 비소 수은 6가크롬 | 1점 1성분 | $\begin{gathered} 10,600 \\ 8,700 \\ 18,300 \\ 18,300 \end{gathered}$ |
| 용수 <br> (하천수•호소수) | 크롬 - 아연 - 구리 - 카드뮴 - 납 - <br> 망간 - 니켈 - 철 비소 셀레늄(원자흡광광도법) 6가크롬 수은 | 1점 1성분 | $\begin{gathered} 6,900 \\ \\ 13,900 \\ 6,000 \\ 6,900 \\ 10,600 \end{gathered}$ |
| $\begin{array}{\|c} \text { 용수 } \\ \text { (먹는물 • 먹는샘물) } \end{array}$ | ○ 구리•카드뮴 - 납 - 아연 - 알루 미늄 - 망간 - 철 | 1점 1성분 | 6,100 |


| 구 분 | 검정항목 | 단 위 | $\begin{gathered} \text { 1항목당 } \\ \text { 수수료(원) } \end{gathered}$ |
| :---: | :---: | :---: | :---: |
|  | ○ 셀레늄 <br> ○ 비소 <br> 0 수은 <br> ○ 6가크롬 |  | $\begin{aligned} & 6,600 \\ & 7,700 \\ & 6,600 \\ & 3,900 \end{aligned}$ |
| 농자재 | $\bigcirc$ 질소, 인산, 가리 등 | 1점 1 성분 | 10,600 |
|  | $\bigcirc$ 카듬ㅁㅁ, 비소, 납, 수은 등 | 1점 1성분 | 11,800 |

주)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검정수수료는 유사항목 또는 관련 기관의 수수 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9) 인삼산업법

법률 제 17 조는 (1)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 적으로 제조한 자, (2) 제 1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자가제조한 홍삼•태 극삼 또는 백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한 수집자, (3) 홍 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한 자는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제1항). 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생산하거나 수 집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그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제6항).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삼류검사 기관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제7항).
시행규칙 제 22 조는 법 제 17 조제 7 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별표 4 의 2 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종묘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4의2] <개정 2010.5.20>
검사수수료(제22조 관련)

| 구 분 | 수수료 | 비 고 |
| :---: | :---: | :---: |
| 관능검사 | 해당 물품가격의 6/1,000 이하 | 에27조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 해당 <br>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수수료 <br> 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농 <br> 약잔류검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가 |
| 이화학검사 | 5,000 원 이하/시료 1점 | 지 성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br> 경우에는 성분의 수에 관계없이 1 <br> 성분으로 본다. |
| 미생물검사 | 5,000 원 이하/시료 1점 |  |

(10) 축산물위생관리법

법률 제 41 조는 제 9 조제 3 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하는 자(제 1 호), 제 9 조의 3 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제 3 호), 제 11 조제 1 항 본문 및 제 12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제4호), 제11조 제 2 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제 5 호), 제 12 조제 2 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는 자(제6호), 제 12 조제 4 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제 7 호), 제 12 조의 3 제 4 항에 따른 재검사를 받는 자(제 8 호), 제 15 조제 2 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제 10 호), 제 20 조제 1 항제 2 호 또는 제 4 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는 자(제 11 호), 제 40 조의 2 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제16호)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59조는 법 제41조제 1 호 및 제 3 호에 따라 제 7 조의 2 에 따 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및 제7조의9에 따른 지 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기준원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기준원장에게 내야 한다(제1항).

법 제 41 조제 4 호, 제 6 호부터 제 11 호까지 또는 제 16 호에 따라 검사, 신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재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축산물위

생검사기관의 장 또는 검역원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3항).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 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제4항).
(11)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66조는 제34조제2항(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 인증) 및 제 4 항(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 • 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에 따른 안전인증(제 3 호), 제 34 조제 5 항(안전 인증기준 확인)에 따른 확인(제4호), 제 36 조제 1 항(유해• 위험기계등의 안전검사)에 따른 안전검사(제5호)와 제36조의 2 제 1 항(자율검사프로그 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제6호)을 받으 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 항).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업무 수행 으로 인한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2항).

시행규칙 제 145 조는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수수료 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전자정부법」 제 14 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제2항).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 제2호에서 부과기준•대상•금액• 공고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수 료 관련 사항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 이 적절할 것이다.
(12) 식품위생법

법률 제 23 조제 4 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식품등을 재검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재검사 결과를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 수수료와 보세창고료 등 재검사에 따르 는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
(13) 의료기기법

법률 제 42 조는 제 23 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심의 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39조는 별표 8 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본문). 다만,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써 변경의 사유가 행정구역개 편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등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단서). 수수료를 국가기관에 납부하 는 때에는 수입인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는 현 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제2항).
별표 8) 15. 광고사전심의 신청
전자민원의 경우 : 해당 없음
방문 • 우편민원의 경우 : 100,000 원
(14) 먹는 물 관리법

법률 제 56 조는 제 21 조제 5 항 - 제 36 조제 2 항 및 제 41 조제 2 항에 따른 검 사(제7호)를 받으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은 법 제56조제7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는 국 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 일(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 일)간 그 내 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사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산정명세를 국립환 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제4항).
(1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률 제 17 조는 (1) 제 3 조제 1 항(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2) 제9조제 1 항(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도 검사, (3) 제 11 조제 1 항(옥외광고업의 등록)에 따른 등록에 대하여 그 허 가 신청시•신고시•안전도검사시 또는 등록신청시에 각각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16) 온천 법

법률 제 31 조는 제 12 조제 1 항 • 제 14 조제 1 항 및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허가나 제 19 조제 1 항에 따른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 22 조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1) 법 제 12 조제 1 항 전단 에 따른 토지의 굴착허가 : 공당 6 만원, (2) 법 제 12 조제 1 항 후단에 따른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심도증가 허가 : 공당 3 만원, (3) 법 제 14 조 제 1 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 : 개소당 3 만원, (4) 동력장치의 변 경허가 : 개소당 1 만 5 천원, (5) 법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 건당 10 만원, (6) 법 제 19 조제 1 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2 만원 이하 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금액,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등이다(제1항).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 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 3 항)

## 제 4 절 민원수수료

I . 민 원수수료

신청, 발급, 검정, 열람, 인증, 정보제공, 교부, 심의, 추천, 이용, 보증, 발행, 연장, 지급, 청구, 확인 수수료 등을 대상으로 한다.

ㅍ. 현행 법령상 민원수수료의 종류

1. 신청수수료

| 원자력 법 | 허가 • 지정 • 승인 • 면허 • 등록 • 검사 수수료(총38개신청수수료) |
| :---: | :---: |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자격인정 신청 수수료 |
| 건설기술관리법 | 신기술 신청 수수료 |
|  | 건설기술 심의요청수수료 |
|  | 공장인증 신청수수료 |
|  |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 수수료 |
| 건설산업기본법 |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신청수수료 |
|  |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공시 신청수수료 |
|  | 건설산업정보 신청수수료 |
|  | 분쟁조정 신청수수료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수수료 |


|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등록증 재교부신청수수료 |
| :---: | :---: |
|  |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신 청수수료 |
| 선박법 | 선박의 말소등록 신청수수료 |
| 선박안전 법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확인 신청수수료 |
|  | 제한하중등의 확인 신청수수료 |
| 선박직원법 |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의 교부• 갱신 기타 증명등 신청수수료 |
| 선원법 | 증서의 교부 • 공인등 신청수수료 |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의 확인 신청수수료 |
|  | 전산자료의 이용 신청수수료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기본측량성과•기본측량기록과 간 행한 지도등의 활용 신청수수료 |
|  | 지도등 간행의 심사 신청수수료 |
|  |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요청수수료 |
|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수수료 |
|  | 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 신청, 분 할 신청, 합병 신청, 지목변경 신청,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축척변경 신청,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수수료 |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 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 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등록번호 부여 신청수수료 |
|  | 등록증명서 발급 신청수수료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등급분류 신청수수료 |
| :---: | :---: |
|  | 이의신청수수료 |
|  | 시험용 게임물 확인신청수수료 |
| 관광진흥법 |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신청수수료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조정신청 수수료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한국영화의 인정신청수수료 |
|  |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신청수수료 |
|  | 이의신청수수료 |
|  | 영화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 성의 확인 신청수수료 |
|  |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수수료 |
|  | 비디오물 복제 등의 확인 신청수 수료 |
|  | 등급의 재분류 신청수수료 |
|  | 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 신청수수료 |
|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 허가, 등록, 검사 및 어선총톤수 측정 신청수수료 |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 한 규칙 | 시험어업신청 수수료 |
| 종자산업법에 따른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 품종보호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 ${ }^{181)}$ |

181)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등록수수료, 품종보호 출원수수료, 품종보호 심사수수료, 우선권주장 신청수수료, 통상실시권의 설정 재정신청수수료, 심판청구 수수료, 재심청구수수료, 보정료

|  |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에 관한 수수료182） |
| :---: | :---: |
|  | 종자보증 등에 관한 수수료 183） |
|  | 서류의 등본•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수수료 |
|  | 서류의 사본 신청수수료 |
| 종자산업법에 따른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 등록원부의 사본 또는 기록사항의 신청수수료 |
|  | 출원 또는 등록 관련 서류의 사본 신청수수료 |
| 축산물위 생관리 법 |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수수료 |
| 자격기본법 | 민간자격 공인 또는 재공인수수료 |
| 가사소송법 | 소（訴）제기수수료 |
|  | 심판 청구수수료 |
|  | 조정 신청수수료 |
|  | 그 밖의 재판과 처분 신청수수료 |
|  | 기록의 열람 등 신청수수료 184） |
| 민사조정 법 | 조정신청 수수료 |
| 부동산등기법 | 등기 신청 수수료 |
| 상업등기법 | 등기수수료 |

182）등재신청수수료，등재심사수수료
183）국가보증 신청수수료，국가보증 검사결과에 대한 재검사 신청수수료，국가보증 검사수수료，보증서 발급수수료，생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품종 신고수수료，수입 적응성시험 신청수수료
184）기록의 열람•복사，재판서•조서（調書）의 정본（正本）•등본•초본의 발급，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 외국법자문사법 | 자격승인의 신청 수수료 |
| :---: | :---: |
|  | 설립신청 수수료 |
| 민사조정규칙 | 조정수수료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소 제기 수수료 |
|  | 항소제기 수수료 |
|  | 반소제기의 수수료 |
|  | 재심청구의 수수료 |
|  |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 |
|  | 항고제기의 수수료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반대청구의 수수료 |
|  | 준재심 청구의 수수료 |
|  | 기타 신청 수수료 |
|  | 병합청구의 수수료 |
|  | 조정절차의 수수료 |
|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 사실증명수수료 |
|  | 인감증명수수료 |
|  | 부동산 등기 신청수수료 |
|  | 상업등기 신청수수료 |
|  | 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
|  | 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 |
| 등기특별회계규칙 | 등기신청수수료 |
| 검역법 | 선박위생관리 점검 수수료 |
|  | 국제공인 예방접종 수수료 |
|  | 소독 수수료 |


|  | 검사 수수료 |
| :---: | :---: |
|  | 검역조치 수수료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 등급 인증 신청수수료 |
| 환경분쟁조정법 | 조정신청 수수료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수수료 |
|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면제 확인수수료 |
|  | 시험기관의 지정수수료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 진 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다)시험 수수료 |
| 출입국관리법 | 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
| 집 행 관수수료규칙 | 서류 송달 수수료 |
|  | 휴일 또는 야간의 서류 송달 수수료 |
|  | 압류 또는 가압류집행 수수료 |
|  | 본 압류 수수료 |
|  | 배당요구 사무수수료 |
|  | 매각대금 지급사무수수료 |
|  | 거절증서 작성 수수료 |
|  | 위임에 따른 고지 또는 최고 수수료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증명 신청 수수료 |

（1）원자력법

법률 제 112 조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지정•승인•면허•등록•검 사를 신청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다만，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납부 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령 제 335 조는＂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136조는 법 제11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 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그 금액은 별표 7과 같다．다만，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별표 7］＜개정 2001．7．25＞
수수료(제136조관련)

1．원자로 등의 건설•운영허가 등
（단위 ：원）

| 항 목 | 수수료 |
| :--- | ---: |
| 가．법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의 신청 | 200,000 |
| 나．법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의 신청 | 30,000 |
| 다．법 제 12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인가의 신청 | 50,000 |
| 라．법 제 12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병깅니가의 신청 |  |
| 마．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의 신청 | 20,000 |
| 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의 신청 | 3000 |
| 사．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 등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 운영 | 30,000 |
| 허가의 신청 | 20,000 |
| 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의 신청 |  |

2. 법 제 43 조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지정
(단위 : 원)

| 항목 | 수수료 |
| :--- | ---: |
| 가. 정련사업의 허가신청 | 100,000 |
| 나. 정련사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 | 20,000 |
| 다. 가공사업의 허가신청 | 100,000 |
| 라. 가공사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 | 20,000 |
| 마.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신청 | 100,000 |
| 바.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지정사항의 변경승인신청 | 20,000 |

3. 법 제 65 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사용.이동사용 및 판매허가
(단위 : 원)

| 항 목 | 수수료 |
| :---: | :---: |
| 가.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 사용 - 이동사용허가신청 | 10,000 |
| 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사용 이동사용허가신청 | 10,000 |
| 다.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허가신청 | 10,000 |
| 라.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허가신청 | 10,000 |
| 마.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 사용 - 이동사용변경허가신청 | 5,000 |
| 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 - 사용 - 이동사용변경허가신청 | 5,000 |
| 사.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변경허가신청 | 5,000 |
| 아.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변경허가신청 | 5,000 |

4. 법 제 76 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
(단위 : 원)

| 항 목 | 수수료 |
| :--- | :---: |
| 가. 폐기시설 등의 건설 $\cdot$ 웅영 허가신청 | 100,000 |
| 나. 폐기시설 등의 건설 $\cdot$ 운영 변경허가신청 | 20,000 |

5. 법 제 90 조의 4 의 규정에 판독업무자의 등록
(단위 : 원)

| 항 목 | 수수료 |
| :--- | :---: |
| 가. 판ㄷㅗㅗ업무의 등록신청 | 10,000 |
| 나. 판독업무의 변경등록 신고 | 5.000 |

6. 법 제 94 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관련 면허
(단위 : 원)

| 항 목 | 수수료 |
| :--- | :---: |
| 가.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br> (1)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 20,000 |


| 항 목 | 수수료 |
| :--- | :---: |
| (2) 원자로조종사면허 | 15,000 |
| (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 20,000 |
| (4)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 15,000 |
| (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 15,000 |
| (6) 방사성동위워소취급자특수면허 | 20,000 |
| (7)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20,000 |
| 나. 면허증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 5,000 |
| 다. 면허증재교부(정정 • 갱신 등)를 신청하는 경우 | 2,500 |

7. 법 제 65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등록
(단위 : 원)

| 항 목 | 수수료 |
| :--- | ---: |
| 가. 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 10,000 |
| 나. 업무대행자의 변경등록신고(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은 제외함) | 5,000 |

8. 법 제 104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단위 : 원)

| 항 목 | (난위 : 원) |
| :---: | :---: |
| 가. 법 제 104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 20,000 |

(3) 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 40 조의 2 는 (1) 제 18 조제 1 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요청하 는 자, (2) 제5조제 1 항에 따른 지방위원회에 건설기술의 심의를 요청 하는 자, (3) 제 24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 (4) 제 18 조제 3 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78조는 별표 18에서 수수료의 산출기준을 정하도록 하 고 있다.
［별표 18］＜개정 2011．4．7＞

## 수수료의 산출기준（제78조 관련）

1．신기술 신청 심사수수료 산출기준（법 제40조의 2 제 1 호 및 제 4 호 관련）

| 구 분 | 금액（1건당） |
| :---: | :---: |
| 신청수수료 | 10,000 원 |
| 1차심사수수료 | $2,000,000$ 원 |
| 2차심사수수료 | $1,500,000$ 원 |

비 고
가．신청수수료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낸다．
나． 1 차 및 2 차심사수수료는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낸다．
다．위 표의 수수료 외에 심사를 위한 현장실사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지정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현장실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에서 조사－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부문 단가를 적용한다．
마．현장실사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2．공장인증 신청수수료 산출기준（법 제40조의2제3호 관련）

| 구 분 | 금 액 |  |  |  |
| :---: | :---: | :---: | :---: | :---: |
| 가．기본수수료 | 인건비，사무실 운영비，감가상각비 등 공장심사업무를 위탁받 은 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 공장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 한 금액으로 한다． |  |  |  |
| 나．공장심사원 출장비 및 수당 | 1）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br> 2）출장기간은 공장심사에 걸리는 기간으로서 다음과 같다． |  |  |  |
|  |  |  | 인원 |  |
|  | 등급 | $\begin{aligned} & \text { 특급기술자 } \\ & \text { (5급 상당)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고급기술자 } \\ \text { (6급•7급 상당) } \end{gathered}$ | 소요기간 |
|  | 1급 | 1명 | 2 명 | 4일 |
|  | 2급 |  |  | 3일 |
|  | 3급 |  |  | 2일 |
|  | 4급 |  |  | 2일 |


| 구 분 | 금 액 |
| :---: | :---: |
|  | 3) 공장심사원의 수당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장심 <br> 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br> 으로 한다. |
| 다. 인증심의위원 <br> 수당 | 공장인증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의 수당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 <br> 인을 받아 공장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 <br> 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비고
가. 교량분야와 건축분야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인원은 1 개 분야 필요인원으로 하 고, 기간은 상위등급 소요기간에 1 일을 추가한다.
나. 인증받은 공장에 대한 사후관리심사의 경우 사후관리심사수수료는 위 표의 나 란을 준용하며, 필요인원은 특급기술자 1 명과 고급기술자 1 명으로 하고, 소요기 간은 1 일로 한다.
다. 영 제 129 조제 1 항에 따라 공장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상태 조사를 위한 심사 업 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법 제40조의2제3호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 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 일간 게시할 수 있다.
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다목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 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4)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 92 조는 (1)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신청 하는 자, (2) 제 9 조의 2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 업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 2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4) 제 23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 하여 신청하는 자, (5) 제 2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6)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 38 조는 별표 5 에서 법 제 92 조제 1 호•제 2 호 및 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법 제92조제3호•제3호의 2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영 제87조에 따 라 위탁을 받은 기관이 시공능력의 평가•공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 및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드는 비용을 고려 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제2항). 영 제87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 록 제 2 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 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 일간 게시할 수 있다(제3항).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제4항).
[별표 5] <개정 2005.1.15>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액(제 38 조제 1 항관련)

| 신청내용 | 수수료 |
| :---: | :---: |
| 1. 건설업등록 <br> 가.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조경공사업 <br> 나.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br> 다. 전문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 제 2 종•제 3 종 및 난방시공업 제 2 종•제3종을 제외한다) <br> 라. 가스시설시공업 제 2 종 • 제 3 종 및 난방시공업 제 2 종 $\cdot$ 제 3 종 <br> 2.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교부 <br> 3. 건설업분쟁조종 | 6만원 <br> 9만원 <br> 2만원 <br> 1만원 <br> 2천원 <br> 5만원 |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 47 조는 (1) 제 5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2) 제9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 11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 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4) 제 1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5) 제 13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 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1항). 제5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업무를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을 얻어 결정 - 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제2항).
(6)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06 조는 (1) 제 14 조제 2 항 및 제 19 조제 2 항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2) 제 15 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의 활용 신 청, (3) 제 15 조제 3 항에 따른 지도등 간행의 심사 신청, (4) 제 16 조 또는 제 21 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5) 제 18 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요청, (6) 제27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발급 신청, (7) 제33조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심사 신청, (8) 제 36 조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복제 등의 승인 신청, (9) 제44 조제 2 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신청, (10) 제44조제 3 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1) 제54조제 1 항에 따른 수 로사업의 등록 신청, (12) 제54조제3항에 따른 수로사업등록증 및 수로 사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3) 제75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14)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15）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 청，제 79 조에 따른 분할 신청，제 80 조에 따른 합병 신청，제 81 조에 따 른 지목변경 신청，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 83 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제 84 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또는 제 86 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16） 제 92 조제 1 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신청，（17）제93조제 1 항에 따 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신청，（18）제93조제 2 항에 따른 성능검사대 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등을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신청자가 공공측량시행자인 경우，（2） 제 1 항제 8 호의 신청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초•중등교육법」및 「고 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사한 제작물을 발 행하는 경우，（3）제 1 항제 8 호의 신청자가 우리나라 정부와 협정을 체 결한 외국정부인 경우，（4）제 1 항제 13 호의 신청자가 국가，지방자치단 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인 경우，（5）제 1 항제 15 호의 신청자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다만，제3호의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한다（제 5 항）．제 1 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6항）．

시행규칙 제 23 조는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로부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수 수료 명세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제1항）． 심사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에게 해당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2항）．

시행규칙 제 115 조는 법 제 106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제 6 호, 제9호부터 제 15 호까지, 제 17 호 및 제 18 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 와 같다(제 1 항). 법 제 106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 료 산정기준은 별표 13 과 같다(제2항). 법 제10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은 별표 14 와 같다(제 3 항). 법 제 106 조제 1 항제 8 호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복제 등의 승인 신청 수수료 산정기준은 별표 15 와 같다(제4항). 법 제 106 조제 1 항제 16 호에 따른 측 량기기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는 별표 16 과 같다(제 5 항). 제 1 항부터 제 5항까지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 만, 법 제 93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하는 성능검사 수수료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측량협회 등에 위탁된 업무의 수수 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제6항).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제7항).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 41 조제 2 항은 (1) 제 2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신청 하는 자, (2)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 (4) 제 21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5) 제 21 조제 5 항에 따른 게임물 의 내용수정을 신고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인 자는 등급위원회가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8) 관광진흥법

법률 제79조는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을 신청(제7호)하려면 문화체 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는 시행

규칙 별표 23 에서 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69조제1항). 수수료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내야 한다(제7항).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 신청수수료는 50,000 원(숙박시설 중 객실변경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 원을 가산한 금액)이다.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한국영화의 인정신청수수료

법률 제 90 조제 1 항은 제 27 조제 2 항에 따른 한국영화의 인정신청을 하 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이의신청, 영화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의 확인, 비디오물 등급분류, 비디오물 복제 등의 확인 및 확인필증 재발급, 등급의 재분류, 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 신청수수료

법률 제 90 조제 2 항은 (1) 제 2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 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의 확인 을 신청하는 자, (4) 제 5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5)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복제 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또는 확인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 제 54 조제 1 항 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하는 자, (7) 제66조제 1 항의 규 정에 의한 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을 신 청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 29 조는 법 제 90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9）종자산업법에 따른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종자산업법」 제 160 조제 1 항제 2 호는 제 26 조제 1 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출원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이를 근거로 「종자산업 법에 따른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을 제정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품종보호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185）：（a）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등록수수료 ：품종당 5 천 5 백원，（b）품종보호 출원수수료 ： 품종당 3 만 8 천원，（c）품종보호 심사수수료 ：가．서류심사 ：품종당 5 만원， 나．재배심사 ：재배시험 때마다 품종당 50 만원，（d）우선권주장 신청수 수료 ：품종당 1 만 8 천원，（e）통상실시권의 설정 재정신청수수료 ：품 종당 10 만원，（f）심판청구수수료 ：품종당 10 만원，（8）재심청구수수료 ：품종당 15 만원，（h）보정료 ：다음 각 목의 금액．다만，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가．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 건당 3 천원， 나．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 건당 1 만 3 천원 등이다．
（2）국가품종목록의 등재에 관한 수수료186）：（a）국가품종목록의 등 재신청수수료 ：품종당 3 만 8 천원，（b）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심사수수료 ：가．서류심사 ：품종당 5 만원，나．재배심사 ：1）품종보호 출원과 국 가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같이 하는 경우 ：품종당 연간 10 만원，2）1） 외의 경우 ：품종당 연간 50 만원，（c）국가품종목록의 등재 유효기간

[^17]186）등재신청수수료，등재심사수수료

연장신청수수료 : 품종당 2 만원 등이다.
(3) 종자보증 등에 관한 수수료187) : (a) 국가보증 신청수수료 : 품종당 1 천 5 백원, (b) 국가보증 검사결과에 대한 재검사 신청수수료 : 품종당 1 천 5 백원, (c) 국가보증 검사수수료 : 가. 포장검사 : 10 아르(a)당 2 만원, 나. 종자검사 : 품종당 5 만원, 다. 종자재검사 : 품종당 5 만원, (d) 보증 서 발급수수료 : 가. 국문 : 무료, 나. 영문 : 품종당 5 천원, (e) 생산 • 수입 하여 판매하려는 품종 신고수수료 : 품종당 3 만원. 다만, 씨앗으로 증 식하는 1 년생 화훼류의 경우에는 1 건( 25 품종 단위로 계산한다)당 3 만 원으로 한다. (f)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수수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림용 종자 및 산림용 묘목에 만 해당한다) : 품종당 5 만원 등이다.
(4) 서류의 등본•초본 또는 증명[1건당 5 백원(복사를 필요로 하는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1 면당 1 백원씩을 가산한다)], 품종보호권 등 록증의 재교부( 1 건당 6 천 5 백원), 서류의 사본(1면당 2 백원), 등록원부의 사본 또는 기록사항(1건당 5 백원), 출원 또는 등록 관련 서류의 사본 신청수수료(1건당 3천원) :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제 7 조). 제 1 조제 3 호에 따른 품종보호 심사수수료 및 제4조제 2 호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심사수수료는 심사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제8조). 제 2 조에 따른 품종보호료는 품종보호결정의 등본 또는 품종보호등록의 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연간 품종보호료를 일시에 납부하 여야 한다(제9조제 1 항). 품종보호권자는 제 2 년분부터의 품종보호료를
187) 국가보증 신청수수료, 국가보증 검사결과에 대한 재검사 신청수수료, 국가보증 검사수수료, 보증서 발급수수료, 생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품종 신고수수료, 수입 적응성시험 신청수수료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다만，품종보호권자가 여러 해 분의 품종보호료를 일시에 납부하기를 희망하면 연간 단위로 품종보호권자가 희망하는 기간까지 품종보호료를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품종보호권자가 품종보호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 납부한 후 품종보 호료의 변경이 있으면 납부된 품종보호료는 변경된 품종보호료에 적 합하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 5 조제 3 호나목에 따른 종자검사수수료는 포장검사 합격통지를 받 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제 10 조）．제 1 조제 3 호에 따른 품종보호 심사수수료，제4조제 2 호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심사수 수료 및 제5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자검사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는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제11조）．법 제51조제 3 호 또는 제 161 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5 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품종보호료 또 는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대리 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산림청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산림청장•국립수산과 학원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2조）．법 제52조 또는 제 162 조에 따른 반환금은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다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이 경우 다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는 대체신청이 수리된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제13조제1항）．반환할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절차 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 13 조제 2 항）．

법 제49조에 따른 품종보호료는 별표와 같다（제2조）．
［별표］＜개정 2010．9．10＞
품종보호료（제2조 관련）

| 품종보호권 성정 | 제1년부터 제5년까지 | 제6년부터 <br> 제 10 년까지 | 제11년부터 제 15 년까지 | $\begin{aligned} & \text { 제 } 16 \text { 년부터 } \\ & \text { 제 } 20 \text { 년까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제21년부터 } \\ & \text { 제25년까지 } \end{aligned}$ |
| :---: | :---: | :---: | :---: | :---: | :---: |
| 연간 품종보호료 | 3 만원 | 7만 5천원 | 22만5천원 | 50만원 | 1 백만원 |

（10）가사소송법

법률 제 5 조는 이 법에 따른 소（訴）의 제기，심판의 청구，조정의 신 청이나 그 밖의 재판과 처분의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로 하고 있다．

법률 제 10 의 2 제 2 항은 기록의 열람•복사，재판서 • 조서（調書）의 정 본（正本）•등본•초본의 발급，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1）부동산등기법
법률 제 27 조는 등기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 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12）민사조정규칙
규칙 제 3 조는 조정신청의 수수료는 청구의 목적의 가액에 따라 민 사소송등인지법 제 2 조 및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1 / 5$ 로 한다．수수료를 제외하고，법 및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있어서의 신청 수수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등인지법 을 준용한다．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그러나 따로 대 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3) 가사소송수수료규칙

규칙 제 2 조는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1건당 20,000 원으로 한다(제 1 항).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 수료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제2항). 항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 1 항 또는 제 2 항 규정액의 1.5 배액으 로 하고, 상고제기의 수수료는 그 2 배액으로 한다(제 3 항). 반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 1 항 또는 제 2 항 규정액으로 하고, 항 소심에서의 반소제기의 수수료는 그 1.5 배액으로 한다(제 4 항). 재심청 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또는 제4항 규정액으로 한다(제5항).

제 3 조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 건당 5,000 원,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의 수수료는 1 건당 10,000 원으로 한다 (제 1 항). 항고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 1 항 규정액의 배 액으로 하고, 재항고제기의 수수료는 그 3 배액으로 한다(제 2 항). 반대 청구의 수수료는 1 건당 10,000 원으로 한다. 다만, 본래의 청구와 그 목적이 동일한 반대청구에는 수수료를 요하지 아니한다(제3항). 가사 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준재심 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 급에 따라 제 1 항, 제 2 항 또는 제 3 항 규정액으로 한다(제4항).

규칙 제4조는 제 2 조 및 제 3 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절차에 있어서의 기타 신청의 수수료는 500 원으로 한다. 다 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및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 에는 수수료를 요하지 아니한다.

규칙 제 5 조는 법 제 1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한다(제 1 항). 가사소송규칙 제 20 조의 2 의 규 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의 수수료를 합산한다(제2항). 가사비송청구의 개수를 정하는 기준은
(1) 법 제 2 조제 1 항 나(1), (2)의 각호를 달리하는 청구는 수개의 청구로 본다. (2) 라류 가사비송청구중 법 제 2 조제 1 항 나(1)의 1 호 내지 4 호의 3 , 6 호 내지 24 호는 사건본인마다, 27 호, 29 호 내지 34 호는 피상속인 마다, 26 호는 기간연장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마다, 28 호, 35 호는 청구 인마다, 36 호는 검인의 대상이 되는 구수증서마다, 37 호는 검인의 대 상이 되는 유언서 - 녹음대마다, 38호는 봉인된 유언서마다, 39호 내지 43호는 유언집행자마다, 44호는 부담있는 유언마다 각 1 개의 청구로 본다. (3) 마류 가사비송청구중 법 제 2 조제 1 항 나(2)의 3 호, 5 호, 6 호, 7 호 는 사건본인마다, 8 호는 부양권리자마다, 9 호는 청구인마다, 10 호는 피상속인마다 각 1 개의 청구로 본다. 다만, 6 호의 청구중 부모 쌍방에 대한 청구는 2 건으로 본다(제 3 항).
규칙 제 6 조는 가사조정신청의 수수료는 5,000 원으로 한다(제 1 항). 민 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사상의 청구 에 대하여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액의 5 분의 1 과 제 1 항 규정액중 다액을 수수료로 한다(제 2 항). 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조정절차에 있어서의 기타 신청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 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 3 항). 법 제 49 조 및 법 제 6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조정법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 청을 한 때에 소의 제기 또는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에는, 조정신청인은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납부하 여야 할 수수료액으로부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액을 공제한 액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제4항).

규칙 제7조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따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1항). 이 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 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 령에 의하여 상당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14）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규칙 제 2 조는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1 통에 대하 여 20 장까지는 1,200 원으로 하고， 1 통이 20 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 장마다 50 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 1 항）．「부동산등기규칙」 제 27 조의 2 （「선박등기규칙」 제2조，「재단저당등기규칙」 제2조，「입목등 기규칙」제 11 조 및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제 5 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부 등•초본의 교부수수료는 1 통에 대하여 제 1 항의 수수료에 800 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제 2 항）．제 1 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는 1 통 에 대하여 1,000 원，인터넷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는 1 통에 대하여 800 원으로 한다（제3항）．

규칙 제3조는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 등기기록 또는 1 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 원으로 한다．다만，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 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 장 마다 50 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 1 항）．제 1 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 등기기록에 관하여 500원으로 한다（제2항）．
규칙 제4조는 등기사항에 변경없다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 없다는 사실의 증명과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 다는 사실의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1 통에 대하여 1,200 원으로 한다．

규칙 제5조는 인감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1 통에 대하여 1,200 원으로 한다（제1항）．제1항에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 의 교부수수료는 1 통에 대하여 1,000 원으로 하고，「상업등기규칙」 제 4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한 경우 교부수수료는 1 통에 대하여 1,100 원으로 한다（제 2 항）．

규칙 제 5 조의 2 는（1）소유권보존등기，（2）소유권이전등기，（3）제한물 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4）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 기，（5）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 다．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4,000 원으로 한다（제 1 항）．제 1 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 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 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 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3,000 원으로 한다．다만，（1）예고등기 및 예고 등기의 말소등기，（2）멸실회복등기，（3）회생，파산，개인회생，국제도 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4）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 의 경정 및 변경등기，（5）토지에 관한 분할•합병 및 멸실등기，（6）행 정구역 • 지번 • 면적단위의 변경，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경정 및 변경등기，（7）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8）「공유토 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9）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 소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제2항）．

규칙 제6조는 제2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등기관은 등 • 초본 또는 제증명서 인증문 여백 또는 열 람신청서 여백에 소정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 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다만，무인등본발급 기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는 현금 또는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인터넷을 이용하 여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신용카드，금융기관계좌이체，전자화폐 등의 결제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제1항）．

제 5 조의 2 부터 제 5 조의 4 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는 그 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에 붙여 제출하거나，

그 수수료 상당액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 법으로 하고，등기관은 등기수입증지 또는 현금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한 다음 등기수입증지 또는 현금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에 소인하 여야 한다．다만，등기신청수수료가（1） 1 건의 등기신청수수료가 3 만원 을 초과하는 때，（2）동일한 대지상의 집합건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을 말한다）또는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각 등기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10 만원을 초과하는 때，（3）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나 등기신청수수료가 부족하여 그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하는 때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제7조제3항）．
（14）검역법
법률 제 34 조는（1）제 15 조제 1 항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제 7 호 및 제 8 호 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와 제 27 조 및 제 28 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그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승객－승무원 등으로부터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시행규칙 제29조는 별표 3에 수수료 징수기준을 정하고 있다（제1 항）．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제2항）．（1）「해외이주법」 제4조제 2 호에 따른 무연고이주자 및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17 조에 따른 양자，（2）「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되는 사 람，（3）「아동복지법」 제 16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 및 제 10 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으로서 외국의 정부 또는 단체와의 문화교류를 위하여 출국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 의 수수료 징수기준 중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별표 3］

> 수수료 징수기준 (제29조제1항 관련)

1．모든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1,000 원으로 한다．
2．선박위생관리 점검 수수료

| 총톤수 | 수수료 |
| :---: | :---: |
| 500 톤 이하 | 20,000 원 |
| 500 톤 초과 $\sim 1,000$ 톤 이하 | 30,000 원 |
| 1,000 톤 초과 $\sim 10,000$ 톤 이하 | 50,000 원 |
| 10,000 톤 초과 $\sim 20,000$ 톤 이하 | 70,000 원 |
| 20,000 톤 초과 | 100,000 원 |

3．국제공인 예방접종 수수료
가．예방접종 수수료로 백신료와 접종비용을 징수한다．
나．백신료는 실비（實費）로 한다．
다．접종 비용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검역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무료
2）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중 백신료를 제외한 금액

4．소독 수수료
검역소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그 소독에 든 실비를 징수한다．

5．검사 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제8조에 따른다．
6．그 밖의 수수료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검역조치에 대한 수수료는 그 실비만 징수 한다．
(1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률 제 54 조는 (1) 제9조제 2 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 10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3) 제 10 조제 2 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4) 제14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5) 제 19 조에 따른 유독물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6) 제 20 조제 1 항 본문 및 제 2 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의 등록•변경등 록 및 변경신고, (7) 제22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수시검사, (8)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9) 제 31 조에 따른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10) 제33 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의 허가 및 변경허가, (11) 제34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및 제 3 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 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2) 제 37 조제 1 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 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 등을 받으려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수 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58조는 별표11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별표 11] <개정 2011.3.31>

## 수수료(제58조 관련)

화학물질확인증명서 발급 등의 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안전 진단 수수료는 취급시설의 시설규모별 인건비•경비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종 별 | 수수료 |
| :--- | :---: |
| 가. 화학물질확인증명서 발급 | 10,000 원 |
| 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싯사 | 50,000 원 |
| 다.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면제확인 | 10,000 원 |
| 라. 시험항목별 시험기관의 지정 | - |
| 마. 유독물의 수입신고 | 13,000 원(매품목당) |


| 종 별 | 수수료 |
| :--- | :---: |
| 바. 유독물의 수입 변경신고 | 9,000 원 |
| 사. 유독물영업의 등록 | 13,000 원 |
| 아.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9,000 원 |
| 자. 관찰물질의 제조 • 수입신고 | 13,000 원(매품목당) |
| 차. 관찰물질의 제조 • 수입 변경신고 | 9,000 원 |
| 카. 취급제한 • 금지물질의 수입허가 | 13,000 원(매품목당) |
| 타. 취급제한 • 금지물질의 수입 변경허가 | 9,000 원 |
| 파. 취급제한 • 금지물질영업의 허가 | 13,000 원 |
| 하. 취급제한 • 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9,000 원 |
| 거. 취급제한 • 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 13,000 원 |
| 너.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의 변경승인 | 9,000 원 |
| 더.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 • 수시검사 | 20,000 원 |

비고 : 수수료는 지방환경청장•유역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 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 •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38 조는 제 14 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제 26 조에 따라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42조는 (1) 법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 10 만원, (2) 법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10 만원(할당받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 제 14 조제 3 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 신고: 5 만원, (4) 법 제 26 조 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 다)시험: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또는 환경 부장관이 시험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정하고 있다.
（17）집행관수수료규칙
집행관법 제19조는 집행관이 위임을 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는 체당금을 변제（辨濟）받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를 받는다（제1항）．집행관은 정하여진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제2항）．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등기사무 관，법원주사，등기주사，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가 집행관의 직 무를 수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한다（제3항）．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조는 서류의 송달（집행행위에 속한 것은 제외 한다）수수료는 1 건에 1,000 원으로 한다（제 1 항）．제 1 항의 사무가 신청 에 의하여 휴일 또는 야간에 행하여지는 경우의 수수료는 1 건에 1,500 원으로 한다（제2항）．동일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동일인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수에 관계없 이 1 건으로 한다（제 3 항）．

규칙 제 3 조는 압류 또는 가압류집행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제 1 항）．가압류한 물건에 대한 본 압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제2항）．집무시간이 3 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 는 1 시간마다 제 1 항에 정한 수수료의 10 분의 1 을 가산하고，초과시간 이 1 시간에 미달하여도 1 시간으로 산정한다（제 3 항）．집행관이 압류 또 는 가압류할 현장에 임하였으나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압류한 물건 을 현금화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비용을 충당함에 그치는 때의 수수료 는 제 1 항에 정한 수수료의 10 분의 3 으로 한다（제 4 항）．

민사집행법」 제 21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실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 1 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다만，이미 압 류한 물건외의 다른 물건을 추가압류한 경우의 수수료는 제 3 조제 1 항에 정한 수수료의 전액으로 한다（제4조）．현금화하기 위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 1 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인도받은 물건을 즉시 현금화하는 때에는 제 16 조에 정한 수수료만 받는다(제4조의2), 압류•가압류한 물건이나 가처분 기타 보 전처분에 의하여 보관중인 물건을 집행처분의 취소로 채무자 기타 수 취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 3 조제 1 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수수료는 4,000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제 5 조제 1 항). 현금화하기 위하여 인도받은 물건을 현금화절차의 취소에 의하여 소유자 기타 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 1 항과 같다 (제2항). 압류•가압류한 물건과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한 물건의 현황 을 점검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 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 6 조제 1 항). 집행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제 1 항의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 행하는 점검과 현금화를 실시하는 경우에 행하는 점검에 대하여는 수 수료를 받지 못한다(제2항).
[별표 1] <개정 1990.8.21>

## 압류•가압류수수료표

| 집행할채권액 | 수수료 |
| :---: | :---: |
| 50,000 원까지 | 2,000 원 |
| 100,000 원까지 | 2,500 원 |
| 250,000 원까지 | 4,000 원 |
| 500,000 원까지 | 6,000 원 |
| 750,000 원까지 | 8,000 원 |
| $1,000,000$ 원까지 | 10,000 원 |
| $3,000,000$ 원까지 | 20,000 원 |
| $5,000,000$ 원까지 | 30,000 원 |
| $5,000,000$ 원 초과 | 40,000 원 |

규칙 제7조는 채무자가 임의변제한 금전을 수취하여 이를 채권자에 게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으며, 금전이외의 물건을

수취하여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 원으로 한다．제 7 조의 2 는 어 음•수표 기타 금전의 지급을 위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인수나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 원으로 한 다（제1항）．제1항에 규정된 사무를 행한 경우에 지급이 있은 때에는 그 금액에 따라 제 1 항의 금액에 제 7 조의 금액을 가산한다（제 2 항）．
［별표 2］＜개정 1990．8．21＞
임의변제금의수취 • 교부수수료표

| 변제금액 | 수수표 |
| :---: | :---: |
| 100,000 원까지 | 700 원 |
| $1,000,000$ 원까지 | 1,000 원 |
| $5,000,000$ 원까지 | 1,500 원 |
| $5,000,000$ 원 초과 | 2,000 원 |

규칙 제 8 조는 배당요구에 관한 사무의 수수료는 1,000 원으로 한다 （제 1 항）．민사집행법」 제 22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지급사 무에 관하여는 제 1 항을 준용한다（제 2 항）．제 9 조는 거절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1 건에 2,000 원으로 한다（제 9 조）．제 10 조는 당사자의 위 임에 의하여 고지 또는 최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 건에 1,000 원 으로 한다．제 10 조의 2 는 「민사집행법」이나 동규칙 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조를 하거나 재산에 봉인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 원으로 한다（제 1 항）．제 1 항의 봉인을 제거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 1 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제2항）．

규칙 제 11 조는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채무자로 부터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할 경우의 수수료는 그 가액이 10 만원 이하인 때에는 4,000 원， 10 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6,000 원으로 한다．집 무시간이 2 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 시간마다 1,000 원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 시간에 미달하여도 1 시간으로 산정한다（제 1 항）．

제 1 항의 경우에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였으나，당해동산이나 대체물이 없는 때에는 동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제2항）．「민사집행 법」 제193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압류물을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 1 항，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 3 항）．

규칙 제 12 조는 부동산 또는 선박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 고 채권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할 경우의 수수료는 15,000 원으로 한다． 다만，집무시간이 2 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 시간마다 1,500 원을 가산하고，초과시간이 1 시간에 미달하여도 1 시간으로 산정 한다（제 1 항）．제 1 항의 경우에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였으나，당해부동산 또는 선박이 없는 때에는 동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제2 항）．제 13 조는「민사집행법」 제 26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 여 집행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는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의 집행으로서 제 2 조 내지 제 13 조에 규정된 사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

규칙 제 15 조는 「민사집행법」 제 81 조제 4 항，제 85 조제 1 항 또는 제 111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 3 조에 정한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제 15 조의 2 는 「민사집행법」 제 83 조제 3 항，「민사 집행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압류부동산을 보 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 원으로 한다．제 15 조의 3 은 선박국적증 서 그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의 수 수료는 10,000 원으로 한다（제 1 항）．항공기 등록증명서 기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 는 제 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 2 항）．제 15 조의 4 는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의 인도를 받는 경우 의 수수료는 6,000 원으로 한다（제 1 항）．「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 여 자동차，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를 이전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 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 2 항）．

규칙 제 16 조는 매각수수료는 매각금액이 10 만원에 달하는 때까지 5,000 원으로 한다（제 1 항）．제 1 항의 경우에 매각금액이 10 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0 만원마다 1,000 만원까지는 2,000 원을， 1,000 만 원초과 5,000 만원까지는 1,500 원을， 5,000 만원초과 1 억원까지는 1,000 원을， 1 억원초과 3 억 원까지는 500 원을， 3 억원초과 5 억원까지는 300 원을， 5 억 원초과 10 억원까지는 200 원을 각 가산한다．다만，초과금액이 10 만원 에 미달하여도 10 만원으로 산정하며，매각금액이 10 억원을 초과할 때 에는 10 억원으로 본다（제2항）．입찰，호가경매 이외의 다른 적당한 방 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항）．매각수수료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받 을 수 있다．다만，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취하가 있는 때에 지급받을 수 있다（제4항）．

규칙 제 17 조는 집행관이 집행에 착수하기전 또는 후에 강제집행이 정지 또는 제한된 때，위임의 소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 게 된 때 또는 지급 및 인도로 인하여 강제집행의 위임이 종료된 때 에는 각 본조에 정한 수수료의 10 분의 3 으로 한다．다만，제 16 조의 경 우에 그 수수료는 1,000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제 1 항）．（1）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2）「민사집행법」 제96조의 규 정에 의하여 매각취소가 있는 경우，（3）「민사집행법」 제 123 조의 규정 에 의하여 매각이 불허된 경우，（4）「민사집행법」 제 127 조제 1 항의 규 정에 의하여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5）항 고 또는 재항고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수수료도 제 1 항과 같다（제2항）．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 니하여 실시하는 재매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제 3 항）．

규칙 제 18 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 3 조 내지 제 6 조•제 9 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사무의 집행이 야간 또는 휴일에 행하여진 때

에는 각 본조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을 가산한다. 제19조는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집무에 대하여는 그와 유사한 집무에 대하여 정하여진 수수료를 받는다. 규칙 제 23 조는 (1) 열람 : 열람을 구하는 사건 1 건당 300 원, (2) 등•초본 : 원본 5 장까지 300 원, 초과 1 장당 30 원, (3) 기타 의 증명 : 증명사항 1 건당 300 원의 수수료이다.
2. 발급 및 교부 수수료

| 자격기본법 | 국가자격증 교부 또는 재교부 수수료 |
| :---: | :---: |
|  | 자격 관련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증명서 발급수수료 |
|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증명서 발급숫료 |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 합격증명서 발급숫ㄹㄹㅛ |
| 교원자격검정령 |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또는 재교부 수수료 |
| 기술사법 |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발 급수수료 |
|  | 기술사경력증명서 발급숫료 |
|  |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국비유학시험 합격증서교부 수수료 |


|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 증명수수료(14종) |
| :--- | :--- |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 각종 증명서의 교부수수료 |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각종 증명서의 교부수수료 |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br> 재교부 신청수수료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 건축물대장 등 • 초본의 교부 <br> 순한 규칙 |
|  |  |
| 발수수료 |  |


|  | 국제톤수증서 • 국제톤수확인서 의 발급 또는 그 변경발급 신 청수수료 |
| :---: | :---: |
|  |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다시 발급수수료 |
|  | 각종 증서 다시 발급신청 수수료 |
| 선박안전법 | 증서 등의 교부 또는 재교부 신청수수료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실적확인서 발급 수수료 |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
| 자동차관리법 |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신청수수료 |
|  |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 수수료 |
|  | 등록번호판 또는 이륜자동차번 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수수료 |
| 철도사업 법 | 면허•인가, 등록 신고, 면허 증 - 인가서 • 등록증 • 인증서 또는 허가서의 재교부 수수료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 의 발급 신청수수료 |
|  |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발급 신청수수료 |
|  |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 첩의 재발급 신청수수료 |


|  | 수로사업등록증 및 수로사업등 <br> 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수수료 |
| :--- | :--- |
|  |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br> 신청수수료 |
|  |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 <br> 급 신청수수료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재결서•결정서 등의 등본 발 |
| :--- | :--- |
| 법률 수수료 |


|  | 자격증명 발급신청 수수료 |
| :---: | :---: |
|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 뢰 규칙 | 성적증명서 발급수수료 |
| 사료관리 법 | 제조업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수수료 |
|  |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 신청수수료 |
| 수산업협동조합법 | 서류 열람 - 사본발급청구 수수료 |
| 수의사법 | 수의사 면허증 재발급수수료 |
|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 료 규칙 | 선박국적증서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수수료 |
| 어업등록령 | 원부의 열람신청과 등본 및 초 본의 발급신청 수수료 |
| 종자산업법에 따른 수수료 및 품 종보호료 징수규칙 | 품종보호권 등록증의 재교부신 청수수료 |
| 국가기술자격법 |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재발 급 수수료 |
|  |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증명서 발급수수료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 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 | 입학증명수수료 |
|  | 합격증명수수료 |
|  | 재학증명수수료 |
|  | 제적증명수수료 |
|  | 수료(예정)증명수수료 |
|  | 졸업(예정)증명수수료 |


|  | 성적증명수수료 |
| :---: | :---: |
|  | 학위수여수수료 |
|  |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수수료 |
|  | 재직증명수수료 |
|  | 교수경력증명수수료 |
|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 • 복사의 방 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 등본 - 초본의 발급수수료 |
|  | 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 |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 한 법률 | 수출용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 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 급 신청수수료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등록부등의 증명서 교부수수료 |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수술 |
|  | 수리, 불수리증명서 청구 수수료 |
| 국적 법 |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 신청•신고 및 증명서등의 발 급에 관한 수수료 ${ }^{188)}$ |
| 민사소송법 |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 청구 수수료 |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 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 차에 관한 규정 |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 부 여 및 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
|  | 외국인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 증명서 발급 수수료 |

188) 귀화허가 신청, 국적회복허가 신청, 국적취득 신고, 국적재취득 신고, 국적이탈 신고, 국적보유 신고,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 급, 증명서 발급

| 변호사시험법 | 합격증명서 발급 수수료 |
| :--- | :--- |
| 부동산등기법 등본 뜬 초본의 발급, 등기 |  |
| 부의 열람 수수료 |  |


|  |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수수료 |
| :---: | :---: |
|  |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수수료 |
|  | 복사물 교부수수료 |
| 재판기록 열람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 재판서 - 조서의 정본 - 등본 • 초본의 교부 |
|  |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 |
|  |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 |
|  | 복사교부 수수료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증명서등의 수수료 |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 에 관한 규칙 | 기록의 출력서면 교부 수수료 |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 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 수수료 |
|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 부수수료 |
|  |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
|  |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
| 등기특별회계규칙 | 등 기부등 - 초본교부수ㅅㅛㅛ |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 재발급 수수료 |
|  | 자격수첩발급수수료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 록수첩 재교부 수수료 |


|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 수수료 |
| :---: | :---: |
|  | 방화관리자수첩을 교부 및 재 교부 수수료 |
|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구조•구급증명서의 교부수수료 |
|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 부 시험의뢰규칙 | 시험성적서 재교부수수료 |
|  | 시험성적서 외국어번역문 또는 심사결과통지서 재교부수수료 |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면허증의 재교부수수료 |
|  | 면허사항에 관한 증명수수료 |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 한 규칙 | 자격증 재발급 및 등록 사항 정 정수수료 |
| 의료법 | 제증명 (발급 • 갱신 • 재발급 • 등록증명) 수수료 |
| 장애인복지법 |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수 수료 |
| 공중위생 관리법 | 면허증 재교부 수수료 |
|  | 이용사 또는 미용사면허증 재 교부 수수료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허가증•지정서 재교부 수수료 |
| 사회복지사업법 | 자격증 교부 또는 재교부 수수료 |
| 국민영양관리법 | 면허증 또는 자격증 재교부 수 수료 |
|  | 증명수수료 |

제 3 장 현행 법령상 수수료 현황분석

| 약사법 | 면허증 재교부 수수료 |
| :---: | :---: |
| 검역 법 | 증명서 발급수수료 |
| 노인복지법 |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 수수료 |
| 국민건강증진 법 |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 수수료 |
| 장애인복지법 |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수 수료 |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전문의 자격증의 갱신 또는 재 발급 수수료 |
|  | 전문의 자격의 등록증명 수수료 |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의 갱신 또는 재발급 수수료 |
|  |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등록증명 수수료 |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 정 등에 관한 규정 |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의 갱신 또는 재발급 수수료 |
|  | 한의사전문의 자격의 등록증명 수수료 |
| 영유아보호법 |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 수수료 |
| 야생동 - 식물보호법 | 수렵면허 재교부 수수료 |
| 수도법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 급수수료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수수료 |
| 주민등록 법 | 주민등록증 발급 - 재발급 수수료 |
|  |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 수수료 |


| 도로명주소대장규칙 | 도로명주소대장의 등본발급 수 <br> 수료 |
| :--- | :--- |
| 전자서명법 |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수수료 |
| 공무원임용시험령 | 합격증명서 등 발급수수료 |
| 인감증명법 | 인감증명발급수수료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합격증명서 등 발급수수료 |
| 공사채 등록법 | 열람 •등초본 발급 수수료 |
| 집행관수수료규칙 | 금전 수취 후 교부수수료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증 재교부 수수료 |

(1) 자격기본법

법률 제 37 조는 국가자격증 교부 또는 재교부(제2호), 그 밖에 자격 과 관련되는 제증명서 발급(제4호)의 경우 대통령령 또는 국가자격 관 령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구체적인 수수료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기본법으로서 자격과 관련된 제반 자격증에 대한 근거규정으로서 입법화된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과 납부요건과 절차•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구 체적인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 11 조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과정별 시험의 합격증 명 • 학위증명 기타 필요한 증명서를 원장189)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각종 증명서의 발급(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 항은 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9) 평생교육진흥원장(11.7.28.전문개정) : 이전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이 주체로 규정되어 있음.
(3)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 8 조제 1 항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재학 또는 재직하고 있거나 재학 또는 재직하였던 학생•교원 또는 직원에 대한 교육 관련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교부할 수 있 는 증명서의 종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는 증명서를 교부하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또는 운영센터 등의 수입으로 하되, 수 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한다(제4항).
(4)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규칙 제19조는 시험실시기관에게 시험합격자의 신청이 있으면 합격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합격증명서를 발급할 때, 해당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한 통당 30 원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 }^{190)}$.

제21조에서 응시수수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발급 신청수수료를 받는 것은 이중적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재발급수수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교원자격검정령

초•중등교육법 제 21 조제 1 항은 교원의 자격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검정령 제 11 조는 자격검정을 받거나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 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
190) "해당 시험실시기관에 한 통당 30 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정령 시행규칙 제8조는 수수료에 대하여 별 표 6 으로 정하고 있다.
[별표 6] <개정 2004.9.3>
수수료

| 구 분 |  | 수수료 | 납부방법 |
| :--- | :--- | ---: | :--- |
| 1. 무시험검정 | 1. 교원자격검정 | 500 원 | 수입인지 • 수입증지 또는 현금 |
|  | 2. 교장 - 원장자격의 <br> 추천검정 | 1,000 원 | 수입증지 또는 현금 |
|  | 시험검정 | 10,000 원 | 수입증지 또는 현금 |
| 3. 교원자격증의 <br> 재교부 |  | 500 원 | 수입인지 • 수입증지 또는 현금 |
| 4. 교원자격증의 <br> 외국어 증명 |  | 1 부당 <br> 200원 | 수입인지 또는 현금 |

(6) 평생교육법

법률 제 24 조제 1 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 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 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자에게 교육과학기술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제5항).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의2(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와 서 식 5(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서 교부 및 재교부 수수료는 무료로 하고 있다.
(7) 기술사법
(1) 제 5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으려 는 자, (2) 제 5 조의 4 제 2 항에 따라 기술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 제 11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

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다만, 제 20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법률 제 13 조의 2 제 1 항).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2항).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 및 면제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제3 항).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 12 조의 2 는 기술사가 법 제 5 조의 5 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법 제 13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 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기준을 정하여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률 제13조의2제4항).

법률의 규정으로 볼 때, 수수료 관련 업무는 원칙적으로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이 행하고 예외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모든 업무를 기술사회에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 제13조의2제3항의 위임규정은 입법기술적 인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한 입법방안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특히, 위 탁에 있어서 장관의 승인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및 금액 등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8)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규정 제 11 조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국비유학시험에 최종합격한 자에게 합격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합격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제1항 후단의 합 격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 통당 200 원의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제2항).

## （9）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초•중등교육법 제 30 조의 2 는 학교회계의 수입으로 사용료와 수수료 （제2항제6호）를 포함하고 있다．이에 국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 26조는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 25 조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물품관리법」 제41조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항），수수 료는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로 규정하고 있다（제2항）．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은 교육과학기술부소관 국립의 각급학교（이하＂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의 수수료의 징 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각종 증면별 수수료의 금액은 별 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조）．수수료는 신청인이 각종 증명의 발 급을 신청하는 때에 정부수입인지로 이를 징수한다．다만，특별회계에서 당해학교의 운영경비가 지급되거나 자동증명발급기를 이용하여 각종 증명을 발급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제3조）．（1）공무 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2）「전자정부법」 제9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경우，（3）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제4조）． 이외에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별표］＜개정 2003．3．22＞
각종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표

| 증명의종류 | 수수료의 금액 | 비 고 |
| :--- | :--- | :--- |
| 1．입학증명 | 1통당 국문증명의 경우 | 이 표에 쥬정되지 아니한 각 |
| 2．합격증명 | 영우에는 다른 300 원，외 |  |
| 3．잭문학증명명 | 의 경우에는 600 원 | 령에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 <br>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 증명의종류 | 수수료의 금액 | 비 고 |
| :--- | :--- | :--- |
| 5. 복학증명 |  | 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 |
| 6. 재적증명 |  | 니함 |
| 7. 제적증명 |  |  |
| 8. 수료(예정)증명 |  |  |
| 9. 졸업(예정)증명 |  |  |
| 10. 성적증명 |  |  |
| 11. 항위수여(예정)증명 |  |  |
| 12. 학적부(생확기록부)증명 |  |  |
| 13. 교직과정이수(예정)증명 |  |  |
| 14. 교육비납입증명 |  |  |

법령에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 징수방법, 면제사유까지 규정하고 잇 는 것은 민원수수료 중 각종 증면신청수수료에 관한 모범적인 입법례 에 해당한다. 더구나 별표 비고란에 다른 수수료 징수는 금지하는 규 정을 두고 있는 것은 새로운 수수료 창설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입법방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법률에 보다 구 체적인 수수료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할 것이다.
(10)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규칙 제 12 조는 고시료 및 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교부수수료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응시자가 수 수료를 잘못 납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고시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제14조제2항).
(1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규칙 제17조는 고시료 및 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교부수수료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응시자가 수 수료를 잘못 납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고시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제18조제2항).
(12) 건축사법

법률 제 17 조는 (1) 제 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 신고를 하 는 자, (2) 제 14 조 또는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3) 제 2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 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는 자, (4) 제 2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 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는 자, (5) 제 23 조제 8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수수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 10 조는 건축사보신고필증의 교부, 자격증 및 자격수첩의 교부등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1) 제 2 조제 2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 한 건축사보의 신고 및 신고필증의 교부와 재교부의 경우 : 2 천원, (2) 제 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재교부의 경우 : 2 천원, (3) 제 6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재교부의 경우 : 2 천원, (4) 법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경우 : 2 만원, (5) 제 12 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 및 신고필증교부의 경우 : 2 만원, (6) 제 12 조의 2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 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필증재교부의 경우 : 2 천원, (7) 제 15 조제 1 항 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 의 그 업무에 관한 신고의 경우 : 2 만원, (8) 제 1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 한 건축사업무신고필증의 재교부의 경우 : 2 천원 등이다(제2항). 제2항 각호의 수수료중 당해 사무가 영 제 3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것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 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 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3항).
(13) 선박법

법률 제 30 조는 이 법에 따라 허가, 인가, 등록, 톤수의 측정 또는 증 서의 발급 등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내야 한 다(제1항).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2항).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 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해당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3항).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은 별표 1과 별표 2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 다(제1항). 선박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톤수의 측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선박톤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장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지방청장이 정하는 여비를 내야 한다(제2항).
[별표 2] <개정 2011.4.7>
선박의 등록신청 등 수수료(제34조제 1 항 관련)
(단위: 원)

| 구 분 | 수수료 |
| :--- | :---: |
| 1. 제10조에 따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1,500 |
| 2. 제12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 500 |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br> 궁우 | 1 장당 100 |
|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500 |
|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영역 <br> 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1,000 |
| 6. 제 18 조제 1 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 국제톤수확인 <br> 서의 발급 또는 그 변경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1 장당 2,000 |


| 구 분 | 수수료 |
| :---: | :---: |
|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500 |
| 8.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적항의 변경(지방청장의 관할구역 안에서 <br>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반하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1,000 |
| 9. 제21조제3항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영역서를 다시 <br> 발급받는 경우 | 500 |
| 10.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200 |
| 11. 그 밖에 각종 증서를 다시 발급받는 경우 | 500 |

비 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위 표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각종 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 제한다.
2. 수수료는 현금이나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 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4) 선박안전법

법률 제 80 조는 제 7 조제 2 항, 제 8 조제 2 항, 제 10 조제 3 항, 제 11 조제 2 항, 제 12 조제 2 항 • 제 4 항, 제 18 조제 7 항, 제 20 조제 4 항, 제 22 조제 3 항, 제 23 조 제4항 후단, 제34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서 등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확인•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제1항).

선박의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별표 6에서 수수료 금액을 정하 고 있다(제2조제1항제6호).

제 3 장 현행 법령상 수수료 현황분석
[별표 6]

> 증서교부 및 재교부수수료(제2조제1항제6호관련)
(단위 : 원)

| 구 분 | 수수료 | 비 고 |
| :--- | :---: | :---: |
| 선박검사증서 | 500 |  |
| 임시항행검사증서 | 500 |  |
| 제조검사합격증명서 | 500 |  |
| 예비검사합격증명서 | 500 |  |
| 확인서 | 500 |  |
| 검정합격증명서 | 500 |  |
| 임시변경증 | 500 |  |
| 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 500 |  |
| 선박검사증서영역서 | 1,500 |  |
| 조약에관한증서 | 1,500 |  |
| 조약에관한부속서 | 1,500 |  |

(15) 자동차관리법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 제 10 조). 발급수수료 : 1 건당 300 원, 열람수수료 : 1 건당 100 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별 지 제5호 서식)
(16) 철도사업법

법률 제 48 조는 이 법에 의한 면허•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등 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및 면허증•인가서•등록증•인증서 또는 허가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1조는 별표 5 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제 1 항). 수수 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제2항).
[별표 5]
수수료(제31조관련)

| 납부자 | 금 액 |
| :---: | :---: |
| 1. 법 제 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면허를 신청하는 자 | $\begin{gathered} \text { 1만원 } \\ \text { (운행구간 마다) } \end{gathered}$ |
|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개시기일 연기 또는 운송개시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 3천원 |
|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임•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 를 하는 자 | 6천원 |
| 4. 법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자 | 6천원 |
| 5. 법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신고를 하는 자 | 6천원 |
| 6. 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에 대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자 | 3천원 |
| 7. 법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인 가를 받고자 하는 자 | 1만원 |
| 8. 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 또 는 폐지하고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자 | 6천원 |
| 9. 법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신청후 | 6천원 |
| 10. 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 운영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 1만원 |
| 11. 법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의 양도. 앙수 또는 합병을 신고하는 자 | 6천원 |
| 12. 법 제 3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 운영을 상속하고자 신고하는 자 | 6천원 |
| 13. 법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 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는 자 | 3 천원 |
| 14. 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 6천원 |
| 15. 법 제 4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권리 - 의 무를 이전하기 위하여 인가를 신청하는 자 | 6천원 |

(1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88 조는 각급 심판원으로부터 이 법에 따른 재결서•결정서 등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행령 제 18 조는 재결서•결정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그 등본의 매쪽에 대하여 100 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8) 관광진흥법

법률 제79조는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교부 신청을 하려면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수수료는 시행규 칙 별표 23 에서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69조). 수수료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내야 한다.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수수료는 3,000원이다.
(19) 저작권법

법률 제 132 조제 2 호는 제 53 조부터 제 55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제63조제 3 항 • 제 90 조 • 제 98 조 및 제 101 조의 6 제 6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 사항의 변경 • 등록부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 부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23조는 별표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1항). 국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3조 및 법 제 54조 (법 제63조제 3 항, 제 90 조, 제 98 조 및 101 조의 6 제 6 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저작권 등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50 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 항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제2항). 법 제105조에 따른 저작 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저작자가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저작권등록을 신청하 거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법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 조 및 제 101 조의 6 제 6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 한다(제3항).
[별 표] <개정 2009.7.24>
수수료 금액(제23조 관련)

| 구 |  | 수 수 료 |
| :---: | :---: | :---: |
| 1. 법 제 50 조부터 제 52 조(법 제 89 조 및 제 97 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의 이 용승인 신청 |  | 10,000 원 |
| 2. 법 제 53 조(법 제 90 조 및 제 98 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신청 | $\begin{gathered} \text { 프로그램인 } \\ \text { 경우 } \end{gathered}$ | $\begin{gathered} 60,000 \text { 원 } \\ \text { (신청물 } 10 \text { 건 초과시 추가건당 } \\ 10,000 \text { 원) } \end{gathered}$ |
|  | $\begin{gathered} \text { 프로그램 외의 } \\ \text { 경우 } \end{gathered}$ | $\begin{gathered} 30,000 \text { 원 } \\ \text { (신청물 } 10 \text { 건 초과시 추가건당 } \\ 10,000 \text { 원) } \end{gathered}$ |
| 3. 법 제 54 조(법 제 63 조제 3 항, 제 90 조, 제98조 및 제 101 조의 6 제 6 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신청 | 프로그램인 경우 | $\begin{gathered} 70,000 \text { 원 } \\ \text { (신청물 } 10 \text { 건 초과시 추가건당 } \\ 15,000 \text { 원) } \end{gathered}$ |
|  | $\begin{gathered} \text { 프로그램 외의 } \\ \text { 경우 } \end{gathered}$ | $\begin{gathered} 40,000 \text { 원 } \\ \text { (신청물 } 10 \text { 건 초과시 추가건당 } \\ 15,000 \text { 원) } \end{gathered}$ |
| 4. 법 제 105 조제 1 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 |  | 10,000 원 |
| 5. 법 제 105 조제 1 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  | 5,000원 |
| 6. 영 제 30 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등의 등록신청 및 영 제 48 조제 3 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변경 신고 |  | 3,000 원 |
| 7. 법 제 55 조제 3 항(법 제 63 조제 3 항, 제 90 조 및 제 98 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  | 1,000 원 |

비 고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수 수료 금액에 10,000 원(신청물 10 건 초과 시 추가 건에 대한 감액은 적용하지 아 니한다)을 감액하고, 제6호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1,000 원을 감액한다.
2.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 제 6 호 및 제 7 호의 수수료는 신청물 1 건을 기준으 로 한다.
(20) 관세법

법률 제322조는 (1)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 (2) 입항하 거나 출항한 외국무역선 및 외국무역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외 국무역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관세청장 이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통계 외 통관 관 련 세부 통계자료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사용 용도 및 내 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세청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제3항).
관세청장은 통계 및 통계자료를 전산처리가 가능한 전달매체에 기 록하여 교부하거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교부할 수 있는 통계의 범위와 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한다(제4항). 관세청장은 통계, 통계자료 및 통계의 작성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세청장은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항).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와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계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인하하여 정 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납부한다(제6항). 증명서 중 수출. 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수출•수입 또는 반송 신고의 수 리일부터 5 년 내의 것에 관하여 발급한다(제 7 항).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통계 및 통관관련 세부통계자료의 교부수 수료는 별표 7에서 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82조제1항). 일일자료교부 등 새로운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전산처리설비를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제1항의 수수료 를 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다(제2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교 부수수료를 면제한다(제3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영 제233조에 따라 관세청과 정보통신망을 연결하 여 구비조건을 확인하고 있는 기관에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4항).
[별표 7] <개정 2007.12.31>
증명서 또는 통계 등의 교부수수료(제82조제 1 항 관련)

| 구 분 |  |  | 단 위 | 금 액 |
| :---: | :---: | :---: | :---: | :---: |
| 1. 증명서 |  |  | 1통 | 400원 |
| $\begin{gathered} 2 . \\ \text { 통계 } \end{gathered}$ | 관 세 청 장 이 발간하는 무 역통계연보• 월보에 등재 된 통계항목 | 인쇄물 | 1년분 | 기본료 2만8천원 <br> +1 매당 400 원 |
|  |  | 전산처리가 가능 한 전달매체에 기 록하거나 전산처 리설비를이용하여 교부하는 것 | 1월분 | 20만 5천원 |
|  |  |  | 1 분기분 <br> 1분기분(월별) | 26만7천원 <br> 55만4천원 |
|  |  |  | 1 반기분 <br> 1반기분(분기별) <br> 1반기분(월별) | 34만7천원 48만1천원 98만4천원 |
|  |  |  | 1년분 <br> 1년분(반기별) <br> 1년분(분기별) <br> 1년분(월별) | 45만1천원 62만5천원 98만1천원 172만2천원 |


| 구 분 |  |  | 단 위 | 금 액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그 밖에 } \\ & \text { 추가항목 } \end{aligned}$ | 수출입통관 자료 항목별 |  | 항목당 금액의 10 분의 1 씩 추가 |
| $\begin{array}{\|c\|} \hline 3 . \\ \text { 통관 } \\ \text { 관련세 } \\ \text { 부통계 } \\ \text { 자료 } \end{array}$ | 인쇄물 |  |  | 기본료 2만8천원 +1 매당 400 원 |
|  | 전산처리가 가능한 전달매체에 기록하거나 전산 처리설비를이용하여 교부하는 것 |  |  | 기본료 2만8천원 $+($ 건수 $\times$ 항목수 $) \times 5$ 원 |

(21) 농지법

법률 제 56 조는 (1)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 34 조나 제 36 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 35 조나 제 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자, (4) 제 40 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50조에 따라 농지원부 등본 교부를 신청하 거나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 74 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수수료는 1 천원(제 1 호), 농지원부등본 및 자격증명의 교부신청수수료는 1 천원(제6호)으로 하고 있다(제1항). 수수료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해당 농지원 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 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2항).

법률과 시행령의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자격증명 발급신청 : 자 격증명 신청, 농지원부 등본교부 신청과 자격증명 발급 신청 : 농지원 부 등본 및 자격증명 교부신청 $\Rightarrow$ 신청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신청된 서류 또는 증명서의 발급에 대응하는 수수료라는 점에서 증명서, 자 격증, 등초본 등의 발급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수수료 또는 발급신청수

수료가 아닌 ‘발급수수료'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즉, 신청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발급에 대응하는 것임을 법령용어와 문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다.
(22) 수의사법

법률 제38조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다시 부여(제4항)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28조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다시 부여 수수료는 2천원이다(제1항제1호 후단).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23)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 22 조는 (1) 제 10 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 람, (2) 제 13 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행규칙 제36조는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제1항).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국가 기술자격 검정 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 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제2항).
(24) 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

규칙은 국방부소속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수수료를 납부할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로 정하고 있다(제3조).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 3 조의 수수료를 정부수

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 4조). (1)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 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제5조).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의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 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제6조).
[별표]

> 각종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표

| 증명의종류 | 수수료의금액 | 비 고 |
| :---: | :---: | :---: |
| 1. 입학증명 <br> 2. 합격증명 <br> 3. 재학증명 <br> 4. 제적증명 <br> 5. 수료(예정)증명 <br> 6. 졸업(예정)증명 <br> 7. 성적증명 <br> 8. 학위수여 <br> 9.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br> 10. 재직증명 <br> 11. 교수경력증명 | 1 통당 국문증명의 경우 에는 100 원, 외국문증명 의 경우에는 150 원 | 이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종증명의 경우에는 다 른 법령에 수수료의 납부 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 를 받지 아니한다. |

(2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6조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제1항 본 문). 다만, (1) 제 12 조제 2 항에 따라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2) 제 120 조 및 제 123 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3) 제 124 조제 3 항에 따라 가정법 원이 「비송 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단서). 수수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2항).

법률 제 14 조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 여야 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 하여야 한다(제3항).

법률 제42조는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 할 수 있고(제1항),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서나 그 밖에 수리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 서를 청구할 수 있다(제2항).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제3항).
(26)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는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신고 및 증명 서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1) 귀화허가 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는 제외한다) : 10 만원, (2) 국적회복허가 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는 제외한다) : 5만원, (3) 국적취득 신고(1인당) : 1 만원, (4) 국적재취득 신고(1인당) : 1만원, (5) 국적이탈 신고(1인당) : 1 만원, (6) 국적보유 신고(1인당) : 1 만 원, (7)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1통당) : 1 천원, (8)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1통당) : 1 천원, (9) 제 17 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1통당) : 1 천원 등이다(제 1 항).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 부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 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27) 민사소송법

법률 제 162 조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 3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 본•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 관등에게 신청(제 1 항)과 누구든지 권리구제 •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 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제2항)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5항）．

（28）부동산등기법
법률 제21조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등기부의 열람（閱覽）또는 그 등본（謄本）이나 초본（抄本）의 발 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1）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2）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3）등기부의 등본•초본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누구 든지 수수료를 내면 발급받을 수 있다（제2항）．누구든지 수수료 외에 우송료를 내고 등기부의 등본•초본 또는 제 2 항의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3항）．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 로 정한다（제4항）．
（29）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제 8 조는 사건기록의 열람•등사，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하여 신청인이 내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1）열람•등사 ：열람•등사를 구 하는 사건 1 건마다 500 원．이 경우 기록의 열람과 동시에 등사하거나 열람 후 즉시 등사할 때에는 1 건의 등사로 본다．（2）등본•초본 ：원 본 5 장까지 1,000 원，초과 1 장마다 50 원，（3）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의 교부： 1 건 1 부마다 500 원（첨부물이 등본인 경우에는 제 2 호와 같다） 등이다（제1항 본문）．다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발 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열람•등사 수수료 외에 교부받는 등사문서 1 장마다 50 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 2 항）．제 5 조의 경우에는 열람•등사 수수료 500 원만을 내야하고，제 2 항의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제 3 항). 열람 - 등사 1 건의 처리는 1 사건 $\cdot 1$ 회를 단위로 하고, 재판확정 또는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사건기록에 합철된 불기소사 건기록 등 관련 사건은 1 사건으로 본다(제 4 항). 수료는 별지서식의 수 수료납부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서 내야 한다. 다만, 제 1 항제 3 호에 대한 수수료는 관련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서 내야 한다(제5항). 사건기 록 중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 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시청을 포함한다) •등사 (복제•인화를 포함한다) 수수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를 준용한다(제6항).
(30) 군사법원 재판기록의 열람 등사와 재판서 등의 등•초본 등의 청구에 관한 수수료 규칙

규칙 제 2 조는 (1) 열람 : 열람을 구하는 사건 1 건당 300 원, (2) 등사 : 등사를 구하는 부분이 속해있는 사건 1 건당 300 원, (3) 등 본 : 원본 5 장 까지 300 원, 초과 1 장당 30 원, (4) 초본 : 1 건당 300 원, (5) 증명서 : 증명 사항 1 건당 300 원 등이며,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 인 및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기록의 열람등사를 청 구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사법원의 복사기 등 군사법원의 설비를 이용하여 등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에 규 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3조). 기록을 열람한 자는 필요부분 을 특정하여 군사법원의 복사기등 군사법원의 설비를 이용하여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4조제1항). 제1항의 경우에는 열람 수수료를 납부하 는 이외에 1장당 30 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제2항).
(31) 재판기록 열람 - 등사 규칙

규칙 제 4 조는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 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의 열람•

복사 : 1 건마다 500 원(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후 즉 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 건의 복사로 본다)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법원의 복사기 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 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복 사물 1 장마다 50 원의 수수료를 납부, (2) 재판서•조서의 정본•등 본•초본의 교부 : 원본 5 장까지 1,000 원, 초과 1 장마다 50 원, (3) 사건 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 : 1 건마다 500 원, (4)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 : 1 통마다 500 원(다만, 정본 교부시에는 제2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등이다.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1건 마다 1,000 원이다(제2항).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제3항).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는 때에는 제1항제 1 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복사물 1 장 마다 50 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 4 항). 재판기록 중 녹음테이 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필름에 대한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를 신청하 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에 관하여는 법원정보공개규칙 제 17 조제 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 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조서의 일 부인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에 대한 열람 • 복사를 하는 때의 수수료 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제5항). 조서의 일부인 녹음테이프, 녹화테 이프의 등본•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제6항).

규칙 제 5 조는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 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제1항).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법

원의 복사기 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조제 1 항제 1 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 받은 복사물 1 장마다 50 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 2 항). 제 1 항 의 경우에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변호사단체가 법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의 허가를 얻어 법원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제3항).
(32) 소방시설공사업법
(1)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 수수료

법률 제34조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 첩을 재발급(제2호)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37조는 별표 7에서 수수료를 정하 고 있다(제1항).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교육비는 현 금으로 납부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제2항).

별표 7) 2.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 1만원
(2) 자격수첩발급수수료

시행규칙 제 24 조제 3 항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수첩의 발급 및 수 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3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47 조는 제 14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제3호),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 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제7호)하려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수 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은 별표 5 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제 1 항). 법 제47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제3항).

별표 5) 1. 수수료,
다. 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 2 만원
사. 법 제 29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 : 1 만원

차. 영 제 23 조제 1 항제 6 호 내지 제 8 호 및 동조제 2 항제 5 호 내지 제 13 호 의 1 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화관리자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 : 1 만원

카. 방화관리자수첩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 : 1 만원
※ 납부방법 :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마목•차목 및 카목 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5) 1. 차) • 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화관리자수첩교부 및 재교 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는 관련 근거규정이 없고, 시행령 제 23조(방화관리자의 선임대상자)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영 에서는 수수료 징수 혹은 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입법적 불비라고 하겠다.
(34)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 78 조는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 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65조는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 는 수수료를 2 천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명서 신청수수료는 500원이며, 재발급 신청수수료는 2,000원의 정부수입인지로 하고 있다191).
(35) 야생동 • 식물보호법

법률 제44조는 수렵면허를 재교부 받으려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

시행규칙 제53조는 수렵면허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 만원으로 한다. 수수료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 다. 이하 같다)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 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 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6) 수도법

시행규칙 제 15 조는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자격증(별지 제 5 호서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자격 증을 발급할 때에는 미리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환경 부고시 제2009-194호) 규정에서 자격증 발급수수료는 5,000원으로 규 정하고 있다.

시헙합격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이미 시험의 응시수수료에 포함되었다고 본다면 증명서의 교부나 재교부가 아닌 합격자에게 발 급하는 자격증 발급수수료는 무료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률 제 54 조는 (1) 제9조제 2 항에 따른 화학물 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 10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3) 제 10 조제 2
191) 보건복지부 의료민원발급 인터넷서비스 참조.

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4) 제14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5) 제 19 조에 따른 유독물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6) 제 20 조제 1 항 본문 및 제 2 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의 등록•변경등 록 및 변경신고, (7) 제22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수시검사, (8)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9) 제 31 조에 따른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10) 제33 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의 허가 및 변경허가, (11) 제34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및 제 3 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2) 제37조제 1 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 등을 받으려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58조는 별표11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별표 11] <개정 2011.3.31>

## 수수료(제58조 관련)

화학물질확인증명서 발급 등의 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안 전진단 수수료는 취급시설의 시설규모별 인건비•경비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종 별 | 수수료 |
| :--- | :---: |
| 가. 화학물질확인증명서 발급 | 10,000 원 |
| 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 50,000 원 |
| 다.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면제확인 | 10,000 원 |
| 라. 시험항목별 시험기관의 지정 | - |
| 마. 유독물의 수입신고 | 13,000 원(매품목당) |
| 바. 유독물의 수입 변경신고 | 9,000 원 |
| 사. 유독물영업의 등록 | 13,000 원 |
| 아.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9,000 원 |
| 자. 관찰물질의 제조 • 수입신고 | 13,000 원(매품목당) |
| 차. 관찰물질의 제조 • 수입 변경신고 | 9,000 원 |


| 종 별 | 수수료 |
| :--- | :---: |
| 카．취급제한 • 금지물질의 수입허가 | 13,000 원（매품목당） |
| 타．취급제한 • 금지물질의 수입 변경허가 | 9,000 원 |
| 파．취급제한 • 금지물질영업의 허가 | 13,000 원 |
| 하．취급제한 • 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9,000 원 |
| 거．취급제한 • 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 13,000 원 |
| 너．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의 변경승인 | 9,000 원 |
| 더．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 • 수시검사 | 20,000 원 |

비고 ：수수료는 지방환경청장•유역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 으로，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8）주민등록법

법률 제 24 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 27 조에 따른 경우 외 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公課金）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 항）．제 27 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다만，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항）．

법률 제 29 조는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 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제1항）．

제4조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납하는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는 특별시•광역시•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 구의 수입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 17 조는 법 제29조제 1 항에 따른 수수료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 건 1 회에 300 원, 주민 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는 1 통에 400 원(법 제 29 조제 2 항제 2 호 및 제 6 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교부는 500 원) 등이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에는 무료로 한다.

법 제 27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 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 명당 5 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 발급할 때 또는 제 11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 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제2항).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 40 조제 2 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 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제3항).
(39) 전자서명 법

법률 제 28 조는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인증역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0) 인감증명법

법률 제 15 조는 제 12 조제 1 항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과 제 13 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행령 제19조는 인감증명발급 ：통당 600 원，인감변경신고 ：회당 600 원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제2항은（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2）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3）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 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국민기초생 활 보장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5）관계 법령 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6）「독립 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등 과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7）「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 （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한 경우，（8）「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9）「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5 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경우，（10）「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 다）이 신청하는 경우，（11）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시키 기 위하여 인감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명신고하고 인 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제2항）．
（41）공사채 등록법
법률 제13조는 등록기관192）은 공사채의 등록，공사채등록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이나 공사채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에 관하 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이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19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과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0 조제 2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금융기관이 등록기관이다（시행령 제 1 의 2 조제 1 항）．
3. 열람 - 복사수수료

|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등록부 등•초본 교부 및 열 람수수료 |
| :---: | :---: |
| 댐사용권등록령 |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br>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 수수료 |
|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 시설관리권 등록령 |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 람 청구 수수료 |
| 유료도로 관리권등록령 | 등초본 교부 열람 수수료 |
| 철도시설 관리권등록령 |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 람신청 수수료 |
|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등초본 교부 열람청구 수수료 |
|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복사의 방 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 열람 - 복사수수료 |
|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 사건기록 열람 - 등사 수수료 |
| 상업등기 법 |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수수료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화해기록 열람 - 복사 수수료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 요청 수수료 |
| 재산조회규칙 | 열람 - 출력의 신청 수수료 |
|  | 기록의 열람 - 복사수수료 |
| 재판기록 열람 - 등사 규칙 |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 청수수료 |
|  | 등초본 및 열람수수료 |
|  | 기타 증명숫료 |


| 재판기록 열람수수료 등에 관한 <br> 귝 | 기록의 열람 • 복사 |
| :--- | :--- |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 <br> 에 관한 규칙 | 기록의 열람 • 출력 수수료 |
| 등기부 등 • 초본 등 수수료규칙 |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 <br> 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 |
| 등기특별회계규칙 | 등기부열람수수료 |
| 도로명주소대장규칙 | 도로명주소대장 열람 수수료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br> 법률 | 열람청구 또는 정정 • 삭제청 <br> 구 수수료 |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br>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 <br> 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신청 • 재교부 • 발급 • 증명수 <br> 쇼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br> 법률 | 신용정보 열람•정보제공 수수료 |

(1) 공항시설 관리권 등록령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등록령 제12조). 다 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 조 단서).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용지 1 매당 1 천 200 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 공항시설관리권당 1 천 200 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 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3항 단서).
（2）댐사용권 등록령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등록령 제9조）． 다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제9조 단서）．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수수료는 용지 1 장당 100 원으로 하고，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 댐사용권당 50 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제3항）．다만，국토 해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 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3항 단서）．
（3）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등록령 제 13조）．다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 13 조 단서）．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수수료 및 열 람수수료에 관하여는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제2조 및 제3 조를 준용한다（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 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다만，국토해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4항）．

##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 2 조（등본•초본）（1）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1 통 에 대하여 20 장까지는 1,200 원으로 하고， 1 통이 20 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 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의2（「선박등기규칙」 제2조，「재단저 당등기규칙」 제2조，「입목등기규칙」 제11조 및 「부부재산약정등

기규칙」 제 5 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부 등•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1 통에 대하여 제1항의 수수료에 8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기부등 본의 교부수수료는 1 통에 대하여 1,000 원,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등본의 교부수수료는 1 통에 대하여 800 원으로 한다.

제 3 조 (열람) (1)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 등기기록 또는 1 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 원으로 한다. 다만,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 장마다 50 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의 열람 에 대한 수수료는 1 등기기록에 관하여 500 원으로 한다.

## (4)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등록령 제13조는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하 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는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수수료 는 용지 1 매당 100 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 수수료는 1 유료도로관 리권당 50 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 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3항).
(5)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등록령 제 12 조는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하 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는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수수료 는 용지 1 매당 1 천 200 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 수수료는 1 철도시 설관리권당 1천 2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제3항).
(6)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등록령 제 13 조는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하 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규칙 제5조는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용지 1 매당 100 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 항만시설관리권당 50 원 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3 조는 신용조회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에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중 관계 법령에 따라 공 개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 다(제1항).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열람료 또는 수수료 등을 내야 한다(제6항).
(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7 조는 제 12 조제 1 항 및 제 1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청구 또는 정정•삭제청구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처리정보 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때에 한한다)를 납 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 21 조는 법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처리정 보의 열람 또는 정정•삭제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가 정 하는 바에 의한다(제 1 항). 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정정 또는 삭 제하게 된 사유가 보유기관에 있는 때에는 정정 또는 삭제청구에 관 한 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제2항).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 료는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국가행정기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 2조제 11 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3 항). 제 3 항에 규정한 기관외의 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제4항).
4. 검정 - 인증 수수료

| 자격기본법 | 국가자격검정 수수료 |
| :--- | :--- | :--- |
| 교원자격검정령 | 자격검증 수수료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평가인정 등 수수료 |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 검정수수료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br> 품질인증 수수료 |


| 도시철도법 | 품질인증수수료 |
| :---: | :---: |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품질인증 수수료 |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인정수수료 |
|  | 인정서 재발급수수료 |
| 해상교통안전법 | 인증심사 수수료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인증심사 수수료 |
| 건축법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수수료 |
|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
| 저작권법 | 권리자 등의 인증 수수료 |
| 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수수료 |
| 농업기계화 촉진법 | 농업기계의 검정 수수료 |
| 수산물품질관리법 | 품질인증 수수료 |
|  | 검정수수료 |
| 식품산업진흥법 | 전통식품 품질인증수수료 |
|  | 유기가공식품 인증수수료 |
|  | 유기가공식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수수료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술 품질인증숫료 |
| 친환경농업육성법 | 친환경농산물인증수수료 |
|  | 인증 유효기간 연장수수료 |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우수기업 인증수수료 |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 소방용기계•기구의 우수품질 인증수수료 |
| :---: | :---: |
| 토양환경보전법 | 검증수수료 |
|  | 토양오염 검사수수료 |
| 대기환경보전법 |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 또는 변경인증 수수료 |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환경표지등 인증 신청수수료 |
| 소음•진동관리법 | 제작차 인증•변경인증 또는 인증생략 신청수수료 |
| 수도법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수 수료 |

(1) 자격기본법

법률 제 37 조는 국가자격검정을 받는 경우에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 도록 하고 있다. 법령에 별도의 수수료 금액과 부과기준 등에 대하여 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교원자격검정령

초 • 중등교육법 제 21 조제 4 항은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 • 권한 및 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정령 제 11 조는 자격검정 수수료는 교육과학 기술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검정령 시행규칙 제8조는 별표 6 에서 규정하고 있다.
［별표 6］
수수료

| 구 분 |  | 수수료 | 납부방법 |
| :--- | :--- | ---: | :--- |
| 1．무시혐검정 | 1．교원자격검정 | 500 원 | 수입인지 • 수입증지 또는 <br> 흠 |
|  | 2．교장 • 원장자격의 추천 <br> 검 | 1,000 원 | 수입증지 또는 현금 |
|  | 시험검정 | 10,000 원 | 수입증지 또는 현금 |

（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 22 조제 1 항제 1 호는 법 제 3 조제 2 항 193）에 따른 평가인정 신 청수수료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 제 13조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평생교육진흥원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신청도서의 쪽수，검정 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공고하는 검 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규정 제13조제1항）．납부한 수수료는 이 를 반환하지 아니한다（제2항）．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 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검정을 위탁한 기관에 예산 의 범위에서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3항）．

[^18](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83조는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 •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제 조 또는 공급하는 자가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의 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내도록 하고 있다(제3항).
(6)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제 18 조는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 에게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제 1 항).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 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산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항).
(7) 건축법

법률 제 65 조제 4 항제 4 호의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수수료와 재 66 조의 2 제4호의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전자) 또는 지식경제부장관(후자)이 공동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8) 저작권법

법률 제 58 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 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인 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9)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 60 조는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 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제1항).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제2항).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5항).

시행규칙 제81조는 환경부장관이 인증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환경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 일(긴급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항).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 개하여야 한다(제3항).
(10) 소음•진동관리법

제 53 조제 2 항은 제 31 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변경인증 또는 인증생략 을 신청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 75 조는 (1) 법 제 31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인증의 경우에 자 동차 제작자 : 300,000 원, 이륜자동차 제작자 : 100,000 원, 개별자동차 수 입자 : 10,000 원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으며, (2) 법 제 31 조제 1 항 단서 에 따른 인증생략 : 5,000 원, (3) 법 제 31 조제 2 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경 우에 자동차 제작자 : 30,000 원, 이륜자동차 제작자 : 10,000 원 등이다.
(11) 수도 법

수도법 제14조는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또한，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물에 접촉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 1 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제 3 항）．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인증의 방법•절차，검사기관의 지정，수수료와 제 4 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제6힝）．

이 규정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 한 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이 규칙 제4조에서 인증신청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제 15 조는 인증을 받으려면 ［별표 4］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고，협회는 인증을 신청한 자가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증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 에 해당하는 수수료 중 3 분의 1 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별표 4］

## 수수료（제 15 조 관련）

1．인증신청수수료
가．인증 신청 수수료는 건당 50 만원으로 한다．다만，같은 생산지의 다른 제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추가되는 제품에 대한 인증 신청 수수료는 건당 25 만원으로 한다．
나．인증 신청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2．공장심사 수수료
가．출장비
1）금액：「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 급 공무원 상당 여비
2） 1 건당 1 일을 기준으로，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적용한다． 나．심사수당

1）금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 업의 대가 기준 중 산업공장부분의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2） 1 건당 1 일을 기준으로，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 일 이상인 경우 이동 일수의 2 분의 1 을 추가로 적용한다．

3）심사수당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3．제품시험 수수료
가．전（前）처리 비용

|  | 품 목 | 수수료（원） | 비 고 |
| :---: | :---: | :---: | :---: |
| 수도용 자재 <br> 및 제품의 <br> 분류에 따른 <br> 전처리 비용 | 관류，밸브류，유량계류，수도미 터류 및 기타 수도용 제품 등 | 300，000 |  |
|  | 말단급수설비（수도꼭지류） | 774，000 |  |
|  | 표층용 재료（용제 포함） | 300，000 |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시편（試片）제작상태 |
|  | 표층용 재료（용제 미포함） | 100，000 |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시편 제작상태 |

비고 ：분석을 의뢰한 자의 요청에 따라 컨디셔닝을 생략한 경우（세척，용 출시험만 시행）수수료는 5만원으로 한다．

나．시험분석 비용

| 분석 항목 | 수수료 <br> （원） | 분석 항목 | 수수료（원） |
| :---: | :---: | :---: | :---: |
| 카드뮴 | 30,000 | 탁도 | 10,000 |
| 수은 | 23,000 | 잔류염소의 감량 | 15,000 |
| 셀레늄 | 30,000 | 2,4 톨루엔디아민 | 59,000 |
| 납 | 30,000 | 2,6 톨루엔디아민 | 59,000 |
| 비소 | 30,000 | 포름알데히드 | 70,000 |
| 6가 크롬 | 20,000 | 사염화탄소 | 60,000 |
| 질산성 질소 및 아질산성 | 20,000 | 아세트산비닐 | 45,000 |
| 시안 | 27,000 | 스티렌 | 45,000 |
| 불소 | 30,000 | 1,2 －부타디엔 | 45,000 |
| 아연 | 20,000 | $1,3-$ 부타디엔 | 45,000 |


| 분석 항목 | 수수료 <br> (원) | 분석 항목 | 수수료(원) |
| :---: | :---: | :---: | :---: |
| 철 | 20,000 | $\mathrm{~N}, \mathrm{~N}$-디메틸아닐린 | 45,000 |
| 구리 | 20,000 | 1,2 -디클로로에탄 | 45,000 |
| 나트륨 | 20,000 | 1,1 -디클로로에틸렌 | 45,000 |
| 망간 | 20,000 | $1,1,2$-트리클로로에탄 | 45,000 |
| 염소이온 | 20,000 | 트리클로로에틸렌 | 45,000 |
| 증발잔류물 | 15,000 | 벤젠 | 45,000 |
| 음이온계면활성제 | 31,000 | 에피클로로히드린 | 45,000 |
| 페놀류 | 93,000 | 디클로로메탄 | 45,000 |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15,000 |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 45,000 |
| 맛 | 5,000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45,000 |
| 냄새 | 5,000 | $1,1,1-ㅌ ㅡ ㄹ ㅣ ㅋ ㅡ ㄹ ㄹ ㅗ ㄹ ㅗ ㅇ ㅔ ㅌ ㅏ ㄴ ~$ | 45,000 |
| 색도 | 10,000 | - | - |

다. 가목과 나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5. 기타 수수료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 <br> 흥법 | 공제조합 보증수수료 |
| :--- | :--- |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복제 또는 <br> 출력자료 사용료 또는 수수료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교통정보의 제공 수수료 |
| 선박안전법 |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 <br>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 |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br> 법률 | 측량기술자 증명서 수수료 |


| 공연법 | 연소자 유해성여부의 확인수수료 |
| :---: | :---: |
|  | 외국인 국내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수수료 |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 수입인지 수수료 |
|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 차관공여 수수료 |
|  |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 및 송금 수수료 |
| 한국진도개 보호 • 육성법 | 등록한 내용증명수수료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사적조정 수수료 |
| 산업안전보건법 | 확인수수료 |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
|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 인증정보의 제공 수수료 |
|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수수료 규칙 | 일자확정청구 수수료 |
| 법원정보공개규칙 | 정보의 공개 및 우송수수료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점검 수수료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정보공개 및 우송 수수료 |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매 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 수료) |
| 도서관법 시행령 |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 이스 이용 수수료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보증수수료 |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증수수료 |
| :---: | :---: |
| 국가재정법 시행령 | 보증수수료 |
|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수수료 |
| 등기특별회계법 |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숫료 |
| 민사소송법 | 송달함의 이용 수수료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수수료 |
| 법률 |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 신청 수수료 |
|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 에 관한 규칙 | 전자독촉시스템의 이용수수료 |
| 소방시설공사업법 | 실무교육 수수료 |
| 풍수해보험법 |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 이용 수수료 |
| 국민건강보험법 |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사용 수수료 |
| 국민건강증진법 | 건강증진사업 이용수수료 |
| 전자서명법 | 인증역무제공수수료 |
| 전자정부법 | 정보제공 수수료 |

(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방사선등이용주체는 자주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조합 원의 복지향상, 사고 및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 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 다)을 설립할 수 있다(법률 제15조제1항). 조합은 조합원의 영업활동 에 필요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제3 항제 1 호), 조합의 보증사업에 필요한 보증수수료는 출자금과 지분액의 총액, 보증의 종류 및 한도, 신용도를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시행 령 제9조제1호).
(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 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법률 제27조제2항). 관리기관의 장이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 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 보에 고시하고(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해당 기 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와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 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5 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 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

하게 하여야 한다（제1항）．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제4항）．

시행규칙 제 20 조는 법 제 25 조제 4 항에서＂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 식＂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 10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 산방식을 말한다．
（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 65 조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제1항）．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 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다만，폐차에 드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제2항）．

시행규칙 제 122 조제 1 항은 수수료와 관리비용은（1）매매알선수수료 ： 매매알선에 소요되는 실제비용，（2）등록신청대행수수료 ：등록신청대 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3）관리비용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다만，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 금을 초과할 수 없다．매매업자는 제 1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의 금액은 이를 받을 수 없다（제2항）．

시행규칙 제 129 조는 경매장개설자인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매 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받을 수 있는 경매출품수수료는（1）출품료 ： 경매장시설물의 사용과 경매대상자동차의 성능점검－등록원부조회등 경매진행에 소요되는 비용，（2）경매수수료 ：경매대상자동차가 경락되

었을 경우 출품자 및 경락자가 경매장개설자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이 경우 경매장개설자는 수수료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37조는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1) 정기점검수수료 : 정기점검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정비요금 : 정비에 드는 실제비용, (3) 구난•견인을 위한 출장요금 : 정비의뢰된 자동차의 구난•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4) 관리비용 : 정비사업장 에 72시간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 로 이동하거나 정비완료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 보한 날부터 72 시간이상 계속하여 정비사업장에 방치하는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 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 또는 정비완료사실통보 일부터 72 시간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5) 견적요금 : 견 적을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교통사고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이다. 정비업자는 제 1 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시행규칙 제 144 조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1) 말소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말소등록신청대행에 소요 되는 실제비용, (2) 견인요금 : 폐차의뢰된 자동차의 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정하여 진 견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3) 관리비용 :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 하는 경우의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 고일부터 5 일 이내의 기간의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가. 폐차사 업장에 5 일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후 폐차를 하지 아 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나. 제 142 조제 1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금지사유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 여 그 자동차를 폐차사업장에 방치하는 경우 등이다. 자동차해체재활

용업자는 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 를 받을 수 없다(제4항).
(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한민국 법인이 신청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공공차관 도입의 추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서 공공차관협약의 체 결을 승인한 때에는 정부보증법인에게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6) 민사소송법

법률 제 188 조는 송달함의 이용절차와 수수료,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 달방법 및 송달함으로 송달할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제4항).
(7)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34조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제5 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37조는 별표 7에서 교육비를 정하고 있다(제1항). 교육비 는 현금으로 납부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제2항).

별표 7)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소방 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8)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 13 조(공단의 업무에 관한 규정)제 3 항은 공단은 해당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이용이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 5 절 대행수수료

I. 대행수수료의 개념

심사. 중개, 시험, 진단, 측정, 점검, 봉인, 조사, 심사요청, 측량, 평 가, 감정, 하역, 중계, 판매, 운용, 매각, 의뢰, 거래, 징수, 훈련, 사무 취급 수수료 등을 대상으로 한다.
․ 현행 법령상 대행수수료의 종류

| 건설기술관리법 | 신기술 심사수수료 |
| :---: | :---: |
| 고속국도법 | 업무대행수수료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중개수수료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선박보안심사 수수료 |
|  | 임시선박보안심사 수수료 |
|  | 특별선박보안심사 수수료 |
|  |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 시설보안심사 수수료 |
| 도선법 | 도선사면허증 발급 • 갱신 • 재 발급 신청수수료 |
|  | 도선사 정년연장 신청수수료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안전진 단수수료 |
| 도시철도법 | 성능시험 수수료 |
|  | 정밀진단수수료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수수료 |
| :---: | :---: |
| 선박법 |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 |
|  | 재화중량톤수 측정 수수료 |
|  | 국제톤수 측정 수수료 |
| 선박안전법 | 선체두께측정업무 수수료 |
|  | 외국 특별점검 수수료 |
| 자동차관리법 |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수수료 |
|  |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수수료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동산가격조사 수수료 |
| 철도안전법 | 교육훈련 • 면허 • 검사 • 시험 • 정밀진단 수수료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수로도서지의 판매대행 수수료 |
|  | 지적측량수수료 |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수수료 |
| 하천법 | 수문조사기기의 점검 신청 수 수료 |
| 한국해운조합법 | 업무 수수료 |
| 항로표지법 | 검사대행 수수료 |
| 건축법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br>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


| 공연법 | 설계검토, 정기 • 수시검사 및 <br> 정밀안전진단수수료 |
| :--- | :--- |
|  |  |  |
|  |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br> 넝약관리법 | 농수산물전자거래 수수료 |
| :--- | :--- |$|$| 약해•약효 • 독성 또는 잔류성 |
| :--- |
| 시험 수수료 |


| 국가기술자격법 |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수료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 - 보건평가수수료 |
|  | 직무교육수수료 |
|  | 자격•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 육수수료 |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 |
|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계약 • 사업 - 업무)대행숫료 |
| 자격기본법 | 국가자격검정수수료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압류재산 공매대행 수수료 |
|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 무규칙 | 공매대행수수료 |
| 국유재산법 | 대행수수료 |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매각의뢰 수수료 |
|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 공매대행 수수료 |
| 출입국관리법 | 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
| 집행 관수수료규칙 | 서류 송달 수수료 |
|  | 휴일 또는 야간의 서류 송달 수수료 |
|  | 압류 또는 가압류집행 수수료 |
|  | 본 압류 수수료 |
|  | 금전 수취 후 교부수수료 |


|  | 배당요구 사무수수료 |
| :---: | :---: |
|  | 매각대금 지급사무수수료 |
|  | 거절증서 작성 수수료 |
|  | 위임에 따른 고지 또는 최고 수수료 |
|  | 원조 또는 재산봉인 수수료 |
|  | 봉인제거수수료 |
|  | 인도수수료 |
|  | 조사수수료 |
|  | 보관수수료 |
|  | 매각수수료 |
| 소방시설공사업법 |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 |
| 위험믈안전과리버 | 정기검사 수수료 |
| 위힘ㄹㄹㄹㄴㄴㄴㄴㄴㄴ립 | 운반용기 검사수수료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성능검사수수료 |
|  | 방염성능검사수수료 |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에 관한 규칙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시험시설의 심사, 형 식승인의 변경수수료 |
|  |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 수수료 |
| 소방장비관리규칙 | 소방장비의 검사등의 수수료 |
| 유선 및 도선사업법 | 안전검사수수료 |
|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 시험의뢰수수료 |


| 보건환경연구원법 | 시설이용, 실험 또는 검사 의뢰 <br> 수수료 |
| :--- | :--- |
| 지역보건법 | 시설 이용, 실험 또는 검사 의뢰 <br> 또는 진료 수수료 |
| 국민연금법 | 매각 대행 수수료 |
| 국민건강보험법 | 공매대행 수수료 |
| 약사법 시행령 |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br> 수수료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수의계약 대행 수수료 |
| 지역보건법 | 시설이용, 실험 또는 검사 의 |
| 뢰, 진료 수수료 |  |


|  |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 제 검사수수료 |
| :---: | :---: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정도검사 수수료 |
|  | 교정용품의 검정 수수료 |
|  | 교육수수료 |
|  | 전문교육수수료 |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
|  | 생활폐기물 배출수수료 |
|  | 검사수수료 |
| 악취방지법 | 악취검사수수료 |
| 소음•진동관리법 | 확인검사 수수료 |
|  | 소음도 검사수수료 |
| 하수도법 | 분뇨처리 수수료 |
|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 검사수수료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정기•수시검사수수료 |
|  | 안전진 단수수료 |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수질검사수수료 |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 시험의뢰수수료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결함확인 검사수수료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검사 수수료 |
|  | 정밀안전검사 수수료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설치검사 수수료 |


|  |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
| :---: | :---: |
|  | 안전진단 수수료 |
| 전자서명법 | 전자서면인증관리업무 수수료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중개수수료 |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조사 또는 시험 • 평가수수료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연소자 유해성여부의 확인수수료 |
|  | 외국인 국내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수수료 |
|  | 설계검토, 정기•수시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
| 공인회계사법 | 검사수수료 |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업무수행 수수료 |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업무수행 수수료 |
| 담보부사채신탁법 | 검사수수료 |
| 신용보증기금법 | 업무수행 수수료 |
| 예금자보험법 | 업무수행 수수료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업무수행 수수료 |

(1) 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 40 조의 2 제 1 호는 제 18 조제 1 항 194)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제 2 호는
194) 제 18 조 (신기술의 활용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가 요청한 경우로서 그 건 설기술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건설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 • 고시할 수 있다.

법 제 5 조제 1 항 195 )에 따른 지방위원회에 건설기술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조례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단서). <신기술 신청 심사수수료 산출기준(법 제40조의 2 제 1 호 및 제4호 관련)>

| 구 분 | 금액(1건당) |
| :---: | :---: |
| 신청수수료 | 10,000 원 |
| 1차심사수수료 | $2,000,000$ 원 |
| 2차심사수수료 | $1,500,000$ 원 |

※ 비 고
가. 신청수수료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낸다.
나. 1 차 및 2 차심사수수료는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낸다.
다. 위 표의 수수료 외에 심사를 위한 현장실사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지정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 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 현장실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은 한국엔지 니어링진흥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부문 단가를 적용한다.

마. 현장실사에 따른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한다.
195) 제 5 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1)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 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고속국도법

법률 제6조제1항은 이 법과 도로법 기타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 된 고속국도에 관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3항은 한국도로공사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도로 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196)에 따른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업무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업무대 행수수료로 매입대금의 1 천분의 5 와 감정수수료 - 등기수수료 등 토지 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제 32 조제 1 항),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같은 항 단서).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 천분의 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 천분의 8 이 내로 한다(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
196) 제 53 조(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제 54 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 55 조 (비용부담), 제56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같은 조 제4항).

거래금액의 계산 :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 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 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 을 곱 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교환계약 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 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 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 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같은 조 제5항).
중개업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제 10 조제 2 호197)의 규정에 따른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7항).
(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 43 조는 제 10 조제 3 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제 11 조 에 따른 선박보안심사•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 제 25 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및 제 26 조에 따른 항만시 설보안심사•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대행기관이 보안심사를 대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를 받으려 는 자는 대행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2항). 대행기관 이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및 요율 등을
197) 2. 중개수수료 -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제 3 장 현행 법령상 수수료 현황분석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 도 또한 같다(제3항).

시행규칙 제 55 조는 법 제 43 조제 1 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변경승인, 선박보안심사, 임시선박보안심사, 특별선박보안심사, 항만시 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 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별표 7]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 등의 수수료 (제55조 관련)

1. 선박보안심사 등의 수수료

| 구 분 | 선박의 종류 | 기본수수료 | 비 고 |
| :---: | :---: | :---: | :---: |
| 선박보안계획서 <br> 승인 • 변경승인 | 기본 수수료: 67,360 원 <br> ※ 선박보안계획서 변경승인 수수료의 경우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수수료의 2 분의 1 감면 |  | O 선박보안심사(최초보안심사 갱신보안심사 - 중간보안심 사) - 임시선박보안심사 - 재심 사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에 톤 수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 최초보안심사 갱신보안심사 | 제1군에 속하는 선박 | 67,360원 | ○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재심 사의 경우에는 해당 보안심사 종류별 수수료를 적용한다. |
|  | 제2군에 속하는 선박 | 84,200원 |  |
| 중간보안심사 | 제1군에 속하는 선박 | 50,520원 |  |
|  | 제2군에 속하는 선박 | 67,360원 |  |
| 임시선박보안심사 | 기본수수료: 50,520 원 |  |  |
| 특별선박보안심사 | 없음 |  |  |
| ○ 선박종류에 따른 구분 <br> - 제1군: 유조선 • 화학제품운반선 • 가스운반선 • 산적화물선 • 고속화물선 및 그 밖의 화물선 <br> - 제 2 군: 여객선 • 고속여객선 및 이동식해양구조물 |  |  |  |
|  |  |  |  |  |
| - 톤수계수 |  |  |  |
| - 총톤수 500톤 미만: 0.8 |  |  |  |
| - 총톤수 500톤 이상 1,600톤 미만: 0.9 |  |  |  |

비 고

1. 공휴일 보안심사 및 국외 보안심사의 수수료

가. 공휴일에 하는 보안심사의 수수료는 위 표에 따른 수수료에 50퍼센트를 가 산한다.

나. 국외에서의 선박보안심사•임시선박보안심사 수수료는 위 표에 따른 수수 료의 4 배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한다.
2. 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보안심사자의 출장에 드는 실비를 별도로 부 담한다.
2.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수수료

| 구 분 | 규 모 | 수수료 |  | 비 | 고 |
| :---: | :---: | :---: | :---: | :---: | :---: |
|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 또는 변경승인 | 항만시설 1건당 | - 승인: 55,700원 <br> - 변경승인: 27,850 원 |  |  |  |
| 항만시설보안심사 | 대상 항만시설 면적 | 최초•갱신심사 | 중간심사 |  |  |
|  | $10,000 \mathrm{~m}^{2}$ 미만 | 111,400원 | 55,700원 |  |  |
|  | $\begin{aligned} & 10,000 \mathrm{~m}^{2} \text { 이상 } \\ & 50,000 \mathrm{~m}^{2} \text { 미만 } \end{aligned}$ | 222,800원 | 111,400원 |  |  |
|  | $\begin{aligned} & 50,000 \mathrm{~m}^{2} \text { 이상 } \\ & 100,000 \mathrm{~m}^{2} \text { 미만 } \end{aligned}$ | 401,000원 | 200,500원 |  |  |
|  | $\begin{aligned} & 100,000 \mathrm{~m}^{2} \text { 이상 } \\ & 200,000 \mathrm{~m}^{2} \text { 미만 } \end{aligned}$ | 641,600원 | 320,800원 |  |  |
|  | $\begin{aligned} & 200,000 \mathrm{~m}^{2} \text { 이상 } \\ & 500,000 \mathrm{~m}^{2} \text { 미만 } \end{aligned}$ | 898,200원 | 449,100원 |  |  |
|  | $500,000 \mathrm{~m}^{2}$ 이상 | 1,077,800원 | 538,900원 |  |  |
| 특별항만시설보안 심사 | 없음 |  |  |  |  |

(5) 도시철도법

법률 제 23 조의 2 는 (1) 제 22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성능시험, (2) 제 22 조의 4 제 1 항에 따른 품질인증, (3) 제 22 조의 5 제 1 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 야 한다. 다만, 제 22 조의 3 제 1 항 및 제 22 조의 5 제 1 항 단서에 따라 국토 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관"이라 한다)가 실 시하는 성능시험 및 정밀진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정기관이 정하는 수 수료를 해당 지정기관에 내야 한다(제1항).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기

관이 수수료를 정하려면 산정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항).

시행규칙 제4조는 법 제23조의 2 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품질인증 신 청을 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 품질관리체계 심사, (2) 품질시험, (3) 여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수수료를 결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 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 하고 10 일간 게시할 수 있다(제2항).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 2 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 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국토해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6) 선박법

법률 제 30 조는 이 법에 따라 허가, 인가, 등록, 톤수의 측정 또는 증 서의 발급 등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제 1 항). 대행기관은 제 1 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그 기 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2항). 제 1 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해당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제3항).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은 별표 1과 별표 2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 다(제1항). 선박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톤수의 측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선박톤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장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지방청장이 정하는 여비를 내야 한다(제2항).
[별표 1] <개정 2010.6.10>

##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1. 총톤수 측정 수수료
(단위: 원)

| 총톤수의 구분 | 수수료의 종류 | 측정 및 전부개측 | 부분측정 및 <br> 일부개측 |
| :---: | :---: | :---: | :---: |
|  | 5톤 미만 | 750 | 750 |
| 5톤 이상 | 10톤 미만 | 1,500 |  |
| 10톤 이상 | 20톤 미만 | 2,250 |  |
| 20톤 이상 | 50톤 미만 | 2,500 | 1,500 |
|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4,000 |  |
| 100톤 이상 | 300톤 미만 | 6,000 | 2,000 |
| 300톤 이상 | 500톤 미만 | 8,000 |  |
| 500톤 이상 | 1,000톤 미만 | 10,000 | 3,000 |
| 1,000톤 이상 | 2,000톤 미만 | 13,000 |  |
| 2,000톤 이상 | 3,000톤 미만 | 16,000 | 5,000 |
| 3,000 톤 이상 | 4,000톤 미만 | 20,000 | 5,000 |
| 4,000톤 이상 | 6,000톤 미만 | 25,000 |  |
| 6,000톤 이상 | 8,000톤 미만 | 30,000 |  |
| 8,000 톤 이상 | 10,000톤 미만 | 35,000 |  |
| 10,000 톤 이상 | 14,000톤 미만 | 40,000 |  |
| 14,000톤 이상 | 20,000톤 미만 | 50,000 |  |
| 20,000톤 이상 | 30,000 톤 미만 | 60,000 |  |
| 30,000톤 이상 | 50,000톤 미만 | 70,000 |  |
| 50,000톤 이상 |  | 80,000 |  |

비 고

1. 상갑판하 전부, 구분갑판하 전부 또는 선체주부 전부의 용적 변경으로 인한 총 톤수의 변경에 관한 개측은 전부개측으로 본다.
2. 외국에서 총톤수를 측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4 배에 해당하는 금액 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3. 공휴일에 총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 퍼센트를 가산 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4. 재화중량톤수 측정 수수료
(단위: 원)

| 총톤수의 구분 | 수수료의 종류 | 측정 및 전부개측 | 일부개측 |
| :---: | :---: | :---: | :---: |
|  | 500톤 미만 | 8,000 | 2,000 |
| 500톤 이상 | 1,000톤 미만 | 10,000 | 3,000 |
| 1,000톤 이상 | 2,000톤 미만 | 13,000 |  |
| 2,000톤 이상 | 3,000톤 미만 | 16,000 | 5,000 |
| 3,000톤 이상 | 4,000톤 미만 | 20,000 |  |
| 4,000톤 이상 | 6,000톤 미만 | 25,000 |  |
| 6,000톤 이상 | 8,000톤 미만 | 30,000 |  |
| 8,000톤 이상 | 10,000톤 미만 | 35,000 |  |
| 10,000 톤 이상 | 14,000톤 미만 | 40,000 |  |
| 14,000톤 이상 | 20,000톤 미만 | 50,000 |  |
| 20,000톤 이상 | 30,000톤 미만 | 60,000 |  |
| 30,000 톤 이상 | 50,000톤 미만 | 70,000 |  |
| 50,000톤 이상 |  | 80,000 |  |

비 고

1. 상갑판하 전부, 구분갑판하 전부 또는 선체주부 전부의 용적 변경으로 인한 재 화중량톤수의 변경에 관한 개측은 전부개측으로 본다.
2. 외국에서 재화중량톤수를 측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4 배에 해당하 는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3. 공휴일에 재화중량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4. 국제톤수 측정 수수료
(단위: 원)

| 총톤수의 구분 수수료의 종류 |  | 측정 및 전부개측 |  | 일부개측 |  |
| :---: | :---: | :---: | :---: | :---: | :---: |
|  |  | 갑선박 | 을선박 | 갑선박 | 을선박 |
|  | 50톤 미만 | 1,500 | 2,500 | 900 | 1,500 |
|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2,400 | 4,000 |  |  |
| 100톤 이상 | 300톤 미만 | 3,600 | 6,000 | 1,200 | 2,000 |
| 300 톤 이상 | 500톤 미만 | 4,800 | 8,000 |  |  |
| 500톤 이상 | 1,000톤 미만 | 6,000 | 10,000 | 1,800 | 3,000 |
| 1,000톤 이상 | 2,000톤 미만 | 7,800 | 13,000 |  |  |


| 수수료의 종류 총톤수의 구분 |  | 측정 및 전부개측 |  | 일부개측 |  |
| :---: | :---: | :---: | :---: | :---: | :---: |
|  |  | 갑선박 | 을선박 | 갑선박 | 을선박 |
| 2,000톤 이상 | 3,000톤 미만 | 9,600 | 16,000 | 3,000 | 5,000 |
| 3,000 톤 이상 | 4,000톤 미만 | 12,000 | 20,000 |  |  |
| 4,000톤 이상 | 6,000톤 미만 | 15,000 | 25,000 |  |  |
| 6,000톤 이상 | 8,000톤 미만 | 18,000 | 30,000 |  |  |
| 8,000 톤 이상 | 10,000톤 미만 | 21,000 | 35,000 |  |  |
| 10,000 톤 이상 | 14,000톤 미만 | 24,000 | 40,000 |  |  |
| 14,000 톤 이상 | 20,000톤 미만 | 30,000 | 50,000 |  |  |
| 20,000톤 이상 | 30,000톤 미만 | 36,000 | 60,000 |  |  |
| 30,000 톤 이상 | 50,000톤 미만 | 42,000 | 70,000 |  |  |
| 50,000톤 이상 |  | 48,000 | 80,000 |  |  |

비 고

1. "갑선박"이란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으로서 총톤수의 산정에 사용한 수치 를 적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을선박"이란 갑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3. 상갑판하 전부, 구분갑판하 전부 또는 선체주부 전부의 용적 변경으로 인한 국 제톤수의 변경에 관한 개측은 전부개측으로 본다.
4. 기준흘수선 또는 여객정원수의 변경으로 인한 순톤수의 변경에 관한 개측은 일 부개측으로 본다.
5. 외국에서 국제톤수를 측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금 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6. 공휴일에 국제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 퍼센트를 가 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7)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06 조제 2 항은 제 24 조제 1 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 는 국토해양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매년 12 월 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제 3 항). 지적소관청이 제6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에는 그 조사•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제2항에 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제 82 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등록말소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제4항).

시행규칙 제116조는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 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품셈 중 지적측량품에 지적기술자의 정 부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제 1 항). 제 1 항에 따른 지적측량 종목 별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한다(제2항). 시행규칙 제 117 조는 법 제 106 조제 4 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 일 내에 내야 한다.
(8) 하천법

법률 제19조는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문조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장 치(이하 "수문조사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제 1 항).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4항).
시행령 제 14 조는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받으려면 별표 1 에서 정하 는 검정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수문조사기기 수수료 부과•징수 업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하고 있다(제105 조제 3 항제 8 호).
[별표 1]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제 14 조 관련)

| 검정대상 수문조사기기의 종류 |  | 수수료(단위: 원) |
| :---: | :---: | :---: |
| 유속측정기기 | 회전식 | 260,000 |
|  | 전자기식 | 260,000 |
|  | 도플러식 | 소요비용 |
|  | 원통형 |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
|  | 운송형 이외 |  |


| 검정대상 수문조사기기의 종류 |  | 수수료（단위：원） |
| :---: | :---: | :---: |
| 증발량측정기기 |  |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수수료 |
| 토양수분측정기 |  | 소요비용 |
| 증발산량측정기기 |  | 소요비용 |
| 유사량측정기기 |  | 소요비용 |
| 수위계 | 부자식 | 소요비용 |
|  | 압력식 |  |
|  | 초음파식 |  |
|  | 기포식 |  |
|  | 레이다식 |  |
| 2종 이상의 조사기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것 （토양수분측정기，증발산량측정기 등） |  | 소요비용 |

（9）관세법
（1）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수수료

법률 제86조는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 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수출입 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제1항）．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 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 을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 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5항）．

분석수수료는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품목당 3 만원으로 한다（시행규칙 제33조）．
(2) 매각대행 수수료

법률 제208조는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 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제1항). 또한 (1)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컴퓨터 등 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 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 (2)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에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4항). 세관장은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에 따른 실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 73 조는 매각대행수수료를 (1)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이 매각된 경우: 건별 매각금액에 1 천분의 20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매 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이 수입 또는 반송되어 매각대행이 중지된 경우 :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에 1 천분의 1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매각 대행을 의뢰한 물품의 국고귀속•폐기•매각의뢰철회 등의 사유로 매 각대행이 종료된 경우 :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에 1 천분의 2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제1항). 매각대행수수료를 계산함에 있 어서 건별 매각금액이나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이 10 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매각금액 또는 최초공매예정가격은 10 억원으로 한다(제2항). 계산한 매각대행수수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당해 매각대행 수수료는 5 천원으로 한다(제3항).
(3) 전자문서중계 수수료

법률 제 327 조의 3 은 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중계업무 사업자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 1항).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6항).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법 제327조의 3 제 6 항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 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그 금액과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수료 등의 금액이 관세청장이 정 하는 산출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리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86조).
(4) 관세납부대행 수수료

시행령 제 32 조의 5 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관세와 같이 세관장이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 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이 5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관세납부대행기 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제 3항).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 천분의 15 를 초과 할 수 없다(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10)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시행령 제 84 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 은행총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에 관하여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1) 농지법

법률 제 38 조는 (1) 제 34 조제 1 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 34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 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3) 제 34 조제 2 항제 1 호의 2 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제 34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 려는 자, (5)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6) 제 35 조나 제 43 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 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 하는 자에게 내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제 51 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 업무 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 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제11항).
시행령 제55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11항에 따라 농 지보전부담금의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도지사, 시 장•군수•자치구구청장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 한 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의 100 분의 8 에 해당하는 금액, (2)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 의 100 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제1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수수료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따른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및 농지의 보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제2항).

업무의 위임과 위탁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이다.
(12) 축산물위생관리법

법률 제41조는 제9조제7항에 따라 기술•정보를 제공받거나 교육훈 련을 받는 자(제2호)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은 법 제41조제 2 호에 따라 제7조의5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정 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제 4 항).

## (13) 축산 법

법률 제 49 조는 품질평가원은 제 35 조제 1 항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으 려는 자에게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수수료를 등급판정 업무에 드는 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 등급판정 수수료는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장의 경영자 및 제 22 조제 1 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징수하여 품질평가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품질평가원은 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장의 경영자 및 제 22 조제 1 항 및 제 2항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각각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란집하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시행령 제 25 조).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은 등급판정 수수료는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축종별로 정하여 고시한다198).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5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제 38 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 하업등록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제52조제 1 항).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는 제 1 항에 따라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은 때에는 그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7 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별표 6에 따른 수수료납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제2항). 품질평가원장은 매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를 다음 달 10 일까지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51호서식의 축산 물등급퐌정수수료관리대장에 납입고지 및 납입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제3항).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는 제3항에 따라 고지된 수수료를 품질평가원장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매월 15 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4항).
수납기관은 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납입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납한 수수료를 매월 20 일까지 품질평가원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납입통지 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 5 항). 품질평가원장은 도축 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가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수 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 일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촉구하고, 당해 기간 동안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38 조제 3 항제 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도축장 또는 계란집 하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가 등급판정을

[^19]신청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6항). 제3항의 축산 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제7항).

품질평가원장은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에게 등급 판정수수료 납입액의 100 분의 3 이내의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 야 한다(시행규칙 제53조제1항).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고시>

| 대상품목 | 기 준 | 수수료 |
| :---: | :---: | :--- |
| 소 | 1두 | 2,000 원 |
| 돼지 | 1 두 | 400 원 |
| 닭 | 7천수 <br> (부분육 $1 \mathrm{~kg}=$ <br> 1 수) | 70천원(1일 7천수 초과물량에 대하여는 <br> 마리당 8원 가산, 10천수 초과물량에 대 <br> 하여는 마리당 6원 가산 |
| 계란 | 50 천개 | 50천원(1일 50천개 이상 판정시 초과물 <br> 량에 대하여는 개당 1원 가산) |
| 소부분육 | 1 박스 | 300 원 |

수수료의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가 아닌 시행규칙의 별표로 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1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 15 조는 공사는 이용료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 우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제1항).
（15）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8 조는 건강보험공단은 제 1 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 리공사（이하＂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압류한 재산의 공 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제 2항）．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공매를 대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제3항）．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 6 을 준용한다（시행규칙 제33조）．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공매대행수수료 등）（1）영 제68조의5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다만，「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 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공매 대행의뢰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제 2 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 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에 따라 공매대 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1．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건별 매 각금액에 1 천분의 28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법 제71조 제 1 항 또는 법 제 78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 3 자가

해당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 1 천분의 5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중 적 은 금액)에 1 천분의 5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제 2 호 또는 법 제71조제 2 항에 따른 공매의 중지 또는 매각결정의 취소로 인하여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 1 항제 1 호의 건별 매각금액, 제 1 항제 2 호의 납부세액 또는 제 1 항제 3 호의해제금액이 12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금액, 납부세액 또는 해제금액을 각각 12 억원으로, 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2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2 만원으로 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한국자산관 리공사의 공매대행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여야 한다.
(16)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 66 조는 제 28 조제 3 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제 1 호), 제 32 조 제 1 항에 따른 직무교육(제 2 호), 제 47 조에 따른 자격•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제8호),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제9호),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제 10 호)를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2항).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시행규칙 제 145 조제 1 항）．수수료 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전자정부법」 제 14 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제2항）．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에서 수수료 부과대상，납부자，부과 기준 등을 자세하게 정하고 있다．
（17）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 26 조는 소방방재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 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 여 공시할 수 있다（제1항）．시공능력 평가，공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시행규칙 제22조는 시공능력 평가 및 수수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협회가 정하되，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수수료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
（18）국민연금법
법률 제 95 조는 건강보험공단은 제 1 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제 4항）．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이 경우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제 5 항）．
건강보험공단은 제 5 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 다（제6항）．수수료는「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 45 조의 6 에 따른다（시행 규칙 제43조）．
（19）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 70 조（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는 공단은 국 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 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 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 하＂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공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 39 조는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 45 조의 6 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대기환경보전법
（1）인증시험 수수료
법률 제 48 조는 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 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제1항）．자동차제 작자가 제 1 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제 2 항）．인증 신청，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절차，시험수수료，인증방법 및 인증 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제3항）．

시행규칙 제65조는 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한 인증신청자는 인 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다만，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인증 신청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 중 에서 시험장비의 사용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하되，출장에 드 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제5항）．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하는 인증시 험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 및 별표를 준용한다．
시험의뢰규칙 제 7 조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제1항）．원장은 시험에 있어서 특수한 동물•식물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현지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수수료 외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현지 출장에 드는 비용의 산정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제2항）． 원장은 시험대상물을 잘못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시험을 하는 경우 수수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제3항）．국가기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방지 또는 환경감시상의 필요에 의 하여 시험을 의뢰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원장이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제4항）．
［별표］＜개정 2010．12．31＞
시험수수료금액표（제7조 관련）

| 분 야 | 시험항목 | 수수료 <br> （단위：원） |
| :---: | :--- | ---: |
| 가스성분시험 | 1．암모니아 | 17,400 |
|  | 2．일산화탄소 | 3．염화수소 |
|  | 4．염소 | 6,000 |
|  | 5．황산화물 | 17,400 |
|  | 6．질소산화물 | 17,200 |

\begin{tabular}{|c|c|c|}
\hline 분 야 \& 시험항목 \& \begin{tabular}{l}
수수료 \\
(단위: 원)
\end{tabular} \\
\hline 가스성분시험 \& \begin{tabular}{l}
7. 이황화탄소 \\
8. 포름알데히드 \\
9. 황화수소 \\
10. 불소 \\
11. 시안 \\
12. 브롬 \\
13. 벤젠 \\
14. 페놀 \\
15. 비소 \\
16. 수은
\end{tabular} \& 17,700
23,100
16,700
17,100
30,000
22,300
47,300
19,100
25,500
29,700 \\
\hline 입자상물질성 분시험 \& \begin{tabular}{l}
1. 먼지 \\
2. 비산먼지 \\
3. 중금속 \\
4. 매연
\end{tabular} \& \[
\begin{array}{r}
12,000 \\
22,000 \\
20,700 \\
5,500
\end{array}
\] \\
\hline 유류실험 \& 연료 중 유황함유량 분석 \& 33,000 \\
\hline \[
\left\lvert\, \begin{array}{|l}
\text { 연소보조장치 } \\
\text { 성능검사시험 }
\end{array}\right.
\] \& 연소보조장치 성능검사시험 \& 2,488,500 \\
\hline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시험 \& \begin{tabular}{l}
1. 길들이기 \\
가. 차대동력계 \\
나. 원동기동력계 \\
2.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
가. CVS-75 \\
나. IM240 \\
다. ECE15+EUDC \\
(입자상물질계수법 적용시) \\
라. 이륜차 배출가스 시험(최고속도 \(45 \mathrm{~km} / \mathrm{h}\) 이상) \\
마. 이륜차 배출가스 시험(최고속도 \(45 \mathrm{~km} / \mathrm{h}\) 미만) \\
바. 삭제 <2010.12.31> \\
사. 삭제 <2010.12.31> \\
3.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
가. ND-13 \\
나. ETC \\
다. KC 1-8 \\
라. ELR
\end{tabular} \& \(7,660,000\)
\(11,616,000\)
\(1,042,800\)
587,300
\(1,045,700\)
\(1,189,700\)
630,800

530,500
$1,002,700$
984,400
$1,129,400$
$1,129,400$ <br>
\hline
\end{tabular}

| 분 야 | 시험항목 |  |
| :---: | :--- | ---: | | 수수료 |
| ---: |
| (단위: 원) |


| 분 야 | 시험항목 | 수수료 <br> (단위: 원) |
| :---: | :---: | :---: |
| 자동차연료• <br> 첨가제 또는 촉매제 | 5) 윤활성 | 120,800 |
|  | 6) 다고리방향족가 | 167,700 |
|  | 7) 방향족 화합물 | 157,000 |
|  | 8)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 66,400 |
|  | 다. 액화석유가스 $(\mathrm{LPG})$ 또는 액화석유가스 $(\mathrm{LPG})$ 용 첨가제 |  |
|  | 1) 황 함유량 | 142,600 |
|  | 2) 증기압 | 40,000 |
|  | 3) 밀도 | 40,500 |
|  | 4) 동판 부식 | 40,900 |
|  | 5) 100 밀리리터 증발 잔유물 | 49,400 |
|  | 6) 프로판 혼합비율 | 51,100 |
|  | 라. 바이오디젤 또는 바이오디젤용 첨가제 |  |
|  | 1) 지방산메틸에스테르함량 | 86,000 |
|  | 2) 잔류탄소분 | 16,500 |
|  | 3) 동점도 | 19,700 |
|  | 4) 황분 | 39,000 |
|  | 5) 회분 | 15,700 |
|  | 6) 밀도@ $15^{\circ} \mathrm{C}$ | 11,200 |
|  | 7) 전산가 | 13,600 |
|  | 8) 모노글리세리드 | 27,100 |
|  | 9) 디글리세리드 | 27,100 |
|  | 10) 트리글리세리드 | 27,100 |
|  | 11) 유리 글리세린 | 27,100 |
|  | 12) 총 글리세린 | 27,100 |
|  | 13) 산화안정도 | 25,400 |
|  | 14) 메탄올 | 34,100 |
|  | 15) 알칼리금속 $(\mathrm{Na}+\mathrm{K})$ | 51,600 |
|  | $16)$ 알칼리금속 $(\mathrm{Ca}+\mathrm{Mg})$ | 51,600 |
|  | 17) 인 | 50,000 |
|  | 마. 천연가스 또는 천연가스용 첨가제 |  |
|  | 1) 메탄 | 118,200 |
|  | 2) 에탄 | 118,200 |
|  | 3) C 3 이상의 탄화수소 | 118,200 |


| 분 야 | 시험항목 | 수수료 <br> （단위：원） |
| :---: | :---: | :---: |
| 자동차연료－ <br> 첨가제 또는 촉매제 | 4） C 6 이상의 탄화수소 <br> 5）황분 <br> 6）불활성가스 $(\mathrm{CO} 2, \mathrm{~N} 2$ 등） <br> 4．촉매제 <br> 가．요소（UREA）함량 a <br> 나．밀도＠ $20^{\circ} \mathrm{C}$ b <br> 다．굴절률 $20^{\circ} \mathrm{C}$ c <br> 라．알칼리도（NH3） <br> 마．뷰렛（Biuret） <br> 바．알데히드（Aldehyde） <br> 사．불용해성（不溶解性）물질 <br> 아．인（PO4） <br> 자．칼슘 $(\mathrm{Ca})$ <br> 차．철 $(\mathrm{Fe})$ <br> 카．구리 $(\mathrm{Cu})$ <br> 타．아연 $(\mathrm{Zn})$ <br> 파．크롬 $(\mathrm{Cr})$ <br> 하．니켈 $(\mathrm{Ni})$ <br> 거．알루미늄（ Al ） <br> 너．마그네슘 $(\mathrm{Mg})$ <br> 더．나트륨（ Na ） <br> 러．칼륨 $(\mathrm{K})$ | $\begin{aligned} & 118,200 \\ & 111,100 \\ & 118,200 \\ & 33,700 \\ & 12,900 \\ & 27,900 \\ & 23,500 \\ & 62,300 \\ & 70,400 \\ & 25,500 \\ & 75,200 \\ & 21,300 \\ & 21,300 \\ & 21,300 \\ & 21,300 \\ & 21,300 \\ & 21,300 \\ & 21,300 \\ & 21,300 \\ & 21,300 \\ & 21,300 \end{aligned}$ |
| 시설확인검사 | 1．국내 <br> 가．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설비 <br> 1）차대동력계 및 배출가스분석기（휘발유 및 가 스자동차） <br> 2）차대동력계 및 배출가스분석기（경유자동차） <br> 3）차대동력계 및 배출가스분석기（이륜자동차） <br> 나．저온일산화탄소 배출가스 설비 <br> 다．증발가스 설비 <br> 1）연료탱크 가열 방식（ 1 시간 주간증발） <br> 2）가변온도 제어 밀폐실 방식（1일 주간증발） <br> 3）러닝로스 <br> 라．원동기동력계 및 배출가스분석기 <br> 마．소음측정용 주행로 및 측정기기 | $\begin{array}{r} 695,700 \\ 723,600 \\ 695,700 \\ 867,400 \\ \\ 491,600 \\ 607,600 \\ 1,039,000 \\ 635,400 \\ 259,700 \end{array}$ |


| 분 야 | 시험항목 | 수수료 <br> (단위: 원) |
| :---: | :---: | :---: |
| 시설확인검사 | 2. 국외 <br> 가.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설비 <br> 1) 차대동력계 및 배출가스분석기(휘발유 및 가 스자동차) <br> 2) 차대동력계 및 배출가스분석기(경유자동차) <br> 3) 차대동력계 및 배출가스분석기(이륜자동차) <br> 나. 저온일산화탄소 배출가스 설비 <br> 다. 증발가스 설비 <br> 1) 연료탱크 가열 방식(1시간 주간증발) <br> 2) 가변온도 제어 밀폐실 방식 (1일 주간증발) <br> 3) 러닝로스 <br> 라. 원동기동력계 및 배출가스분석기 <br> 마. 소음측정용 주행로 및 측정기기 | $\begin{array}{r} 962,600 \\ 1,004,400 \\ 962,600 \\ 1,213,700 \\ \\ 669,600 \\ 837,000 \\ 1,464,700 \\ 878,900 \\ 334,800 \end{array}$ |
| 인증시험 입회 (수시검사, 결함확인검사 포함) | 1. 국내 <br> 가.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br> 1) CVS- 75 <br> 2) ECE-15+EUDC <br> 3) CVS-40 <br> 4) $\mathrm{CVS}-47$ <br> 5) UDC Cold <br> 6) ECE40+EUDC <br> 나.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br> 1) $\mathrm{ND}-13$ <br> 2) ETC <br> 3) $\mathrm{KC} 1-8$ <br> 4) ELR <br> 다. 대형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br> 라. 저온일산화탄소 배출가스 <br> 마. 증발가스 <br> 1) 연료탱크 가열 방식 (1시간 주간증발) <br> 2) 가변온도 제어 밀폐실 방식(1일 주간증발) <br> 3) 러닝로스 <br> 바. 무부하 매연검사 <br> 사. 소음검사 | $\begin{array}{r} 389,600 \\ 389,600 \\ 157,700 \\ 157,700 \\ 259,700 \\ 269,000 \\ 436,000 \\ 436,000 \\ 436,000 \\ 436,000 \\ 649,400 \\ 389,600 \\ 301,500 \\ 445,300 \\ 811,700 \\ 3,200 \end{array}$ |


| 분 야 | 시험항목 | 수수료 <br> (단위: 원) |
| :---: | :---: | :---: |
| 인증시험 입회 (수시검사, <br> 결함확인검사 <br> 포함) | 1) 가속주행소음 <br> 2) 경적소음 <br> 3) 배기소음 <br> 2. 국외 <br> 가.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br> 1) CVS- 75 <br> 2) ECE-15+EUDC <br> 3) CVS-40 <br> 4) CVS-47 <br> 5) UDC Cold <br> 6) ECE40+EUDC <br> 나.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br> 1) $\mathrm{ND}-13$ <br> 2) ETC <br> 3) $\mathrm{KC} 1-8$ <br> 4) ELR <br> 다. 대형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라. 저온일산화탄소 배출가스 마. 증발가스 <br> 1) 연료탱크 가열 방식(1시간 주간증발) <br> 2) 가변온도 제어 밀폐실 방식(1일 주간증발) <br> 3) 러닝로스 <br> 바. 무부하 매연검사 <br> 사. 소음검사 <br> 1) 가속주행소음 <br> 2) 경적소음 <br> 3) 배기소음 | 34,700 <br> 13,900 <br> 13,900 <br>  <br> 544,000 <br> 544,000 <br> 209,200 <br> 209,200 <br> 334,800 <br> 376,600 <br> 627,700 <br> 627,700 <br> 627,700 <br> 627,700 <br> 920,700 <br> 544,000 <br> 418,500 <br> 627,700 <br> $1,130,000$ <br> 4,100 <br> 46,000 <br> 20,900 <br> 20,900 |
| 인증생략검사 | 1. 인증생략대상 차량 확인 가. 과학원 구내 <br> 1)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br> 2) 이륜차 <br> 나. 현지조사 <br> 1)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br> 2) 이륜차 | $\begin{array}{r} 21,400 \\ 11,100 \\ 127,500 \\ 89,400 \end{array}$ |


| 분 야 | 시험항목 | 수수료 <br> (단위: 원) |
| :---: | :---: | :---: |
| 악취시험 | 1. 직접관능법 <br> 2. 공기희석관능법 <br> 3. 기기분석법 <br> 가. 암모니아 <br> 나. 황화수소 <br> 다. 메틸메르캅탄 <br> 라. 황화메틸 <br> 마. 이황화메틸 <br> 바. 트리메틸아민 <br> 사. 스티렌 <br> 아. 아세트알데히드 | $\begin{aligned} & \hline 36,700 \\ & 36,500 \\ & 34,400 \\ & 83,000 \\ & 83,000 \\ & 83,000 \\ & 83,000 \\ & 53,900 \\ & 48,000 \\ & 50,100 \end{aligned}$ |
| 환경소음진동 측정 | $\begin{gathered} \text { 1. 기록측정 } \\ \text { 가. 소음 } \end{gathered}$ | 3,400 |
| 환경소음진동 측정 | 나. 진동 <br> 2. 대역분석 <br> 가. 소음 <br> 나. 진동 <br> 3. 소음표시 권고대상기계 소음도측정 <br> 4. 방음자재 성능검사 <br> 가. 흡음율 <br> 나. 투과율 <br> 5. 바닥충격음 성능시험 <br> 6. 음향파워레벨 측정 <br> 가. 건설기계류(브레이커에 대한 측정시험을 제외 한다) <br> 나. 건설기계류(브레이커에 대한 측정시험만 해당 한다) <br> 다. 일반기계류 | 3,400 6,900 6,500 7,300 979,600 $1,239,600$ $1,155,360$ 185,000 212,000 198,000 |
| 수질검사(폐하 수 - 오수 - 하 천수•호소수 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 1. 온도 <br> 2. 수소이온농도 <br> 3. 용존산소 <br> 4.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r> 5. 화학적 산소요구량 <br> 6. 투과율법에 의한 색도 측정 | 300 800 2,800 5,800 7,300 2,900 |


| 분 야 | 시험항목 | 수수료 <br> (단위: 원) |
| :---: | :---: | :---: |
| 수질검사(폐하 수 • 오수 • 하 천수•호소수 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 7. 부유물질 | 2,800 |
|  | 8. 총 노말핵산 추출물질 | 6,000 |
|  | 9. 노말핵산추출물질 중 광유류 | 15,400 |
|  | 10. 염소이온 | 2,900 |
|  | 11. 암모니아성 질소 | 10,800 |
|  | 12. 아질산성 질소 | 2,800 |
|  | 13. 질산성 질소 | 5,400 |
|  | 14. 총 질소 | 3,700 |
|  | 15. 용존 총 질소 | 3,700 |
|  | 16. 인산염인 | 5,600 |
|  | 17. 총 인 | 3,400 |
|  | 18. 용존 총 인 | 3,400 |
|  | 19. 페놀류 | 7,800 |
|  | 20. 시안 | 13,100 |
|  | 21. 불소 | 7,400 |
|  | 22. 크롬 | 6,900 |
|  | 23. 아연 | 6,900 |
|  | 24. 구리 | 6,900 |
|  | 25. 카드뮴 | 6,900 |
|  | 26. 납 | 6,900 |
|  | 27. 망간 | 6,900 |
|  | 28. 니켈 | 6,900 |
|  | 29. 철 | 6,900 |
|  | 30. 비소 | 13,900 |
|  | 31. 원자흡광광도법에 의한 셀레늄 측정 | 6,000 |
|  | 32. 6 가 크롬 | 6,900 |
|  | 33. 수은 | 10,600 |
|  | 34. 알킬수은 | 17,400 |
|  | 35. 유기인 | 20,300 |
|  | 36. 폴리염화비페닐(PCBS) | 125,200 |
|  | 37. 음이온 계면활성제 | 13,200 |
|  | 38. 휘발성 저급탄화수소류 | 13,900 |
|  | 39. 클로로필 a | 1,300 |
|  | 40. 전기전도도 | 3,000 |


| 분 야 | 시험항목 | 수수료 <br> (단위: 원) |
| :---: | :---: | :---: |
| 수질검사(폐하 수•오수•하 천수•호소수 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 41. 총 대장균군 <br> 가. 하천수 • 호소수 <br> 나. 폐하수 <br> 42. 분원성 대장균군(하천수 - 호소수에 대한 시험만 해당한다) <br> 43. 대장균(수영 등 물놀이 용수에 대한 시험만 해당 한다) <br> 44. 생태독성 | $\begin{array}{r} 14,800 \\ 6,200 \\ 11,400 \\ \\ 12,600 \\ \\ 455,000 \end{array}$ |
| 수질검사(먹는 물 • 먹는샘물 에 대한 검시만 해당한다) | 1. 일반세균 <br> 2. 저온 일반세균 <br> 3. 총 대장균군 <br> 4. 분원성 대장균군 <br> 5. 대장균 <br> 6. 분원성 연쇄상구균 <br> 7. 녹농균 <br> 8. 아황산환원 혐기성포자 형성균 <br> 9. 쉬겔라 <br> 10. 살모넬라 <br> 11. 여시니아 <br> 12. 바이러스 <br> 13. 원생동물 <br> 14. 수소이온농도 <br> 15. 맛 <br> 16. 냄새 <br> 17. 색도 <br> 18. 구리 <br> 19. 카드뮴 <br> 20. 납 <br> 21. 아연 <br> 22. 알루미늄 <br> 23. 망간 <br> 24. 철 <br> 25. 셀레늄 <br> 26. 비소 | 5,300 6,100 8,800 8,400 6,200 9,200 13,100 5,300 14,600 15,900 28,100 $1,304,600$ 535,200 300 300 600 2,600 6,100 6,100 6,100 6,100 6,100 6,100 6,100 6,600 7,700 |


| 분 야 | 시험항목 | 수수료 <br> (단위: 원) |
| :---: | :---: | :---: |
| 수질검사(먹는 물 - 먹는샘물 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 27. 수은 <br> 28. 6 가 크롬 <br> 29. 탁도 <br> 30. 총경도 <br> 31. 유리탄산 <br> 32. 증발잔류물 <br> 33.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br> 34. 잔류염소 <br> 35. 염소이온 <br> 36. 암모니아성 질소 <br> 37. 질산성 질소 <br> 38. 시안 <br> 39. 페놀류 <br> 40. 세제 <br> 41. 불소 <br> 42. 황산이온 <br> 43. 유기인계농약(다이아지논 • 파라티온 • 페니트로티온 만 해당한다) <br> 44. 카바릴 <br> 45. 휘발성 유기물질류 <br> 가. 총트리할로로메탄 - 트리클로로에틸렌 - 테트라 클로로에틸렌•1,1,1-트리클로로에탄 <br> 나. 디클로로메탄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크실 렌 • 1,1-디클로로에틸렌 - 사염화탄소 <br> 46. 보론(B) <br> 47. 클로랄하이드레이트 -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 디 클로로아세토니트릴 •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닐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br> 48.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 트리클 로로아세틱에시드만 해당한다) | $\begin{array}{r} 6,600 \\ 3,900 \\ 400 \\ 2,400 \\ 2,500 \\ 2,900 \\ 2,800 \\ 3,700 \\ 3,900 \\ 2,300 \\ 7,200 \\ 11,300 \\ 9,300 \\ 9,200 \\ 9,300 \\ 11,800 \\ 15,600 \\ 15,700 \\ 19,600 \\ 29,200 \end{array}$ |
| 수처리제 | 1. 수소이온농도 <br> 2. 비중 <br> 3. 염기도 <br> 4. 염화물 | $\begin{aligned} & 1,900 \\ & 1,100 \\ & 4,700 \\ & 2,900 \end{aligned}$ |


| 분 야 | 시험항목 | 수수료 <br> (단위: 원) |
| :---: | :---: | :---: |
| 수처리제 | 5. 건조감량 | 2,100 |
|  | 6. 체잔류물 | 4,300 |
|  | 7. 암모니아성 질소 | 7,000 |
|  | 8. 황산이온 | 9,600 |
|  | 9. 물불용물 | 2,600 |
|  | 10. 염기치환용량 | 9,600 |
|  | 11. 경도 | 3,300 |
|  | 12. 비소 | 9,600 |
|  | 13. 수은 | 9,100 |
|  | 14. 정인산염 | 5,100 |
|  | 15. 산불용성 회분 | 9,100 |
|  | 16. 유리알칼리 | 2,800 |
|  | 17. 유리산 | 2,900 |
|  | 18. 페놀가 | 9,000 |
|  | 19. 알킬벤젠설퍼네이트(ABS)가 | 7,200 |
|  | 20. 메틸렌블루탈색력 | 5,600 |
|  | 21. 요오드흡착력 | 3,000 |
|  | 22. 염화나트륨 | 4,900 |
|  | 23. 철 | 9,300 |
|  | 24. 3 가철 | 8,200 |
|  | 25. 2 가철 | 8,000 |
|  | 26. 납 | 9,700 |
|  | 27. 카드뮴 | 9,700 |
|  | 28. 크롬 | 10,300 |
|  | 29. 망간 | 9,600 |
|  | 30. 셀레늄 | 8,100 |
|  | 31. 아연 | 9,500 |
|  | 32. 황산 | 1,700 |
|  | 33. 강열잔류물 | 6,000 |
|  | 34. 유효염소 | 3,600 |
|  | 35. 산화알루미늄 | 4,000 |
|  | 36. 알긴산나트륨 | 4,100 |
|  | 37. 인산염 | 6,400 |
|  | 38. 규산염 | 9,400 |

제 3 장 현행 법령상 수수료 현황분석

| 분 야 | 시험항목 | 수수료 <br> (단위: 원) |
| :---: | :---: | :---: |
| 수처리제 | 39. 산화칼슘 <br> 40. 황산동 <br> 41. 수산화나트륨 <br> 42. 이산화규소 <br> 43. 이산화염소 <br> 44. 폴리아민 함량 <br> 45. 에피클로로히드린 및 총클로로프로판올 | $\begin{array}{r} 4,100 \\ 2,600 \\ 3,000 \\ 7,200 \\ 3,000 \\ 3,400 \\ 14,800 \end{array}$ |
| 유독물시험 | 1. 확인시험 <br> 2. 함량시험 | $\begin{aligned} & \text { 성분당 } 23,300 \\ & \text { 성분당 } 23,300 \end{aligned}$ |
| 폐기물시험 | 1. 수소이온농도 <br> 2. 수분 <br> 3. 고형물 <br> 4. 강열감량 <br> 5. 유기물 함량 <br> 6. 기름성분 <br> 7. 시안 <br> 가. 함유시험 <br> 나. 용출시험 <br> 8. 유기인 <br> 가. 함유시험 <br> 나. 용출시험 <br> 9. 폴리염화비페닐(PCBS) <br> 가. 함유시험 <br> 나. 용출시험 <br> 10. 휘발성 저급 염소화탄화수소류 <br> 가. 함유시험 <br> 나. 용출시험 <br> 11. 할로겐화유기물질 <br> 가. 함유시험(휘발성물질에 대한 시험만 해당한다) 나. 함유시험(비휘발성물질에 대한 시험만 해당한다) <br> 다. 용출시험(휘발성물질에 대한 시험만 해당한다) <br> 라. 용출시험(비휘발성물질에 대한 시험만 해당한다) <br> 12. 크롬 • 구리 • 카드뮴 또는 납 등 중금속 <br> 가. 함유시험 <br> 나. 용출시험 | 4,000 <br> 2,200 <br> 2,200 <br> 4,000 <br> 4,000 <br> 10,800 <br> 18,200 <br> 22,200 <br> 25,100 <br> 29,000 <br> 188,000 <br> 123,000 <br> 27,400 <br> 28,200 <br> 12,800 <br> 20,200 <br> 43,800 <br> 23,100 <br> 성분당 39,100 <br> 성분당 15,100 |


| 분 야 | 시험항목 | 수수료 <br> (단위: 원) |
| :---: | :---: | :---: |
| 폐기물시험 | 13. 비소 <br> 가. 함유시험 <br> 나. 용출시험 <br> 14. 수은 <br> 가. 함유시험 <br> 나. 용출시험 <br> 15. 6 가 크롬 <br> 가. 함유시험 <br> 나. 용출시험 | $\begin{array}{r} 13,700 \\ 16,900 \\ \\ 8,800 \\ 11,800 \\ 13,300 \\ 17,700 \end{array}$ |
| $\begin{array}{lr} \text { 배출가스 중 } \\ \text { 다이옥신 측 } \\ \text { 정 • 분석시험 } \end{array}$ | 1. 다이옥신 시료채취 <br> 2. 다이옥신 분석 | $\begin{aligned} & 2,166,000 \\ & 2,568,500 \end{aligned}$ |
| 감염성미생물 에 대한 시험 | 1. 아포군검사법(배양액이 없는 지표생물에 대한 시 험만 해당한다) <br> 2. 아포군검사법(시판용 제품에 대한 시험만 해당한다) <br> 3. 세균배양검사법 <br> 4. 멸균테이프검사법 | $\begin{array}{r} 165,500 \\ 127,000 \\ 114,200 \\ 12,700 \end{array}$ |

비 고

1.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시험항목은 그 시험항목과 유사한 시험항목에 대한 수 수료의 금액에 따른다.
2. 수질검사 중 분원성 대장균군과 총 대장균군의 경우 같은 시료에 대하여 두 항목을 함께 분석하는 때에는 중복되는 추정시험에 대한 비율을 빼고 수수료를 산정한다.
3.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측정을 위한 기술료는 266,000 원으로 하고, 토양오염도검 사 시료채취비는 43,600 원으로 한다.
4. 시설확인검사 및 인증시험 입회(수시검사, 결함확인검사 포함)시 시험대상 시설 또는 장비가 둘 이상인 경우 수수료의 산정은 다음의 각 목에 따른다.
가. 각각의 시설 또는 장비가 동시에 시험이 가능한 경우 하나의 시설 또는 장비 에 대하여는 이 표의 수수료를, 나머지에 대하여는 이 표 수수료의 25 퍼센트 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나. 각각의 시설 또는 장비가 동시에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시설 또는 장 비별로 이 표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5. 인증생략대상 차량 확인의 현지조사 수수료 산정시 인증생략신청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 1 대에 대하여는 위 표의 수수료를, 나머지에 대하여는 이 표 수수료의 25퍼센트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6. 토양오염검사 수수료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1 에 따른다.
(2) 결함확인검사수수료

법률 제 51 조는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환경 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제 1 항). 결 함확인검사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 검사절차, 검사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검사수수료에 대한 시행규칙상의 규정이 없지만, 시험수수료에 포함 되어서 규정하고 있다.
(3) 정밀검사수수료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으려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수 수료를 내어야 한다(법률 제63조). 정밀검사수수료는 별표 24 의 산출기 준에 따라 해당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95조).
[별표 24] <개정 2008.4.17>
정밀검사수수료 산출기준(제95조 관련)

1. 정밀검사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 10 조에 따른 엔지니 어링사업대가의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되 정밀검사에 필 요한 인력 및 검사시간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정밀검사에 필요한 인력
(단위: 명)

| 구 분 | 기 술 인 력 |  |
| :---: | :---: | :---: |
|  | 초급 기술자 | 중급 이상 기술자 |
| 부하검사 | 2 | $1(2)$ |
| 무부하검사 | 1 | 1 |

비고: ( )는 소형자동차 및 대형자동차 모두를 검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기술인력의 수를 말한다.

나. 자동차 1 대당 필요한 정밀검사 시간
(단위 : 분)

| 구 분 |  | 검사 <br> 접수 | 관능 및 <br> 기능검사 | 검사 <br> 준비 | 검사 <br> 시행 | 장비 <br> 해체 | 결과 <br> 처리 | 계 |
| :---: | :---: | :---: | :---: | :---: | :---: | :---: | :---: | :---: |
| 부 <br> 항 <br> 검 <br> 사 | 소해형자자동차차 | 1 | 5 | 3 | 4 | 1 | 2 | 16 |
| 무부하검사 |  | 1 | 7 | 4 | 4 | 2 | 2 | 20 |

비 고:"소형자동차"란 차량 총중량이 5.5톤 이하인 자동차를 말하고, "대형자동차"란 차량 총중량이 5.5 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가 재검사 를 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정밀검사수수료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 여서는 아니되며, 관능 및 기능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재검 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4)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 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법률 제 74조제2항).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6항).

시행규칙 제 120 조는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제1항).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 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항).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 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제3항).
(21)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1) 정도검사 수수료 및 교정용품의 검정 수수료

법률 제 30 조는 제 11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제 2호)와 제 12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제3호)을 받으려 면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제1항).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시행규칙 제 30 조는 별표13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별표 13] <개정 2010.3.2>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 • 정도검사 및 검정수수료(제 30 조제 1 항 관련)

1. 성능시험 • 정도검사 수수료

| 분 야 | 대상기기 | 수수료(원) |  |
| :---: | :---: | :---: | :---: |
|  |  | 성능검사 | 정도검사 |
| $\begin{gathered} \text { 가: 자동차 } \\ \text { 분야 } \end{gathered}$ | 1)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 356,000 | 149,000 |
|  | 2)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  |  |
|  | 가) 4 륜차용 | 356,000 | 127,000 |
|  | 나) 2 륜차용 | 562,000 | 201,000 |
|  | 다) 운행자용 | 1,890,000 | 227,000 |
|  | 3)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  |  |
|  | 가) 원동기 | 415,000 | 157,000 |
|  | 나) 차대(4륜차용) | 478,000 | 195,000 |
|  | 다) 차대(2륜차용) | 834,000 | 352,000 |
|  | 라) 차대(운행자용) | 1,119,000 | 236,000 |
|  | 4) 증발가스 분석기와 그 부속기기 | 340,000 | 180,000 |
|  | 5) 입자형태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265,000 | 141,000 |
|  | 6)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분 석기,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  |
|  | 가) 일산화탄소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 | 353,000 | 73,000 |
|  | 나) 탄화수소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431,000 | 73,000 |


| 분 야 | 대상기기 | 수수료(원) |  |
| :---: | :---: | :---: | :---: |
|  |  | 성능검사 | 정도검사 |
| $\begin{aligned} & \text { 가. 자동차 } \\ & \text { 분야 } \end{aligned}$ | 다) 일산화탄소/탄화수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br> 라)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br> 7) 매연측정기 <br> 가) 열반사식 <br> 나) 광투과식 <br> 8) 매연측정기용 비디오카메라와 그 부속기기 <br> 9)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431,000 411,000 400,000 992,000 200,000 $5,492,000$ | 83,000 94,000 73,000 210,000 61,000 $1,162,000$ |
| 나. 대기분야 | 1) 대기배출가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br> (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산소 와 총탄화수소 측정기기 <br> (나)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또는 기타 항목 멀티측정기기(2개 항목 기준) <br> 2)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br> (가) 먼지 <br> (나) 가스 <br> (다)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또는 기타항목 멀 티측정기기(2개 항목 기준) <br> (라) 유속계 <br> 3) 대기연속자동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각 항목별) <br> 4) 굴뚝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 $\begin{aligned} & 369,000 \\ & 448,000 \\ & 802,000 \\ & 755,000 \\ & 802,000 \\ & 862,000 \\ & 765,000 \\ & 627,000 \end{aligned}$ | $\begin{aligned} & 139,000 \\ & 192,000 \\ & 600,000 \\ & 572,000 \\ & 625,000 \\ & 615,000 \\ & 580,000 \\ & 470,000 \end{aligned}$ |
| 다. 수질분야 |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br> 2)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 속기기 <br>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br> 4) 총 질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br> 5) 총 인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br> 6) 총 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br> 7)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br> 8) 부유물질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527,000 794,000 755,000 794,000 794,000 $1,408,000$ 793,000 $1,170,000$ | 318,000 611,000 598,000 598,000 598,000 907,000 490,000 764,000 |
| 라. 먹는물 분야 | 1) 탁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br> 2)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begin{aligned} & 615,000 \\ & 617,000 \end{aligned}$ | $\begin{aligned} & \hline 430,000 \\ & 431,000 \end{aligned}$ |
| 마. 소음 • 진동 분야 | 1)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br> 2) 진동레벨계와 그 부속기기 | $\begin{aligned} & 381,000 \\ & 420,000 \end{aligned}$ | $\begin{aligned} & 15,000 \\ & 19,000 \end{aligned}$ |
| 바. 토양 분야 | 1) 지하매설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 <br> 가) 액상부 <br> 나) 기상부 <br> 2) 지상 저장시설 액상부 누출 측정기와 그 부 속기기 | $\begin{array}{r} 2,384,000 \\ 169,000 \end{array}$ | $\begin{array}{r} 2,384,000 \\ 169,000 \end{array}$ |


| 분 야 | 대상기기 | 수수료(원) |  |
| :---: | :---: | :---: | :---: |
|  |  | 성능검사 | 정도검사 |
| $\begin{gathered} \text { 사. 실내공기 } \\ \text { 질 분야 } \end{gathered}$ | 1) 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 데히드,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및 총부유세균) 시 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br> (가) 실내건축자재 방출시험용 휘발성유기화 합물 및 포름알데히드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br> (나) 실내공간오염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포 름알데히드)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br> (다) 실내공간오염물질(미세먼지) 시료채취장 치와 그 부속기기 <br> (라) 실내공간오염물질(석면, 총부유세균) 시 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br> 2) 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 • 미세먼지 • 일산화탄소 • 이산화탄소 • 오존 • 이산 화 질 소•라돈)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br> (가) 실내공간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 측정기 와 그 부속기기 <br> (나) 실내공간오염물질 미세먼지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br> (다) 실내공간오염물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 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br> (라) 실내공간오염물질 오존 측정기와 그 부 속기기 <br> (마) 실내공간오염물질 이산화질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br> (바) 실내공간오염물질 라돈측정기와 그 부속 기기 | $\begin{array}{r} 1,890,000 \\ 607,000 \\ 873,000 \\ 873,000 \\ \\ 827,000 \\ 765,000 \\ 765,000 \\ 765,000 \\ 765,000 \\ 921,000 \end{array}$ | $\begin{aligned} & 816,000 \\ & 341,000 \\ & 531,000 \\ & 531,000 \\ & 371,000 \\ & 580,000 \\ & 580,000 \\ & 580,000 \\ & 580,000 \\ & 503,000 \end{aligned}$ |

비고 :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대기 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에는 2 개 항목을 초과하는 1 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 \%$ 를 가산한다.
3. 토양분야 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액상부) 및 그 부 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Probe)을 1 개 추가할 때마다 10 만원 을 가산한다.
2. 검정수수료

| 교정용품 | 수수료(원) | 비 고 |
| :---: | :---: | :---: |
| 가. 측정기기 교정가스(1항목 기준) | 42,000 |  |


| 교정용품 | 수수료(원) | 비 고 |
| :--- | ---: | ---: |
| 나.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지(1매 기준) | $10,000(13,000)$ |  |
| 다.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필터(1개 기준) | 33,000 |  |
| 라. 매연 포집용 여과지 원형(100매/1박스 기준) | $2,200(3,100)$ |  |
| 마. 매연 포집용 여과지 롤 $(50 \mathrm{~m} / 1$ 롤 기준) | $4,300(11,500)$ |  |

※ 비고 : 1) 부가가치세로 별도로 부과한다.
2) ( )의 금액은 검정된 교정용품을 제공받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

## 3. 출장비

가. 현장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검사(현장까지의 이동 및 복귀에 필요한 시간은 제외한다)에 드는 출장비를 수수료에 가산한다. 다만, 단일항목 기준 1 일 이하의 출장검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1 일당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 제4 호의 숙박비(1야)와 식비( $1 / 3$ 식)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하며, 출 장검사에 필요한 최소 기술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 회의 출 장에 둘 이상의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시간을 고려하여 분할 산정하여야 한다.

다. 연륙교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 출장검사를 하는 경우 에는 출장여비에 선박운임을 별도로 가산할 수 있다.
(2) 교육수수료 및 전문교육수수료

법률 제 30 조는 제 21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제6호)와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전문교육을 받게 하고자 하는 측 정대행업자(제7호)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 30 조제 4 항은 수수료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 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탁업무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로 법률에 수수료에 관한 근거규 정만을 두고 포괄적으로 업무위탁을 하면서 시행규칙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위탁업무의 방법인지 입법론적 검토가 필 요하다.
(22) 폐기물관리법
(1)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법률 제 6 조는 제 4 조제 1 항 또는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제 1 항).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 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제2항).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 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제3항).

시행규칙 제6조는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 -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를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결정 - 고시한다.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199)」고시>

가. 소각대상폐기물 반입수수료
(단위 : 원/톤)

| 처리사설 | 폐기물종류 |  | 구 분 | 분 류 <br> 번 호 | 개정(안) |
| :---: | :---: | :---: | :---: | :---: | :---: |
| 소각시설 | 폐 유 |  | 발열량 $3,000 \mathrm{ka} / \mathrm{kg}$ 미만 | 가-1 | 113,600 |
|  |  |  | 발열량 $3,000 \mathrm{kca} / \mathrm{kg}$ 이상 <br> $\sim 5,000 \mathrm{ka} / \mathrm{kg}$ 미만 | 가-2 | 100,000 |
|  |  |  | 발열량 $5,000 \mathrm{kca} / \mathrm{kg}$ 이상 $\sim 7,000 \mathrm{kca} / \mathrm{kg}$ 미만 | 가-3 | 92,000 |
|  |  |  | 고 상 | 가-4 | 150,000 |
|  | 폐유기 <br> 용제 |  | 할로겐족 | 가-5 | 250,000 |
|  |  | 비할로겐족 | 발열량 $3,000 \mathrm{kca} / \mathrm{kg}$ 미만 | 가-6 | 113,000 |
|  |  |  | 발열량 $3,000 \mathrm{ka} / \mathrm{kg}$ 이상 <br> $\sim 5,000 \mathrm{kca} / \mathrm{kg}$ 미만 | 가-7 | 100,000 |
|  |  |  | 발열량 $5,000 \mathrm{kca} / \mathrm{kg}$ 이상 $\sim 7,000 \mathrm{kca} / \mathrm{kg}$ 미만 | 가-8 | 92,000 |
|  | 페합성 고분자 화합물 | 폐합성수지 |  | 가-9 | 230,000 |

(단위 : 원/톤)

| 처리사설 | 폐기물종류 | 구 분 | 분 류 <br> 번 호 | 개정(안) |
| :---: | :---: | :---: | :---: | :---: |
| 소각시설 | 페합성 고분자 화합물 | 폐합성고무 | 가-10 | 230,000 |
|  |  | 폐폐인트 및 폐락카 | 가-11 | 260,000 |
|  | PCB 함유폐기물 | PCB 농도 $50 \%$ 이상 | 가-12 | 28,232,000 |
|  |  | $\begin{gathered} \mathrm{PCB} \text { 농도 } 30 \% \text { 이상 } \\ \sim 50 \% \text { 미만 } \end{gathered}$ | 가-13 | 18,617,100 |
|  |  | $\begin{gathered} \mathrm{PCB} \text { 농도 } 20 \% \text { 이상 } \\ \sim 30 \% \text { 미만 } \end{gathered}$ | 가-14 | 13,640,100 |

199) 환경부고시 제2009-141호

| 처리사설 | 폐기물종류 | 구 분 | 분 류 번 호 | 개정 (안) |
| :---: | :---: | :---: | :---: | :---: |
|  |  | $\begin{gathered} \mathrm{PCB} \text { 농도 } 10 \% \text { 이상 } \\ \sim 20 \% \text { 미만 } \end{gathered}$ | 가-15 | 8,964,100 |
|  |  | PCB 농도 $10 \%$ 미만 | 가-16 | 2,595,100 |
|  | 폐농약 <br> (액상) | 발열량 $3,000 \mathrm{kca} / \mathrm{kg}$ 미만 | 가-17 | 677,100 |
|  |  | 발열량 $3,000 \mathrm{kca} / \mathrm{kg}$ 이상 $\sim 5,000 \mathrm{kca} / \mathrm{kg}$ 미만 | 가-18 | 643,100 |
|  |  | 발열량 $5,000 \mathrm{kcal} / \mathrm{kg}$ 이상 ~7,000keal/kg 미만 | 가-19 | 627,100 |
|  |  | 발열량 $7,000 \mathrm{kca} / \mathrm{kg}$ 이상 | 가-20 | 603,100 |
|  | 오 니 | 유기성의 것 | 가-21 | 140,000 |

나. 매립대상 폐기물 반입수수료
(단위 : 원/톤)

| 처리사설 | 폐기물종류 | 구 분 | $\begin{aligned} & \text { 분 류 } \\ & \text { 번 호 } \end{aligned}$ | 개정(안) |
| :---: | :---: | :---: | :---: | :---: |
| 매립시설 |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 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및 도자기조각, 소각잔재물,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폐 흡착제 및 폐흡수제, 오니류 | 직접매립 | 나-1 | $\begin{array}{r} 65,410 \\ \sim 85,400 \end{array}$ |
|  |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석면 | 비중 0.8 이상 | 나-2 | $\begin{array}{r} 68,480 \\ \sim 89,400 \end{array}$ |
|  |  | 0.6 이상 <br> ~ 0.8 미만 | 나-3 | $\begin{array}{r} 77,210 \\ \sim 100,800 \end{array}$ |
|  |  | 0.6 미만 | 나-4 | $\begin{array}{r} 92,910 \\ \sim 121,300 \end{array}$ |
|  | 폐산, 폐알카리 | 고 상 | 나-5 | $\begin{array}{r} 65,410 \\ \sim 85,400 \end{array}$ |

다. 운반비

| 폐기물종류 | 성상 | 운반차종 | 구 분 | 분 류 번 호 | 개정(안) |
| :---: | :---: | :---: | :---: | :---: | :---: |
| 폐산, 폐알카리, 폐농 약, 폐유, 폐유기용 제, 폐페인트 등 | 액상 | 탱크로리 | $\begin{aligned} & \text { 고정비(원/톤) } \\ & \text { 변동비(원/톤•10km) } \end{aligned}$ | 1 | $\begin{array}{r} 17,800 \\ 237 \end{array}$ |
|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소각잔재물, 안 정화 또는 고형화처 리물, 폐촉매, 폐 흡착 제 및 폐흡수제, 오니 류, PCB 함유폐기물 | 고상 | 암롤트럭 | $\begin{aligned} & \text { 고정비(원/톤) } \\ & \text { 변동비(원/톤•10km) } \end{aligned}$ | 1 | $\begin{array}{r} 20,500 \\ 176 \end{array}$ |
| 폐석면 <br> 폐합성수지 <br> 폐합성고무 <br> 폐페인트 및 폐락카 | 고상 | 암롤트럭 | $\begin{aligned} & \text { 고정비(원/톤) } \\ & \text { 변동비(원/톤•10km) } \end{aligned}$ | 0.8 이상 | $\begin{array}{r} 22,700 \\ 196 \end{array}$ |
|  |  |  | $\begin{aligned} & \text { 고정비(원/톤) } \\ & \text { 변동비(원/톤•10km) } \end{aligned}$ | $\begin{aligned} & 0.6 \text { 이상 } \\ & -0.8 \text { 미만 } \end{aligned}$ | $\begin{array}{r} 29,200 \\ 251 \end{array}$ |
|  |  |  | $\begin{aligned} & \text { 고정비(원/톤) } \\ & \text { 변동비(원/톤•10km) } \end{aligned}$ | 0.6미만 | $\begin{array}{r} 40,900 \\ 352 \end{array}$ |

《주》
(1) 유해폐기물 함유농도 시험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2) 기준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별표 3 의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말한다.
(3) 발열량은 저위발열량을 말한다.
(4) 변압기, 콘덴서, 드럼통 등 밀폐용기에 들어있는 폐기물로서 처리시설에 투 입하기 위하여 절단, 파쇄, 용융 등의 별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폐기 물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자(이하 공공처리시설 운영자라 한다)가 정하는 처 리 수수료를 추가 적용 할 수 있다.
(5) 2 종류 이상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위의 반입수수 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적용한다.
(6) 소각처리수수료는 반입폐기물의 성상, 종류 등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양하므 로 반입폐기물의 성상, 처리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공처리시설운영자 가 고시된 수수료범위 내에서 결정•적용하되, 소각대상일반폐기물의 반입수 수료는 성상이 유사한 지정폐기물 수수료의 $90 \%$ 를 상회 할 수 없다.

제 3 장 현행 법령상 수수료 현황분석
（7）기타 위의 수수료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환경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8）반입수수료 및 운반비중 고정비는 십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백원단위로 하 고，운반비중 변동비는 원단위로 한다．
（9）처리위탁 받은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에 정 한 수수료에 종류별 운반비를 합산하며，운반비는 운반차종을 우선하여 적 용한다．
（10）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 입찰을 실시하 는 경우에는 낙찰가격을 반입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2）생활폐기물 배출수수료
법률 제 14 조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예）「동해시 생홀페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200）」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1）법 제13조제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페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3．제 1 호 및 제 2 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2）제 1 항 제 3 호의 판매가격은 청소재정자립도 향상과 쓰레기처리비용 자기부담율 현실화를 위하여 산정방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여，산정방 법 및 판매가격은 벌표6과 같다．
제 12 조의 2 （생할페기물 처리대행자의 수수료 부과•징수）（1）시장은 주민생 활의 편익，수수료 부과－징수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동해시폐기물 관리에관한조례」 제 7 조 및 「동해시음식물류폐기굴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 을위한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행자

200）강원도동해시조례 제 1434 호（시행 2007．12．14）
(이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동 조례 및 「동해시음 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 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수료를 생활폐기물 처리대 행자로 하여금 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절 차 및 방법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15조 (수수료의 감면) (1) 시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 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제 1 호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2) 시장은 제 1 ㅎㅏㅏㅇㅢ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 인당 매월 60 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검사수수료

법률 제 59 조는 제 30 조제 1 항(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 제 2 항(폐기 물처리시설 정기검사)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 사 기관이나 단체는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환경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제2항).

시행규칙 제82조의 2 는 법 제 59 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규모별로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 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항). 환경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과 산정내역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201).

[^20]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고시202)>

1. 소각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 구 분 | 용 량 | 수수료(천원) |
| :---: | :---: | :---: |
| 회 분 식 | 200kgh 미만 | 740 |
|  | 200kgh 이상 | 1,038 |
| 준 연 속 식 | 200kgh 미만 | 1,086 |
| 준 연 속 식 | 200kgh ~ 2ton/h | 1,779 |
|  | 2ton/h 이상 | 3,433 |
| 연 속 식 | 200kgh 미만 | 2,471 |
|  | 200kgh ~ 2ton/h | 3,164 |
|  | 2ton/h 이상 | 8,932 |

2. 소각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 구 분 | 용 량 | 수수료(천 원) |
| :---: | :---: | :---: |
| 회 분 식 | 200kgh 미만 | 477 |
|  | 200kgh 이상 | 740 |
| 준 연 속 식 | 200kgh 미만 | 620 |
|  | $200 \mathrm{kgh} \sim 2$ 2tonh | 1,170 |
|  | 2ton/h 이상 | 2,066 |
| 연 속 연 소식 | 200 kgh 미만 | 1,301 |
|  | $200 \mathrm{kgh} \sim 2$ 2tonh | 1,862 |
|  | 2 2ton/h 이상 | 4,816 |

3. 매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 규 모 | 침출수 처리시설 | 수수료(천원) |
| :---: | :---: | :---: |
| 5,000제곱미터 미만 | 유 | 5,281 |
|  | 무 | 4,019 |
| 5,000제곱미터 이상 | 유 | 11,859 |
| 10,000 제곱미터 미만 | 무 | 7,442 |

202) 환경부고시 2009-144호

| 규 모 | 침출수 처리시설 | 수수료(천원) |
| :---: | :---: | :---: |
| 10,000제곱미터 이상 | 유 | 13,554 |
| 30,000제곱미터 미만 | 무 | 8,505 |
| 30,000 제곱미터 이상 | 유 | 15,248 |
| 50,000제곱미터 미만 | 무 | 9,568 |
| 50,000제곱미터 이상 | 유 | 17,580 |
| 100,000제곱미터 미만 | 무 | 11,375 |
| 100,000제곱미터 이상 | 유 | 20,415 |
| 500,000 제곱미터 미만 | 무 | 13,206 |
| 500,000제곱미터 이상 | 유 | 23,250 |
| 1,000,000제곱미터 미만 | 무 | 15,036 |
| 1,000,000제곱미터 이상 | 유 | 26,576 |
| 2,000,000제곱미터 미만 | 무 | 17,299 |
| 2,000,000제곱미터 이상 | 유 | 30,081 |
| $3,000,000$ 제곱미터 미만 | 무 | 19,425 |
| $3,000,000$ 제곱미터 이상 | 유 | 34,490 |
| 4,000,000제곱미터 미만 | 무 | 22,455 |
| 4,000,000제곱미터 이상 | 유 | 40,199 |
| $5,000,000$ 제곱미터 미만 | 무 | 26,097 |
| 5,000,000제곱미터 이상 | 유 | 47,661 |
|  | 무 | 30,801 |

4.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 용 량 | 수수료(천원) |
| :---: | :---: |
| $500 \mathrm{~kg} / \mathrm{h}$ 미만 | 692 |
| $500 \mathrm{~kg} / \mathrm{h}$ 이상 | 871 |

5. 멸균분쇄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 용 량 | 수수료(천원) |
| :---: | :---: |
| $500 \mathrm{~kg} / \mathrm{h}$ 미만 | 548 |
| $500 \mathrm{~kg} / \mathrm{h}$ 이상 | 692 |

6.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 구 분 | 용 량 | 수수료(천원) |
| :---: | :--- | :---: |
| 사료화시설 | 5톤/일 미만 | 621 |
|  | 5톤/일 이상 $\sim 50$ 톤/일 미만 | 955 |
|  | 50톤/일 이상 | 1,657 |
|  | 5톤/일 미만 | 1,302 |
|  |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 1,815 |
|  | 50톤/일 이상 | 2,712 |
| 혐기성 분해시설 | 5톤/일 미만 | 846 |
|  |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 1,046 |
|  | 50톤/일 이상 | 1,705 |
| 기타시설 <br> (감량화시설, 부숙토생산시설, | 5톤/일 미만 |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
|  | 50톤/일 이상 | 762 |

7.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 구 분 | 용 량 | 수수료(천원) |
| :---: | :---: | :---: |
| 사료화시설 | 5톤/일 미만 | 513 |
|  | 5 톤/일 이상 ~50톤/일 미만 | 776 |
|  | 50톤/일 이상 | 1,299 |
| 퇴비화시설 | 5톤/일 미만 | 1,087 |
|  |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 1,517 |
|  | 50톤/일 이상 | 2,241 |
| 혐기성 분해시설 | 5톤/일 미만 | 678 |
|  |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 879 |
|  | 50톤/일 이상 | 1,412 |
| 기타시설 <br> (감량화시설, 부숙토생산시설, 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 생석 회처리, 버섯재배 등) | 5톤/일 미만 | 434 |
|  | 5 톤/일 이상 ~ 50 톤/일 미만 | 635 |
|  | 50톤/일 이상 | 1,036 |

비고 1. 매립지규모는 매립장 외부도로, 관리동, 침출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매립면적으로 한다.
2.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조사, 시험 등 엔지니어링사업대 가의 기준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업무비용은 피검사기관이 부담하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 칙 제7조 별표의 규정에 의한 시험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3. 매립시설의 정기검사(최초 정기검사는 제외한다)수수료는 매 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에 $20 \%$ 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검사기관은 가산금액에 해당하는 검사인력 또는 검사기 간을 증가시켜야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비고 $1 ? 2$ 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매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에 $50 \%$ 를 감한 금액 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감산금액에 해당하는 검사인력 또는 검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5. 재검사시 불합격 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검사만 실시한 경 우 검사수수료는 직접인건비와 출장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성능 시험시간을 초과하는 일괄투입식 소각시설, 가스화실을 2이상 설치하여 연속(교호)운전하는 구조의 소각시설은 초과되는 검 사시간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가산한다.
7. 검사수수료는 검사신청서 접수시 검사기관에 전액(중간검사를 받는 경우 중간검사 신청시 검사수수료의 $30 \%$ ) 납부하여야 한다.
8.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시설 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외의 선 박운임을 별도로 가산한다.
9. 음식물류폐기물과 다른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음식물류폐 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승인•신고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시 기재한 음식 물류폐기물 처리량(톤/일)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10. 검사기관은 추가업무비용 부담소요가 발생한 경우 세부내역 서를 기재한 추가업무비용 납부통지서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23) 악취방지법

법률 제 18 조제 5 항은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절차, 악취검사기관의 준수 사항,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 18 조는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사장비의 사용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제1항). 국립환 경과학원장은 검사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 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 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항). 국립환 경과학원장은 검사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산정명세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 여 공개하여야 한다(제3항).
(24) 소음•진동관리법
(1) 확인검사 수수료

법률 제 41 조는 제 38 조제 3 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특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제1 항). 이와 관련하여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의 준수사 항•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시행규칙 제55조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에 필요한 수수 료는 검사장비의 사용비용•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 일（긴급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항）．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 개하여야 한다（제3항）．
（2）소음도 검사수수료
법률 제44조는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騷音度）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1항）．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하며（제3항），소음도 검사방법，소음도표지 및 검사 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제4항）．

시행규칙 제60조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수수료는 환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 관의 장이 인건비와 장비의 사용비용•재료비 등 검사에 소요되는 비 용을 고려하여 정한다（제1항）．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음도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20 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간 그 내용을 게시 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항）．소음도 검사기관의 장 은 제 1 항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소음도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제3항）．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수수료 금액과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5) 하수도법

법률 제41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 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 - 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 에 따라 제 45 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 • 운반업자가 수집 • 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4항).
(2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률 제 54 조는 (1) 제9조제 2 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 10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3) 제 10 조제 2 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4) 제 14 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5) 제 19 조에 따른 유독물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6) 제 20 조제 1 항 본문 및 제 2 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의 등록•변경등 록 및 변경신고, (7) 제22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수시검사, (8)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9) 제 31 조에 따른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10) 제33 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의 허가 및 변경허가, (11) 제34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및 제 3 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2) 제 37 조제 1 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 등을 받으려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58조는 별표11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별표 11] <개정 2011.3.31>

## 수수료(제58조 관련)

화학물질확인증명서 발급 등의 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안전 진단 수수료는 취급시설의 시설규모별 인건비•경비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종 별 | 수수료 |
| :--- | :---: |
| 가. 화학물질확인증명서 발급 | 10,000 원 |
| 나. 신ㄱㅎㅎ학물질의 유해성심사 | 50,000 원 |
| 다.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면제확인 | 10,000 원 |
| 라. 시험항목별 시험기관의 지정 | - |
| 마. 유독물의 수입신고 | 13,000 원(매품목당) |
| 바. 유독물의 수입 변경신고 | 9,000 원 |
| 사. 유독물영업의 등록 | 13,000 원 |
| 아.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9,000 원 |
| 자.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 13,000 원(매품목당) |
| 차. 관찰물질의 제조 • 수입 변경신고 | 9,000 원 |
| 카. 취급제한 • 금지물질의 수입허가 | 13,000 원(매품목당) |
| 타. 취급제한 •금지물질의 수입 변경허가 | 9,000 원 |
| 파. 취급제한 •금지무ㄹㅣㅣㄹ영업의 허가 | 13,000 원 |
| 하. 취급제한 • 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9,000 원 |
| 거. 취급제한 • 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 13,000 원 |
| ㄴ‥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의 변경승인 | 9,000 원 |
| 더.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 • 수시검사 | 20,000 원 |

비 고: 수수료는 지방환경청장 - 유역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 법으로,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7）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제 17 조는 「지하수법」 제 33 조 본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1） 법 제 20 조제 1 항에 따른 수질검사：영 제 30 조제 1 항에 따른 수질검사전 문기관이 정하는 금액（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2）법 제 29 조의 2 제 1 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5 만원，（3）법 제 29 조의 2 제 1 항 후단에 따른 지하 수정화업의 변경등록： 3 만원이다．
（28）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6 조의 3 은 환경부장관에게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 치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가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 지하는지를 검사（이하＂결함확인검사＂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 1 항）．결함확인검사의 대상인 장치 또는 엔진의 선정기준，검사의 방법•절차•기준，판정방법，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시행규칙 제 36 조의 8 은 결함확인검사의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 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또는 환경부장관이 시험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9）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 22 조는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및 제 13 조 의 2 제 1 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1항）．

시행규칙 제 28 조는 법 제 22 조제 1 항에 따른 검사 수수료 및 정밀안 전검사 수수료와 제 20 조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수수 료는 별표 9 와 같다．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의 장은（1）법 제 13 조

제 1 항에 따라 승객용으로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로서 비상용 전원에 의한 수시검사를 받는 승강기，（2）법 제13조제 2 항에 따라 검사를 다시 받는 승강기．다만，하중시험 불합격으로 분동（分銅）을 사용하여 검사 를 다시 받는 승강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3）「아동복지법」제 16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4）「노인복지법」 제 3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양로시설과 같은 법 제 34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승강기．다만，「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 1 항제 1 호라목 또는 제 18 조제 1 항제 1 호라목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 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5）「장애인복지법」 제 58 조제 1 항 1 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 설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제2항）．
［별표 9］＜개정 2011．3．29＞
검사 수수료 등（제 28 조제 1 항 관련）
1．검사 수수료

|  |  |  |  |  |  |  | 수수료（ |  |  | 체증 | 可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gathered} \text { 기준층 } \\ \text { 또는 } \\ \text { 기준 } \\ \text { 높이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완성검사 } \\ \text { 및 } \\ \text { 수시검사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정기 } \\ & \text { 검사 } \end{aligned}$ | 정밀안전 <br> 검사 | 기준 | $\begin{aligned} & \text { 완성 } \\ & \text { 검사 } \\ & \text { 및 } \\ & \text { 수시 } \\ & \text { 검사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정기 } \\ & \text { 검사 } \end{aligned}$ | 정밀 <br> 안전 <br> 검사 |
|  | 승 | $\begin{aligned} & \text { 로 } \\ & \text { 五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교 } \\ & \text { 류 } \end{aligned}$ | 가변 <br> 전압， <br> 가변 <br> 주파수 | 8 층 | 216，000 | 103，500 | 232，700 | 층당 | 2，700 | 2，700 | 3，200 |
| 리 | 객 | 식 |  | 기타 | 5층 | 198，000 | 76，500 | 212，600 | 층당 | 2，250 | 2，250 | 2，800 |
| 베 | 용 |  | 직 | 기어 | 8층 | 184，500 | 90，000 | 220，400 | 층당 | 2，700 | 2，250 | 2，700 |
| 이 |  |  | 류 | 무기어 | 12층 | 211，500 | 90，000 | 229，100 | 층당 | 1，800 | 1，800 | 2，200 |
| 터 |  |  | 유압 |  | 3 층 | 211，500 | 90，000 | 203，100 | 층당 | 2，700 | 2，700 | 3，300 |
|  | 화 |  | 로프 |  | 3층 | 211，500 | 90，000 | 238，200 | 층당 | 2，700 | 2，250 | 2，800 |
|  |  |  | 유압 |  | 2 층 | 216，000 | 90，000 | 221，400 | 층당 | 2，700 | 2，700 | 3，500 |


| 구 분 |  | $\begin{array}{\|\|l\|} \hline \text { 기준층 } \\ \text { 또는 } \\ \text { 기준 } \\ \text { 높이 } \end{array}$ | 기준 수수료(원) |  |  | 체증 요금(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완성검사 } \\ & \text { 및 } \\ & \text { 수시검사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정기 } \\ & \text { 검사 } \end{aligned}$ | 정밀안전 <br> 검사 | 기준 | $\begin{aligned} & \text { 완성 } \\ & \text { 검사 } \\ & \text { 및 } \\ & \text { 수시 } \\ & \text { 검사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정기 } \\ & \text { 검사 } \end{aligned}$ | 정밀 <br> 안전 <br> 검사 |
| 에스컬 | 이터, 수평보행기 |  | 4 m | 133,200 | 85,500 | 110,600 | m당 | 1,350 | 1,350 | 1,500 |
|  | 덤웨이터 | 3 층 | 67,500 | 40,500 | 117,500 | 층당 | 2,250 | 1,800 | 2,400 |
| 휠체어 | 장애인용 경사형 <br> 리프트 | 4 m | 84,000 | 53,800 | 84,000 | m당 | 1,050 | 1,050 | 1,000 |
| 리프트 |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 | - | 105,000 | 67,000 | 105,000 | - | - | - | - |
| <비고> <br> 검사 수수료는 기준 수수료 및 체증 요금의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  |  |  |  |  |  |  |  |

2.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수수료 : 1 건당 10,000 원
(3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 12 조는 안전검사기관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 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제3항). 제16조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4항).

시행규칙 제9조는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치 검사•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별표 4] <개정 2011.1.17>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

| 구 분 | 수수료 |
| :---: | :---: |
| 1. 기본료 | 설치검사 • 정기시설검사 • 안전진단신청서의 접수 및 검토, 인력 <br> 지원, 합격증 발급 등에 드는 실제 비용 |


| 구 분 | 수수료 |
| :--- | :--- |
| 2．인건비 | 설치검사 • 정기시설검사 • 안전진단 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
| 3．재료비 | 검사과정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
| 4．감가상각비 | 장비별 법정내용연수（法定耐用年數）를 기준으로 하되，가동률을 <br> 100퍼센트로 하여 정액법（定額法）에 따라 감가하는 방법으로 산 <br> 출한 비용 |
| 5．시설유지비 | 장비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좡비의 따른 부품의 비용，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br> 전기료 • 수도료 등 그 밖의 시설유지비 |
| 6．기타 | 그 밖에 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비용，현장출 <br> 장비，운 반비 등 추가 지출이 있는 경우 그 비용 |

비 고
1．제 2 호에 따른 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31 조에 따른 엔지니 어링사업대가 기준의 산업관리부문 품질관리 분야 고급기술자의 임금 수준을 준 용한다．
2．제6호에 따른 현장출장비는「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 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며，어린이놀이기구의 운반비는 실제 비용을 적용한다．
（3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도지사는 「공연법」 제 39 조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 2호의 경우203）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32）공인회계사법

법률 제52조는 금융위원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인회계사회 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항）．금융위원회는 시험에 관한 업 무의 일부 및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렁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203） 1 ．제 5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 유해성여부의 확인，2．제 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국내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 탁할 수 있다(제3항).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제30조제3항). 검사업무를 수행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 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3항 단서).

업무위탁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성격을 가지는 수수료이다.
(3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6 조는 공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 항제 1 호부터 제 8 호까지 및 제 16 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제 1 항제 9 호부터 제 11 호까지 및 제 15 호의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제4항).
(3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법률 제 33 조의 2 는 기금은 제 28 조제 1 항제 4 호부터 제 6 호까지 및 제 9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 제 24 조의 2 는 법 제 33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업무수 행에 소요된 비용•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
(35) 담보부사채신탁법

법률 제8조는 금융위원회는 수시로 신탁업자의 업무의 재산상태를 검사하거나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시킬 수 있다 (제1항).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2항).
(36)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제 33 조의 2 는 기금은 제 23 조제 1 항제 3 호 • 제 4 호 및 제 7 호의 업 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 제24조의3은 법 제33조의 2 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수행에 소 요된 비용, 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
(37) 예금자보험법

법률 제 12 조는 공사는 법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에게 업무의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제2항).
(3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 조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제 1 항 • 제 15 조의 2 및 제 16 조제 1 항 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 인의 감사 보수 중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수 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제5항).

## 제 6 절 그 밖의 수수료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 용역제공수수료 |
| :--- | :--- |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 대회관련 시설 • 물품 사용수수료 |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  |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 용역제공 수수료 |
| 지원법 |  |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공간정보유산제공 사용료 - 수수료 |
| :---: | :---: |
| 해양환경관리법 | 자재•약제의 비치 또는 방제 및 방제선등의 배치•설치에 따른 수수료 |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 개인•법인 또는 단체 용역 제공 수수료 |
| 관세 법 | 도로차량의 국경출입 수수료 |
|  | 검사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 검사장이 아닌 경우 수수료 |
|  | 사전통보 수수료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공공투자관리센터 수수료 |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조합원 수수료 |
| 수산업협동조합법 | 조합 사용료•수수료 |
| 고용보험법 |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따른 손 해비로서 수수료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사업에 관한 수수료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 사업에 필요한 수수료 |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 사업에 관한 수수료 |
| 민사소송비용법 | 집행관 수수료 |
| 법원조직법 | 집행관 수수료 |
| 정부법무공단법 | 법률자문 수수료 |
| 집행관법 | 직무수행 수수료 |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 수수료 |


| 의약품 물류 협동조합의 구성 및 <br>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조합 수수료 |
| :---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br> 법률 | 정보이용 수수료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낚시 이용 수수료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br>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 수수료 |
| 한국환경공단법 | 공단 사업수수료 |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정보 제공 수수료 |
| 지방자치법 | 단체 및 위임사무 수수료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 신체검사 실비수수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투자자 수수료 |
|  | 판매수수료 |
|  | 환매수수료 |

(1)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법률 제16조는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박람회 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조직 위원회가 관리하는 박람회 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조직위원회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시행령 제6조는 조직위원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종류， （2）요율 및 그 산정 기준，（3）징수 방법 및 절차，（4）그 밖에 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2）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법률 제 14 조는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그 밖에 대회와 관 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대회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2）조직위원회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시행령 제7조는 조직위원회는 법 제 14 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 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수수료 또는 사 용료의 종류，（2）요율 및 그 산정기준，（3）징수방법 및 절차，（4）그 밖에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 （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제4조제1항은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제공 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4）．

204）「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3 조제 2 항 및 제 3 항 ：（2）법 제 27 조제 2 항 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하거나 출력한 자료의 사용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4)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 122 조제 1 항은 형식승인 • 정도검사 • 인증 • 검인 • 검사 • 성능 시험•검정 및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재•약제의 비치 또는 방제 및 방제선등의 배치•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업무대행자가 형식승인• 정도검사•검인•검사•성능시험•검정 및 인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 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시행령 제93조는 공단은 법 제 122 조제 2 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설치에 따른 수수 료를 징수함에 있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방제분담금 납부자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설치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 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 83 조는 제 1 항에서 해양환경측정기기 및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대하여 납부하는 수수료는 별표 32에서 정하고 있다.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지정한 검 사대행기관이 검사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 다(제2항).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 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제 3 항). 국립수산과학원장, 해 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전자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제4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 3 장 현행 법령상 수수료 현황분석
[별표 32] <개정 2010.1.12>

## 수수료(제 83 조제 1 항 관련)

1.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 3,000원
2. 형식승인 : 3,000원
3. 해양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 정도검사 및 검정

| 분 야 | 대상기기 | 수수료(원) |
| :---: | :---: | :---: |
| 가. 성능시험 | 1) 용존산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527,000 |
|  | 2) 화학적산소요구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794,000 |
|  | 3) 총질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794,000 |
|  | 4) 총인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794,000 |
|  | 5) 총유기탄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1,408,000 |
| 나. 정도검사 | 1) 용존산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318,000 |
|  | 2) 화학적산소요구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611,000 |
|  | 3) 총질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598,000 |
|  | 4) 총인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598,000 |
|  | 5) 총유기탄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907,000 |
| 다. 검정 | 표준가스 검정 | 42,000 |

4. 해양오염방제 자재 • 약제의 성능시험 • 검정

| 자재 • 약제의 <br> 종류 | 성능시험 |  | 검정 |  |
| :---: | ---: | :---: | :---: | :---: |
|  | 수수료 | 단위 | 수수료 | 단위 |
| 오일펜스 | 232,000 | 원/1회 | 2,000 | 원/20m |
| 유처리제 | $1,990,000$ | 원/1회 | 2,000 | 원/18 $\ell$ |
| 유흡착재 | 413,000 | 원/1회 | 2,000 | 원/10kg |
| 유겔화제 | $1,687,000$ | 원/1회 | 2,000 | 원/10kg |
| 생물정화제제 | $2,867,000$ | 원/1회 | 2,000 | 원/18 $\ell$ |

비 고

1. 현장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검사(현장까지의 이동 및 복귀에 필요 한 시간은 제외한다)에 드는 출장비를 수수료에 가산한다. 다만, 단일항목 기준 1 일 이하의 출장검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 일당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숙박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하며, 출장검사에 필요한 최소기술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 회의 출 장에 둘 이상의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시간을 고려하여 분할 산정 하여야 한다.
3. 연륙교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 출장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에 선박운임을 별도로 가산할 수 있다.
(5)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법률 제 12 조는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 그 밖의 대회와 관 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은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대회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조직위원회가 개인•법 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 등이다.

시행령 제5조는 조직위원회는 법 제 12 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 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 또는 사용 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 에 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6) 관세법
(1) 도로차량의 국경출입 수수료

법률 제 152 조는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에게 해당 도 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도록 하고(제1항), 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 할 때마다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제2항). 이 경우에 사증을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64조는 사증수수료의 근액을 400 원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기회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수수료를 면제(법률 제152조제3항단 서)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2) 검사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수수료

법률 제186조제1항은 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하여 사용 전에 세관 장에게 사용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신고가 있으면 세관공무 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제 246 조는 수 출 - 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도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제 247 조제 1 항에서는 제 186 조제 1 항과 제 246 조에 따른 검사는 그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해당 뭎품이 장치되어있는 장소에 서 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 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제2항). 검사장소가 지 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이 해당 수수료를 납부 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본문). 다만, 보세창고의 경우 신고인이 운영 인과 다른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제3항 단서).

검사수수료는 당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당 2 천원의 기본수수료에 세관과 검사장소와의 거리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실비상 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의 경우에는 기 본수수료를 면제한다(시행규칙 제78조제1항). 이 경우 수입화주와 검 사의 시기 및 장소가 동일한 물품은 1 건으로 기본수수료를 계산한다 (제2항).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수출입신

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제3항). 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검사수수료를 고지하는 때에는 검사수수료를 일괄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4항).
(3) 사전통보 수수료

법률 제 321 조는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에 있어서의 물품의 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항). 또한 (1)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 차를 밟으려는 자, (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 하여야 한다(제2항). 사전통보를 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3항).

시행규칙 제 81 조는 개청시간외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 항절차에 관한 수수료(구호용 물품의 경우 당해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기본수수료 4천원(휴일은 1 만2천원)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 시간당 3 천원, (2) 오후 6시부 터 오후 10 시까지 : 1 시간당 4 천 8 백원, (3) 오후 10 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1 시간당 7 천원 등이다. 다만, 수출물품의 통관절차 또 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의 4 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제 1 항). 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 여러 건의 수출입물 품을 1 건으로 하여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신청 하는 때에는 이를 1 건으로 한다(제항).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취급시간외의 물품취급에 관한 수수료는 당해 물품을 취급하는 때에 세관공무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2 천원(휴일은 6천원)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관공무원 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2천원(휴일은 6천원)으로

한다. (1) 오전 6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 1 시간당 1 천 5 백원, (2) 오후 6 시부터 오후 10 시까지 : 1 시간당 2 천 4 백원, (3) 오후 10 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 1 시간당 3 천 6 백원 등이다. 다만, 수출물품을 취급 하는 때에는 그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보세구역에 야적하 는 산물인 광석류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5 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으 로 한다(제 3 항).
수수료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요시간중 1 시간이 제 1 항 각호 상 호간 또는 제 3 항 각호 상호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수수료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한다. 세관장은 수수료를 일정기간별로 일괄하여 납부하 게 할 수 있다.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세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 23 조는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 계획의 평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 (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1항). 공공투 자관리센터의 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 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관계 기관 - 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제3항).
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과 납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의 장 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고 있다. 법령에서 최소한의 수수료 납부기준 과 방법을 정하여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기획 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수료 수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8)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제 15 조는 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담배사업법에 의 한 담배제조업자와의 경작계약에 의하여 연초경작을 하는 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 항).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 고, 해당 조합원에게 출자하게 하거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수수료 징수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조합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다. 최소한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에 대하 여는 법령에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9)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 26 조는 지구별 수협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항),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제3항에서는 사용 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할 때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 징수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조합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다. 최소한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에 대하 여는 법령에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정관 제28조에서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부과근거를 두고(제1항), 부과기 준과 방법은 규약으로 위임하고 있다(제2항).
(10) 고용보험 법

시행규칙 제 127 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지원금의 지급, 훈련 비용과 훈련수당의 지급,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이하 "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해당 은행(「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나 체신관서에 고용보험금 계좌를 개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제1항). 이 경우 보험금잔고에 대하여 고 용노동부장관과 은행이나 체신관서의 장이 협정으로 정하는 대로 그 은행이나 체신관서로부터 예입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은행이나 체신관 서에게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따른 취급 손해비로서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다(제2항).

고용보험의 공적 성격에 따라 지출부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 로 업무대행 성격의 수수료를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법률 제63조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정부위탁사업의 수행 에 있어서는 정부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거나, 업무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업무대행 성격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

##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법률 제21조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정부위탁사업의 수행에 있어서는 정부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거나, 업무를 통하여 이 익을 얻는 자에게 업무대행 성격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
(13)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법률 제21조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정부위탁사업의 수행 에 있어서는 정부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거나, 업무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업무대행 성격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
(14) 민사소송비용법

법률 제 13 조는 집행관수수료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금액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집행관수수료규 칙을 제정하여 수수료 부과절차와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205).
(15) 법원조직법

법률 제 55 조는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의 사무에 종사하는 집행관을 두고, 집행관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대법원 규칙으로 집행관수수료규칙을 제정하여 수수료 부과절차와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206).
(16) 정부법무공단법

정부법무공단은 법률 제 22 조에서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수임료 를 받고, 법률자문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으며, 그 밖에 업무수행 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수임료 및 수수료 등의 기준은 공단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제2항).
(17) 집행관법

법률 제19조는 집행관이 위임을 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체 당금을 변제(辨濟)받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 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 항). 집행관은 정하여진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 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는 근지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
205)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관수수료규칙 참조.
206)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관수수료규칙 참조.

항).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 사보 또는 등기주사보가 집행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 고수입으로 한다(제3항).
(18)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87조제1항은 이 법에 따라 허가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내도 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 칙이나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 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협정 등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으 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 71 조는 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는 (1) 단수사증 체류기간 90 일 이하 :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30 불상당의 금액, 체류기간 91 일 이상 : 미화 50 불상당의 금액, (2) 복수사증 - 2 회 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60 불 상당의 금액, 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80 불 상당의 금액이다. 외국인입 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의 심사수수료는 제 1 항에 따른 상당금액으로 한다(제2항). 재외공관의 장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수수료를 주재국의 통화로 징수하는 때에는 환시세의 변동을 감안하여 그 기준액을 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주재국의 공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대사가 이를 정한다(제3항). 재외공관의 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 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4항).

시행규칙 제72조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 국사실증명발급등에 관한 수수료는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하 는 입국허가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의 발급 4 만원(영 제 10 조제 4 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 만원),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6 만원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1. 유학(D-2) 또는 13. 일반연수(D-4)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시간제 취업 허용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 만원，체류자격 27．거주（F－2）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는 3 만원）］，（3）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6 만원，（4）체류자격부여 4 만 원［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7．거주（F－2）또는 28의3．영주（F－5）의 자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만원］，（5）체류자격변경허가 5 만원，（6）체류기 간연장허가 3 만원［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7．거주（F－2）의 자격을 가지 고 있는 경우에는 2 만원］，（7）단수재입국허가 3 만원，（8）복수재입국허 가 5 만원，（9）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미화 20 불상당의 금액，（10）외 국인등록증발급 및 재발급 1 만원，（11）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1통당） 1 천 원，（12）외국인등록사실증명（1통당） 1 천원，（13）난민여행증명서발급 및 재발급 1 만원，（14）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미화 5 불상당의 금액 등이다．

수수료 납부방법은（1）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 자화폐•전자결제．다만，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2）시•군•구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 자화폐•전자결제，（3）재외공관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시행규칙 제74조는 감면사유로（1）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 한민국의 기관 또는 단체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초 청한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허가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 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대한민국정부，「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 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등이 학비 등 국 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초청한 외국인이 영 별표 1 중 10 ．문화 예술（D－1），11．유학（D－2）또는 13．일반연수（D－4）에 해당하는 체류활동 을 하기 위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 가를 신청하는 경우，（3）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외교（A－1）내지 3. 협정（A－3）또는 체류자격 17．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4）전 자문서로 제 72 조제 11 호•제 12 호의 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경우，（5）국가이익이나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 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19）의약품 물류 협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규정 제9조는 조합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0 조는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1）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에 관한 정보， （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수요에 관한 정보，（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자본금，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용역 이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이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행령 제 29 조제 1 항제 1 호는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징수업무는 환 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21）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1 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하천법」 제7조제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제외한다）• 호소의 이용 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 의 오염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 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22）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이하 같다）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외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방자치법」 제 159 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말 한다．이하 같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시행령 제5조는 법 제8조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 분의 10 을 말한다．
（23）한국환경공단법
법률 제 25 조는 공단은 제 17 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2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8제3항207）은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환경정보망에 의한 환경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7）법률 제 15 조의 3 제 2 항 ：환경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 정보의 원활한 생산 • 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정보망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25) 지방자치법

법률 제 137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 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 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2항). 수수료 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지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 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제3항).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 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 로 정한다(제139조제1항).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 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제 140 조제 1 항).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39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범위 안 에서 정할 수 있다.
(26)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규정 제6조는 신체검사를 받는 자에게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를 수수료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액수와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정 본문은 물론 서식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투자자 수수료

법률 제58조는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수수료 부과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 이 투자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 차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제3항). 협회는 통보받은 사항을 금융투자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제4항).

금융투자업은 규제사업으로서 투자자 수수료의 중요내용을 업자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단순한 차별금지 규정이 아니라 정확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법령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실비에 준하는 부과기준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판매수수료

법률 제76조제4항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 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판매보수(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 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連動)하여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 항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는 (1) 판매수수료: 납입금액 또는 환매 금액의 100 분의 3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2) 판매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 천분의 1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 여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 5 항).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한도의 구체적인 설정방법, 부과방법, 그 밖에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항).

시행령 제77조는 제4항에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취 득하는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판매보수를 말

한다. 이하 "판매보수"라 한다)는 (1) 판매수수료: 납입금액 또는 환매 금액의 100 분의 2, (2) 판매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 분의 1 (다만,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 율이 100 분의 1 미만인 경우 그 시점까지는 100 분의 1 에서부터 1 천분의 15 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항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 판매수수료: 판매 또는 환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받거나 투자기간 동안 분할하여 투자자로부터 받는 방법, (2) 판매보 수: 매일의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 는 방법 방법으로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다. 판매수수 료는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방법,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판매금액, 투자기간 등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제6항).

## (3) 환매수수료

법률 제236조는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환매수 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 구하는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 투자재산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이 경우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시행령 제255조제2항).

## 제 4 장 수수료 • 사용료에 관한 개선대상분석

이장에서는 제 3 장의 수수료•사용료에 대한 현행 법령의 실태를 입 법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각 수수료와 사용료를 용도별로 분류 하여 규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 중 수수료는 응시수수료, 민원(등초본발급, 열람)수수료, 규제(인허가, 등록, 신고, 신청)수수료, 대행수수료, 위탁수수료 등으로 나누어 입법 형식에 대한 각 개별 법령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검토하고자 한 다. 특히, (1)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2) 근거규정은 있으나 포괄적으로 위임된 경우, (3) 위임된 사항이 하위법령에 반영 되지 않은 경우, (4) 하위법령에 반영된 경우가 적절하지 않거나, 위임 의 범위를 벗어나 반영된 경우, (5) 수수료 부과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와 금액이나 기준이 과도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 개별 법령상의 수수료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개별적으로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수 수료와 사용료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구체적인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참조하여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입법적 대안을 이론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제 1 절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38 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정한 응시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배점, 성적통지, 시험일정 등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 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제36조). 이에 따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관련사항을 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응시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세부계획 공고시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세부계획은 지원자가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3 개 영역 이하는 37,000 원, 4 개 영역은 42,000 원, 5 개 영역은 47,000 원의 응시수 수료를 납부고지서로 접수창구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입학시험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필수시험과 정으로서 강제적 성격의 시험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아닌 평가원이나 개별 대학이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소한의 부과기준과 범위 등을 제시하고, 납부방법과 환불기준 등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 14 조제 1 항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실시에 관하여 규정 하면서 제7항은 시험응시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 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제8항은 시험의 응시 수 수료, 환불, 그 밖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의 규정사항은 시행규칙에 절차와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불반환규정도 보다 정교하고 상세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 8 조는 시험응시자에게 법무부령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제1항). 별도의 환급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며, 법률에 수수료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법령에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 징수방법, 면제사유까지 규정하고 잇 는 것은 민원수수료 중 각종 증면신청수수료에 관한 모범적인 입법례 에 해당한다. 더구나 별표 비고란에 다른 수수료 징수는 금지하는 규 정을 두고 있는 것은 새로운 수수료 창설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입법방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법률에 보다 구 체적인 수수료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할 것이다.

## 제 2 절 근거규정만을 두고 포괄적으로 위임된 경우 또는 미반영된 경우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현재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28,000 원( 1 차 : 13,700 원, 2 차 : 14,300 원)을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 체, 가상계좌)에 한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환에 관한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다.

응시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구 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탁자에게 정하도록 하는 것 은 적절한 입법방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2. 국민건강증진법

보건교육사의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 위탁하고 있다.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 급 내지 3 급으로 하고(제 12 조의 2 제 3 항), 보건교 육사 1 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제 4 항)는 규정을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제 12 조의 2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고 시험사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보건교육사 1 급 $\cdot$ 2급•3급 모두 동일한 국가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별표2]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2011년 시험계획공고 참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 제 12 조의 2 (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 | 제 12 조의 2 (보건교육사 자격증의 교 |
| :--- | :--- |
| 부 등) | 부 등) |
| (4) 보건교육사 1 급의 자격증을 교 | (4)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교부받으 |
| 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 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
| 합격하여야 한다. | 야 한다. |

## 3.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에 수수료에 관한 근거규정만을 두고 포괄적으로 업무위탁을 하면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위탁업무의 방법은 아 니다.

## 제 3 절 위임사항이 미반영된 경우

## 1. 공무원 임용 시험령

응시수수료에 있어서 수수료가 소요경비의 부담이라는 점에서 일정 기간 이전에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 그 환급에 관한 사항을 별도 로 두어 규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직급별 수수료를 달리 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2. 소방공무원 임용령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응시의사 철회에 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응시수수료 환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 10 조제 1 항은 응시수수료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5-533호(2005.6.17. 일부개정)로 응시수수료를 고시하고 있다. 고시 보다는 시행규칙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일방적인 고시위임이 적절한 위임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이는 해당 부처의 자의적인 수수료 부과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즉, 법률에서 시 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고시로 포괄위임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 를 벗어난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응시수수료의 납부방 법 및 반환요건과 방법 등도 함께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5. 물류정책기본법

응시자격과 과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제 35 조 이하에서 자세한 시험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응시자의 응시수수료는 제 40 조제 3 항에서 국토해양부령에 재위임하고

있고,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하여도 국토해양부령에 재위임하고 있 다. 하지만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은 응시수수료의 구체적인 액수와 납부방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있으며, 제 2항에 수수료 반환기준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고시 등의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시험의 관리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며, 인터넷 응시만을 인정하고, 응시수수료는 30,000 원이고, 납부방법은 전자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환불방법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응시수수료의 경우에도 반환 기준과 마찬가지로 그 구체적인 액수와 납부방법 등은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6. 주택법

응시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 도로 고시하고 있지는 않다208).

시행령에서는 응시의사 철회에 한하여 반환규정을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는 일반적인 반환기준 전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내용의 일치를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제 3 항에서는 수 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은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은 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낼 것을 규정하고 있 지만, 그 구체적인 금액이나 금액결정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두고
208)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참조(2011년 5월 9일 한국산업인력 공단 공고), 응시수수료는 1 차 : 21,000 원, 2 차 : 14,000 원; 수수료액의 결정에 관한 명확한 방법을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음. 반환기준에 "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전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있지 않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응 시수수료는 15,000 원이며, 납부방법은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이용하고 있다. 법령에서 구체적인 금액과 납부방법 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방안이 될 것이다.
8. 공인노무사법

법률 제 11 조제 3 항의 수수료 반환에 관한 규정은 시행규칙에 그 내 용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는 반환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입법형식에 맞는 반환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 할 것이다.
9. 선원 법

업무의 위탁을 받은 법인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 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행규칙에 관련 규 정을 두지 않고 업무위탁의 근거만 법령에 두는 것은 적절한 업무위 탁의 방법은 아니므로 업무대행기관이 정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응시수수료와 자격증 교부(재교부 포함)에 대하 여만 규정하고 있다. 등록서식(시행규칙 별표서식2)에도 별도의 등록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12. 물류정책기본법

수수료 산정액만을 정하고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절차로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위생사에 관한 법률

환불규정과 관련 수수료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직 접 정하고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만을 위임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원칙 에 적합할 것이다.

## 제 4 절 하위범령에 위임된 사항이 적절하지 않거나 범위를 벗어난 경우

## 1. 도선법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5 조에 따른 공고시에 공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4호, 2011.9.22. 신설). 이는 최근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반영한 것이지만, 공고시 제시하기 보다는 다른 법령과 같이 법령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7항은 방화관리자시험 실시와 관련한 응시수수료 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방 방재청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0호[시행 2009.9.1.] 「방화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고시 제6조는 응시수수료 금액을 1만원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수수료 반환은 금지되며, 다만, 시험 전일까지 환불을 요구하는 시험 미응시 자에게 응시수수료를 환불 하여야 한다.

## 3. 소방기본법

법률에서 동일한 의미의 내용을 시행령을 거친 이중 위임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반환기준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을 근거로 시행규칙에 두는 것이 아닌 법률에 직접 두는 것이 적절한 입법방안이 될 것이다.

## 4. 변호사시험 법

법조윤리시험 응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 5 조제 2 항은 입법형식에 있어서 위임의 방법인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 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 5. 건설산업기본법

수수료 관련규정은 징수의 근거규정(제92조)만을 법률에 두고 그 밖 의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 역시 수수료 금액과 납부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수수료 요율의 결정기준 등 구 체적인 사항은 재량적 부분으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제3항 에 수수료 결정에 관한 의견수렴과 승인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는 것 은 특징적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장관의 승인절차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두지 않고 승인을 전제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조문의 내용 상 조화롭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법률 제87조의 위탁관련규정이나 제 92조에서 위탁기관이 수수료 결정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 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변경등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없으며, 시•도지사에게 등 록하고, 관리와 등록증 교부도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 로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7. 선박법

[별표2] 비고1에서는 다른 신청수수료의 경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등록에 관한 사항에서는 면제사 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민원수수료와 규제수수료를 구분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8. 기술사법

법률의 규정으로 볼 때, 수수료 관련 업무는 원칙적으로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이 행하고 예외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모든 업무를 기술사회에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 제13조의 2 제 3 항의 위임규정은 입법기술적 인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한 입법방안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특히, 위 탁에 있어서 장관의 승인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및 금액 등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9. 수도법

별도의 고시로 규정하기 보다는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 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제 5 절 부과금액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 1.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 응시수수료는 자격으로서의 성격과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응시수수료가 사법시험(5만원) 등과 비교해서도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 2.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 5 조는 등록수수료는 500 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 여야 하지만, 도로관리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청의 촉탁 과 관리청이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면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3. 민원수수료

전반적인 민원수수료의 경우,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는 경우에는 용지대 등의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 에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경우 가 늘고 있고, 입법적으로 수수료 면제를 명문으로 규정하거나, 서식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의2(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 청서)와 서식 5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서 교부 및 재교부 수수료는 무료로 하고 있다)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4. 수수료 면제에 관한 예시

(1)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합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제7 조에 따른 행정사업의 신고•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제8조에 따른 사 실확인증명서와 번역확인증명서는 모두 수수료 관련 규정이 없거나 무료이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40 조제 1 항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의 징수 등 업무상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국세청 등 국 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

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 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은 정 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 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제2항).
(3) 근로복지기본법 제 10 조제 1 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국토해양부 •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 련 기관•단체에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근로소득증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 1 항).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 및 전산망 이용에 대하여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제2항).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1 조제 1 항은 공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 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 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 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제2항).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제3항).
(5)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제1항은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지 방자치단체•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 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 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 13 조제 1 항제 10 호에 따른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제2항).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제3항).

제 5 절 부과금액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 하는 자료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제4항).

## 제 5 장 수수료 - 사용료에 관한 의견조사

## 제 1 절 차량등록 수수료

1. 차량 등록 절차 관련
> 자동차 등록 절차에 대한 평가

자동차 등록 절차에 대하여 항목별로 만족도(환산 만족도 기준 : 5점 만점)를 살펴본 결과, 구비서류 2.82 점 $>$ 담당창구 2.81 점 $>$ 등록 소요 시간 2.77점 > 지방세 납부 시스템 2.68점 > 등록기간 2.46점 > 과태료 2.24점 순으로 나타났다.

| 구 분 |  | $\begin{aligned} & \text { 동의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보통 | 비동의 <br> (그렿지 <br> 않다) | Mean <br> [평점] | $\begin{aligned} & \text { 환산 } \\ & \text { 만족도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begin{gathered} \text { 등록기간 } \\ \text { (10일 } \\ \text { 이내)이 } \\ \text { 짧다 } \end{gathered}$ | 전 체 | 54.2 | 28.4 | 17.4 | 3.54 | 2.46 |
|  | 차량 소유주 | 36.7 | 38.3 | 25.0 | 3.25 | 2.75 |
|  | 등록 대행업자 | 90.0 | 7.5 | 2.5 | 4.20 | 1.80 |
|  | 담당 공무원 | 18.0 | 50.0 | 32.0 | 2.82 | 3.18 |
| 구비서류 가 많다 | 전 체 | 40.0 | 32.6 | 27.4 | 3.18 | 2.82 |
|  | 차량 소유주 | 18.3 | 50.0 | 31.7 | 2.85 | 3.15 |
|  | 등록 대행업자 | 77.5 | 16.3 | 6.3 | 3.96 | 2.04 |
|  | 담당 공무원 | 6.0 | 38.0 | 56.0 | 2.34 | 3.66 |
| 등록을 <br> 위한 <br> 시간이 <br> 오래 <br> 걸린다 | 전 체 | 39.5 | 30.5 | 30.0 | 3.23 | 2.77 |
|  | 차량 소유주 | 18.3 | 41.7 | 40.0 | 2.77 | 3.23 |
|  | 등록 대행업자 | 78.8 | 18.8 | 2.5 | 4.19 | 1.81 |
|  | 담당 공무원 | 2.0 | 36.0 | 62.0 | 2.26 | 3.74 |
| 과태료가 너무 많다 | 전 체 | 60.5 | 24.7 | 14.7 | 3.76 | 2.24 |
|  | 차량 소유주 | 55.0 | 35.0 | 10.0 | 3.73 | 2.27 |
|  | 등록 대행업자 | 87.5 | 6.3 | 6.3 | 4.30 | 1.70 |
|  | 담당 공무원 | 24.0 | 42.0 | 34.0 | 2.94 | 3.06 |


| 구 분 |  | $\begin{gathered} \text { 동의 } \\ \text { (그렇다) } \end{gather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비동의 } \\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Mean <br> [평 점] | $\begin{gathered} \text { 환산 } \\ \text { 만족도 } \end{gathered}$ |
| :---: | :---: | :---: | :---: | :---: | :---: | :---: |
| 거쳐야 하는 창구가 너무 많다 | 전 체 | 44.2 | 18.9 | 36.8 | 3.19 | 2.81 |
|  | 차량 소유주 | 23.3 | 36.7 | 40.0 | 2.87 | 3.13 |
|  | 등록 대행업자 | 85.0 | 7.5 | 7.5 | 4.14 | 1.86 |
|  | 담당 공무원 | 4.0 | 16.0 | 80.0 | 2.08 | 3.92 |
| $\begin{gathered} \text { 지방세 납부 } \\ \text { 시스 템의 } \\ \text { 업무 } \\ \text { 마감시간 } \\ \text { (오후5시)이 } \\ \text { 너무 } \\ \text { 빠르다 } \\ \hline \end{gathered}$ | 전 체 | 47.4 | 21.6 | 31.1 | 3.32 | 2.68 |
|  | 차량 소유주 | 30.0 | 28.3 | 41.7 | 2.90 | 3.10 |
|  | 등록 대행업자 | 87.5 | 8.8 | 3.8 | 4.29 | 1.71 |
|  | 담당 공무원 | 4.0 | 34.0 | 62.0 | 2.28 | 3.72 |

※ 환산만족도 : 질문의 어감이 불편여부를 묻는 것이었으므로 이해의 편의를 위해 만족도를 재 환산 (높을수록 만족 $\uparrow$, 낮을수록 만족 $\downarrow$ )
> 현 자동차 등록절차 평가
현재의 자동차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해 평가하게 한 결과, '간편하 다'는 응답은 $34.2 \%$ (매우 $8.9 \%+$ 비교적 $25.3 \%$ )였으며, '복잡하다'는 응답은 $36.8 \%$ (매우 $1.1 \%$ + 다소 $35.8 \%$ )로 나타나 두 응답비율이 거의 비슷한 가운데 '복잡하다'는 응답이 조금 더 높았다.

| 구 분 | 간 편 | 보 통 | 복 잡 | Mean <br> [평점] |
| :---: | :---: | :---: | :---: | :---: |
| 전 체 | $\mathbf{3 4 . 2}$ | $\mathbf{2 8 . 9}$ | $\mathbf{3 6 . 8}$ | $\mathbf{3 . 0 5}$ |
| 차량 소유주 | 30.0 | 56.7 | 13.3 | 3.20 |
| 등록 대행업자 | 5.0 | 18.8 | 76.3 | 2.28 |
| 담당 공무원 | 86.0 | 12.0 | 2.0 | 4.12 |

## 2. 차량 등록 수수료 관련

> 자동차 등록 수수료 필요성

자동차 등록 수수료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29.5 \%$ (매우 $3.7 \%+$ 어느 정도 $25.8 \%$ )였으며, '필 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8.9 \%$ (전혀 $3.7 \%+$ 별로 $25.3 \%$ )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던 반면, 차량소유주와 등록 대행업자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다소 높았다.

| 구 분 | 필 요 | 보 통 | 불필요 | Mean <br> [평점] |
| :---: | :---: | :---: | :---: | :---: |
| 전 체 | $\mathbf{2 9 . 5}$ | $\mathbf{4 1 . 6}$ | $\mathbf{2 8 . 9}$ | $\mathbf{3 . 0 1}$ |
| 차량 소유주 | 26.7 | 43.3 | 30.0 | 2.95 |
| 등록 대행업자 | 22.5 | 42.5 | 35.0 | 2.86 |
| 담당 공무원 | 44.0 | 38.0 | 18.0 | 3.30 |

> 수수료 비용 항목별 평가

수수료 비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만족도(5점 만점)를 살펴본 결과, 번호판 등록 수수료 3.43 점 $>$ 자동차 번호판비 3.41점 $>$ 수입증지(수 수료) 3.15점 $>$ 수입인지 3.12점 $>$ 명의이전 수수료 2.84점 $>$ 주소변 경 수수료 2.8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구 분 |  | 비싸다 | 적절하다 | 싸 다 | Mean <br> [평점] |
| :---: | :---: | :---: | :---: | :---: | :---: |
| 수입인지 | 전 체 | $\mathbf{2 6 . 8}$ | $\mathbf{5 7 . 9}$ | $\mathbf{1 5 . 3}$ | $\mathbf{3 . 1 2}$ |
|  | 차량 소유주 | 28.3 | 66.7 | 5.0 | 3.25 |
|  | 등록 대행업자 | 36.3 | 61.3 | 2.5 | 3.34 |

제 5 장 수수료•사용료에 관한 의견조사

| 구 분 |  | 비싸다 | 적절하다 | 싸 다 | Mean <br> [평점] |
| :---: | :---: | :---: | :---: | :---: | :---: |
|  | 담당 공무원 | 10.0 | 42.0 | 48.0 | 2.60 |
| 수입증지 <br> (수수료) | 전 체 | 35.3 | 42.6 | 22.1 | 3.15 |
|  | 차량 소유주 | 28.3 | 56.7 | 15.0 | 3.15 |
|  | 등록 대행업자 | 56.3 | 33.8 | 10.0 | 3.53 |
|  | 담당 공무원 | 10.0 | 40.0 | 50.0 | 2.56 |
| 명의이전 수수료 | 전 체 | 30.5 | 35.3 | 34.2 | 2.84 |
|  | 차량 소유주 | 15.0 | 43.3 | 41.7 | 2.67 |
|  | 등록 대행업자 | 58.8 | 36.3 | 5.0 | 3.60 |
|  | 담당 공무원 | 4.0 | 24.0 | 72.0 | 1.82 |
| $\begin{gathered} \text { 자동차 } \\ \text { 번호판비 } \end{gathered}$ | 전 체 | 46.3 | 37.9 | 15.8 | 3.41 |
|  | 차량 소유주 | 50.0 | 43.3 | 6.7 | 3.55 |
|  | 등록 대행업자 | 60.0 | 31.3 | 8.8 | 3.64 |
|  | 담당 공무원 | 20.0 | 42.0 | 38.0 | 2.86 |
| 주소변경 수수료 | 전 체 | 31.6 | 30.0 | 38.4 | 2.80 |
|  | 차량 소유주 | 15.0 | 41.7 | 43.3 | 2.63 |
|  | 등록 대행업자 | 60.0 | 30.0 | 10.0 | 3.60 |
|  | 담당 공무원 | 6.0 | 16.0 | 78.0 | 1.72 |
| 번호판 등록 수수료 | 전 체 | 46.8 | 39.5 | 13.7 | 3.43 |
|  | 차량 소유주 | 45.0 | 51.7 | 3.3 | 3.52 |
|  | 등록 대행업자 | 66.3 | 27.5 | 6.3 | 3.74 |
|  | 담당 공무원 | 18.0 | 44.0 | 38.0 | 2.84 |

> 현 자동차 등록 수수료 평가

현재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수수료 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통 이다'라는 응답이 $44.7 \%$ 로 나타난 가운데, ‘적절하다'는 응답은 $22.6 \%$
(매우 $1.1 \%+$ 비교적 $21.6 \%$ ),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32.6 \%$ (전혀 $2.1 \%+$ 별로 $30.5 \%$ )로 나타나 부정평가의 비중이 더 높은 편이다.

| 구 분 | 적절하다 | 보통이다 | 적절하지 <br> 않다 | Mean <br> [평점] |
| :---: | :---: | :---: | :---: | :---: |
| 전 체 | $\mathbf{2 2 . 6}$ | $\mathbf{4 4 . 7}$ | $\mathbf{3 2 . 6}$ | $\mathbf{2 . 8 9}$ |
| 차량 소유주 | 23.3 | 48.3 | 28.3 | 2.92 |
| 등록 대행업자 | 5.0 | 43.8 | 51.3 | 2.54 |
| 담당 공무원 | 50.0 | 42.0 | 8.0 | 3.42 |

## 3. 기타 의견

$>$ 자동차 신규 등록 절차와 관련한 불편 사항 (중복 응답)

현재 자동차 등록절차 관련하여 불편하게 여겨지는 사항으로는 '구 비서류가 너무 많다'는 응답이 $20.7 \%$, ‘등록을 위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14.9 \%$, '등록 절차가 어려워 불편하다'는 응답이 $14.0 \%$ 로 높게 응답되었다.
> 차량 신규 등록 수수료로 인해 발생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 (중복 응답)

자동차 신규 등록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질문한 결과, '등록 수수료 인하'라는 응답이 $50.7 \%$ 로 유효응답(67명)의 절반 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등록 수수료 무료화'라는 응답이 $29.9 \%$ 로 높게 나타났으며, ‘등록 수수료 불필요’가 $14.9 \%$, '타지역 이전 시 번 호판비 수수료 면제'가 $4.5 \%$ 로 응답되었다.

## 제 2 절 대학입시 수수료

## 1. 대입 (수능, 전형료 등) 수수료 관련

> 입학전형료 필요성
입학전형료(수수료 포함)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4.7 \%$ (매우 $1.8 \%+$ 어느 정도 $42.9 \%$ )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25.3 \%$ (별로 $21.4 \%+$ 전혀 4.0\%) 보다 높게 응답되었다.

이를 평균 점수로 환산하면 3.17점(5점 기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구분해 보면 교사(3.34점)가 수험생(3.09점) 보다 ‘입학전형료 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 분 |  | 필요하다 | 보통이다 | 필요하지 <br> 않다 | Mean <br> [평점] |
| :---: | :---: | :---: | :---: | :---: | :---: |
| 전 | 체 | $\mathbf{4 4 . 7}$ | $\mathbf{2 9 . 9}$ | $\mathbf{2 5 . 3}$ | $\mathbf{3 . 1 7}$ |
| 교 | 사 | 60.9 | 15.5 | 23.6 | 3.34 |
| 수 험 생 | 37.1 | 36.8 | 26.2 | 3.09 |  |

> 부과기준의 적정성
현행 입학전형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 $57.7 \%+$ 전혀 $20.8 \%$ )는 응답이 $78.4 \%$ 로, '그렇다'는 응답 $5.0 \%$ (매우 $0.2 \%$ + 그런 편 $4.8 \%$ )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를 평균 점수로 환산하면 2.06점이었으며, 응답자 특성별로는 수 험생(2.15점)의 경우 교사(1.86점)에 비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 구 분 |  | 그렇다 | 보 통 | 그렇지 않다 | Mean <br> [평점] |
| :---: | :---: | :---: | :---: | :---: | :---: |
| 전 | 체 | $\mathbf{5 . 0}$ | $\mathbf{1 6 . 6}$ | $\mathbf{7 8 . 4}$ | $\mathbf{2 . 0 6}$ |
| 교 | 사 | 3.1 | 8.7 | 88.2 | 1.86 |
| 수 험 | 생 | 5.9 | 20.3 | 73.8 | 2.15 |

> 현 수능응시 수수료 / 입학전형료 / 인터넷 접수 수수료에 대한 인식
대학 입시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항목별로 살 펴본 결과, 세 항목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이 ‘적절하다' 는 응답에 비해 높았다.
비용에 대한 만족도를 평점(5점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능응시 수수 료 2.60점 > 인터넷 접수 수수료 2.12점 > 입학 전형료 2.0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구 분 |  | 적 절 | 보 통 | 적절하지 않음 | 평 점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수능응시 } \\ & \text { 수수료 } \end{aligned}$ | 전 체 | 18.0 | 33.3 | 48.7 | 2.60 |
|  | 교 사 | 25.5 | 30.4 | 44.1 | 2.70 |
|  | 수험생 | 14.4 | 34.7 | 50.9 | 2.56 |
| 입학 전형료 | 전 체 | 4.8 | 15.4 | 79.8 | 2.05 |
|  | 교 사 | 1.2 | 11.2 | 87.6 | 1.89 |
|  | 수험생 | 6.5 | 17.4 | 76.2 | 2.13 |
| 인터넷 접수 수수료 | 전 체 | 6.6 | 22.6 | 70.9 | 2.12 |
|  | 교 사 | 5.6 | 6.8 | 87.6 | 1.81 |
|  | 수험생 | 7.1 | 30.0 | 62.9 | 2.26 |

> 적절하게 여기는 수시 전형료 / 정시 전형료 수준

수시 전형료의 수준으로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 한 결과, '3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39.7\%, '2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35.5 \%$ 로 높게 응답되었다.

정시 전형료의 경우에는 ' 2 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43.9 \%$ 로 가장 높 았으며, 그다음으로 ' 3 만원 이하' $28.9 \%$, ' 1 만원 이하' $15.8 \%$ 순이었다.

이를 평균으로 환산한 결과, 수시 전형료는 24,144 원, 정시 전형료 22,653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중앙값(Median)209)의 경우, 수시 전형료 25,000 원, 정시 전형료 20,000원으로 나타나, 평균금액과 비교할 때 수시전형료의 경우 조금 높았으며, 정시전형료의 경우 조금 낮았다.

| 구 분 |  | 1만원 <br> 이하 | 2만원 <br> 이하 | $\begin{aligned} & 3 \text { 만원 } \\ & \text { 이하 } \end{aligned}$ | 4만원 <br> 이하 | 5만원 <br> 이하 | 6만원 <br> 이하 | Median <br> [단위:원] | 평균 금액 [단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수시 전형료 | 전 | 12.4 | 35.5 | 39.7 | 8.0 | 3.2 | 1.2 | 25,000 | 24,144 |
|  | $\begin{aligned} & \text { 교 } \\ & \text { 사 } \end{aligned}$ | 16.1 | 32.3 | 42.9 | 6.8 | 1.9 | - | 25,000 | 22,584 |
|  | 수 험 생 | 10.6 | 37.1 | 38.2 | 8.5 | 3.8 | 1.8 | 25,000 | 24,882 |
| $\begin{gathered} \text { 정시 } \\ \text { 전형료 } \end{gathered}$ | 전 | 15.8 | 43.9 | 28.9 | 6.8 | 3.6 | 1.0 | 20,000 | 22,653 |
|  | 교 | 20.5 | 47.2 | 26.7 | 3.7 | 1.9 | - | 20,000 | 20,242 |
|  | 수 험 생 | 13.5 | 42.4 | 30.0 | 8.2 | 4.4 | 1.5 | 20,000 | 23,794 |

[^21]
## 2. 대입 접수 및 등록 절차 관련

> 접수방식에 따른 이용의향
대입 접수 방식에 따른 이용의향을 살펴본 결과, 인터넷 접수의 경우 ‘이용할 의향이 높은 편이다'는 응답이 $96.1 \%$ 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방문 접수와 우편 접수의 경우는 '이용할 의향이 없는 편이 다라는 응답이 $55.5 \%$ 와 $48.9 \%$ 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 구 분 |  | 이용할 의향이 높은 편이다 | 이용할 의향이 <br> 없는 편이다 | 잘 모르겠다 / 그때 가봐야 안다 |
| :---: | :---: | :---: | :---: | :---: |
| 인터넷 접수 | 전 체 | 96.1 | 0.4 | 3.5 |
|  | 고3 | 94.0 | - | 6.0 |
|  | 재수생 | 98.2 | 0.9 | 0.9 |
| 방문 접수 | 전 체 | 5.7 | 55.5 | 38.9 |
|  | 고3 | 4.3 | 53.0 | 42.7 |
|  | 재수생 | 7.1 | 58.0 | 34.8 |
| 우편 <br> 접수 | 전 체 | 19.7 | 48.9 | 31.4 |
|  | 고3 | 28.2 | 40.2 | 31.6 |
|  | 재수생 | 10.7 | 58.0 | 31.3 |

> 예상 수시 지원횟수
수시모집에 몇 회 정도 지원할 생각인지 질문한 결과, '3회~4회’라 는 응답 $(37.6 \%$ )과 ‘ $5 \sim 6$ 회'라는 응답 $(30.6 \%$ )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평 균으로 환산하면 약 4.0 회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구 분 | 지원하지 <br> 않음 | 1회~ <br> 2회 | 3회 $\sim$ <br> 4 회 | 5회 $\sim$ <br> 6 회 | 7회 $\sim$ <br> 8회 | 9회 $\sim$ <br> 10회 | 평균 <br> 횟수 <br> [단위:회] |
| :---: | :---: | :---: | :---: | :---: | :---: | :---: | :---: |
| 전 체 | $\mathbf{3 . 1}$ | $\mathbf{1 8 . 8}$ | $\mathbf{3 7 . 6}$ | $\mathbf{3 0 . 6}$ | $\mathbf{4 . 8}$ | $\mathbf{5 . 2}$ | $\mathbf{4 . 0}$ |
| 고3 | 6.0 | 15.4 | 36.8 | 29.1 | 5.1 | 7.7 | 4.1 |
| 재수생 | - | 22.3 | 38.4 | 32.1 | 4.5 | 2.7 | 3.9 |

$>$ 예상 수시 소요금액
수시모집의 예상 소요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 결과, ' 20 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37.6 \%$ 로 가장 높았으며, ' 30 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29.3 \%$ 로 높았다.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소요금액의 평균을 환산하면 약 253,039 원 수준이었으며, 중앙값(Median)은 210,000 원으로 나타났다.

| 구 분 | 지원하지 않음 | 10 만원 이하 | 20만원 <br> 이하 | 30 만원 <br> 이하 | 40만원 <br> 이하 | 50만원 <br> 이하 | 50만원 이상 | Median <br> [단위:원] | 평균 금액 [단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3.1 | 8.3 | 37.6 | 29.3 | 11.4 | 4.4 | 6.1 | 210,000 | 253,039 |
| 고3 | 6.0 | 11.1 | 29.9 | 23.1 | 15.4 | 6.0 | 8.5 | 210,000 | 264,239 |
| 재수생 |  | 5.4 | 45.5 | 35.7 | 7.1 | 2.7 | 3.6 | 200,000 | 241,339 |

3. 기타 의견
> 입시 절차와 관련한 불편 사항 (중복 응답)
입시 절차와 관련하여 격었던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입시전형이 너무 다양해서 불편하다' $20.8 \%$, '입시 절차가 너무 복잡하 여 불편하다' $17.1 \%$, '인터넷 접수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14.3 \%$, ‘전형기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13.9 \%$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 전형료 및 수수료로 인해 발생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 (중복 응답)

전형료 및 수수료로 인해 발생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수수료 및 전형료의 가격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3.9 \%$ 로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불합격 시, 미 응시 시 등에 따른 환불규정제도가 필 요하다' $11.8 \%$, ‘수수료 가격 인하 필요' $9.4 \%$, '합리적인 기준 제시 및 투명성 확보 필요' $7.4 \%$, '대학에서 수수료 및 전형료를 부담해야 한다, $6.7 \%$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 제 6 장 수수료 • 사용료에 관한 입법모델 분석

이 장에서 수수료와 사용료에 관한 입법모델의 분석은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수수료와 사용료에 관한 입법모델을 제시하 고자 한다. 특히, 입법모델은 사용료가 포함된 광의의 수수료 개념에 기초하여 분석할 예정이며, 각 수수료의 특성에 맞게 몇 가지 유형으 로 분류하여 아래에 제시된 입안심사기준의 틀에 비추어 법률사항과 위임사항을 구분하고, 위임에 따른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1 절 응시수수료의 입법모델

## I. 공무원 임용에 따른 응시수수료

공무원 임용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각 직급별로 1 만원, 7 천원, 5 천원 등으로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수수료액은 그 부과기준과 부담의 적정성의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급별 차등 역시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납부방법도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 적으로 전자결제 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를 현대적 관점에 맞게 전자적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응시원서에 수입인지 또는 증지를 붙이는 방법을 쓰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최근의 임용시험의 응시자가 늘어나고 있어 미응시자 및 철회자에 대한 반환이 필수적인 바, 수수료 반환규정을 두어 입법적으로 보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은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점에서 수수료는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 할 것이며, 부담하는 경우에도 직급별 차등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며, 직급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입법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입법모델

제00조 (응시수수료) (1) 00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 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수입인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낼 수 있다.

1. 5 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 1 만원
2. 6•7급 공무원채용시험: 7천원
3. $8 \cdot 9$ 급 및 기능직 공무원채용시험: 5 천원
(2) 제 1 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 2 호 및 제 3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하여야 한다.
4.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5.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 한 경우
(3)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 ․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대부분의 자격시험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 하기 보다는 공공기관이나 협회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시험 의 실시만을 위탁하고, 구체적인 수수료액과 납부방법, 반환기준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응시수수료

금액은 국가자격시험이라는 점에서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는 찾기 어 려웠다. 하지만, 그 금액과 납부방법 등을 고시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점에 있어서는 시행규칙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입법모델 1

## 법률

제00조 (응시수수료) (1) 000 시험의 응시자는 응시수수료를 내야한다.
(2) 응시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절차, 반환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000 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00조 (응시수수료) (1) 법 제00조에 따른 응시수수료 금액은 000 원 210 )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수입인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낼 수 있다.
(2) 제 1 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수수료 전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낸 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 1 차 시험 시행 10 일 전까 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3)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 료를 면제할 수 있다.
210) 종류와 내용이 많은 경우 호나 별표로 구체적 액수로 정할 수 있음.

##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입법모델 2

## 법 률

제00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000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 00 조제 1 항에 따른 000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 00 조에 따라 000 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제00조 (권한의 위탁) (1) 제 00 조제 0 항에 따른 자격시험과 제 00 조에 따른 자격증 관리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2) 000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서 자격시험 및 자격증 관리 등을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00조 (업무의 위탁) (1) 000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 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 0 조에 따른 시험의 공고
2. 제 0 조에 따른 출제 등 시험의 시행
3. 제 0 조와 제 0 조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 • 공고 및 통지
4. 법 제 00 조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와 재교부

시행규칙
제00조 (응시수수료) (1) 법 제00조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실비의 범 위 안에서 0 원이다.
(2) 제 1 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제 1 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체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 납입 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의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납입 수수료의 100 분의 50
(4)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와 반환방법 등은 영 제00조에 따른 시험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조 (자격증의 교부와 재교부) (1) 제 00 조에 따라 000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0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000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부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제 2 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을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00호 서 식의 재교부신청서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 다)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000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 절 위탁수수료의 입법모델

위탁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므로 입법형식에 있어서도 이 법의 형식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률에서 업무위탁의 범위와 내용을 지정하고 (제1항),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탁수수료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하여 특별한 비용 지출에 관하여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는

각각의 개별 법령에서 포함여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따 라서 시행령 제4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의 내용은 수수료 요율산정의 기준이 되며，일반적인 준용규정으로서 활용된다．하지만， 규모가 적은 공공사업 등은 이 별표를 기준으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 하기도 한다．

## 위탁수수료 입법모델

법률 제00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000 사업자는 000 사업을 위 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 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이 경우 위탁수수 료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법률 제00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1）시행자는 토지매수업 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 1 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제 1 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00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1）시행자는 법 제00조제 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에 관하여 위탁하려 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법 제 00 조제 2 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 공매대행수수료

##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1）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 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 （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5）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한국자산관리공사＂ 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 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7）세무서장은 제 5 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9）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5（공매대행 수수료）법 제61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 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68 조의 6 （공매대행의 세부사항）법 제 61 조제 9 항에 따라 한국자 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 지 아니한 것은 국세청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 45 조의 6 （공매대행수수료 등）（1）영 제 68 조의 5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다만，「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 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공매대행의 뢰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제2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에 따라 공매대행의뢰 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건별 매 각금액에 1 천분의 28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법 제71조 제 1 항 또는 법 제 78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 3 자가 해당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 1 천분의 5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중 적 은 금액)에 1 천분의 5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제 2 호 또는 법 제71조제 2 항에 따른 공매의 중지 또는 매각결정의 취소로 인하여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 1 항제 1 호의 건별 매각금액, 제 1 항제 2 호의 납부세액 또는 제 1 항제 3 호의해제금액이 12 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금액, 납부세액 또는 해제금액을 각각 12 억원으로, 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2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2 만원으로 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한국자산관 리공사의 공매대행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여야 한다.

## 제 3 절 규제수수료의 입법모델

일반적으로 법령의 입안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수료의 입법모델 은 규제수수료를 그 기본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이에 징수근 거，금액，납부방법，귀속，강제징수 등에 관한 입안기준을 각 법령의 특성에 맞게 제시하여야 할 것다．

예를 들면，수수료 징수의 근거는（1）서비스의 이용이 강제되는 경 우，（2）서비스의 이용이 형식상 자유이나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3） 서비스의 이용이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며，지방자치법상의 수수료 징수방안에 대한 사항도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수수료의 금액은（1）확정 금액으로 규정 하는 방법，（2）최고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하위법령에 위임하 는 방법，（3）최고액과 최저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수수료 징수근거만을 두고 구체적인 금 액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법도 있다．

수수료 납부방법은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는 수입인지로，지방자치단 체에 납부할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지만，최근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납부 하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예，「건축사법 시행규칙」 제 10 조제 3 항，「전파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

수수료 입법방식은（1）제목을 규정하는 경우，（2）수수료의 징수형식 을 규정하는 경우，（3）납부의 형식을 규정하는 경우，（4）업무를 대행 하거나 위탁한 경우，（5）수수료의 감액 또는 면제규정을 둔 입법례 등이 있다．

巨 법 률
제 $\bigcirc \bigcirc$ 조 (수수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bigcirc \bigcirc \bigcirc$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제○항에 따라서 권한이 위탁된 경우 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 야 한다.

1. 제○조에 따른 $\bigcirc \bigcirc \bigcirc$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조에 따른 $\bigcirc \bigcirc \bigcirc$ 등록 또는 변경등록
3. 제○조에 따른 $\bigcirc \bigcirc$ 검사
(2) 제 1 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 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제 1 항 본문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 감액 또는 면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bigcirc \bigcirc \bigcirc$ 부령으로 정한다.
(4)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 는 때에는 기준을 정하여 $\bigcirc \bigcirc \bigcirc$ 장관이 위탁한 경우에는 $\bigcirc \bigcirc \bigcirc$ 장 관, 시•도지사가 위탁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콩리령/부령
제○○조 (수수료) (1) 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 등의 해당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mathrm{\Gamma} \bigcirc \bigcirc$ 법」에 의한 전산망 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고 등 규제관련 수수료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며，신 고와 변경신고의 수수료금액은 $1 / 2$ 임을 알 수 있다．납부방법은 수입 증지의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예외 등을 자 세히 규정하고 있다．

## 제 4 절 민원수수료의 입법모델

－각종 증명별 수수료 금액의 제시，납부방법의 지정，면제규정，그 밖에 수수료 관련 사항의 결정권자의 지정 등
－법령상 제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음을 명문 화함．

## ［입법모델 예시］

## 등기부 등 • 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 2 조（등본•초본）（1）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1 통 에 대하여 20 장까지는 1,200 원으로 하고， 1 통이 20 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 장마다 50 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부동산등기규칙」 제 27 조의 2 （「선박등기규칙」 제 2 조，「재단저 당등기규칙」 제2조，「입목등기규칙」 제11조 및 「부부재산약정등 기규칙」 제 5 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부 등．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1 통에 대하여 제1항의 수수료에 8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기부등 본의 교부수수료는 1 통에 대하여 1,000 원，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등본의 교부수수료는 1 통에 대하여 800 원으로 한다．

제 3 조（열람）（1）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 한 수수료는 1 등기기록 또는 1 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

원으로 한다. 다만,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 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 장마다 50 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의 열람 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에 관하여 500원으로 한다.

## 제 7 장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령상 수수료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공적 업무의 공평부담에 기초하여 부과 되고 있다. 즉, 수수료•사용료에 관한 법제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 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법령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 법령의 입안원칙과 위임입법의 원칙에 맞게 입안되어 있으나, 여전히 몇몇 법령에 있어서는 입안원 칙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적 입법이거나 개정된 입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첫째, 응시수수료는 공무원 관련 수수료와 자격관련 수수료 및 교육 관련 수수료의 금액이 위탁기관의 성격과 승인 및 심의 등에 따라 많 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관련 사항을 조정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부과기준과 요율에 대한 법령상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서 위탁기관이 무엇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어려우며, 승인사항에 대한 검증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제도적 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에 관하여는 민원에 대한 요구와 규제사 항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법령에 많이 반영되어 있으나, 아직 그 근 거를 입법화하지 않고 위탁기관의 공고에서만 반영하거나,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바, 검토를 통한 조속한 반영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셋째, 수수료의 용어와 관련 하여 매우 다양한 용어가 법령에 쓰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용어를 분야별로 검토하여 응시수수료, 위탁수수료, 허가(인가, 신고, 등록 등)수수료(규제관련 수수료), 00 (열람, 복사, 등본, 초본, 검사, 검증)신청수수료 등으로 각 수수료의 분야별로 명확하게

분류하여 법령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수수료 금액, 부과절차, 납부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방안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법률에 수수료의 부과에 관한 근거를 두는 것이 적절하며, 고시•예규 등의 행정규칙에 두는 것은 적절한 입법방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부록에서 제시된 수수료에 관한 행정규칙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섯째, 수수료에 관한 입법적 불비사항의 보완이 필요하다. 법률에 수수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위임•위탁 등의 규정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거나, 위탁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방안이 아닐 것이다. 최소한의 부과기준을 제시하고, 가능 하다면 구체적인 금액도 제시하는 입법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금액을 구체화하기 어려움이 있으면, 상한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위 임 - 위탁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법령과 조례 등에 위임된 사항 중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의 수수료 관련 사항을 입법화하지 않는 경우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관련 사항의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강현철 - 이세정, 기업 등 국민부담경감을 위한 보고•신고제도 개선 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김기표, 수수료제도에 관한 고찰, 법제, 1994. 8
김옥수, 댐용수 사용료 분쟁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2010.

김원오 외, 주요국의 수수료 체계 및 현황분석, 한국발명진흥회, 2000 김인룡,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이론적 고찰, 목포대 사회과학연구 제 13집(1998)
박익환, 저작권 사용료 관련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의 중재 소제도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13권제1호(2009)

박제천, 전파사용료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제6권제2호(2008)

박환표 외 1 인, 건설신기술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 한국건설관리 학회지 제7권제6호(2006)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996
법제처, 국민불편볍령 개폐백서, 2010
변홍섭, 세외수입해설, 한국지방세연구혜, 2006
신현주, 부동산중개수수료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 석사 학위논문, 2009

오희완, 사용료•수수료의 요율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이면수 외 2 인, 컨테이너전용부두의 사용료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항 해항만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2009)

이영주, 지상파 라디오 방송의 인터넷 동시 전송에 대한 법적 분류와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의 타당성 고찰, 힌국언론학보 제53권제3호(2009.6)

임채성, 철도 선진국의 선로사용료 현황과 그 시사점, 한국철도학화 논문집 제11권제3호(2008.6)

주운현 • 고승희, 충청남도 공공수수료 요율분석, 충남발전연구원, 2008 한국법제연구원, 세외수입의 징수관련 각국의 법제 동향과 시사점, 2010

한국법제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의 징수절차에 관한 통합법 제정 연구, 2010.

## 독일 문헌

Arndt, Hans-Wolfgang/Rudolf, Walter, Öffentliches Recht, 13. Aufl., Franz Vahlen(München) 2000.

Bachof, Otto, Verfassungsrecht, Verwaltungsrecht, Verfahrensrecht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 Mohr Siebeck (Tübingen) 1963.

Beckmann, Hartmann, Verfassungsrechtsfragen im Grenzbereich zwischen Steuern und besonderen Abgaben, Köln Uni. Diss. 1976.

Birk, Allgemeines Steuerrecht, 2. Aufl., C.H.Beck(München) 1994.

Bodenheim, Dieter G., Der Zweck der Steuer: verfassungsrechtliche Untersuchung zur dichotomischen Zweckformel fiskalisch- nichtfiskalisch, Nomos(Baden-Baden) 1979.

Britz, Gabriele, Verfassungsmäßigkeit des Wasserpfennig - BVerfG, NVwZ 1996, 469, JuS 1997, S. 404ff.

Drömann, Dietrich, Nichtsteuerliche Abgaben im Steuerstaat: ein Beitrag zur dogmatischen Bewältingung von Verleihungsabgaben, Humblot (Berlin) 2000.

Ehle, Dietrich, Die verfassungsrechtliche Bedeutung des Kostendeckungsprinzips im Gebührenrecht, DÖV 1962, S. 45ff.

Heimlich, Jörn, Die Verleihungsgebühr als Umweltabgabe: zugleich ein Beitrag zur Dogmatik des allgemeinen Gebührenrechts, Duncker \& Humblot(Berlin) 1996.

Hendler, Reinhard, Zur rechtlichen Beurteilung von Umweltabgaben am Beispiel des "Wasserpfnnigs", NuR 1989, S. 22ff.

Jarass, Hans D., Verfassungsrechtliche Grenzen für die Erhebung nichtsteuerlicher Abgaben, DÖV 1989, S. 1013ff.

Kim, Sung-Soo, Rechtfertigung von Sonderabgaben, Duncker \& Humblot (Berlin) 1990.

Kirchhof, Ferdinand, Die Höhe der Gebühr: Grundlagen der Gebührenbemessung, Duncker \& Humblot(Berlin) 1981.
ders., Abgabenrecht, in: Achterberg, Norbert /Püttner, Günter (Hrsg.), Besonders Verwaltungsrecht, Bd. II, 2. Aufl., C.F. Müller(Heidelberg) 2000.
ders., Die Verleihungsgebühr als dritter Gebührentyp: Zugleich ein Beitrag zu ihrer Eignung als Umweltabgabe, DVB1. 1987, S. 554ff.
ders. Der Baden-Würtembergische "Wasserpfennig", NVwZ 1987, S. 1031 ff.

Kirchhof, Paul, Staatliche Einnahme, (§88), in: Isensee, Josef/ders.(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V, C.F. Müller(Heidelberg), 1990, S. 87-233.
ders., Verfassungsrechtliche Grenzen von Umweltabgaben, in: ders.(Hrsg.), Umweltschutz im Abgaben- und Steuerrecht, Schmidt(Köln), S. 3-31.

Kloepfer, Michael, Die lenkende Gebühr, AöR 97 (1972), S. 232ff.
Kluth, Winfried, Verfassungs- und abgabenrechtliche Rahmenbedingungen der Ressourcenbewirtschaftung, NuR 1997, S. 105 ff .

Knies, Wolfgang, Steuerzweck und Steuerbegriff: eine dogmengeschichtliche und kompetenzrechtliche Studie, Beck(München) 1976.

Krapf, Heike, Verkehrslenkung durch Abgaben: Möglichkeiten und Grenzen einer Umsetzung des Road-pricing-Konzepts nach deutschem und europäischem Recht, LIT(Münster etc.) 2001.

Kreft, Gerhart, Die begriffliche Abgrenzung von Steuer und Gebühr, Göttingen, Uni., Diss., 1968.

Kreft, Neue Wege im Gebührenrecht, DVBl. 1977, S. 369ff.
Mattern, Gerhard, Der Begriff der Steuer und das Grundgesetz, BB 1970, S. 1405 ff.

Mayer, Otto, Deutsches Verwaltungsrecht, Bd. II, Duncker \& Humblot (München u.a.) 1924.

Meyer, Susanne, Gebühren für die Nutzung von Umweltressourcen: unzulässiger Preis für Freiheitsausübung oder zulässiges Bewirtschaftungsinstrument?, Duncker \& Humblot(Berlin), 1995

Murswiek, Dietrich, Die Entlastung der Innenstädte vom Individualverkehr, Nomos(Baden-Baden) 1993.
ders., Die Ressourcennutzungsgebühr. Zur rechtlichen Problematik des Umweltschutzes durch Abgaben. NuR 1994, S. 170ff.

Mutius, Albert von/Lünenbürger, Simone, Öffentliche Abgaben für Wasserentnahmen kraft Landesrechts. Rechtliche Ausgestaltung und verfassungsrechtliche Bedenken, DVB1. 1995, S. 1205ff.

Pietzcker, Jost, Abgrenzungsprobleme zwischen Benutzungsgebühr, Verleihungsgebühr, Sonderabgabe und Steuer. Das Beispiel "Wasserpfenig", DVBl. 1987, S. 774ff.

Raecke, Jürgen, Das Kostendeckungsprinzip: Möglichkeiten und Grenzen seiner Anwendung bei Verwaltungsgebühren, Heymann(Köln) 1971.

Rau, Karl Heinrich, Lehrbuch der politischen Okonomie, Dritter Band, erste Abtheilung: Grundsätze der Finanzwissenschaft, 4. Aufl, Finanzwissenschaft, C.F. Winter'sche Verlagshandlung (Leipzig und Heidelberg) 1859.

Sander, Eberhard, Der "Wasserpfnnig"-eine Abgabe mit oder ohne staatliche Gegenleistung?, DVB1. 1990, S. 18ff.

Sacksofsky, Ute, Umweltschutz durch nicht-steuerliche Abgaben, Mohr Siebeck(Tübingen) 2000.

Schaefer, Horst, Der verfassungsrechtlicher Steuerbegriff, Lang(Frankfurt a.M.) 1997.

Stephan, Bodo, Verwaltungsgebühr verkappte Steuer und der Rechtsstaat, JURA 1970, S. 867ff.

Vogel, Klaus/Waldhoff, Christian, Grundlagen des Finanzverfassungsrechts, C. F. Muller(Heidelberg) 1999.

Vogel, Klaus, Vorteil und Verantwortlichkeit, in: Faller, Hans Joachim etc. (Hrsg.), Verantwortlichkeit und Freiheit, Die Verfassung als wertbestimmte Ordnung, Festschrift für Willi Geiger zum. 80. Geburtstag, Mohr Siebeck(Tübingen) 1989, S. 518ff.

Wendt, Rudolf, Die Gebühr als Lenkungsmittel, Hansischer Gildenverlag (Hamburg) 1974.

Wieland, Joachim, Die Konzessionsabgaben. Zur Belastung wirtschaftsverwaltungsrechtlicher Erlaubnisse mit Abgaben, Duncker \& Humblot (Berlin) 1991.

Wilke, Dieter, Gebührenrecht und Grundgesetz: ein Beitrag zum allgemeinen Abgabenrecht, Beck (München) 1973.


## 수수료 관련 고시211)

1.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지식 경제부고시 제2011-229호)
2. 의료폐기물전용용기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1-146호)
3.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특허청고 시 제2011-20호)
4. 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특허청고시 제2011-18호)
5.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07호)
6.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 건복지부고시 제2011-76호)
7.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11-30호)
8.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 • 고지 • 납부 • 환급 및 운 영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011-42호)
9.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대법원등기예규 제1333호)
10.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입 등에 따른 사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332호)
11.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21호)
12.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1-69호)
13.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 2011-70호)
14.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 2011-68호)
211) 2011년 11월 1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수수료’ 검색결과
15.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통계청고시 제2011-43호)
16. 수수료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요령(특허청고시 제2011-3호)
17.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11-4호)
18. 수로조사 성과심사수수료 산정기준 고시(국립해양조사원고시 제 2011-1호)
19. 2011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수수료(여성가족부고시 제2011-4호)
20.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방송 통신위원회고시 제2011-8호)
21.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지식경제부고시 제 2011-8호)
22. 경영대행수수료 고시(산림청고시 제2011-8호)
23.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31호)
24. 세관수수료 징수사무처리(관세청고시 제2010-116호)
25.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소방방재 청고시 제2010-25호)
26.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납부 대행 수수료(관세청고시 제2010-102호)
27. 인증수수료(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7호)
28. 수로도서지 판매가격 - 대행수수료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한 규정(국토 해양부훈령 제2010-29호)
29. 납부대행수수료(국세청고시 제2010-17호)
30. 외국인근로자 도입위탁 및 대행수수료(노동부고시 제2010-31호)
31.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농림 수산식품부고시 제2010-21호)
32.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방송 통신위원회고시 제2010-3호)
33. 농업기계 검정수수료(농촌진흥청고시 제2010-1호)
34. 철도차량 제작검사 수수료 변경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6호)
35.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예규 제151호, 2009.12.28)
36.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업무대행 수수료(노동부고시 제2009-72호)
37.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노동부고시 제2009-38호)
38.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09-234호)
39. 소음도검사수수료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09-220호)
40.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49호)
41. 종자산업법에의한품종보호료와수수료의 반환및대체요령(농림수산식 품부고시 제2009-329호)
42.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농촌진흥청고시 제2009-28호)
4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환경부 고시 제2009-194호)
44.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96호)
45. 경비지도사 시험의 위탁 및 응시 수수료 책정(경찰청고시 제2009-3호)
46. 특허료 • 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특허청고시 제2009-19호)
47.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청 요령(특허청고시 제 2009-19호)
48.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수수료 산정방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50호)
49.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업무 시험의뢰수수료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 안전청고시 제2009-149호)
50. 관광알선수수료 명세표(국세청고시 제2009-59호)
51.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09-144호)
52.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09-141호)
53. 조달업무 협력약정 체결기관에 대한 조달수수료 할인율(조달청고시 제2009-8호)
54.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조달청훈령 제1467호)
55.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 경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56. 시설사업 맞춤형서비스 조달수수료 요율표(조달청고시 제2009-8호)
57. 물품대금 수요기관 직불시 소액조달수수료 부과기준 변경(조달청 고시 제2009-8호)
58.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 지침(조달청고시 제2009-7호)
59.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한 조달수수료 할인율(조달청고시 제2009-8호)
60. 계량기 형식승인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61.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공정거래 위원회고시 제2009-49호)
62. 주택가액 조사•산정 수수료 산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99호)
63. 우편취급국의 우편창구업무 위탁에 대한 수수료(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9-22호)
64. 선금 선납시 조달수수료 요율 할인율 변경(조달청고시 제2009-2호)
65. 전자우편 등 이용에 관한 수수료(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3호)
66. 선금 선납시 조달수수료 요율 할인율(조달청고시 제2009-1호)
67.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대법원행정예규 제787호)
68. 물품대금 수요기관직불시 소액조달수수료 부과기준(조달청고시 제 2008-16호)
69. 내자구매 조달수수료 요율(조달청고시 제2008-19호)
70. 조달수수료 요율(맞춤형서비스) 고시(조달청고시 제2008-13호)
71.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농림 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3호)
72.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1232호)
73. 주택가액 조사•산정 수수료 산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94호)
74.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 시험경비(농촌진흥청고시 제 2007-22호)
75.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협의대상 및 방 법(재정경제부고시 제2007-39호)
76. 환경표지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환경부고시 제2006-119호)
77. 철도안전분야 전문기관 지정 및 수수료(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98호)
78.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수수료(건설교통부고시 제2006-91호)
79. 인터넷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정보통신고시 제2006-3호)
80. 전자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정보통신부고시 제2006-2호)
81. 건축사시험 응시수수료(국토해양부고시 제2005-533호)
82. 국내소포우편요금및소포이용에관한수수료(정보통신부고시 제2004-75호)
83.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기획재 정부고시 제2004-2호)
84. 환경성적표지인증신청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02-68호)
85. 신뢰성 인증 및 평가수수료 운영 지침(산업자원부고시 제2000-98호)
86.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 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1999-130호)
87. 자동차배출가스, 소음•진동검사 및 검사용기기•교정용품검사에 관한 수수료(환경부고시 제1999-38호)
88. 동산집행사건에 있어서 집행관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범위 등에 관한 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297호)

부 록 1 【수수료 관련 고시】
89. 국유재산관리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등기부열람 수수료 등의 면제(대법원등기예규 제443호)
90. 등기부등•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대법원등기예규 제398호)
91. 과세자료조사를 위한 열람시에 수수료 면제(대법원등기예규 제396호)
92. 등기부열람 수수료면제(대법원등기예규 제311호)
93. 집행관의 관할외 원거리 송달과 그 수수료(대법원재판예규 제42호)

$$
\begin{gathered}
\text { 부 록 } 2 \\
\text { 수수료 관련 인식 조사 } \\
\text { 설문지 }
\end{gathered}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 차량 등록 수수료 관련 인식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저희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차량등록 수수 료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차량 등록절차에 수반되는 수수료에 관련한 국민부담을 완화 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실태파악에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 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나라에서 정하는 법으로 규정된 일이니, 안심하고 편안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 9월

## - 조사 주관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서울 서초구 양재동 90-4)

## - 조사 담당자

조사연구실장 김기덕 T: (02)3775-1068 / F: (02)3775-1061
[선정 질문 (1)(공무원 제외한 등록인에게만 질문)] 귀하께서는 최근 1 년 이내에 차량을 신규로 구입(중고차 포함)하여 직접 등록하거나, 업무 상 고객의 차량에 대해 등록절차를 대행해 주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1) 있다 설문 계속 진행
(2) 없다 설문 종료 "죄송합니다. 귀하께서는 본 설문에 해당되지 않 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질문 (2)] 다음 중 귀하께서 해당경험이 있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1) 자동차 신규등록
(2) 자동차 이전등록
(3) 자동차 변경등록
(4) 자동차 말소등록
(5) 해당사항 없음 설문 종료 "죄송합니다. 귀하께서는 본 설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I. 차량 등록 절차 관련

## [현행 차량 등록 구비서류 소개]

현재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각 구청의 자동차 등록과(개인용은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 가능하며, 영업용의 경우 관할 지역 소재 구청으로 한 정)에서 신규등록 혹은 이전 및 명의변경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등록기간은 임시운행 허가기간인 10 일 이내이며, 이를 어길 경우 만료 일로부터 10 일 이내에는 5 만원, 그 이후로는 매 1 일마다 1 만원씩 최대 100 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자동차 구입 혹은 명의변경 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 과 같습니다.
(1) 등록 신청서(신고서)
(2) 자동차 제작증(수입차의 경우 수입면장•수입사실 증명서)
(3)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4) 임시운행 허가증-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반납(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5)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문 1. 귀하께서는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의 각 항목별로 본인의 느낌이나 평가를 말씀해주세요.

| 구 분 |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그렇다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그런 } \\ \text { 편이다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begin{gathered} \text { 전혀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 :---: | :---: | :---: | :---: | :---: | :---: |
| 1) 등록 기간 (10일 이내)이 짧다 | (1) | (2) | (3) | (4) | (5) |


| 구 분 |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그렇다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그런 } \\ \text { 편이다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은 } \\ & \text { 편이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전혀 } \\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 :---: | :---: | :---: | :---: | :---: | :---: |
| 2) 구비서류가 많다 | (1) | (2) | (3) | (4) | (5) |
| 3) 등록을 위한 시간 이 오래 걸린다 | (1) | (2) | (3) | (4) | (5) |
| 4) 과태료가 너무 많다 | (1) | (2) | (3) | (4) | (5) |
| 5) 거쳐야 하는 창 구가 너무 많다 | (1) | (2) | (3) | (4) | (5) |
| 지방세 납부 시 스템의 업무 마 <br> 6) 감시간(현재 5 시 이전)이 너무 빠 르다 | (1) | (2) | (3) | (4) | (5) |
| 7) 기타(구체적으로 | (1) | (2) | (3) | (4) | (5) |

문 2. 귀하께서는 현재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전반적인 등록절차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1) 매우 간편하다
(2) 비교적 간편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다소 복잡한 편이다
(5) 매우 복잡하다

## I. 차량 등록 수수료 관련

[현행 차량 등록 수수료 제도 소개]

등록을 위한 소요비용은 차량의 성격 및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인지 : 3,000 원 (전국 균일)
(2) 수입증지(수수료) : 서울 2,000원 / 지방 2,500원
(3) 명의이전 수수료 : 서울 1,000원 / 지방 1,500원
(4) 자동차 번호판비(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 7,600 원(소,중형) / 8,800원(대형)
(5) 주소변경 수수료(번호판 교체 수수료) : 1,300 원 (같은 관할구역 내로 옮기는 경우 면제)
(6) 번호판 등록 수수료 : 7,500원 (같은 관할구역 내로 옮기는 경우 면제)
※ 그 외 '취득세', '등록세', '공채(채권)' 등은 본 조사의 해당 내역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 3. 귀하께서는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수수료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1) 매우 필요하다
(2) 어느 정도 필요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 4. 귀하께서는 자동차 항목과 관련한 다음의 수수료 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구분 | 매우 <br> 비싸다 | 비싼 <br> 편이다 | 적절 <br> 하다 | 싼 <br> 편이다 | 매우 <br> 싸다 | 해당 <br> 사항 <br> 없음 |
| :--- | :---: | :---: | :---: | :---: | :---: | :---: |
| 1) 수입인지 | (1) | (2) | (3) | (4) | (5) |  |
| 2) 수입증지(수수료) | (1) | (2) | (3) | (4) | (5) | (6) |
| 3) 명의이전 수수료 | (1) | (2) | (3) | (4) | (5) | (6) |
| 4) 자동차 번호판비 | (1) | (2) | (3) | (4) | (5) | (6) |
| 5) 주소변경 수수료 | (1) | (2) | (3) | (4) | (5) | (6) |
| 6) 번호판 등록 수수료 | (1) | (2) | (3) | (4) | (5) | (6) |
| 7) 기타 | (1) | (2) | (3) | (4) | (5) | (6) |
| ( ( |  |  |  |  |  |  |

문 5. 귀하께서는 현재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1) 매우 적절한 수준이다
(2) 비교적 적절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적절하지 않다
(5) 전혀 적절하지 않다

## II. 기타 의견

문 6. 본인 및 주변에서 자동차 신규 등록 절차(명의 변경 포함)와 관련하여 겪었던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면 무엇이든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문 7. 끝으로 자동차 신규 등록 수수료로 인해 발생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quare$

```
토ᄋ계버ᄇ 제33조(비미ᄅ의 보호)에 의거,
보ᄂ 조사에서 개이ᄂ의 비미ᄅ에 소ᄀ하느ᄂ
    사하ᄋ으ᄂ 어ᄆ겨ᄀ히 보호되ᄇ니다.
```

| ID |  |  |  |  |
| :--- | :--- | :--- | :--- | :--- |

## 대학 입시 수수료 관련 인식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저희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대학 입시 수 수료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입시에 관련한 비용에 대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질문에 답해 주신다면, 향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번 조사결과는 실태파악에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나라에서 정하는 법으로 규정된 일이니, 안심 하고 편안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 9월

## - 조사 주관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서울 서초구 양재동 90-4)

## - 조사 담당자

조사연구실장 김기덕 $\mathrm{T}:(02) 3775-1068 / \mathrm{F}:(02) 3775-1061$

| 응답자 <br> 성명 | 성별 | (1) 남성 (2) 여성 | 연령 | 만 | 세 |
| :---: | :---: | :---: | :---: | :---: | :---: |
|  | ※ 해당되는 곳에 $\square$ 표시해주세요. |  |  |  |  |
|  | $\square$ 교사구분 | (1) 담임교사 (2) 담임교사를 맡고 있지 않음 |  |  |  |
|  | $\square$ 학생구분 | (1) 고등학교 3학년 <br> (2) 대학교 1학년 재수생(대입준비중) |  |  |  |
| $\begin{array}{\|l} \text { 거주지 } \\ \text { 광역시도 } \end{array}$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br>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  |  |  |  |
| 상세주소 | 구/시/군 $\qquad$ 동/읍/면 <br> [면접원: 쿼터 비율 확인] <br> (1) 서울 / 수도권 <br> (2) 6 대광역시 <br> (3) 중소도시 <br> (4) 농어촌지역 |  |  |  |  |
| 담당자 <br> 서명 |  | 설문 작성일 |  |  |  |

## I. 대입 (수능, 전형료 등) 수수료 관련

## 문 1. 귀하께서는 입학전형료(수수료 포함)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1) 매우 필요하다
(2) 어느 정도 필요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 2. 귀하께서는 현행 입학전형료(수수료 포함)가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책 정되었다고 생각하세요?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문 3. 귀하께서는 현재의 수능 응시를 위한 수수료 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 참조 : 수능 응시 수수료 소개]

3 개 영역 이하 : 37,000 원 // 4개 영역 : 42,000원
// 5개 영역 : 47,000원
(1) 매우 적절한 수준이다
(2) 비교적 적절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적절하지 않다
(5) 전혀 적절하지 않다

## 문 4. 귀하께서는 현재 입학전형료 비용의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 [ 참조 : 입학전형료 소개]

작년 기준(2010년) 우리나라의 학부(수시•정시•편입)의 1 인당 평균 입학 전형료는 55,300 원(오만오천삼백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현재 1 인당 평 균 입학전형료는 대학의 종류 및 소재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립대학 : 36,900 원(삼만육천구백원)
(2) 사립대학: 58,500 원(오만팔천오백원)
(3) 비수도권 소재 대학: 38,700 원(삼만팔천칠백원)
(4) 수도권 소재 대학 : 66,600원(육만육천육백원)
(1) 매우 적절한 수준이다
(2) 비교적 적절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적절하지 않다
(5) 전혀 적절하지 않다

문 5. 현재 인터넷 접수 시 전형료에 별도로 부과되는 수수료는 건당 5,000 원 (오천원)입니다. 생각하시기에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1) 매우 적절한 수준이다
(2) 비교적 적절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적절하지 않다
(5) 전혀 적절하지 않다

## 문 6.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대입관련 수수료(입학전형료)가 어느 정도 수준이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1] 수시 전형료(실기 제외) [구체적인 금액을 적어주세요 :
(1) 10,000 원 이하
(2) 10,001원 ~ 20,000원 사이
(3) 20,001원 ~ 30,000원 사이
(4) 30,001원 ~ 40,000원 사이
(5) 40,001원 ~ 50,000원 사이
(6) 50,001원 ~ 60,000원 사이
(7) 60,001원 ~ 70,000원 사이
(8) 70,001원 ~ 80,000원 사이
(9) 80,001원 ~ 90,000원 사이
(10) 90,001 원 ~ 100,000원 사이
(11) 100,001 원 이상
(1) 10,000 원 이하
(2) 10,001원 ~ 20,000원 사이
(3) 20,001원 ~ 30,000원 사이
(4) 30,001원 ~ 40,000원 사이
(5) 40,001원 ~ 50,000원 사이
(6) 50,001원 ~ 60,000원 사이
(7) 60,001원 ~ 70,000원 사이
(8) 70,001원 ~ 80,000원 사이
(9) 80,001원 ~ 90,000원 사이
(10) 90,001 원 ~ 100,000원 사이
(11) 100,001 원 이상

## II. 대입 접수 및 등록 절차 관련

[면접원] 문 7~문 8번은 현재 고등학생과 대입준비생(재수생)만 해당.
그 외 응답자(교사, 대학생)의 경우 문 9번으로 이동

문 7. 다음의 각 접수 방식에 대하여 이용의향을 말씀해주세요.

| 구 분 | 이용할 의향이 <br> 높은 편이다 | 이용할 의향이 <br> 없는 편이다 | 잘 모르겠다/ <br> 그 때 가봐야 <br> 안다 |
| :--- | :---: | :---: | :---: |
| 1) 인터넷 접수 | (1) | (2) | (3) |
| 2) 방문 접수 | (1) | (2) | (3) |
| 3) 우편 접수 | (1) | (2) | (3) |

문 8. 귀하께서는 대입 수시모집의 경우, 몇 회 정도 지원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 예상 지원횟수 | ( 회 | 예상 소요금액 | ( 원 |
| :--- | :--- | :--- | :--- |

[면접원] 문 9번부터는 모든 응답자에 해당

문 9. 정부와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무제한 수시 지원으로 인한 전형료 낭비 등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5 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수시모집 지 원 횟수 제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 II. 기타 의견

문 10. 입시 절차와 관련하여 겪었던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무엇이든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square$

문 11. 전형료 및 수수료로 인해 발생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1）사용료는 일반적으로 광의의 수수료 개념에 포함（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 1996．，423면）되는 것으로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별도로 사용료를 구분하여 정리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체계 등 총괄적인 논의에서는 ‘수수료＇로 단일하게 사용 하도록 한다．

[^1]:    2）국유재산법 제 25 조제 3 항，지방자치법 제 130 조 참조
    3）주운현•고승희，충청남도 공공수수료 요율분석，충남발전연구원，2008．，5－7면 참조．

[^2]:    4) 주운현 • 고승희, 전게보고서, $7-10$ 면 참조.
    5) 주운현•고승희, 전게보고서, 11 면 참조.
[^3]: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1．토지의 점용，2．하천시설의 점용－－－－－（이하 생략） 8）대법원 76 누 135 판결

[^4]:    35) Kirchhof, F., Die Höhe der Gebhr, S. 25f. 참조.
[^5]:    44) Stein, Lehrbuch der Finanzwissenschaft, S. 306; Mayer, Otto, Deutsches Verwaltungsrecht, Bd. II, S. 89 ff.
    45) 허용하는 입장으로 Drömann, Nichtsteuerliche Abgaben, S. 382 ff.; Kirchhof, F., Die Verleihungsgebhr als dritter Gebhrentyp. Zugleich ein Beitrag zu ihrer Eignung als Umweltabgabe, DVBl. 1987, S. 554, 561. 부정하는 입장으로는 Kluth, NuR 1994, S. 109
    46) Kirchhof, F., NVwZ 1987, S. 1033f.; Pietzcker, DVB1. 1987, S. 780.; v. Mutius/Lnenbrger, DVBl. 1995, S. 1210ff.
    47) Pietzcker, DVB1. 1987, S. 775ff.; Sander, DVBl. 1990, S. 20ff.; v. Mutius/Lnenbrger, DVB1. 1995, S. 1206 f .
    48) Sander, DVB1. 1990, S. 23; v. Mutius/Lünenbrger, DVB1. 1995, S. 1207 f .
    49) Kirchhof, F., NVwZ 1987, S. 1035; Wieland, Die Konzessionsabgaben, S. 33; Heimlich, Die Verleihungsgebühr als Umweltabgabe, S. 323
    50) Murswiek, NuR 1994, S. 175 f.
    51) Hendler, NuR 1989, S. 24 ff .
    52) BVerfGE 93, 319, 338ff.
    53) 연방헌법재판소의 소위 불부담금(Wasserpfnig) 판결과 관련된 이러한 유형의 공과
[^6]:    금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Sacksofsky. S.118ff.; Krapf, 74ff. 참조.

[^7]:    서도 수수료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Wendt, Gebühr, 1975, S. 49f.; Wilke, S. 66ff. 참조.
    105) BverfGE 7, 244, 252; 49, 343, 353; 65, 352, 344; 67, 256, 276.
    106) Britz, JuS 1997, S. 407; Vogel, Vorteil und Verantwortlichkeit, in: FS Geiger, S. 530 참조. 그러나 입장을 따르더라도 두 문제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Sacksofsky(S. 189 ff. .)에 따르면 개념구분문제는 권한배분과 관련해서, 정당성문제는 평등원칙을 기 준으로 수수료의 허용문제로 나누어 본다.
    107) BVerfGE 82, 159, 181; BVerfGE 93, 319, 342; Kirchhof, P., in: HdBStR, Bd. IV, $\S 88$ Rn. 269.

[^8]:    137) 경정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 1 만원, 경사이상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9]:    채용시험 : 7천원,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 : 7천원, 경장이하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 5 천원
    138) 5 급 이상은 1 만원, $6 \cdot 7$ 급은 7 천원, $8 \cdot 9$ 급 및 기능직 공무원은 5 천원
    139) 5 급 이상은 1 만원, 6-7급은 7천원, $8 \cdot 9$ 급 및 기능직 공무원은 5 천원
    140) 5 급 이상은 1 만원, $6 \cdot 7$ 급은 7 천원, $8 \cdot 9$ 급 및 기능직 공무원은 5 천원

[^10]:    산업인력공단) : 2011년 4월4일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사항이 미반영됨. 종전규 정은 미응시 수수료 반환불가 규정임.
    145) 2011년 제48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참조(2011년 2월 22일 한국산업 인력공단) : 2011년 3월29일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사항이 미반영됨. 종전규정은 미응시 수수료 반환불가 규정임.

[^11]:    146)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 주체하는 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09년 9월 7일 변경된 것을 적용하고 있다. 한약조제자격, 응급구조사(1급•2급), 위 생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영양사, 의 지•보조기 기사, 보건교육사(1급•2급•3급) 등
[^12]:    149)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 관련 규정은 반환규정도 위 탁되어 별도의 반환규정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13]:    151) 제 78 조 (전문간호사)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 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2) 제 1 항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2항의 위임내용에 시험방법, 응시수수료 등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14]:    160) 제6조(면허어업)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161) 제9조(허가어업)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낚시업, 낭장 망어업, 각망어업
[^15]:    있으나, 수수료 금액에 차이는 없음.

[^16]:    170) 신고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입법적 불비로 판단된다.
[^17]:    185）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등록수수료，품종보호 출원수수료，품종보호 심사수수료，우선권주장 신청수수료，통상실시권의 설정 재정신청수수료，심판청구 수수료，재심청구수수료，보정료

[^18]:    193）제 3 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1）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교육훈련기 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2）제 1 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9]:    198)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46호),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49호) 등이 고시로 제정되어 있다.
[^20]:    201) 환경부 관련 수수료 규정에는 20 일 게시와 의견청취 관련 규정과 수수료 내용과 산정내역의 공개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1]:    209) 중앙값(Median) : 데이터를 크기순서로 나열했을 경우 가장 중앙에 위치하게 되

    는 데이터의 값이나 이에 해당되는 값을 말한다. 산술평균이 극단값(Extreme data) 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약점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